

財政・金融政策と自由主義思想

韓國租稅研究院

序 言

自由主義는 현재 세계의 큰 흐름이다. 政府의 失敗가 현저하여짐에 따라서, 대공황 이후 세계경제의 지배적인 사조였던 介入主義가 점차 퇴조하고, 政府의 縮小 등에서 읽을 수 있는 自由主義의 재등장은 80년대 이후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1993년 봄 출범한 우리 政府도 自由主義에 입각한 改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 실시한 政府組織改編을 비롯하여 金融實名制, 規制緩和, 公企業 民營化, 自律化 등 여러 가지 획기적인 개혁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自由主義的 改革이 우리 사회와 경제의 先進化를 위하여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自由主義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개혁을 보다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自由主義는 우리 대부분이 스스로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이 보고서는 대표적인 自由主義 經濟學者인 스미스(Adam Smith), 오이켄(Walter Eucken),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 뷰캐넌(James M. Buchanan) 및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의 사상체계를 소개하고 비교함으로써 경제학에서의 自由主義의 發展過程을 歷史적으로 고찰한 다음 이를 우리 경제와 사회의 입장에서 평가한 후에 우리의 政策的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사회현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이 성공하려면 각 부문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개혁의 전부문을 하나의 통일된 視角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러한 의미에서 현 우리 政府가 추진하는 개혁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으

리라 믿는다.

著者は 이 보고서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趙淳 教授, 忠南大의 宋鉉浩 교수, 民族統一研究院의 朴淳成 박사, 東國大의 張五鉉 교수, 本 研究院의 林周瑩 박사, 그리고 타자에 수고하여 준 本 研究院의 李恩貞 嬢과 卞敬淑 嬢에게도 사의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담긴 견해는 著者 個人의 의견이며 本 研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4年 12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朴 宗 淇

目 次

第 1 部 自由主義의 歷史的 考察

第 1 章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古典的 自由主義	9
第 1 節	歷史的 背景	12
第 2 節	스미스의 道德哲學 體系	26
第 3 節	自由主義 經濟學(經濟的 自由主義)	63
第 4 節	政府의 役割	94
第 5 節	評 價	115
第 2 章	오이켄의 秩序自由主義	120
第 1 節	歷史的 背景	122
第 2 節	經濟秩序와 經濟過程	125
第 3 節	自由放任主義의 批判	131
第 4 節	中央管理經濟의 批判	139
第 5 節	中道의 經濟政策 批判	146
第 6 節	競爭秩序의 原則	151
第 7 節	評 價	163
第 3 章	하이에크의 進化論的 自由主義	167
第 1 節	時代背景	167
第 2 節	知識의 不完全性	169
第 3 節	設計主義的 合理主義의 誤謬	172
第 4 節	進化와 準則	174
第 5 節	自生的 秩序와 人造된 秩序	176

第 6 節	自由의 法과 政府의 法	178
第 7 節	社會正義와 社會立法의 誤謬	181
第 8 節	市場秩序의 機能	187
第 9 節	政府의 役割	193
第10節	評 價	205
第 4 章	류캐년의 立憲的 自由主義	216
第 1 節	時代背景	216
第 2 節	憲 法	218
第 3 節	基本立場(方法論)	219
第 4 節	意圖的 改革	221
第 5 節	國家의 役割	223
第 6 節	評 價	226
第 7 節	財政金融政策	229
第 5 章	프리드만의 通貨論的 自由主義	233
第 1 節	時代背景	233
第 2 節	自由主義의 原理	234
第 3 節	政府의 役割	239
第 4 節	通貨政策	243
第 5 節	評 價	251
第 II 部	韓國經濟의 先進化와 民主化를 위한 財政·金融政策	
第 6 章	韓國經濟의 發展段階와 問題點	257
第 1 節	韓國 經濟開發의 特徵	257
第 2 節	韓國 經濟開發模型의 評價	266

第 7 章	經濟民主化와 先進化를 위한 財政·金融政策	278
第 1 節	經濟의 核心으로서의 사람	278
第 2 節	公正하고 自由로운 市場經濟秩序의 確立	281
第 3 節	分配正義와 成長	283
第 4 節	政府統制와 財閥支配의 撤廢	292
第 5 節	必要한 制度改革들	294
第 6 節	政策과 制度의 相互 補完性	311
第 7 節	政府의 役割	312
第 8 章	結 論	314
	〈參考文獻〉	325

第 I 部

自由主義의 歷史的 考察

第 1 章 아담 스미스 (Adam Smith)의 古典的 自由主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래의 정부의 介入主義的 經濟政策에서 自由主義的 經濟政策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가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고 市場價格機構에 의한 경제의 자율적인 운용을 살리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現代 經濟學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60년대 이후 政府主導의 經濟成長 과정에서 우리 經濟가 世界史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高度成長을 실현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고착된 광범하고 복잡한 政府의 經濟規制들은 이제 우리 경제의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질곡으로 변하여 버렸다는 인식은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政府規制의 撤廢는 이 시대 우리 經濟의 當面課題이며 우리 經濟와 社會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하여 이 시대에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개혁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사회 구조 전반을 바꾸는 改革이 성공하려면 改革의 방향과 내용이 분명하여야 한다. 모든 사회현상은 상호연관되어 있으므로 改革은 단편적이어서는 안되고 각 부문이 서로 상응하여 전반적인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전체적인 틀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틀을 제시하는 것이 思想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에 필요한 改革의 방향과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思想이 필요하다.

自由主義(liberalism)¹⁾가 현대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상이라고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은 自由主義나 自由放任主義(laissez-faire)를 마치 무제한의 自由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恣意的인 규제나 횡포를 반대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公正한 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自由主義(liberalism)라고 부를 수 있다. 이를 경제에 적용하면, 公正한 法을 위배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經濟活動의 자유에 대한 政府의 規制를 반대하는 것이 自由主義이다. 公正한 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느냐에 따라서 自由主義의 의미가 달라진다.

영국의 古典的 自由主義는 法의 범위를 사유재산권과 공정한 거래를 보호하는 것만으로 족하며 市場經濟 자체는 政府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古典的 自由主義를 이론적으로 확립한 사람이 스미스였다. 經濟學에서 自由主義의 원조는 스미스였다. 그에 의하여 市場經濟에서 利己心에 입각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自由主義의 基本原理가 풍부한 구체적인 자료와 설득력 있는 논리로 개진되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資本主義를 옹호하는 現代 經濟學의 기본사상으로 오늘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를 經濟學에서 가장 위대한 自由主義者였다고 하여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스미스 이후의 모든 自由主義는 스

1) 自由主義는 17세기 영국의 市民革命 과정에서 발생하여 그 후 프랑스와 미국의 시민혁명을 점화시키는 기본이념이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liberalism에는 자유주의 외에 또 하나의 뜻이 생겼다. 그것은 保守主義 (conservatism)과 대비되는 進歩主義의 뜻이다. John Maynard Keynes와 William Beveridge로 대표되는 진보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정부가 社會保障과 雇傭創出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진보주의에 對比하여 정부규제를 반대하는 의미의 자유주의를 古典的 自由主義(classical liberalism)이라 부르기도 한다. 현대에서는 진보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자유주의를 libertarianis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스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변형들이라고 볼 수 있다²⁾.

自由主義는 經濟學만이 아니라 정치학이나 철학이나 역사학과 같은 다른 학문에서도 연구의 대상이다. 自由主義 思想은 원래 전제 군주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었으므로 政治學에서 自由主義가 먼저 발전하였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經濟學에서의 自由主義의 발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2) 아담 스미스 著作의 略字 :

LJ: *Lectures on Jurisprudence* (이 책은 Oxford 대학이 1978년에 출판한 The Glasgow Edition of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Adam Smith의 다섯번째권의 影引本임). 이 책에는 다음의 두 개의 강의록이 수록되어 있음.

LJ(A): 위의 LJ 중에서 1762~1763년에 행해진 강의의 강의록으로 1953년에 발견.

LJ(B): 위의 LJ 중에서 1766년에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강의록으로 1895년에 발견.

TMS: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The Glasgow Edition of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Adam Smith, vol. I.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WN: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The Glasgow Edition of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Adam Smith,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WN 上·下 : 아담 스미스, WN, 金秀行 譯, 『國富論』, 上·下, 동아출판사, 1992.

이 밖에 스미스의 저작으로는 다음의 세 권이 있다.

Essays on Philosophical Subjects (이것은 天文學, 物理學, 論理學, 形而上學, 藝術 등에 관한 스미스의 遺稿集임).

Lectures on Rhetoric and Belles Letters (이것은 修辭學과 文學에 관한 스미스의 講義錄으로 스미스 사후에 발견된 것임).

Correspondence of Adam Smith (이 책은 Oxford 대학이 1977년에 출판한 The Glasgow Edition of Works and Correspondence of Adam Smith의 여섯번째 권의 影引本임).

第 1 節 歷史的 背景

스미스의 위대함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시한 것에 있는 것은 아니다. 『國富論』만이 아니라 스미스의 또 다른 저서인 『道德感情論』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同感(sympathy), 自然的 自由, 自然的 調和 등 스미스의 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들은 그 어느 것도 스미스가 처음 사용한 것들이 아니다. '모든 細部에서 스미스는 수많은 선각자들을 갖고 있었다'³⁾.

그러나 사회과학에서의 모든 위대한 저서나 이론은 時代의 산물 이므로⁴⁾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 스미스의 經濟學에서의 위치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는 없다. 사회과학에서 위대한 저서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여러 생각들을 묶어서 하나의 설득력 있는 체계를 제시하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시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스미스의 『國富論』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은 經濟的 自由主義가 資本主義 社會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길임을 풍부한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고 반박하기 힘든 명료한 논리로 논증함으로써 經濟的 自由主義가 당시 영국사회에, 나아가서 그 후 資本主義 社會의 주된 經濟思想으로 확립되도

3) Viner, Jacob(1927), p. 144.

4) 한 예로 케인즈(John M. Keynes)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케인즈의 「一般理論」이 출판된 것은 1936년이었으나 케인즈가 이 책에서 제안한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의 대표적 예인 미국의 뉴딜(The New Deal)정책을 담은 법률들은 이미 이보다 이른 1933년에서 1935년 사이에 제정되었다. 이는 이 정책만이 불황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케인즈가 한 일은 이를 사후에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이지 새로운 것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록 함으로써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 『國富論』은 다윈(Charles Darwin)의 『種의 起源』과 함께 영국사람이 쓴 책으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古典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스미스도 時代의 産物이었으므로 스미스의 思想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미스가 살았던 18세기 영국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⁵⁾.

1. 市場經濟의 확립

뒤에서 보겠지만 스미스는 마르크스(Karl Marx)보다도 훨씬 먼저 인간사회의 발전을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경제적 요인이 사회발

5) 스미스의 생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723: 스코틀랜드의 Kirkcaldy에서 유복자로 태어남. 아버지는 稅關 감독원이었고 어머니는 大地主의 딸이었음.
- 1732~37: Kirkcaldy의 Burgh School에서 수학.
- 1737~40: Glasgow대학에서 數學과 物理學, 그리고 Francis Hutcheson에게 道德哲學을 배움.
- 1740~46: Oxford대학의 Balliol College에서 장학생으로 수학. 주로 희랍과 로마의 古典을 배움.
- 1748~51: Edinburgh에서 修辭學과 文學을 私設講座에서 강의.
- 1751: Glasgow 대학에서 교수로 취임. 처음은 論理學 교수로 임명되었으나 곧 道德哲學 教授로 임명됨.
- 1759: 『道德情感論』 초판 출판(이후 개정을 거듭하여 1790년 6판까지 출판)
- 1764: Glasgow대학을 사직하고 10대인 Buccleuch 공작의 가정교사 취임. 당시 대귀족의 가정교사로 취직하는 것은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은 명예와 보수를 얻는 것이었음.
- 1764~66: Buccleuch 공작을 데리고 프랑스와 스위스 여행. 이때에 Voltaire와 Quesnay를 만남.
- 1776: 『國富論』 초판 출간. 이후 1791년 6판까지 출판.
- 1777: Edinburgh 稅關長 취임.
- 1790: 사망.

전의 기본요인임을 지적하였다⁶⁾. 이러한 觀點에 따라서 경제적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자.

스미스에 따르면 인간사회는 狩獵, 遊牧, 農業 및 商業의 네 단계를 거쳐 발전하여 왔다⁷⁾.

스미스의 사회발전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商業社會는 市場經濟 내지 資本主義 經濟이다. 스미스가 활동하던 18세기 후반 영국은 産業資本主義의 초기로서 잘 발달된 市場經濟가 이미 확립된 시기였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는 용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두고자 한다.

市場經濟와 資本主義를 엄격히 定義하는 것은 어렵고 논란이 많은 문제이나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市場經濟란 대부분의 生産物이 商品으로서 市場價格機構를 통하여 교환되는 경제를 말한다. 즉 社會的 分業과 市場機構(market mechanism)의 확립이 市場經濟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市場經濟란 市場機構를 통한 分業經濟를 의미한다.

資本主義 經濟는 私有財産制度下에서 利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資本家가 賃金勞動者를 고용하여 商品을 生産하는 경제를 말한다. 따라서 私有財産制度和 賃金勞動者와 資本家の 계급분화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추가된 市場經濟가 資本主義 經濟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私有財産制度和 階級分化가 수반되지 않는 市場經濟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市場經濟와 資本主義 經濟는 사실상 같은 경제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資本主義 經濟는

6) 스미스는 唯物論者가 아니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주요관점 중 많은 것이 스미스의 저작에 나타나고 있다. 歷史發展段階說, 사회발전에서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의 疎外, 勞動價値說, 계급간의 갈등 등이 그것이다.

7) LJ(B), p. 459.

階級分화와 私有財産制度를 강조하는 반면에 市場經濟는 市場機構를 강조한다고 생각된다.

商業資本主義는 商業(貿易業이 포함)이 이윤창출의 주도적인 산업이며 따라서 商業資本家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初期資本主義를 말한다. 이에 비해 産業資本主義는 商業이 아니라 製造業에서 주로 이윤창출과 資本蓄積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製造業의 資本家가 경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를 말한다. 産業資本主義에서는 또한 賃金勞動者를 고용하는 工場制生産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무수한 中小企業들이 중심적인 생산주체로 등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産業資本主義는 가장 전형적인 資本主義라고 볼 수 있다. 獨寡占化가 진행되면서 産業資本主義는 獨占資本主義로 전환하였다. 大企業에 의한 獨寡占的인 産業의 지배와 金融資本의 발전이 獨占資本主義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원거리무역을 비롯한 상업의 발전, 도시의 발전, 농업의 생산력 발전과 상업화, 이에 수반한 中世莊園制度의 몰락으로 대략 15세기부터 商業資本主義가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인클로저(enclosure)와 先貸制度(putting-out system)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서 商業資本主義가 영국 등 서유럽에 정착하게 되었다.

중세에 共同의 牧畜과 耕作을 위해 사용되던 開放地(open field)를 울타리를 치거나 경계표시를 하여 개인의 私耕地로 전환시키는 인클로저(enclosure)는 일찌기 13세기부터 영국에 나타났으나 15세기 말과 16세기에 널리 진행되었으며 그후 18세기 후반에 또 한번 크게 진행되었다. 이 결과로 많은 농민들이 경작지를 잃고 賃金勞動者로 전환하여 商業化한 농업 또는 제조업에 勞動力을 제공하게 되었다⁸⁾.

중세 工業의 전형적인 생산형태인 匠人에 의한 手工業的 生産은

16세기에 들어와서 서구의 輸出産業에서 대부분 先賃制度(putting-out system)로 대체되었다. 中世의 匠人은 자신의 작업장과 연장을 소유하고 도제를 고용하고 원료를 구입하여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독립적인 소규모 기업인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先賃制度에서는 기술자가 자신의 작업장에서 자신의 연장으로 생산하지만 商業資本家が 원료를 제공하고 생산물을 모두 가져가는 형태로 생산이 이루어졌다. 이 제도하에서는 노동자(기술자)가 작업장과 연장을 소유하기 때문에 아직 노동과 資本의 명확한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노동자는 상업자본가로부터 수수료만 받고 생산함으로써 상업자본가가 생산과정을 지배하였다.

先賃制度는 商業資本家が 연장과 작업장까지 소유하는 형태로 점차 발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勞動과 資本間의 완전한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手工業이 아니라 機械動力(蒸氣機關)을 이용하는 工場生産方式이 보급되어 工業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서 商業資本主義는 産業資本主義로 발전하게 되었다. 産業革命이란 서구에서 발생한 이

8) 인클로저에 관하여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클로저는 농업 생산성의 발전에 불가피하였다는 것이다. 새로운 종자와 경작방법의 도입은 종래의 共同耕作地에서의 共同耕作으로는 불가능하였고 개인 경작지에서만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인클로저를 통하여 個別耕作이 확립됨으로써 資本主義的인 商業的 農業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결과로 農業生産性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다음 인클로저와 그로 인한 農業生産性의 비약적인 발전은 농업인구의 상대적인 비중은 낮추었으나 농업인구수 그 자체는 오히려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인클로저로 인한 농업의 발전은 농업노동력의 수요를 오히려 증가시켰다. 영국에서 농업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이다. 農業生産力의 발전으로 食糧生産이 증가함으로써 人口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 덕분에 農業과 工業에서 증가한 勞動力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었다.

러한 인류최초의 급속한 工業化를 말한다. 즉 産業革命으로 인하여 서구의 자본주의경제는 商業資本主義에서 産業資本主義로 전환되었다.

産業革命⁹⁾ (the industrial revolution)은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英國은 20세기 초까지 세계 제일의 工業國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産業革命이란 말을 영국에 처음 보급시킨 토인비(Arnold Toynbee)는 産業革命의 시기를 1760년에서 1820년으로 잡았으나 이는 조지 3세(George III)의 在任 기간에 맞춘 것일 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歷史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이므로 歷史에서 시대구분을 구체적인 연도로 행하는 것은 무리이다. 英國의 産業革命은 대략 1800년을 중심으로 하는 수 십년 동안에 이루어졌다.

産業革命의 핵심적인 내용은 동력을 이용한 기계들을 이용한 공장이 일반적인 생산형태로 보급됨에 따라서 근대적 공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 결과로 인하여 賃金勞動者와 資本家로의 계급분화가 완성되고 都市化가 급속히 진전되어 工業이 資本蓄積의 중심산업이 되었고 産業資本主義가 확립되게 되었다.

9) 産業革命이라는 단어가 풍기는 인상과는 달리 이 과정은 연속적이고도 광범한 과정이었다. 연속적이란 말은 그 이전의 과학기술과 공업발전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이며 광범위하다는 말은 단지 공업에서만 변혁이 아니라 사회, 지식, 상업, 금융, 농업 및 정치 등 다방면에 걸친 변혁이라는 의미이다. 원래 프랑스에서 1820년대에 처음 *l'èvolution industrielle* 말이 쓰여졌고 영국에서는 토인비(Arnold Toynbee; 유명한 史學者 Arnold J. Toynbee의 삼촌이며 유명한 社會改革家였음)의 1884년의 강의에서 이 말이 사용된 뒤 널리 보급되었다. 요즈음과는 달리 초기에는 토인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업화로 인한 근로자들의 비참한 생활과 연관시켜서 이 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였다. Cameron(1989), pp.163~164.

하나 지적할 점은 英國의 工業發展 내지 産業革命에서의 農業發展과 對外經濟交流의 중요성이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産業革命 이전에 농업의 發展이 先行하였다. 새로운 종자와 耕作技術의 도입과 보급, 인클로저를 통한 耕作地의 個別化와 대규모화를 통하여 농업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農業의 商業化가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농업발전을 주도한 것이 資本主義的 借地農(capitalistic tenant farmers)이었다. 이들은 지주들로부터 땅을 빌리고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여 상업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양육하였다. 이와 같은 농업의 발전이 공업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즉, 농업의 발전은 식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풍부하게 공급함으로써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食糧問題를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賃金の 저렴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人口를 급속히 증가시킴으로써 농업과 工業 모두에서 수요가 증가한 勞動力을 공급하였고(농업노동자의 절대적인 수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세기 중반까지 증가하였다), 공업에 저렴한 원료(특히 羊毛)를 공급하였으며, 풍부한 國內市場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영국에서 농업의 비약적 발전(이를 農業革命이라고 부르기로 한다)은 공업이 발전하는 토양을 마련하여 주었다.

다음으로 영국 資本主義의 발전에 外國과의 교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서구에서 資本主義가 처음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外國과의 貿易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국도 예외가 아니다. 17세기 말에 이미 英國은 해외무역이 활발하여 1人當 海外貿易額에 있어서 네덜란드 다음에 이어 2位였다¹⁰⁾. 또한 英國은 16세기에 새로운 농업기술을 네덜란드로부터 도입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조선기술과 금융기술 또한 네덜란드로부터 배운 바가 많았다. 비단 英國만이 아니라 중세부터 유럽에서는 무역과 자본 및 기술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도 외국과의 경제교류 없이 발전

한 나라가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英國의 資本主義가 '自生的으로' 發展하였다고 하는 말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時代 어느 經濟의 발전에 있어서도 外國과의 교류는 빠뜨리기 힘든 조건이며 外國과의 활발한 경제교류는 경제발전의 촉진제가 된다고 생각된다.

상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金融도 발달하였다. 王政復古(1660) 이후 런던의 다수의 부유한 金細工人들이 銀行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예금증서로 銀行券을 발행하고 신용있는 기업인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1694년에 「英國銀行」(The Bank of England)이 설립되어 銀行券의 발행을 독점하게 되었으나 기존의 銀行들은 예금업무와 어음할인을 통한 대출업무를 계속하였다. 18세기 후반에는 地方銀行의 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18세기에 交通網도 크게 발전하였다. 1750년에 총연장 3,400마일 이던 高速道路(turnpikes)는 1770년에 이의 다섯배인 1만 5천마일로 늘어났으며 運河도 17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여 1750년과 1820년 사이에 3,000마일이 건설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스미스가 살았던 '18세기 영국은 발전된 市場經濟였다'¹⁰⁾. 이 시대의 주역이었던 商工人들이 필요하였던 것은 경제활동의 自由였고 스미스의 經濟的 自由主義는 이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시장경제, 곧 자본주의는 商業資本主義에서 産業資本主義로 넘어 가는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資本主義의 전형적

10) 産業革命이 최초로 발생한 나라는 英國이었으나 資本主義가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는 네덜란드였다. 네덜란드는 16세기와 17세기에 유럽무역의 중심지로 商業과 工業및 金融이 영국보다 먼저 발달하였었다. 스미스도 '네덜란드는 영토와 인구의 비율을 고려하면, 잉글랜드보다 더 부유한 나라이다.'라고 지적하였다(WN, p. 108).

11) E.K. Hunt, 정연주 역, p. 51.

인 문제들인 계급간의 갈등, 獨寡占, 주기적인 不況의 발생 등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등장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스미스는 資本主義 經濟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가졌었고 이들 문제에 대하여 깊은 논의를 하지 않았다.

2. 立憲君主制와 議會政治의 확립

이러한 경제적 발전은 당시 영국사회에 이에 상응한 정치적 발전을 실현시켰다. 18세기에 영국은 이미 의회가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立憲君主制가 확립된 사회였다.

英國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일찍이 國王의 전횡을 제한하는 데에 성공한 전통을 가진 나라였다. 그 시초는 유명한 1215년의 「大憲章」(Magna Carta)에서부터 시작된다. 존(John)王이 귀족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서명한 이 문서는, 국민들의 대다수를 점하는 農奴들은 제외시키고 다만 소수에 불과한 귀족들과 도시의 자유시민들의 권익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왕에 대한 臣民들의 叛亂權, 稅金에 대한 신민들의 同意權 및 人身保護權을 규정하여 그 후 신민들이 왕의 전횡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 세 가지의 권리, 즉 반란권·조세동의권·인신보호권이 그 뒤 영국에서 왕과 국민간의 싸움에서 항상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중에서 반란권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의 결과이지 그 원인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결국 英國의 의회와 국왕간의 갈등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조세와 인신구속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國王이 임의로 세금을 걷고 人身을 구속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英國의 民主主義가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示唆이다. 국가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가장 크게 침해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人身의 침해와 租稅일 것이기 때문이다. 英國의 경험은 국가의 자의적인 징세와 인신구속을 금하는 것이 民主主義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그 후 13세기에서 16세기까지 4세기 동안은 영국도, 헨리8세와 엘리자베스1세로 대표되는 강력한 絶對君主制의 시대를 거치게 되었다.

英國에서 국왕과 의회간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17세기였다. 17세기는 영국에서 국왕과 의회간의 치열한 투쟁이 지속된 세기였다. 이 싸움이 의회의 승리로 끝남으로써 영국에 입헌군주제와 의회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대헌장의 내용을 재확인한 權利請願(Petition of Rights, 1628)의 제정, 의회의 租稅承認權을 재확인한 3個條例(Three Resolutions, 1629)의 제정, 王黨派와 議會派間의 내란과 의회파의 승리(1642~46), 찰스1세의 처형(1649)과 크롬웰의 共和政(1649~58), 王政復古(1660), 人身保護律(Habeas Corpus)의 제정(1679)이 이루어진 후에 제임스2세를 추방한 名譽革命(1688)이 성공함으로써 왕과 의회간의 긴 싸움은 끝났다. 이로써 議會의 立法權과,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立憲君主制가 英國에서 확립되었다. 이는 스미스의 『國富論』(1776)이 출판되기 거의 1세기 전의 일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가옥세와 가옥임대료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의회는 중소상공인과 농민과 노동자는 제외한, 지주와 대상공업자들만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명예혁명으로 이 중에서도 대상공업자들이 의회의 주도권을 주로 잡게 되었다. 이 시기의 영국의회는 모든 계급의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었다¹²⁾.

이 싸움에서 의회가 승리한 것은 영국이 이미 17세기에 商業資本主義 社會로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반영한다. 당시 왕과 의회의 싸

12) 중산계급이 의회에 대표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1832년의 선거법 개정의 해이며, 도시노동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1877년의 선거법 개정, 농업노동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비밀투표제도와 투표매수금지제도가 도입된 것은 1884년의 선거법 개정의 해였다.

움은 왕당파와 의회파간의 싸움으로 나타났었는데 왕당파는 國教徒와 地主들이었고 의회파는 淸教徒를 중심으로 한 新教徒와 도시의 商工人들이었기 때문이다. 구지배세력인 국왕과 지주와의 싸움에서 상공인, 곧 상업자본가가 승리하여 의회가 입법권을 장악하고 이 의회를 상공인들이 지배하게 됨으로써 영국에서 議會重商主義가 확립되게 되었다. 스미스가 비판한 것은 바로 이 議會重商主義의 정책들이었다.

3. 議會重商主義의 확립

名譽革命부터 19세기 초까지 약 1세기간의 영국 경제정책의 체계를 議會重商主義(Parliament Mercantilism) 혹은 議會콜벨티즘(Parliament Colbertism)이라고 부른다¹³⁾. 이는 대륙의 王室重商主義(Royal Mercantilism)와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중상주의를 지배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부르는 것이다. 重商主義(mercantilism)는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서 유럽에서 민족국가간에 치열한 군사적·경제적 경쟁이 전개되던 시기의 유럽국가들의 경제정책의 체계 내지 사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重商主義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한 것이 바로 스미스의 WN이었다¹⁴⁾. 스미스가 WN을 저술한 목적도, 당시 영국의 지배적인 경제사상이었던 중상주의의 오류를 지적하고 자유주의경제정책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스미스는 重商主義를, 金과 銀을 富의 원천으로 보는 重金主義(bullionism)에 입각한 保護貿易主義와 獨占貿易의 인정, 植民地 쟁

13) Colbertism은 대표적인 중상주의자였던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대의 宰相 Jean Baptist Colbert(1619~83)에서 유래한 것이다.

14)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mercantile system(또는 commercial system)이라고 불렀으며 mercantilism도 여기서 온 말이다.

탈 및 국내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의 경제정책체계로 파악하였다. 이는 중상주의의 현상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다.

중세에 여러 지방으로 분할되었던 유럽이 16세기 경부터 민족국가들로 통합된 이후 민족국가간에 생존을 위한 弱肉強食의 치열한 경쟁이 정치, 군사 및 경제의 면에서 끊이지 않았고 전쟁도 빈번하였다. 이 때문에 각국은 富國強兵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經濟的 民族主義(economic nationalism)가 重商主義였다. 重商主義는 民族國家의 형성기이자 商業資本主義 시대에 유럽에 등장하였던 經濟的 民族主義의 經濟政策體系라고 볼 수 있다¹⁵⁾.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그리고 강력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財政이 필요하였다. 튼튼한 재정은 金·銀(당시 돈은 금·은이었다)을 필요로 하였으며, 금·은을 획득하는 주원천은 貿易收支의 黑字였다. 獨占的 貿易(다른 나라와 무역할 때에 한 기업만이 나서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하다)과 保護貿易主義, 그리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산업에 관한 정부규제와 지원은 모두 무역수지의 흑자를 위한 것이었다. 식민지도 금·은의 획득이 주목적이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中南美 식민지는 金·銀 鑛山을 보유하고 있어서 금·은을 직접 생산하여 주었고, 금·은 광산이 없는 식민지는 수출품

15) 이에 비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나타났던 帝國主義(imperialism)는 商業資本主義와 産業資本主義의 다음 시대인 獨占資本主義시대의 경제적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상주의의 시대를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로 잡지만, 다른 나라보다 늦게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민족국가를 형성하였던 독일의 歷史學派는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하여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입을 지지하는 19세기 후반의 자신들의 경제정책도 중상주의라고 주장하였다. 자유주의자였던 스미스가 중상주의를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에 반하여 이들은 중상주의는 國家建設(Staats Bildung)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라고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버지니아의 담배, 서인도 제도의 설탕, 인도네시아의 후추, 세일론의 홍차 등)을 공급하거나 국내상품에 대한 수출시장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금·은의 획득에 기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정리한 바와 같이 重商主義는 몇 가지 주요한 공통점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긴 하지만 각국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나라마다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었다. 각국간의 차이를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은 국가의 정책결정자, 즉 지배계층의 차이였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重商主義는 王室重商主義(royal mercantilism)와 議會重商主義(parliament mercantilism)로 구분된다. 전자는 絶對王權이 확립된 나라에서 전제군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실시된 重商主義이며, 후자는 의회정치가 확립된 국가에서 의회를 장악한 상공인들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의 이익에 부합되게 실시한 重商主義를 말한다.

절대군주제가 확립되어 국왕의 전횡이 가능하였던 스페인, 포르투갈 및 프랑스가 왕실중상주의에 해당되는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왕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고 사유재산의 강제적 몰수도 자행하였으며 경제활동 전반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경제규제가 시행되었다¹⁶⁾. 이 결과 이들 나라에서는 상공업의 발달이 억압되어 국력은 쇠퇴하게 되었다. 특히 16세기에 유럽 최대의 富國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 후 2세기 동안에 가장 가난한 나라로 쇠퇴하게 된 주원인이 이러한 가혹한 정부의 착취에 있었다고 평가된다¹⁷⁾.

네덜란드와 영국이 의회중상주의를 실시한 나라이다. 네덜란드는, 영국에서 입헌군주제가 시작된 명예혁명(1688~89)보다 110년

16) 이들 나라에서는 모든 무역이 국가의 허가사항이었으며 스페인에서는 금·은의 해외반출은 死刑으로 처벌되었다.

이나 먼저인 1579년에 일찍이 「우트레흐트 聯盟」(the Union of Utrecht)을 결성하고 의회정치를 확립하였다. 이 의회는 상공인들의 대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정책들은 상공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이 결과 네덜란드는, 해외 식민지의 쟁탈에 적극적이었고 외국선박의 이용을 금지한 점에서는 다른 중상주의 국가들과 동일하였지만, 국가에 의한 몰수나 가혹한 세금도 없었고, 무역이나 국내 상공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허용되었다. 바로 이러한 합리적인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가장 먼저 실시하였던 덕분에 네덜란드는 영국보다도 먼저 가장 빨리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고 17~18세기에 유럽 제일의 富國이자 先進國으로 발전하였다.

명예혁명으로 의회정치가 확립됨으로써 영국도 국왕의 전횡을 금지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상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의회중상주의가 성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보다는 경제의 발달 정도가 뒤졌던 영국의 중상주의는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중간이었다. 가혹한 세금도 없었고 민간 경제에 대한 규제도 느슨하였다¹⁷⁾. 명예혁명 이후 많은 규제들도 사실상 철폐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으로 중요한 규제는 대외무역에 관한 것과 외국선박의 이용을 금하는 「航海條例」(the Navigation Acts)와 同業者組合(guild)의 규제 정도였다. 스미스가 비판한 영국

17) 근대 유럽 경제에서 스페인의 몰락과 영국의 발전의 원인을 두 나라간의 이러한 경제정책과 제도의 차이에서 찾은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노벨償 수상자인 Douglas North이다(North(1990), ch.12)). 이것은 스미스가 일찍이 지적한 사실이다. 스미스는 영국에서는 왕권이 강력하지 못하여 의회와 司法權이 일찍부터 독립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국왕들의 착취가 방지되고 自由와 私有財產權이 확보된 것이 영국이 스페인이나 프랑스에 비하여 더 빨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주 이유임을 지적하였다(LJ, pp. 265~269, pp. 420~422; WN下, p. 40, p. 108).

의 중상주의는 바로 이러한 영국의 의회중상주의였다. 이 때문에 중상주의에 대한 스미스의 비판도 주로 重金主義와 보호무역주의적인 무역규제에 관한 것이었다.

第 2 節 스미스의 道德哲學 體系

스미스는 1751년에 글라스고대학의 論理學 教授로 취임하였으나 1752년에 道德哲學(moral philosophy) 교수로 자리를 옮겨서 1764년에 뷰클류크 공작(Duke of Buccleuch)의 가정교사로 취임하여 同大學을 떠날 때까지 道德哲學을 가르쳤다. 당시 同大學의 道德哲學은 自然神學(natural theology), 倫理學(ethics) 및 政府學(jurisprudence)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마지막 부분인 jurisprudence이다. 이 말은 요즈음 보통 法學이라고 번역되지만 당시는 法學만이 아니라 政治學, 行政學, 經濟學 등 요즈음의 社會科學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 같다¹⁸⁾. 그리고 스미스는 哲學을 요즈음의 科學이란 말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科學이 哲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었고 社會科學이 여러 독립과학으로 분화되지 않았던 당시에 道德哲學은 결국 인간이 社會를 이루어 더불어

18) 영국 중상주의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흔히 언급되는 勞動者條例(the Statute of Artificers; 1563에 제정되었으며 모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농업과 제조업에 취업할 것을 규정하였다)는 국가가 이를 집행할 행정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19) 두 강의록에서의 jurisprudence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조금 다르다. LJ(A)에서는 jurisprudence가 '市民政府(civil government)가 따라야 할 規則들에 관한 理論'으로 정의되었으며(LJ.p. 5), LJ(B)에서는 '모든 국가들의 法律들의 기초가 되어야 할 일반적인 原理를 탐구하는 과학'이라고 정의되었다(LJ.p. 397).

살아가는 社會生活에 관한 學問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학자들은 비단 이처럼 포괄범위가 넓은 道德哲學뿐만 아니라 形而上學, 論理學, 文學, 自然科學까지도 모두 연구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스미스도 예외가 아니었다. 스미스가 생전에 출판한 책은 『道德感情論』(1759년 초판 발행, 1790년 6판 발행)과 『國富論』(1776년 초판 발행, 1791년 6판 발행)의 두권뿐이었으나 그가 言論에 발표하였던 기고문이나 遺稿, 학생들이 정리한 그의 강의노트 등은 文學, 形而上學, 論理學, 修辭學, 物理學, 天文學 등을 포괄하여 실로 방대한 분야에 이르고 있다.

스미스의 經濟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經濟學이 포함되었던 그의 道德哲學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의 道德哲學은 自然神學, 論理學 및 法學(jurisprudence)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그의 倫理學은 『道德感情論』(이하 TMS로 약술)에 정리되어 있다. 그의 法學은 그의 『法學講義錄』(LJ)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책은 그의 강의를 듣고 정리한 학생들의 강의록이 발견되어 출판된 것이며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강의록은 각기 강의연도가 다른 별도의 것이지만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이하에서는 두 강의록을 LJ(A)와 LJ(B)로 표시한다). 이 강의록들을 보면 스미스의 Jurisprudence는 法學과 經濟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스미스의 道德哲學 강좌는 신학, 윤리학, 법학 및 경제학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스미스는 이 중 經濟學 부분만을 발전시켜서 후에 『國富論』을 출판한 것이다.

1958년에 발견된 LJ(A)는 1762년에서 1763년에 걸쳐 행해진 강의의 강의록이며 1895년에 발견된 LJ(B)는 1766년에 행해졌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강의의 강의록이다. LJ는 이 두 강의록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책, 즉 Glasgow대학의 Adam Smith 全集의 네번째 권을 말한다. LJ(A)에는 강의 日字가 명기되어 있으나 LJ(B)에는 강의 날짜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스미스의 경제학은 그의 『道德哲學』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의 道德哲學은 神學, 論理學, 法學 및 經濟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의 神學과 倫理學과 法學的 기초 위에서 그의 經濟學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그의 경제학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그의 道德哲學의 전체계를 살펴보아야 한다²⁰⁾.

1. 自然神學(理神論)

스미스는 자연신학강의에서 神의 존재와 屬性의 증명 그리고 종교가 기초하는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논하였다고 한다²¹⁾. 그의 自然神學에 관한 책도 강의록도 남아 있는 것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그의 구체적인 이론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저술과 강의록들(특히 TMS)을 보면 스미스가 理神論(deism)을 신봉하였으며 - 理神論과 自然神學(natural theology)은 같은 말이었다 - 이것이 그의 도덕철학의 중요한 기초의 하나였음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가. 理神論

理神論이란, 神은 인간사회나 自然의 개개의 현상에 직접 간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나 自然이 따라야 할 法則(곧 섭리)를 만들었고 이 法則에 따라서 人間社會나 自然이 운행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것은 종전의 기독교의 人格神을 대체하는 근대적인 有神論이다. 종전의 기독교는 인간사회나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별적인 현상에 神이 직접적으로 일일이 간여를 한다고 보았다. 즉, 종전의 人格神論(theism)의 하느님은 세상만사와 삼라만상의 모든 일에 일일이 간여하는 人格神이었다. 이러한 人格神論에 타격을 가한 것이

20) 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에 관한 유익한 문헌은 박세일(1989)이다.

21) R.H. Campbell, and A.S. Skinner, WN 해설, p. 94.

近代 自然科學의 발전 특히 뉴턴(Issac Newton(1642~1727))의 萬有引力の 법칙의 발견으로 대표되는 天體物理學(astrophysics)의 발전이었다. 17세기 후반 뉴턴에 의하여 天體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그전까지의 人格神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러한 자연과학의 발전과 조화하기 위하여 새로 등장한 기독교의 有神論이 理神論이었다. 理神論에 의하면 뉴턴이 발견한 自然法則은 神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즉 우주만물의 創造主인 神은 우주만물의 運行法則을 만들고 人間社會와 自然의 삼라만상은 이 法則에 따라서 運行된다. 理神論은 18세기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英國의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었다.

스미스의 신학사상도 이와 같은 理神論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스미스가 우주의 창조주로서의 神의 존재를 믿고 있었다는 것은 TMS에서 쉽게 알 수가 있다. Great Engineer, Divine Architect, 혹은 Superintendent of the Universe 등 창조주로서의 神에 해당하는 표현이 TMS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를 나타낸다.

神은 우주의 森羅萬象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운행법칙, 곧 神의 섭리를 만들었고 세상만물은 이 섭리에 따라서 운행된다고 스미스는 보았다. 잘 알려진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바로 神의 섭리를 가르킨다. 이는 資本主義 經濟의 價格機構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얼핏보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하늘의 별들이 모두 神이 만든 法則에 의하여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는 것처럼, 얼핏보면 무질서한 人間の 社會도 하느님이 만든 法則에 의하여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다. 스미스의 倫理學과 經濟學은 모두 각기 이러한 하느님의 法則을 인간의 본성과 경제에서 찾아냄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신의 섭리와 관련하여 스미스는 한 가지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²²⁾. 신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나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숨

어 있기 때문에 우주와 인간 사회의 모든 사물은 자신도 모르면서 神의 섭리에 인도되어 神이 의도한 목적대로 작동한다고 본 것이다.

우주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그들이 (神에 의하여:필자 삽입)만들어 질 때에 (神이:필자 삽입)의도하였던 목적을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함을 본다. …… 시계의 톱니바퀴들은, 시간을 가리킨다는,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에 적합하도록 감탄할 만큼 잘 만들어져 있다. 그들의 모든 동작은 이 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만일 그들이 그 목적을 실현할 의도나 목적을 갖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면 그들은 더 잘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계가 그러한 의도를 갖도록 시계를 만들지 않고 시계 제작자가 그러한 의도를 갖고 시계를 만들도록 주문한다(TMS, p. 87).

각 개체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거론한 '보이지 않는 손'이 이를 나타낸다. 스미스는 각 개인이 열심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보았다²³⁾. 이것을 스미스는 自然의 欺瞞(deception)이라고 표현하였다(TMS, p. 183). 사람이나 다른 어떤 개체나 모두 각자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실은 神의 섭리에 따라서 자기가 모르는, 창조주인 神의 의도를 실현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22)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스미스의 독창적인 관점이 아니라 스토아哲學의 관점을 계승한 것이다. Raphael, D.D. and Macfie, A.L., *Introduction*, Raphael and Macfie(eds.), TMS, p. 8.

나. 自然調和說

자연과 사회의 삼라만상은 神에 의하여 창조되어 神의 섭리에 의하여 운행되면서 神의 뜻을 실현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과 사회는 인위적인 조작이 더해지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自然調和(natural harmony)에 대한 믿음은 스미스의 기본사상의 하나였다. 自然調和說은 人間社會나 自然이나 모두 인간의 조작 없이도 자연적으로 調和 내지 善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自由主義(liberalism)의 기초가 된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가 주장한 것처럼 정부의 개입이 없는 自然의 人間社會가 弱肉強食의 無秩序한 상태라면 自由主義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政府의 간섭이 철폐되어 自由의 상태가 이루어지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지배되는 調和의 상태가 神의 섭리에 의하여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을 반대하는 自由主義가 성립될 수 있다. 스미스의 '명백하고도 단순한 自然的 自由의 體系(the obvious and simple system of natural liberty)²⁰는 자연조화에 대한 스미스의 믿음의 표현이다.

그러나 스미스의 自然調和에 대한 믿음이 醜하고 惡함이 이 세상에 존재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스미스는 人間의 本性에도 추

23) 보이지 않는 손은 TMS와 WN에 각각 한번씩 나타난다. TMS에서는 부자들이 자신들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모두가 필요한 물자들을 갖게 되는 거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 결과라고 하였다(TMS, pp. 184~185). 현대의 발전경제학에 나오는 국물효과(trickle-down effect)를 연상시키는 이 주장은, 스미스의 經濟觀이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낙관적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WN에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의 복지를 최대로 하게 됨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WN 上, p. 434).

악한 탐욕이 존재하며 따라서 사람들은 탐욕에 빠져 행동함을 여러 곳에서 지적하였다. 특히 스미스는 商工業者들의 무분별한 私益追求를 자주 지적하였다²⁴. 스미스는 이와 같은 惡까지도 포함하여 社會 전체가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스토아 哲學의 사상을 계승한 것이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만물이 지혜롭고 선량한 神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며 추하고 악한 것까지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합하여 調和와 善을 이룬다고 생각하였다. 이 세상에는 비참하거나 악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으나 그것은 실은 잘못된 편협한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다. 편협한 관점을 벗어나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醜하고 惡한 것도 전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고대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현명하고 강대하며 선량한 神의, 만물을 다스리는 섭리에 의하여 세상이 다스려지듯이, 모든 개별사건도 우주의 계획의 한 부분으로, 전체의 일반적인 질서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惡行과 愚行도 선행과 지혜처럼 이 계획에 필요한 것이다(TMS p. 36).

스미스가 인용한 다음과 같은 에픽테투스(Epictetus)의 말은 이런 관점을 극명하게 나타낸다.

에픽테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떤 사물이 우리의 自然에 부합하고 어떤 것은 자연에 거스른다고 어떻게 말할

24) WN(김수행 역), 下권, p. 184.

25) 예컨대 다음을 보라. WN(김수행 역) 上권, p. 130; p. 134; pp. 253~4; p. 396; p. 470.

수 있는가?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고 격리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발의 입장에서만 보면 발은 항상 깨끗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신체 전체의 입장과 연결시켜서 발을 생각한다면 발은 때로는 먼지 위를 걷기도 해야 하고 가시밭길을 밟기도 해야 하며 때로는 나머지 신체를 위하여 잘려나가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발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발이 아니다. 당신은 무엇인가? 사람이다. 만일 당신이 당신을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격리된 존재로 생각한다면 오래 부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당신의 自然에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당신은 전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체를 위하여 때로는 병에 걸리고 때로는 불편한 뱃길 여행을 떠나고, 때로는 궁핍하고 그리고 끝으로 자기의 명보다 일찍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TMS, p. 275).

이 세상에서 비참하거나 악한 일도 다 전체의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이러한 입장은 현대인의 건전한 良識에서 보면 납득하기 힘들다. 이 견해는 多數를 위한 少數의 희생을 合理化하는 데에 악용당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이 세상의 비참한 일들 중에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위의 글에서 全體(a whole)란 말은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미스는 全體란 모든 生命體 특히 人類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스미스는 神은 자비롭기 때문에 인류의 幸福이 증진되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였다.

다른 모든 理性的인 동물들의 행복과 함께 인류의 幸福이 自然의 創造主(the Author of nature)가 그들을 창조할 때에

의도하였던 원래의 목적이었다(TMS, p. 166).

神學에 관련된 스미스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理神論과 스토아 철학이 결합된 自然調和論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은 神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神의 섭리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운행된다. 이 세상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醜하고 惡한 것도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조화를 이루어 人類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스미스에게 있어서 神學은 그의 世界觀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위에서 본 지극히 樂觀的이며 調和論的인 世界觀이 그의 倫理學과 經濟學의 기초사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樂觀的 世界觀은 당시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부상하던 자본가 계급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바이너(Jacob Vin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스미스가 얻은 명성의 주된 이유는, 인류에게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 내면서 자신의 향로를 따라서 운행하는, 통합된 自然的 秩序의 개념을 경제의 세계에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에 있다²⁶⁾.'고 보여진다.

2. 倫理學

스미스 경제학의 주된 특징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 위에서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점은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분석대상을 한정시키는 新古典學派 이후의 현대의 소위 實證經濟學과 뚜렷이 다르다²⁷⁾. 스미스의 사상체계에서는 경제학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학, 법학 및 앞에서

26) Jacob Viner, "Adam Smith and Laissez Faire," J.C.Wood(ed.), *Adam Smith: Critical Assessments*, Vol. 1, p. 144.

본 神學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스미스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미스의 倫理學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하나는 人間本性에 대한 스미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의 경제학은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 스미스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대표적인 예가 市場價格機構의 근거를 自益追求에서 찾는 것이다. 經濟政策을 논함에 있어서도 스미스는 인간본성과의 附合性을 중시하고 있다. 스미스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가 경제분석에서 인간본성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스미스는 그의 윤리학에서 인간본성을 철저히 분석하였다. 그의 倫理學은 비단 윤리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人間本性(human nature)에 관한 전반적이며 심층적인 분석이다. 自愛心, 功名心, 共感, 良心 등 인간본성의 여러 측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에서 인간의 倫理와 法의 근거를 찾고 있다.

둘은 인간사회의 무질서한 사익추구를 규제하는 사회적 장치의 하나인 윤리의 근거를 그의 윤리학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의 자유주의는 無秩序한 私益追求를 용인하는 自由放任主義가

27) 經濟學을 政治經濟學(political economics)이라고 부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古典學派는 분배문제를 비롯하여 價値判斷이 필요한 문제 그리고 정치와 경제간의 상호연관문제까지를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현대 경제학보다 분석의 범위가 넓었다. 그리고 앞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18세기에는 아직 경제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흄(David Hume), 로크(John Locke), 허치슨(Francis Hucheson; 스미스의 글라스고 대학 은사) 등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스미스와 같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의 한 과정의 하나로서 경제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스미스는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 총체적인 분석에서 가장 뛰어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공정한 범위내에서만 각자 자유로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을 인정하는 자유주의, 즉 公正한 秩序下에서의 私益追求만을 인정하는 秩序自由主義였다.²⁸⁾ 스미스는 인간의 사익추구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정하였으나 현실에서는 개인이 특히 商工人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정하였다. 이 때문에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않는다는 公正性を 매우 강조하였다. 뒤의 윤리학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에게 있어서 윤리와 법의 핵심은 공정함이다. 따라서 스미스의 자유주의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가 존재하여야 한다. 스미스는 『國富論』(WN)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명시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스미스의 체계에서 이를 담당하는 것이 競爭과 倫理와 法이라고 생각된다. 경쟁은 反則을 범하는 경기자를 도태시키는 경제적 制裁制度이며,²⁹⁾ 윤리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自律的인 규제장치이며 法은 공정성을 強制的으로 보장하는 규제장치이다. 그의 倫理學은 倫理를 다루고 그의 法學은 法을 다루었다. 이처럼 그의 자유주의체계에 있어서 倫理學과 法學은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다. 스미스의 倫理學은 『국부론』 이외에 스미스가 생전에 출판한

28) 통상 秩序自由主義라고 하면 다음의 章에서 고찰할 오이켄(Walter Eucken)으로 대표되는 2차대전 직후의 西獨의 Freiburg 학파의 Ordo Liberalismus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비단 오이켄만이 아니라, 스미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볼 하이에크, 뷰캐넌 및 프리드만 등 모든 자유주의들이 나름대로의 공정한 질서를 전제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내용으로 보면 모든 자유주의가 질서 자유주의인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는 모두 공정한 확립을 전제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는 공정한 질서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저서인 『道德感情論』(TMS)에 잘 정리되어 있다³⁰⁾.

가. 科學으로서의 倫理學

스미스를 비롯하여 흄, 허치슨, 맨더빌 등 당시 영국의 계몽철학자들이 탐구하였던 윤리학의 기본문제는 專制君主의 강압이 없는, 近代의 자유로운 市民社會에서 윤리의 객관적인 근거를 인간본성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스미스는 과학으로서의 倫理學을 구성하려고 하였다. 즉 완전한 人格을 갖춘 人間에게 바랄 수 있는 바람직한 윤리적 행동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人間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러한 보통의 人間에게서도 神이 부여한 인간본성에 내재하는 속성에서 倫理의 근거가 존재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과제는 옳음(matter of right)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사실(fact)에 관한 것이라는 것도 역시 유념하도록 하자. 우리는 현재,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벌에 관하여 완전한 존재가 인정할 수 있는 원칙이 아니라, 이처럼 나약하고 불완전한 인간과 같은 피조물이

29) 경쟁이 존재하면 수요자나 공급자가 모두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되므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기자는 선택에서 소외되어 자연히 도태되게 됨으로써 사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30) 그가 글라스고 대학에서 도덕철학 교수로 재직할 때이며 그의 나이 36세였던 1759년에 이 책의 초판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대단한 호평을 받아서 스미스는 영국과 대륙에 걸쳐서 큰 명성을 얻게되었다. 스미스는 『국부론』보다 이 책을 더 아꼈다고 전해진다. 스미스는 죽기 직전까지 이 책을 계속 다듬어서 이 책의 마지막 판인 6판은 그가 죽은 이듬해인 1791년에 출판되었다.

실제로 현실에서 인정할 수 있는 원칙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TMS, p. 77).

스미스의 윤리학이 과학으로서의 윤리학을 지향하였다는 것은 그의 윤리학이 이상적인 인간의 완벽한 윤리적 규범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완전한 인간에 적용가능한 실제적인 윤리를 제시함을 의도하였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의 『도덕감정론』(TMS)의 구성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TMS는 모두 7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의 윤리학의 기초인 共感(justice)의 원리에 대하여 논의하는 第1編의 제목은 行動의 妥當性(propriety)이며, 第2編의 제목은 善行(merit)과 惡行(demerit): 포상과 징벌의 대상이다³¹⁾. 타당성이란 종교가 요구하는 것과 같은 理想的인 행동의 성격이 아니다. 행동의 타당함이란 이상적인 완벽한 행동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에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합당한 행동의 성격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나. 感性主義

倫理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인간의 속성으로는 理性과 感性이 있을 수 있는데 스미스는 이성이 도덕의 규칙과 판단의 근거는 될 수

31) 제3편은 우리 자신의 감성과 행실과 책임감에 관한 판단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公平한 觀察者(impartial spectator)를 논하며, 제4편에서는 찬미의 감정에 대한 效用의 효과란 제목으로 흄(David Hume)의 효용이론을 논평하였으며(스미스는 효용이 유일한 가치기준이라고 생각하는 효용론자가 아니었다. 공평무사한 관찰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스미스는 공평무사한 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제5편에서는 관습과 유행의 영향이란 제목으로 도덕감정에 미치는 관습과 제도의 영향을 논하였고, 제6편에서는 德性(virtue)이란 제목으로 慈愛心과 自制力을, 제7편에서는 도덕철학의 체계란 제목으로 기독교와 스토아 학파 등 다른 학파의 도덕철학이론을 소개하고 논평하였다.

있으나 도덕 그 자체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보았다.

理性이 도덕성(morality)의 일반적 법칙의 근거이며 도덕적 판단의 수단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옳고 그름에 관한 첫번째 認知(perception)가 이성으로부터 도출된다고 상정하는 것은, 그 일반적 법칙이 도출되는 특정한 경우에서조차도 타당하지 않다. 다른 일반적 법칙이 도출되는 과정에서와 동일하게, 그 첫번째 인지는 이성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感性(sense)과 느낌(feelings)의 대상이다(TMS, p. 320).

『道德感情論』(*Theory of Moral Sentiments*)이란 그의 저서명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스미스는 윤리의 근거를 인간본성 중에서 理性이 아니라 感性에서 찾았다³²⁾.

그러나 스미스는 感性이 건강과 기분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을 감성에만 의존하면 안되며, 理性에 의하여 도출된 公準(maxims)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理性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일반적인 公準과 생각들을 도출한다. 우리의 도덕적 판단은 '건강과 기분에 따라서 변덕

32) 윤리의 근거를 감성에서 찾는 것은 샤프츠베리(Schafesbury)의 영향을 받았던 당시 스코틀랜드학파의 특징이었다. 스미스의 글라스고 대학시절의 은사였던 허치슨(F. Hutcheson)을 비롯하여 흄(D. Hume), 맨더빌(B. Mandeville)도 이에 속하였다. 당시 영국에서 이와 대조되는 견해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플라톤학파였다. 이들은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理性主義의 영향을 받아 理性을 윤리의 근거로 보았다. 그러나 허치슨은 인간의 본성을 利他的인 것으로 보고 慈愛心(benevolence)을 도덕의 근거로 보았으나 스미스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고 共感을 도덕의 근거로 본 점에서 다르다. , Raphael and Macfie(TMS의 해설), pp. 10~15.

이 심한 즉각적인 기분이나 느낌에 의존하면 극히 불확실하고 불안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반적인 공준과 생각으로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통제하여야 한다(TMS, p. 319).

다. 共感의 原理

神이 만든 인간본성 안에는 무엇이 도덕적인지를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道德感情(moral sense 혹은 moral sentiments)이 존재한다고 스미스는 보았다. 이 道德感情을 스미스는 同感(fellow-feeling)³³⁾이라고 보았다. 스미스는 TMS의 맨 첫머리에서 모든 사람은 타인의 슬픔과 기쁨을 자기 것처럼 느끼는 同感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임을 지적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나 불행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행복을 단지 그들의 행복을 보는 것 말고는 얻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 어떤 원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거나 매우 생생하게 느끼게 될 때에 우리가 느끼는 연민이나 동정은 이러한 종류의 것이다.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의 슬픔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구태여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인간본성의 다른 본래적인 감정과 같이 이 감정은 德이 많거나 인정이 많은 사람들만, 이들이 아마도 이 감정을 더 강렬하게 느끼겠지만, 이 감정을 갖는 게 아니다. 사회의 제일 가는 악당도 최악의 범법자도 역시 이 감정을 갖고 있다(TMS

33) 共感과 同感은 구별하기 힘든 말이지만 이 글에서는 fellow-feelings를 同感으로, sympathy를 共感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p. 9).

이처럼 사람들이 타인의 처지를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은 상상을 통하여 자신을 당사자인 타인의 입장에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상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다른 사람의;역자 삽입) 상황에 우리를 갖다 놓으며 우리는 똑같은 모든 고통을 느끼며, …… 그리고 어느 정도 그와 동일한 사람이 되며 그의 느낌에 대한 생각을 하며, 정도가 약하긴 하지만, 그의 느낌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닌 어떤 것을 느낀다(TMS, p. 9).

이것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동료감의 원천이라는 것, 이것은 상상(fancy)을 통하여 처지를 바꿈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 그들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거나 감정이입이 된다는 것들은 수많은 분명한 예에서 관찰될 수 있다(TMS. p. 10).

동양의 易地思之처럼, 상상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스미스는 共感(sympathy)³⁴⁾이라고 부르고 이를 도덕감의 근거로 보았다.³⁵⁾

憐憫(pity)과 同情(compassion)은 타인의 슬픔에 대한 우

34) 스미스는 존경하는 선배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흄(D. Hume)으로부터 윤리학, 법학, 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共感(sympathy)이란 개념도 스미스가 흄으로부터 배워서 발전시킨 것 중의 하나이다. 흄에서는 공감의 대상이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에 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스미스의

리의 동료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적합하다. 그러나 共感(sympathy)은, 아마도 원래 동일한 의미였지만, 타인의 어떤 감정에 대한 우리의 同感(fellow-feeling)을 부적절함 없이 나타내는 말일 것이다(TMS, p. 10).

사람들이 타인의 처지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윤리의 근거가 된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타인의 행동이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감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의 타당함을 承認하거나 否認할 때의 기준이다.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존재해야 하며 이것이 사회적 유대의 기초가 된다. 스미스는 공감의 원리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함을 지적하였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빠졌을 때에 당사자와 제3자간에는 공감을 통하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당사자는 자신을 관찰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 서서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게 된다. 왜냐하면 공감을 통하여 느끼는 제3자의 느낌의 強度는 자신 보다는 덜하다는 것을 알므로 당사자는 자신보다 약한 강도로 느끼는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느낌의 강도를 자제하여 완화시키는 반면에 제3자인 관찰자는 당사자의 입장에 서

스의 공감의 대상은 타인의 모든 감정이다. 또한 스미스의 윤리학에서는 공감이 도덕감의 근거이자 모든 윤리의 기본의 역할을 함으로써 흄에서보다도 훨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Davi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 by L.A. Selby-Bigge,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584~591.

- 35) 스미스의 sympathy는 同情과 共感을 모두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共感이나 同感에 더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된다. 팩(S.J. Pack)은 스미스의 sympathy를 공감 내지 동감을 나타내는 현대 영어의 empathy에 더 가깝다고 보았다. S.J. Pack(1991), p. 76.

서 가능한 한 절실하게 느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감정(당사자와 관찰자의 감정)이 사회의 조화를 위하여 충분할 만큼 상호교감(correspondence)을 이룬다는 것은 어쨌든 분명한 것 같다. 두 감정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상통하며 이것이 필요하거나 요청되는 것의 모두이다 (TMS, p. 22).

라. 公平한 觀察者

스미스는 공감의 원리를 타인의 경우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판단할 때의 기준으로 삼았다. 자신을 판단할 때에도 자신의 입장을 떠나서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에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을 객관화시켰을 때에 자신을 판단하는 自身 속의 他人을 스미스는 '公平한 觀察者'(impartial spectator)라고 불렀다³⁶⁾.

타인인 당사자의 처지를 우리의 입장으로 놓고 타인의 감정과 동기에 공감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인정하든지 불인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 우리를 놓고 타인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

36) 관찰자란 말 역시 흄이 사용하였었으며 공평한 관찰자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내용은 이와 비슷하게 공평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물을 판단하여야 함을 흄은 주장하였다(David Hume(1739~40), pp. 574~584). 그러나 공감의 원리와 공평한 관찰자란 개념을 이용하여 하나의 완결된 독자적인 윤리학의 체계를 세운 것은 스미스의 공로이다. "스미스가 해석한 바와 같이, 공감과 공평한 관찰자는 진정으로 독자적인(original) 그의(스미스의: 역자 삽입) 이론이다"(D.D. Raphael and A.L. Macfie의 해설, TMS, p. 7).

의 감정과 행동에 공감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TMS, pp. 109~110).

공평한 관찰자는 흔히 말하는 良心(conscience)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스미스는 인간이 이기적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누구나 갖고 있는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자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自愛心의 강력한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이 인간의 가슴에 밝혀준 人間愛(humanity)의 나약한 힘도, 慈悲心の 연약한 불꽃도 아니다. 그것은 그러한 경우에 발휘되는 보다 강한 힘, 보다 강력한 동기이다. 그것은 理性이요, 원리요, 양심이요, 가슴 속의 거주자(the inhabitant of the breast)이며, 우리 행위의 위대한 재판관이자 조정자이다. ……… 오직 공평한 관찰자의 눈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와 관련된 것들의 왜소함을 배울 수 있으며 自愛로부터 비롯되는 자연적인 잘못을 교정할 수 있다(TMS, p. 137).

공감의 원리가 스미스 倫理學의 출발이라면 공평한 관찰자란 개념은 스미스 倫理學의 완결이라고 볼 수 있다. 윤리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발적인 규제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평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스미스의 공평한 관찰자란 자신을 객관화한 입장, 즉 자신의 입장을 떠나서 공정한 입장에서 사물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평한 관찰자의 핵심은 不偏不黨性(impartiality)이며 이는 公正性(fairness)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³⁷⁾. 스미스에게 있어서 이것은 도덕

적 판단의 기준이다. 결국 스미스 윤리학의 핵심은 주관적인 입장을 떠나서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곧 思考의 公正性이 스미스 倫理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성을 중시하는 스미스 倫理學의 특징은 뒤에 正義를 논의할 때에도 발견된다.

자의적이며 편파적인 관찰자는 가까이 있고 공평한 관찰자는 멀리 있는 경우보다 우리의 도덕감정의 타당성이 훼손되기 쉬운 경우는 없다(TMS, p. 154).

마. 自愛心

스미스는 인간의 심리가 복잡한 여러 가지의 측면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스미스는 인간이 共感으로 대표되는 도덕감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임을 인정하였다.

의심할 나위없이 모든 인간은 원래, 첫째로 그리고 대체적으로, 자신을 돌보도록 되어 있다;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에 더 적합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적합하며 올바르다(TMS, p. 82).

사람들은 원래 타인에 대하여 공감적이긴 하지만, 자신에 대하여 느낄 때에 비하면 자신과 특별히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느끼지 못한다; 자신의 작은 편익과 비교

37) 이는 正義를 公正性으로 파악한 롤즈(John Rolls)와 상통한다. 롤즈는 原初的 立場(originalposition)에서 판단할 때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正義라고 하였다. 롤즈의 원초적 입장이란 자신의 재산정도, 재능, 직업, 가족관계, 학력 등 자신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신의 모든 조건을 망각하는 상태인, 無知의 帳幕(veil of ignorance)으로 특징지어지는 상태이다. John Rolls(1971), 3장.

하면 단지 동료 생명체에 불과한 사람의 불행은 실로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TMS, p. 86).

自愛心을 윤리적으로 나쁜 것으로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스미스도 포함되는 18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이, 이기심을 죄악시하는 종전의 기독교 윤리와는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³⁸⁾.

利己心과 慈愛心은 서로 혼동되기 쉬운 말이다. TMS에도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하는 구절은 없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 둘을 구분한 것 같다. 自愛心(self-love)은 자신을 위의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을 돌보는 마음을 의미하는 말로, 그리고 利己心(selfishness)은 다른 사람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貪慾(rapacity)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³⁹⁾. 스미스는 비도덕적인 의미를 함축할 때만 利己心 혹은 利己的(selfish)이란 말을 사용하고 유익한 측면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모두 自愛心(self-love 혹은 self-interest)이란 말을 사용하였다⁴⁰⁾.

스미스는 自愛心이 긍정적인 인간의 본성임을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스미스는 우선 자신과 종족의 보전을 추구함은 자연이 부여한 모든 생명체의 당연한 의무임을 지적하였다.

38) 이 점에서 이들은 19세기 말 독일의 베버(Max Weber)로 대표되는 改新敎倫理學의 선구이다.

39) 이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알 수 있다. “부자는 많은 것 중에서 가장 값지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른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별로 더 소비하지 못하며, 그들의 자연적인 利己心과 貪慾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편익만 생각하며, 수 천명의 사람을 고용하는 유일한 목적이 그들의 헛되고 채워질 줄 모르는 욕망의 충족에 있지만, 그들의 덕분에 생산된 산출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갖는다(TMS, p. 184).

40) 스미스는 self-love와 self-interest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 그리고 식물이나 동물의 기관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개체의 유지와 종족의 번성이라는 자연의 위대한 두 목적에 적합하도록 잘 만들어졌는가를 감탄한다(TMS, p. 87).

自愛心이란 자신의 보존을 위하여 당연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긍정의 대상이다. 나아가서 스미스는 自愛心의 한 유형인, 다른 사람의 인정 내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개인의 덕과 사회 이익의 원천임을 지적하였다.

가장 자비로우며 公的인 동기로 행해진 행동이 어떤 의미에서 自愛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는 물음을 당장 검토하지는 않겠다. 자애란 종종 행동에 후덕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결정은 德의 實體를 형성함에 있어서 아무런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명예스럽고 고귀한 행위를 하고자 원하는 것, 우리 자신을 존경과 인정의 대상으로 하고자 원하는 것을 허망하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나는 보이고자 할 뿐이다(TMS, p. 309).

스미스의 도덕철학 체계에서 慈愛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운영을 만들어 낸다는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는 『國富論』에 잘 나타나 있다. TMS에서도 이 점이 지적되고 있다.

스미스에 의하면, 인간의 깊은 본성 중의 하나는 他人의 존경과 인정을 원하나 他人의 경멸은 매우 싫어 한다는 것이다. 他人의 인정과 관심은 허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것을 좇으며 반면에 他人의 경멸과 무시를 그 무엇보다도 싫어함이 어리석은 인간의 본성임을 지적하였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안락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허망함이다. 그러나 허망함은 항상 우리가 주의와 인정의 대상이라는 믿음에서 발견된다(TMS, p. 50).

세상사람들의 경멸에 비하면 다른 어떤 외부의 악도 견딜 만하다(TMS, p. 61).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의 기준은 어리석게도 智慧나 德이 아니라 富나 權勢이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관심이 지혜나 덕의 사람이 아니라 富나 權勢의 사람으로 향함을 본다. 우리는 권세있는 사람의 惡德이나 愚行이 죄없는 사람의 가난이나 연약함보다도 덜 비난받는 것을 자주 본다(TMS, p. 62).

따라서 사람들은 他人의 認定과 관심을 얻기 위하여 富와 權勢를 추구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富를 과시하며 우리의 가난을 숨기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의 슬픔보다 우리의 기쁨에 더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통이 대중 앞에 공개되며 우리의 상황이 대중의 眼前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우리의 고통의 절반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 실로, 우리가 富를 좇고 가난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러한 감정으로부터 연유한다(TMS, p. 50).

부자는 그의 富가 당연히 세상이 그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며, 그의 유리한 지위가 이미 그에게 부여한 모든 기분좋은 감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를 대한다는 것을 느낀다. ……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그의 빈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TMS, pp. 50~51).

타인의 인정이라는 허망한 것을 얻기 위해 富와 權勢를 좇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스미스의 비세속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측면이다. 그는 또한 허망한 것을 좇는 인간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도덕심을 훼손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하지 않았다.

부유하고 권세있는 사람을 찬양하거나 거의 숭배하면서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지위의 구분과 사회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도덕감정을 훼손시키는 가장 크며 가장 보편적인 요소이기도 하다(TMS, p. 61).

그러나 스미스는 이처럼 어리석은 측면을 갖고 있는 인간의 自愛心이 개인과 사회에 유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즉 명성을 얻기 위하여 富와 權勢를 좇아다니는 허망한 노력의 결과로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 이는 앞서 그의 자연신학에서 고찰한 자연조화에 대한 그의 믿음과 이와 연관된 自然의 欺瞞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다.

우리의 사적인 행복과 이익에 관한 관심도 역시 많은 경우 매우 권장할 만한 행동원칙이다. 근검·근면·분별·신중, 그리고 思慮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익 동기로부터 함양되며, 동시에 모든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칭찬받을 만한 자질이다(TMS, p. 304).

바. 아담 스미스 問題

스미스의 倫理學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TMS는 利他的인 共感의 원리에 기초하여 있고 WN은 利己心에 기초하여 있기 때문에 그의 倫理學과 經濟學은 서로 모순되는 인간관에 기초하여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8세기의 독일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를 「아담 스미스 問題」(Das Adam Smith Problem)라고 부른다. 독일 학자들은 그 이유를 스미스가 TMS의 초판을 1759년에 출판한 뒤에 프랑스에 가서 唯物論者들을 만나서 그들의 영향을 받은 뒤에 WN을 집필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⁴¹⁾.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바이너(J. Viner)는 TMS는 자연조화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WN에는 자연조화에 대한 믿음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 자연질서와 관련하여 두 책간에는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지적한 뒤 그 이유는, 스미스가 TMS를 출판한 후에 프랑스와 런던을 여행하면서 현실의 인간의 탐욕과 그로 인한 비참함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⁴²⁾.

TMS를 출판한 뒤에 스미스의 생각이 바뀐 다음 WN을 출판하였다는 이러한 해석은 스미스를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WN의 초판이 출판되고(1776) 한참 후인 1790년에 출판된 TMS의 마지막 판인 6판이 TMS의 초판과 부분적인 차이만 있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도 이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만일 스미스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여행이 끝난 뒤에 발행된 TMS 6판은 WN과는 같고 TMS의 초판과는 다른 인간관을 나타내어야 될 것

41) D.D. Raphael and A.L.Macfie, *introduction*, TMS, pp. 20~24.

42) J. Viner(1927).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는 TMS에 나타난 스미스의 인간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은 복합적인 것이어서 공감의 능력도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自愛心도 갖고 있다. 이 중에서 공감의 능력은 도덕감정의 기초가 되며 자애심은 경제활동의 기초가 된다. 이 두 본성은 인간에 함께 내재하며 그 기능이 각기 다르다. 그리고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共感은 利他心과 다르고 自愛心은 利己心과 다르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사. 正義

사람은 누구나 가슴 속에 공평한 관찰자라는 양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양심의 힘은 인간의 利己心을 충분히 자제할 만큼 항상 강한 것이 아니다.

우리와 타인간의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완전한 공평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내부의 재판관(공평한 관찰자:역자 삽입)조차 우리의 이기적인 감정의 폭력과 不義에 의해 부패될 위험에 자주 처하며,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상황과 매우 다른 보고를 하도록 종종 유혹당한다(TMS, p. 141, 각주).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때에는 불공정한 입장에 서서 자신을 속인다.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自己欺瞞은 인간생활의 무질서의 절반의 근원이다(TMS, p. 158).

이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正義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지켜야 할 최소한의 德이다(TMS, p. 82).

바꾸어 말하면 正義는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이다. 正義는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 기둥이다(TMS, p. 86).

德(virtue)에는 慈善(beneficence)과 正義(justice)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자선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지키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TMS, 78). 이에 반하여 正義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처벌이 부과되는 최소한의 덕이다(TMS, p. 79, p. 269).

정의는 바꾸어 말하면 公正함이기도 하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富와 權勢를 추구한다. 富와 權勢를 향한 경주는 '公正한 競技'(fair play)가 되어야 함을 스미스는 강조한다. 공정한 경기란 경쟁자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재산과 명예와 애정을 향한 경주에서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하여 달리며, 경쟁자들을 앞지르기 위하여 그의 신경과 근육을 최대로 팽창시킨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의 경쟁자들의 다리를 걸거나 혹은 넘어뜨린다면 관중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공정한 경기의 위반이며 관중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TMS, p. 83).

正義의 내용이 이처럼 公正성에 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한 관찰자의 핵심도 不偏不黨함, 곧 公正성에 있으므로 스미스에 있어서 不偏不黨함 내지 公正성이 도덕적 판단의 기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스미스에 있어서 正義의 집행은 개인에게 맡기면 유혈과 무질서

가 발생하므로 共同體(commonwealth)의 힘을 채용하여 正義를 집행하는 공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法과 政府이다(TMS, p. 340). 즉 사회가 합의한 正義가 法이다. 正義(justice)와 法(law)은 서양에서 혼용되어 왔고⁴³⁾ 스미스도 이 둘을 혼용하여 썼다⁴⁴⁾.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政府이다. 스미스는 法과 正義와 公正함을 그 내용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에서 정의와 법은 사회의 구성원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하여 스미스의 윤리학은 法學으로 연결된다. 스미스는 TMS의 맨 끝 부분에 “나는 다른 책에서 법과 정부의 일반원칙을 설명하겠다”(TMS, p. 342)는 의도를 밝혔다. 그러나 이 책을 출판하겠다는 그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3. 法學

스미스의 도덕철학강의의 마지막인 세번째 강의는 法學(jurisprudence)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스미스는 jurisprudence를 ‘市民政府가 준수해야 할 규칙들에 관한 이론’(LJ, p. 5) 혹은 ‘모든 국가의 법률들의 기초가 되어야 할 일반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과학’(LJ, p. 397)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스미스의 法學은 통상적인 협의의 법학이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을 포함하는 광의의 법학이다. 스미스의 法學은 법의 사회과학인 셈이며 이때의 분석 대상인 法은 국가

43)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에 따르면 정의에는 交換的 正義(혹은 校互的 正義; commutative justice)와 分配的 正義(distributive justice)로 나누인다. 엄격하게 말하면 법은 이 중에서 交換的 正義이다. 스미스의 설명에 의하면 交換的 正義는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빼지 않는 것이고 分配的 正義는 나의 것을 옳게 사용하는 것이다(TMS, pp. 269~270).

44) 一例로 스미스의 법학 강의 노트의 제목이 正義이다.

의 모든 규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스미스의 法學講義錄(LJ)은, 正義(justice), 內治(police)⁴⁵⁾, 財政收入(revenue)과 國防(arms)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정의는 강의록의 제1부에, 나머지 셋은 제2부에 포함되어 있다. 협의의 법학은 正義라는 제목이 붙은 제1부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제2부 내용의 대부분은 경제학이다. 제2부에는 分業論, 自然價格理論, 勞動價值說 등 그 후에 출판된 『國富論』의 핵심적 내용이 다수 담겨져 있다⁴⁶⁾. 법학에 관한 그의 이론은 그의 사후에 발견된 그의 두 法學講義錄인 LJ(A)와 LJ(B)에서 알 수 있다⁴⁷⁾. 두 강의록 모두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LJ(A)의 설명이 더 자세하여 분량이 LJ(B)의 두 배 가량되며 순서가 부분적으로 서로 다르지만 두 강의록의 내용은 같다. 이하에서는 강의록의 제1부에 수록되어 있는 협의의 법학을 고찰한다.

45) police란 요즘 경찰을 의미하지만, 스미스 당시에는 內治란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당시 영국에는 요즘의 경찰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스미스에 의하면 이 말은 “원래 시민정부(civil government)의 정책을 의미하였으나 현재(스미스 입장에서의 현재; 역주)는 정부의 대내적 규제, 즉 위생(cleanness), 치안(security) 그리고 저렴함 혹은 풍요함(cheapness or plenty)만을 의미한다”(LJ, p. 486). 저렴함과 풍요함은 경제를 말한다.

46) 1958년에 발견된 LJ(A)는 1762년에서 1763년에 걸쳐 행하여진 강의의 강의록이다. 1895년에 발견된 LJ(B)의 강의연도는 1776년으로 추정된다. LJ는 두 강의록이 같이 수록되어 있는 책(Adam Smith, *Lectures on Jurisprudence*, R.L.Meek and D.D. Raphael (eds.), The Glasgow Edition, Oxford University, 1978)을 표시한다.

법과 정부의 일반원칙에 관한 책을 쓰겠다고 TMS의 끝에 밝혔던 그의 계획 중에서 『國富論』을 출판함으로써 경제학에 관한 그의 계획은 실행되었다. 그러나 법학에 관한 부분의 계획은 결국 달성되지 못하였다. 그가 생전에 써 놓았던 상당한 분량에 달하였던 원고는 그가 죽기 직전에 그의 부탁을 받은 그의 친구들에 의하여 모두 소각되었다.

시민정부의 주 목적은 사회구성원간에 정의를 유지하여 개인이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각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는 것이다. 개인이 침해를 받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政府로부터, 둘은 가족으로부터, 셋은 타인으로부터이다(LJ, p. 7). 따라서 스미스는 법을 公法(public jurisprudence), 家族法(domestic law) 및 私法(private law)의 세 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公法에서는 단순히 법만 아니라 국가의 기원, 국가의 역할, 자유, 의회, 司法, 시민권 등 국가 및 국가와 개인간의 여러 문제들이 광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家族法에서는 夫婦, 부모와 자녀, 주인과 하인, 보호자와 피보호자, 침해와 처벌 등 사적 가정 내에서의 개인간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私法에서는 점유, 상속, 채권과 채무, 계약, 담보 등 요즘의 민사문제와 범죄와 처벌의 문제 즉 형사문제를 논의하였다.

가. 歷史的 考察

그의 법학 강의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법을 비롯한 모든 사회제도는 끊임없이 생성과 변천을 거듭하여 왔으며 이러한 생성과 변천의 주된 원인은 사회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경제는 역사적으로 계속 발전하여 왔고 이러한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정치와 법, 윤리, 예술 등 다른 사회 제도와 문화가 모두 변하여 왔다는 것이 그의 법학 강의록의 중심 주제이다. 이러한 관점은 비단 법학강의록에만이 아니라 『國富論』에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그의 법학강의록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법학강의록은 가족제도, 재산권제도, 의회제도, 사법제도, 사람

47) LJ에는 韓國에 대한 언급이 단 한번 나온다. 한국은 모로코와 터키와 함께, 영토에 무단으로 입국한 이방인은 체포하여 노예로 삼는 야만국이라고 언급되어 있다(LJ, p. 306).

들의 의식 등 온갖 사회제도와 문물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TMS의 말미에 밝힌 다음과 같은 그의 말은 이러한 그의 의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는 다른 책에서 법과 정부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그리고 법만이 아니라 內治(police), 재정수입, 국방, 그 밖에 법의 대상인 모든 것들이 상이한 시대와 기간의 경과를 통하여 겪어 온 상이한 변화의 일반적인 법칙을 규명하고자 한다(TMS, p. 342).

법학 강의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그의 기본관점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경제, 정치, 법,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부문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변화한다.

둘째, 인간생활에서는 생존의 해결 즉, 衣食住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사회 변화의 기본 요인이며 다른 사회제도와 문물의 변화는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셋째, 인간사회는 수렵, 목축, 농업 및 상업의 네 단계로 발전하여 왔다(LJ, p. 459). 모든 사회 제도는 이러한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변천한다.

첫번째와 두번째의 관점은 마르크스의 唯物史觀 혹은 史的唯物論과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세번째 관점은 마르크스와 독일 歷史學派의 歷史發展段階說의 선구라고 볼 수 있다⁴⁸⁾. 이는 또한 영국의 중요한 역사학의 한 학파였던 스코틀랜드 歷史學派(the Scottish historical school)의 주요 주장이기도 하다⁴⁹⁾.

사회의 발전을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두번째의 특징은 마르크스의 唯物史觀과 동일하다. 그러나 스미스는 神의 존재와 神의 섭

리에 의한 자연과 사회의 운행을 믿었던有神論者였으며,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자연조화를 신뢰하여 자본주의를 옹호하였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와 기본적으로 대조되는 입장에 서고 있다. 그러나 경제를 사회발전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하며 계급갈등을 분명히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놀랄 만큼 마르크스와 동일한 관점들이 법학강의록에서 首尾一貫되게 나타난다. 私有財産制度가 법과 국가의 발생의 기원이며 법과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무산계급을 억압한다는 다음과 같은 스미스의 말은 이러한 관점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사냥꾼들 사이에는 정규적인 정부가 없었다; 그

-
- 48) 스미스의 自由貿易主義를 비판한 19세기 독일 역사학파의 대표였던 리스트(Friedrich List)가 스미스의 경제발전단계설과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경제발전단계설을 이용하여 스미스의 自由貿易主義를 공격하였던 것은 역설적이다. 리스트는 原始段階, 牧畜段階, 農業段階, 農工業段階, 및 農工商業段階의 5단계설을 주장하였다. 이는 스미스의 商業社會를 농공업단계와 농공상업단계의 둘로 나눈 점에서만 스미스의 단계설과 다르다.
- 49) 미크(R.L. Meek)에 의하면 이 학파의 기본 관점은 ①모든 사회적 현상에는 因果關係가 존재하며, ②사회는 자의적은 아니나 목적 없이 발전하며, ③사회발전에서는 生存(subsistence)문제(즉 衣食住문제)가 가장 중요하며, ④財産權과 政府問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며, ⑤社會的 剩餘의 처리문제가 중시되어야 하며 ⑥사회는 狩獵, 牧畜, 農業 및 商業의 네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①은 별로 특징이랄 수 없는 주장이고 ②는 스미스의 자연조화설과 상치되지만 나머지 넷은 모두 스미스가 이미 제시하였던 것들이다. 미크에 의하면 이 학파의 지도자였던 밀라(John Millar)와 로버트슨(William Robertson)이 1750년대 초에 스미스의 강의를 듣고 이 이론들을 배웠으며 이 학파는 사실상 스미스로부터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 이전에 몽테스키외나 로크 등이 역사발전의 단계적 접근을 주장하였으나 경제의 발전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1750년 경에 스미스와 프랑스의 重農主義者였던 튀르고(A.R.J. Turgot)에 의하여 각기 독립적으로 처음 제시되었다고 한다. R.L.Meek(1971).

들은 자연의 법에 따라서 살았다.

목축들의 私有化로 인한 財産의 不均等 분배의 발생이 정규적 정부를 탄생시켰다. 사유재산이 발생하기 전에는 정부가 없었고 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貧者들로부터 부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LJ, p. 404).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수는 큰 富를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회에서는 정부의 武力이 항상 발휘되어야 하며 항구적인 법과 규칙이 부자들의 재산을 빈자들로부터 보호하고, 재산침해를 규정하고 그 처벌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빈자들은 끊임없이 이를 침범하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와 그리고 진실로 모든 경우에서 법과 정부는 부자들이 빈자들을 억압하고 재화의 불균등한 분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LJ, p. 208).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과 정부는 빈자를 억압하여 불공평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제도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러한 법과 정부가 결국은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임을 긍정한다.

법과 정부 역시 바로 이것(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르킴; 억주)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들은 개인들의 증식된 재산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재산의 果實을 평화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법과 정부에 의하여 모든 예술들이 꽃을 피우며 재산의 불평등이 충분히 유지된다(LJ, p. 489).

스미스의 장점 중의 하나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教條

主義的 思考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현상은 복합적이며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 모든 현상을 다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스미스의 특징이다. 스미스는 경제가 사회의 변천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였으나 동시에 그는 경제만이 항상 모든 변화의 원인이 아니며 경제가 다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하였다.

비경제적인 요인이 思考와 文化를 변화시킨 재미있는 예로 결혼과 애정문제의 중요성의 변천에 관한 스미스의 설명을 들 수 있다. 스미스에 의하면 離婚과 再婚이 자유로웠던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남녀간의 애정이 일상생활이나 문학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離婚과 再婚이 어렵게 된 다음부터 이 문제가 인생에서 심각한 문제로 바뀌게 되었고 문학에서도 중요하고 인기있는 주제가 되었다고 한다(LJ, pp. 149~150).

스미스가 경제를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설명한 예의 하나는 영국 경제발전에 관한 설명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특성 때문에 영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대규모의 상비군을 보유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 덕분에 왕의 힘이 강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영국에서는 의회와 사법부의 독립이 일찍 확보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自由와 사유재산권이 확립된 것이 영국에서 경제가 발전의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LJ, pp. 420~423).

비경제적 요인이 경제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예로 스미스는 상업사회의 초기에는 사람들이 상업을 천시하였고 이것이 상업의 발전을 방해하였다는 지적을 들 수 있다(LJ, p. 527).

나. 實定法과 自然法

스미스에 의하면 完全한 權利를 보장하는 것이 법이다. 그는 허치슨(Francis Hutcheson)과 푸펜돌프(Samuel von Pufendorf)의 주장에 따라서 권리를 완전한 권리(perfect rights)와 불완전한 권리

(imperfect rights)로 나누었다. 완전한 권리란 남에 강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불완전한 권리는 慈善과 같이 남에게 강요할 수 없는 권리이다. 그리고 前者는 交換的 正義(commutative justice)와, 後者는 分配的 正義(distributive justice)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즉 개인의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交換的 正義이고 불완전한 권리를 실천하는 것이 分配的 正義이다. 법의 대상은 交換的 正義이고 도덕의 대상이 分配的 正義이다(LJ, p. 9). 스미스에 의하면 交換的 正義는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하며 分配的 正義는 나의 것을 옳게 사용하는 것이다⁵⁰⁾.

이와 같이 법은 정의이다. 그의 윤리학에서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스미스에 의하면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준수가 강요되는 최소한의 윤리인 정의가 법이다. 그리고 윤리와 정의는 공평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공평한 관찰자란 특정한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의 생명은 공정함이다. 법은 공정한 입장에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스미스가 지지하는 법은 모든 법이 아니고 공정한 관찰자가 인정할 수 있는 법, 즉 정의의 원칙에 합당한 법만이 올바른 법이다.

이러한 법은 곧 自然法(law of nature 혹은 natural law)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법이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와 부합하는 법 곧 神이 만든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의 스미스의 신학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스미스는 자연조화를 신봉하였다. 그에 의하면 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에도 神의 섭리에 따르면 질서와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스미스가 생각한 법은 바로 이러한 神의 섭리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곧 자연법과 합치한다고 말

50) TMS, pp. 269~70.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미스가 주장한 법이 실정법이 아니라 자연법이었다는 것은 다음의 실정법에 대한 그의 비난에서 분명히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법률은 정의에 관한 모든 일반원칙과는 반대로, 먼저 유혹을 만들어 내고 그 다음 그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며, 당연히 처벌을 경감해야 하는 상황, 즉 죄를 짓게 하는 유혹에 비례하여 오히려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WN 下, p. 319).

스미스는 LJ에서 각국 법의 변천을 네 단계의 사회 발전과 연관시켜서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은 실정법의 발전과정 분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정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하여 자연법이 실현되어 왔음을 보이려고 하였던 데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LJ의 마지막 구절이 “이리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自然法들(laws of nature)과 實定法들(laws of nations), 둘의 고찰을 모두 완료하였다”로 끝난 데에서 미루어 알 수 있다. 스미스는 惡法은 반대하였고 自然法만을 법으로 인정하였다⁵¹.

다. 法과 經濟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최소한의 정의가 法이며 法을 집행하는 것이 공권력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법과 공권력만으로는 범죄의 예방과 사회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생계의 어려움이 범죄의 원인이므로 법과 공

51) 스미스가 惡法の 준수를 부정한 것은 독재자에 대한 저항권을 지지한 것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는 독재자를 암살하거나 추방함을 옳다고 하였다(LJ, p. 428, p. 434).

권력만으로는 범죄를 막을 수 없고 경제가 발전하여 국민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만 범죄가 없어지고 正義가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수가 많고 법규의 수가 제일 많은 도시라고 해서 반드시 치안이 제일 잘 유지되지 않음을 우리는 본다. 파리에서는 여러 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만큼 법규의 수가 많다. 런던에는 단지 두세 개의 간단한 법규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파리에서는 살인이 없이 지나가는 밤이 일년에 거의 없는 반면에, 더 큰 도시인 런던에서는 살인이 발생하는 밤이 일년에 서너일에 불과하다. 이것을 보고 경찰이 많을수록 치안이 나빠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아니다.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의 말년과 같은 中世에는 소작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수많은 종북들이 할일없이 귀족들의 집 부근에 머물렀다. 이 종북들은 강도나 약탈밖에는 생계를 꾸려갈 방법이 없었고 이것이 제일 큰 무질서를 초래하였다. 프랑스에는 아직도 중세관습이 남아 있고 이것이 차이(파리와 런던간의, 여주)의 원인이다. 파리의 귀족들은 런던의 귀족보다 훨씬 더 많은 하인을 두고 있다. 이들은 그들 자신의 이유나 그들 주인의 변덕으로 인하여 몹시 곤궁한 상태에 빠지면 가장 끔찍한 범죄의 범행을 강요받게 된다. 한 명 이상의 하인을 두는 사람이 거의 없는 글라스고에서는 에딘버러보다 살인사건이 적다. 글라스고에서는 그러한 범죄가 수년 동안 발생하지 않는 반면 에딘버러에서는 그런 범죄가 없이 지나가는 해가 없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보면, 범죄의 예방은 경찰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수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다. 의존보다 사람을 더 부패시키는 것은 없는 반면에 독립은 사람의 정직성을 증대시킨다. 사

람에게 독립을 부여하는 商業과 製造業의 정착이야말로 범죄예방을 위한 최선의 경찰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통 사람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전국에 정직의 기풍이 확립된다. 정직하고 근면한 방법으로 생계를 꾸려 갈 수 있는데도 길에서 강도질을 할만큼 미친 사람은 없을 것이다(LJ, pp. 486~487)⁵²⁾.

이와 같이 스미스는 상공업을 발전시킴으로 중세사회를 근대 상공업사회로 발전시켜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독립적인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의 질서를 확립시키는 길이라고 보았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스미스의 법학은 政治經濟學으로 넘어간다.

第 3 節 自由主義 經濟學(經濟的 自由主義)

앞의 法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스미스에 의하면, 商工業이 발전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직업을 갖도록 하여 독립적으로 生計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에 平和와 正義와 倫理를 세우는 기본적인 길이다. 즉 경제적 번영이 사회의 질서와 자유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法學에서 밝혔던 이러한 그의 관점을 스미스는 『國富論』(이하 WN)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상업과 제조업은 이전에는 인근주민들

52) 이 글은 LJ(B)의 인용문이고 LJ(B)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구절이 있다. LJ, pp. 332~333.

과의 끊임없는 전쟁상태와 영주들에 대한 노예적인 종속상태에 살았던 시골주민들 사이에 질서와 훌륭한 정치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점차로 도입한다. 이 점은 지금까지 거의 관찰되지 않은 바지만 상업과 제조업의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흄(David Hume)은 그것을 주목한 유일한 저자이다(WN 上, p. 392)⁵³⁾.

상공업의 발전은 富가 축적되어 國家가 富裕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富(豊饒)의 本質과 原因을, 바꾸어 말해서 經濟發展의 本質과 原因을 탐구하는 것이 그의 道德哲學의 마지막 과제이다. 이는, 스미스가 다음과 같이 그의 政治經濟學⁵⁴⁾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정치경제학은 정치가나 입법자의 과학의 한 분야로 간주되는 경우, 두 개의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민들에게 풍부한 소득이나 생활수단을 제공하는 것, 좀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충분한 소득 또는 생활수단을 얻게 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끔 국가 또는 공화국에 歲入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政治經濟學은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WN 上, p. 407).

53) 이하에서 인용문헌 중에서 WN 上이나 WN 下로 표시된 것은 김수행이 번역한 『國富論』을, 단순히 WN으로 표시된 것은 R.H.Cambell과 A.S.Skinner가 편집한 原典을 각각 가리킨다.

54) 다른 古典派 經濟學者들과 같이 스미스는 경제학 대신에 政治經濟學(political economy)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WN, p. 11, 372, 428, 663).

富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WN의 목적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살게 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WN의 주목적이다. 이것은 WN의 原書名이 『국가들의 富의 本質과 原因에 관한 探究』(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라고 붙여진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WN은 모두 다섯 편으로 되어 있다. 제1편은 市場經濟의 根源의 인 특성을 分業에서 찾고 分業의 利點과 分業의 結果로 형성되는 市場에서의 價格決定, 그리고 價格을 구성하는 세 요소인 賃金과 利潤과 地代의 決定을 설명함으로써 資本主義 經濟에서의 分配決定 過程을 설명하였다. 제2편에서는 經濟發展을 초래하는 資本蓄積(즉 企業의 貯蓄과 投資)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資本과 貨幣 및 金融을 설명하고 있다. 제3편에서는 農村과 都市와 商工業의 發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제4편에서는 重商主義를 비판하고 重農主義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제5편에서는 政府의 財政을 논하고 있다.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제1편을 價格理論, 제2편은 經濟發展論과 貨幣金融論, 제3편은 經濟史, 제4편은 經濟政策論 및 經濟學史 그리고 제5편은 財政學(公共經濟學)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WN은 근대경제학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대상을 구체적인 자료들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스미스가 방대한 체계의 WN에서 보이곤 하였던 것은 하나다. 그것은 自由롭고 公正한 市場經濟秩序를 확립하는 것이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데 가장 좋은 길이며 이를 위해서 重商主義的인 정부의 규제들을 모두 철폐하여 經濟的 自由主義를 확립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이章에서는 스미스의 이러한 經濟的 自由主義를 중심으로 그의 경제학 체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의 財政·金融 政策은 다음의 第4章에서 논의될 것이다.

1. 富의 本質(勞動價値說)

스미스는 分業社會에서 개인의 富란 타인의 勞動에 대한 支配力임을 지적하였다.

사람이 부유하거나 가난하다는 것은 그가 인간생활상의 생활필수품, 편의품, 오락물을 즐길 수 있는 정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분업이 일단 철저히 실시된 뒤에는 이러한 것들 중 매우 적은 부분만이 자기 자신의 노동에 의해 공급될 수 있으며 훨씬 큰 부분은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그가 지배할 수 있는 (또는 그가 구매할 수 있는) 타인의 노동량에 따라 그는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된다(WN上, 36).

당시의 지배적인 사고였던 重商主義에 따르면 金이나 銀과 같은 貴金屬(당시 이는 곧 貨幣였다)이 富였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를 비판하고 타인의 財貨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며 타인의 財貨는 타인의 勞動의 産物이므로 富란 곧 타인의 노동에 대한 支配力임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이는 勞動이 價値의 源泉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미스는 財貨의 價値는 그 재화의 생산에 투하된 노동시간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

資本主義 經濟(스미스의 표현을 빌리면 商業經濟)에서는 생산물의 대부분이 市場에서 商品으로서 交換된다. 이때 商品間의 交換比率이 交換價値이다. 스미스는 상품의 交換價値(혹은 줄여서 價値)가 그 상품의 생산에 투하된 勞動量과 동일하다는 勞動價値說을 주장하였다.

…………… 따라서 노동은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의 진정한 척

도이다. 모든 물건의 진정한 가격(real price) - 즉 그것을 얻기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요구하는 것 - 은 그것을 얻는데 든 노동과 수고이다. 어떤 물건을 획득해 그 물건을 팔아 버리거나 다른 물건과 교환하려 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이 가진 진정한 가치는 그 물건 때문에 자기가 면제받아 타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노동이다(WN 上, pp. 36~37).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가치가 결코 변동하지 않는 노동만이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궁극의 진정한 척도이다. 노동이 모든 상품의 진정한 가격이고 화폐는 명목가격일 뿐이다(WN 上, p. 39).

그러나 이처럼 모든 상품의 價値는 그것의 생산에 투하된 勞動時間에 비례한다고 勞動價値說을 해석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각 작업에서의 노동의 強度와 技術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測定手段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스미스도 이 점을 잘 인식하였다⁵⁵⁾. 스미스는 이와 관련하여 '(노동간의) 대체적인 동등성에 따라 시장에서의 흥정에 의해 조절된다'(WN 上, p. 38)고 지적할 뿐 그 이상의 엄격한 분석을 계속하지는 않았다⁵⁶⁾.

價値理論으로는 이와 같은 이론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5)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두 개의 상이한 종류의 작업에 소요된 시간만으로 이 비율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견디어 낸 고난의 정도와 발휘한 독창성의 정도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WN 上, p. 37).

56) 마르크스(Karl Marx)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란 추상적 개념을 측정단위로 제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 역시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스미스의 勞動價値說은 富의 本質에 관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사회의 富는 生産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勞動은 곧 인간의 生産的인 活動이기 때문이다.

이는 스미스 이전의 重商主義와 重農主義보다 발전한 견해이다. 重商主義者들은 金이나 銀이 곧 富라 보고 이런 貴金屬을 획득하는 商業, 특히 貿易業이 國富를 증대시키는 산업이라고 생각하였다. 重農主義를 비판하고 등장한 重農主義는 農業만이 富를 창출하고 다른 산업은 모두 富를 변형시키거나 수송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農業의 발전만이 경제발전의 길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⁷⁾.

중농주의는 流通보다는 生産이 富를 창출한다고 본 점에서는 중상주의보다 발전된 관점을 가졌으나 농업만이 생산이라고 본 점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스미스의 노동가치설에 의하면 농업과 제조업 모두 富를 창출한다. 왜냐하면 제조업도 노동이 투하되어 재화를 생산하기 때문이다⁵⁸⁾.

스미스는 이러한 勞動價値說의 입장에 서서 金銀(곧 화폐)의 증가는 경제번영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며, 金銀의 해외유출은 경제 쇠퇴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님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WN 上, p.327). 화폐란 단지 재화간의 교환을 원활히 해주는 매개체일뿐 그 자체가 富는 아닌 것이다⁵⁹⁾.

그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의 양에 의하여 상품의 價値가 결정된다는 스미스의 勞動價値說은 엄밀한 價値理論으로서는 不完全한 이론이다⁶⁰⁾. 그러나 그의 勞動價値說은 人間의 勞動을 경제발전

57) 이러한 생각은 농업만이 물자를 번식시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58) 그러나 스미스는 역시 제조업보다는 농업이 훨씬 더 큰 가치를 생산하므로 '농업에 대한 투자가 사회에 가장 유리한 양식이다'(WN 上, p.349)라고 농업 우선정책을 주장하였다.

59) '화폐의 유일한 용도는 소비재를 유통시키는 것이다'(WN 上, p. 326).

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스미스는 3大 生産要素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私有財産制度가 존재하는 資本主義 經濟(그의 용어로는 商業社會)에서는 商品價格이 賃金, 利潤 및 地代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봄으로써⁶¹⁾ 生産要素를 勞動, 資本 및 土地의 셋으로 나누고 勞動者, 資本家 및 地主를 세 계급으로 보는 근대경제학의 전통을 최초로 확립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세 가지 중에서 勞動이 가장 근원적인 생산요소임을 인정하고 이 勞動의 投入量을 價値의 척도로 삼았다. 그에 의하면 생산은 본질적으로 勞動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私有財産制度가 존재하기 때문에 資本가와 地主가 勞動者와 함께 노동 생산물의 분배에 참여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구절은 이러한 그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격의 모든 상이한 구성부분들의 진정한 가치는 그들 각 각이 구매·지배할 수 있는 노동량에 의해 측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노동은 가격 중 노동(임금이 옳다)으로 분해되는 부분의 가치뿐만 아니라 지대로 분해되는 부분과 이

60) 다양한 勞動을 측정할 수 있는 共通의 尺度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機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勞動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勞動價値說은 그 후 리카도(David Ricardo)를 거쳐 마르크스(Karl Marx)로 계승발전되었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剩餘價値說로 勞動價値說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현대 이탈리아 출신의 영국의 경제학자 스라파(Piero Sraffa; 1898 ~)도 勞動價値說에 입각하여 勞動과 資本의 投入比率이 상이한 상품들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공통의 勞動價値尺度를 제시하였다고 일부에 의하여 평가받기도 한다. Sraffa(1960, 1975).

61) '임금, 이윤 및 지대는 모든 교환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收入의 세 개의 본원적인 원천이다'(WN 上, p. 58).

운으로 분해되는 부분의 가치도 측정한다(WN 上, p.56).

이윤과 지대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모든 생산물을 근본적으로 노동의 산물로 보는 입장은 경제문제의 파악에 올바른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어떤 사회활동과 마찬가지로 어느 경제에서든지 경제활동은 결국 인간의 활동인 勞動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⁶²⁾.

스미스의 노동에는 피고용자의 노동만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고용주의 노동도 포함된다. 마르크스나 현대경제학에서 勞動을 被僱傭者(勞動者)의 勞動만을 의미한 것과는 달리, 노동과 자본간의 분화가 분명하지 않았던 매뉴팩처(manufacture) 시대에 살았던 스미스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노동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노동을 노동에 포함시켰다.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이 점을 비판하지만 이 점이 오히려 경제발전분석에 더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노동자의 노동이나 기업가의 노동이나 인간의 노동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경제발전은 바로 이러한 인간노동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창조적으로 발휘되느냐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지금까지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많이 나왔다. 勞動과 勞動力, 技術, 人的 資本(human capital), 企業家能力(entrepreneurship), 知力(knowledge), 經濟하려는 意志(will to economize) 등이 그것이다.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러한 경향은

62) 近代 經濟學에서 생산의 3大 요소인 勞動, 資本 및 土地 중에서 인간의 勞動이 가장 중요하며 근원적이라고 생각된다. 현대 공업사회에서 土地가 노동처럼 중요한 생산요소가 아님은 국토의 넓이와 1人當 GNP간에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데서 분명히 나타난다. 資本은 돈(資金) 혹은 機械로 해석할 수 있다. 돈 그 자체가 生産要素가 아님은 通貨增加率과 경제성장률간에 아무 상관성이 없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資本을 機械로 해석하면 資本은 勞動보다 부차적인 생산요소이다. 機械는 勞動의 產物이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특히 심하다. 賦存資源보다도 이들 부존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이를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⁶³.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논의는 인간의 경제활동의 부분적인 면만 파악하기 때문에 분석에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하면 스미스의 노동은 보다 포괄적이다. 특히 스미스는 경제학 이전에 윤리학에서 人間 本性에 대한 깊은 분석을 행하고 이 기초 위에서 경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의 기초 위에서 경제를 분석한 소수의 경제학자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스미스 이후의 경제학들은 人間 자체보다는 계급, 기업, 국가, 소비자 등 인간으로 구성되는 조직 내지 추상적인 인간을 직접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뒷면으로 밀려 나고 인간이 직접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추상적인 경제주체들은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며 이 결과로 사회는 하나의 커다란 기계장치와 같이 작동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⁶⁴.

그러나 스미스가 TMS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人間の 本性은 복잡적이고(때로는 二律背反的이기까지 하다) 多樣하다. 그는 이 점을 잘 인식하고 그의 WN은 항상 구체적인 人間の 行위를 사실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人間을 분석의 중심에 놓고 그 다양함과 복잡성을

63) 일레로 루카스(Robert Lucas, 1988)로 촉발된 '新成長理論'(new growth theories)은 技術進歩를 중시하고 이를 주로 人的資本理論과 '經驗을 통한 學習'(learning by doing)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포터(Michael Porter, 1990)는 요소부존보다도 要素의 活用, 즉 要素創出에 의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64) 예컨대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社會는 史的 唯物論이라는 철학에 따라서 발전한다. 한편 新古典學派에서는 오직 이기심에 의해서 행동하는 個別 經濟主體들의 합리적 행동에 의하여 市場經濟에서는 一般均衡이 기계적으로 성립한다. 현대 케인지언들은 固定된 經濟模型을 가정하여 政策效果를 시뮬레이션하며, 新古典學派의 成長論에서는 經濟成長率在 人口增加率, 未來와 현재 소비간의 限界成長率 등의 계수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결정된다.

인정하며 경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것이 스미스 경제학의 뛰어난 점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勞動價値說은 바로 이러한 그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된다.

2. 分業과 市場

勞動이 본질적으로 유일한 생산요소이므로 經濟發展은 勞動의 生産性 增大로 이루어진다. 스미스는 勞動의 生産性 增大는 대부분 分業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分業이 經濟發展의 기본요인이다. WN의 첫 구절은 바로 이를 지적하는 것이다.

노동생산력(the productive power of labor)의 매우 큰 향상과 어떤 노동에서도 발휘되는 숙련·기교·판단의 대부분은 분업의 결과였던 것 같다(WN 上, p. 13).

그는 핀 공장에서 분업이 안 이루어지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20개도 만들지 못하지만 分業이 이루어진 공장에서는 노동자 한 사람이 4,8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유명한 예를 들었다. 분업의 결과 노동생산성이 240배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⁶⁵⁾.

分業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유로 스미스는, 첫째 각 노동자의 기교(dexterity)의 증가, 둘째 하나의 일로부터 다른 일로 옮길 때에 잃게 되는 시간의 절약, 셋째 노동을 쉽게 하는 기계의 발명이 용이해짐을 들고 있다(WN 上, p. 16). 스미스는 技術進歩가 分業의 결과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기술개발이 작업장에서 떨어져 연구만 전담하는 과학자가 아니라 작업장에서 일하는 보통 勞

65) 分業은 어떤 한 作業場 내에서의 분업과, 産業間(직업간)에서의 분업의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의 분업은 作業場 내에서의 각 工程間의 분업이다.

動者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⁶⁶⁾.

그에 의하면 경제발전은 주로 企業의 덕분으로 생산물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통치를 잘하는 사회에서 최하층의 국민에게까지 전반적인 생활의 풍족을 가능케 한 것은 분업 덕택으로 각종 생산물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WN 上, p. 19).

分業은 交換을 전제로 하며 分業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交換이다. 스미스는 分業은 '交換하려는 性向'(the propencity to truck, barter, and to exchange)이라는 人間の 고유한 性向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⁶⁷⁾. 이 본능은 다른 동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독특한 性向이다(WN 上, p. 20). 그는 이 性向을 더이상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本能이라기보다는 理性과 言語의 속성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WN 上, p. 21).

分業의 결과로 交換이 이루어지는 공간 내지 제도가 市場이다. 스미스는 分業의 발달 정도는 市場의 크기에 의하여 비례함을 지적하였다.

66) '노동이 매우 세분되어 있는 매뉴팩처(매뉴팩처란 機械動力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며, 資本과 勞動의 分離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初期資本主義 단계에서의 工場制手工業을 말한다. 당시의 工場은 바로 이 매뉴팩처였다.: 필자 주)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대부분은 원래, 어떤 매우 단순한 조작에 종사하면서 자기 생각을 그 조작을 수행하는 쉽고 간편한 방법의 발견에 집중시킨 보통 노동자의 발명이었다'(WN 上, p. 18). 그러나 그는 곧이어 발명의 상당부분이 또한 기계제조업자나 학자 또는 사색가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다(WN 上, pp. 18~19).

67) 여기서의 分業은 앞의 편 工場의 예에서와는 달리 作業場에서의 分業이 아니라 각 産業間(職業間)의 분업이다. 이처럼 스미스는 分業을 두 가지 의미(작업장 내에서의 分業과 産業間的 分業)로 모두 사용하고 있다.

분업을 야기하는 것은 교환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 분업의 정도는 언제나 이 교환성향의 크기,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되기 마련이다. 시장이 매우 작을 때에는 한 가지 작업에 전적으로 몰두하게 만드는 유인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 자신의 소비를 초과하는 잉여분 전부를 타인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과 교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WN 上, p. 25).

시장의 크기는 交通(運輸)의 발달에 비례한다. 따라서 運輸가 발달된 곳에서 市場이 넓어지고 그 결과로 分業과 商工業이 발달한다. 스미스는 水上運送이 陸上運送보다 더 편리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바다나 강을 이용한 水上運送이 편리한 지역간에 분업과 商工業이 발전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수상운송의 이점이 이처럼 크기 때문에, 수상운송이 편리해 세계 전체가 각종 노동생산물의 시장으로 개방되어 있는 곳에서 기술과 산업의 최초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그 진보가 훨씬 뒤에야 비로소 한 나라의 내륙지방으로 미치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WN 上, p. 27).

이와 같이 스미스에게는 分業의 발전이 노동생산성을 발전시키는 기본요인이며 分業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交換이 이루어지는 곳이 市場이므로 市場에 의한 資源配分이 이루어지는 市場經濟가 인간에게 물질 풍요를 가져다주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경제이다. 그에게서 商業經濟(市場經濟 혹은 資本主義 經濟)는 수렵, 목축, 농업의 다음에 등장하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발달된 경제사회이다. 그리고 分業은 交換性向이라는 人間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는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경제였다.

交換은 인간의 交換性向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市場은 어느 누가 발명한 것도 아니고 國家의 法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저절로 생긴 자연스러운 제도이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이 제도가 交換性向이라는 人間의 本性에 맞기도 하지만 交換의 利益이라는 이익을 참여자 모두가 얻기 때문이다. 市場이라는 제도는 그 참여자들 모두에게 交換의 利益을 주기 때문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한다. 이처럼 分業에 의한 생산물 증가의 이익이 交換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실현되는 市場經濟制度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市場制度는 자비심이 아니라 自己中心的이라는 人間의 本性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 양조장 주인 · 빵집 주인의 자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自愛心(self-love)⁶⁸⁾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이야기한다 (WN 上, p. 22).

人間의 本性(人性)에 대한 연구의 기초 위에서 人性에 맞는 것을

68) 김수행은 self-love를 利己心이라고 번역하였으나 自愛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利己心(selfishness)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무분별한 私益追求를 가리키는 말로 썼고, 반면에 自愛心(self-love) 혹은 自己利益(self-interest)이란 말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당연한 현상인 자기중심적 성향을 나타내는 말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 점을 고려하면 self-love를 利己心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WN에는 selfishness란 말이 등장하지 않고 self-love나 self-interest란 말이 사용되었다.

중시하는 것이 스미스의 중요한 특징이다. 人間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自身の 利益을 추구하는 것이고 分業과 交換은 바로 이러한 人性과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市場經濟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이라는 생각에서 人性을 중시하는 스미스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인간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일할 때에 가장 열심히 일한다. 이것은 人間의 本性에 기인하는 것이다⁶⁹⁾.

市場經濟는 바로 이러한 自己中心的인 人間本性이 만들어냈으며 이러한 人間本性에 근거하여 작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고 기능이 좋은 경제제도이고 이 때문에 市場經濟體制는 가장 우월한 經濟體制인 것이다.

市場經濟體制는 사람들의 自發的인 참여에 의하여 작동되고 自發性은 自由로운 활동에서 나온다. 따라서 自己利益을 추구하는 자

69) 『道徳感情論』에서 自愛心 내지 自己利益追求가 人間의 가장 강한 本性이며 社會發展의 原動力임을 지적하였던 스미스는 WN에서도 여러번 이를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해 일할 때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할 때 더 적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가난한 독립 수공업자는 성과급을 받는 직인보다 더욱 부지런하다'(WN 上, p. 90).

'자신의 처지를 개선시키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되고 꾸준한 중단없는 조력, 즉 개인의 풍요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민의 풍요가 원천적으로 유래하는 원동력은, 자주(frequently를 김수행이 때때로로 번역한 것을 고침: 필자)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정부의 낭비와 행정의 큰 오류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향한 사물의 자연적 진행을 유지하는 데에 충분하다'(WN 上, p. 329).

'법률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돌보는 것을 항상 그들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입법자들보다 더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WN 下, p. 29)

'…… 인간 理性은 개인적 利害關係의 결속을 해체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WN 下, p. 329).

유로운 경제행위가 보장될 때에 分業과 交換의 이익은 극대화되고 國富는 증대되어 국민들의 생활은 풍요로워진다⁷⁰⁾.

經濟에 관한 스미스의 생각은 다음의 구절에서 가장 선명하게 집약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특혜를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모든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면, 분명하고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the obvious and simple system of natural liberty)가 스스로 확립된다. 이 체계하에서 모든 사람은 正義의 法(the laws of justice)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근면과 자본을 바탕으로 다른 누구와도, 다른 어느 계급과도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凡은 私的 개인의 노동을 감독하고 그것을 사회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직업으로

70) 分業을 통한 勞動生産性의 발달 이외에 스미스가 거론한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발전의 요인은 資本蓄積이다. 資本蓄積은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WN의 제2편 자본의 성질·축적·사용에서 이 문제가 분석되고 있다. 이 편에서 그는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낭비를 비난하였다. 특히 정부의 낭비를 신랄하게 비난하였다(Wn 上, p. 332). 또한 노동을 生産的 勞動과 非生産的 勞動으로 분류하여 生産的 勞動의 비율을 높일 것을 강조한 것이 특색이다. 生産的 勞動이란 농업이나 공업에서의 노동과 같이 有形의 財貨를 생산하는 노동을 말하며, 非生産的 勞動이란 법률가, 성직자, 교사, 하인, 배우 등과 같이 무형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그가 有形의 財貨를 생산하는 노동만 생산적 노동으로 본 것은 有形의 재화만이 후세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분류는 다분히 편견에 치우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리스트는 이러한 스미스의 견해를 육체적 노동만 중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에 대응하여 精神的 勞動力이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F. List(1841).

인도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⁷¹⁾ (WN 下, p. 184).

위의 글은 스미스 사상의 핵심을 나타내는 몇개의 말을 포함하고 있다. 特惠(preference)와 制限(restraints)의 철폐, 분명하고 단순한 自由의 體系, 正義의 法, 競爭이 그것이다. 이 말들의 뜻을 이해하면 스미스의 사상의 핵심인 經濟的 自由主義를 이해할 수 있다.

'분명하고 단순한 自由의 體系'는 스미스가 생각하였던 이상적인 사회·경제의 모습이었다. 이 自由 體系의 핵심은 자유로운 市場(market)이다. 市場은 分業(division of labor)과 포리를 이루고 있다. 分業은 交換을 전제로 하며 交換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市場이다. 즉 발달된 分業經濟가 市場經濟이다. 따라서 市場보다 앞서 分業으로부터 『國富論』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스미스에 의하면 市場은 神의 섭리에 의하여 만들어 진 것이며 개인간의 이익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기구이다. 그의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市場을 가르킨다. 그에 의하면 神은 自然에 自然法則을 만들어서 萬物이 조화롭게 운행되도록 한 것과 같이 社會에도 모든 인간들의 생활이 자연적으로 조화롭게 운행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市場價格機構이다. 이 시장

71) 이 인용문은 김수행의 번역을 인용한 것인데 김수행의 번역을 두 부분에서 고쳤다. the obvious and simple system of natural system에서의 system을 김수행은 제도라고 번역한 것을 體系라고 고쳤고 들은, the laws of justice를 김수행이 정의의 원칙이라고 번역한 것을 正義의 法이라고 고친 것이다. 여기서 system이란 어떤 한 제도만이 아니라 시장경제제도를 기초로 하여 독과점에 대한 규제와, 正義의 法과 倫理로 보완된 하나의 사회·경제제도의 전반적인 體系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law는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正義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法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의 『道德感情論』과 『法學講義』에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격기구는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참여할 뿐이지만 그 결과로 사회 전체의 생산물이 증가하고 각자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게 된다.

근대 계몽주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점의 하나는 政府의 필요성이었다. 人間은 원래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률과 힘으로 질서를 확립하지 않으면 社會는 弱肉強食의 혼란상태에 빠지므로 王이 다스리는 政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규제와 王權을 옹호하는 전통적 주장의 유력한 논리적 근거였다. 정부규제 철폐와 왕권의 제한을 주장하는 自由主義者들이 이를 논박하기 위해서는 정부규제가 없이 각자 자유롭게 활동하더라도 사회가 조화롭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自然的인 秩序가 존재함을 보여주어야 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그것이 바로 市場에 의한 조화로운 秩序였다.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스미스의 WN이었다. 스미스의 WN은 정부가 없더라도 市場이라는 하느님의 섭리를 통하여 질서정연하며 만인의 이익이 증진되는 사회가 존재함을 논리와 구체적인 풍부한 자료를 통하여 설득력있게 제시하였다. WN의 발행으로 영국 사회에서 고전적인 經濟的 自由主義가 지배적인 思潮로 자리잡게 되었고 그 후 이 사상은 전유럽과 세계에 보급되어 오늘날까지 西方世界 전체의 중심적인 경제사상으로 오늘날까지 면면히 흘러 내려오고 있다.

市場經濟秩序에 대한 肯定的인 평가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消極的인 肯定的 評價란, 市場經濟를 긍정하긴 하지만 理想的인 것으로 보지는 않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不完全한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경제질서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나은 경제질서라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대부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市場經濟에 대한 積極的인 肯定的 評價란 市場經濟가 제대로만 실현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理想的 經濟질서라고 평가하는

에서 찾았던 것 같다.

첫번째 당사자인 개인이 정부보다 情報의 획득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것이다. 모든 意思決定에서와 마찬가지로 投資決定과 같은 經濟活動에서의 意思決定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필요한 情報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스미스는 이 점에서 당사자인 개인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投資決定, 商品去來, 職業選擇 등 모든 경제관련의 意思決定에서 정부보다 당사자가 훨씬 더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스미스는 정부개입 반대의 이유로 지적하였다. 이는 情報入手 면에서의 정부에 대한 개인의 우월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두번째 사람은 公共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때에 가장 열심히 일한다는 自明한 사실을 스미스는 지적하였다. 이는 動機賦與 면에서의 私益追求의 우월성을 가리킨다⁷²⁾.

세번째 市場價格機構의 私益이 서로 조화되도록 하는 調整機能(私益의 公益으로의 轉換機能)이다. 비록 개인이 각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고 개인들의 그러한 私益追求의 경제활동이 서로 충돌한다면 社會全體적으로는 갈등만 존재하고 조화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의 私益追求를 전체의 善으로 융화시키는 조절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資本主義 經濟에서 市場價格機構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함을 스미스는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뒤의 제3절에서 하이에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에서는 自發的인 交換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스미스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장기구의 이 기능을 신비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하등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단

72) 이는 경쟁의 이익에서도 나타난다. 제4절 1의 나항을 참조하라.

지 시장에서는 거래 쌍방에게 모두 이익을 주는 自發的인 交換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서는 각자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여 물건을 만든 다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가능한 조건으로 시장에서 자신의 생산물을 자신에게 필요한 타인의 생산물과 교환하기 때문에 각자의 私益追求의 행위는 결국 他人에게도 이익이 된다. 시장경제에서는 私益이 공익으로 전환된다기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장기구가 사익을 공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교환이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뿐이다. 각자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여 물건을 만든 다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가능한 조건으로 시장에서 자신의 생산물을 자신에게 필요한 타인의 생산물과 교환하기 때문에 각자의 私益追求는 결국 他人에게도 德이 된다.

네번째는 資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價格機構의 信號燈機能이다. 이 기능은 앞의 調整機能과 구분된다고 생각된다. 가격기구의 信號燈機能은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여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이 필요한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市場機構의 私益의 調整機能이란 市場機構를 통하여 社會的 分業과 交換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서 개인의 私益追求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타인의 이익도 증진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스미스가 예를 든 것과 같이 빵 장수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빵을 만들어 파는 것이 이웃에게 그들이 필요한 빵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기구의 私益 調整機能이며 이에 비하여 가격기구의 信號燈機能은 이 빵 장수가 자기 고객이 필요한 양만큼의 빵을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함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스미스의 글은 이러한 自由化를 지지하는 처음의 세 가지 근거를 분명하고 알기 쉽게 종합하여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한 사회의 年間收入(revenue)은 그 사회의 노동의

연간 총생산물의 교환가치와 정확히 일치한다⁷³⁾. 또는 오히려 그것의 교환가치와 정확히 동일하다. 따라서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국내산업의 지원에 사용하고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이끈다면, 각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수입을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된다. 사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며 그가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많은 경우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an invisible hand)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증진시키게 된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의도했을 경우에 비해 사회에 적게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종종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나는 공공복지를 위해 사업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사실 상인들 사이에 이러한 허풍은 일반적인 것도 아니며 그것을 단념시키는 데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

자기의 자본을 국내산업의 어떠한 분야에 투자하면 좋은가, 그리고 가장 큰 가치를 가진 생산물을 생산하는 산업분야는 무엇인가에 대해, 각 개인은 자신의 지역적 상황에서 어떠한 정치가나 입법자보다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민간인들에게 그들의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지시하려는 정치가는 스스로 불필요한 수고를 고생하는 사람들의 수중에 있을 때 가장 위험스러운 권력을 자

73) 스미스는 여기서 國民所得計算에서 中間財의 重複計算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신이 인수하려고 하는 것이다(WN 上, pp. 434~435).

그리고 다음은 네번째의 市場價格機構의 信號燈機能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들의 사적인 이익 열망은 자기의 자본을 사회에 가장 유리한 투자부문으로 자연스럽게 돌리게 한다. 그러나 만일 이 자연스러운 선호 때문에 그들의 자본을 너무 많이 그 부문으로 돌린다면, 그 부문의 이윤감소와 다른 부문에서의 이윤상승은 즉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배분을 바꾸게 한다. 그러므로 법의 개입이 전혀 없다면, 사람들의 사적인 이익 열망은 자연스럽게 그들로 하여금 사회의 자본을, 사회 전체의 이익에 가장 잘 일치하는 비율로 다양한 투자부문에 배분하도록 한다’(WN 下, p. 127).

마지막 다섯번째로 스미스가 규제철폐 내지 자유화의 근거로 지적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은 집권자나 官吏들의 부패 내지 利權追求이다. 이것은 현대경제학에서 말하는 ‘政府의 失敗’(government failure)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부관리도 私益을 추구하는 개인이므로 公益이 자기의 私益과 상반될 때에는 公益보다 私益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을 악용할 수 있다. 왕과 정부의 탐욕이 不良貨幣 발생의 원인이며(WN 上, p. 33), 무능한 관리가 法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며(WN 上, p. 101), 정부의 낭비가 국가경제 쇠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WN 上, p. 329), 관리직원의 부패를 금지하는 것은 헛수고이며(WN 下, p. 135), 징세 청부인은 흔히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함(WN 下, p. 397)을 그는 지적하였다.

위에서 본 경제적 자유주의의 효율성의 다섯 가지 근거는 오늘날에도 정부의 경제개입을 반대하는 經濟的 自由主義의 주요한 근거

라고 생각된다. 특히 첫번째와 두번째의 것은 社會主義 經濟에 대한 資本主義 經濟 내지 市場經濟의 우월성의 중요한 근거로 근래에 새삼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나. 貿易規制의 撤廢

스미스가 경제정책면에서 가장 강조하였던 것은 規制의 철폐와 自由化였다. 당시 영국은 의회중상주의의 시대였기 때문에 保護貿易主義政策에 따라서 貿易에 대하여 각종 규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를 철폐하고 自由貿易을 확립하자는 것이 스미스의 주된 주장이었다. 제4편 「政治經濟學의 學說體系」의 아홉개 章 중에서 1장부터 8장까지가 重商主義⁷⁴⁾에 대한 분석이다(9章은 重農主義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重商主義에 대한 최초의 분석이었다. 여기서 그는 重商主義를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교한 경제학 이론과 풍부한 역사적 자료를 이용하여 반박의 여지없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重商主義의 원리는 重金主義와 保護貿易主義의 두 가지이다. '즉 富는 金銀으로 구성된다는 원리와⁷⁵⁾ 金銀鑛山이 없는 나라에서는 金銀은 오직 貿易差額에 의해, 또는 輸入하는 것보다 큰 가치를 수출함으로써(즉 貿易收支黑字에 의해서만: 필자주) 얻을 수 있다는 원리'(WN 上, p. 429)이다. '따라서 한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두 개의 큰 엔진은 輸入에 대한 制限措置와 輸出의 장려책이었다'(WN 上, p. 429).

스미스는 輸入에 대한 制限措置를 ㉠ 消費財에 대한 일반적인 수입제한과 ㉡ 自國의 貿易收支가 赤字인 특정한 나라에 대한 수입제

74) 앞의 제1장 제1절의 3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영국의 重商主義는 王室重商主義와 대비되는 議會重商主義였다.

75) 스미스의 勞動價值說에 입각하면 貨幣인 金銀은 交換의 매개체에 불과할 뿐, 그 자체는 富가 아니며 勞動生産物이 富임은 이미 本節의 1에서 고찰하였다.

한의 두 가지로 나누고, 수출장려책은 ㉠ 關稅還給, ㉡ 수출장려금, ㉢ 외국과의 유리한 通商協定 및 ㉣ 植民地 획득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즉 스미스에 의하면 무역수지 흑자를 위한 정책수단에는 모두 여섯 가지가 있다. 스미스는 이 여섯 가지의 무역규제조치의 하나 하나에 대하여 한 장씩 할애하여 그 不合理性을 지적하였다.

輸入規制의 철폐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외경쟁력이 없는 국내산업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失業일 것이다. 스미스도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다(WN 上, p. 446). 그러나 스미스는 '一國의 총자본이 종전과 같다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같거나 거의 같을 것'(WN 上, p.447)이므로 輸入規制가 철폐되더라도 노동자들은 쉽게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즉 스미스는 産業構造調整이 용이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스미스는 산업과 노동이동,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기업들의 독점권, 「徒弟法」 및 「居住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WN 上, p. 447)

<貿易의 利益>

스미스는 우선 무역의 이익은 重商主義者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金銀의 획득에 있지 않음을 밝혔다. 그에 의하면 무역의 이익은 각국의 市場을 확대하여 줌으로써 分業과 交換의 이익을 증대시키며, 이는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을 증대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경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들의 消費水準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金銀의 輸入은 한 국민이 외국무역으로부터 끌어내는 주된 이득도 아니며 유일한 이득은 더더욱 아니다. 외국무역이 행해지는 지역 사이에서는 어디서든지 국민들은 두 개의 이익을 끌어낸다. 외국무역은 그들의 토지와 노동의 생산물 중 그들 사이에서 수요가 없는 잉여분을 반출하고⁷⁶⁾ 그 대

신 수요가 있는 다른 것을 가지고 온다. 외국무역은 그들에게 남는 것을, 그들의 욕구의 일부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기쁨을 증가시키는 다른 것과 교환함으로써 그 잉여분에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국내시장의 협소함도 직업과 제조업의 각 분야에서 분업이 최고도로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들의 노동생산물 중 국내소비를 초과하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넓은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외국무역은 그들로 하여금 생산력을 발전시키게 하고, 연간 생산물을 최고도로 증가시키게 하며, 그리하여 사회의 實質收入과 富를 증가시키게 한다(WN 上, p. 425).

消費야말로 모든 생산활동의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이며 생산자의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고려되어야 한다(WN 上, p. 156).

〈貿易規制의 폐해〉

스미스가 지적한 貿易制限(輸入規制와 수출장려금)의 가장 중요한 不合理性은 그것이 市場價格機構에 의한 投資의 效率的 配分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스미스에 의하면 어떤 국가의 총생산물은 노동이 가장 생산성이 높은 부분에 고용될 때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노동을 고용하는 것은 資本이므로 資本이 가장 효율적으로 投資될 때에 그 사회의 연간 총생산물의 가치는 최대로 된다. 이는 投資를 각 개인에게 맡길 때에 이루어진다. 그 이유를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밝혔다.

76) 이 구절은 貿易發生理論의 하나인 스미스의 「剩餘排出說」(vent for surplus theory)을 보여준다.

각 개인은 그가 지휘할 수 있는 자본을 가장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힘쓴다. 그의 관심사는 사실 자기 자신의 이익이지 사회의 이익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오히려 필연적으로 그로 하여금 사회에 가장 유익한 투자를 선호하게 한다(WN 上, p. 432).

그러나 어떤 상품에 대한 輸入制限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게 국내의 獨占市場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그 산업의 利潤率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이는 그 산업으로 資本의 투자를 촉진시킨다. 이것은 그 나라가 比較優位를 가진 산업에 투자하여 그 상품을 輸出하여 필요한 상품을 輸入하는 것보다 不利하다.

노동이 더욱 가치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연간 생산물의 가치는 분명히 다소 감소할 것이다. 가정에 의하면, 그 상품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낫다. 따라서 그 상품은 동등한 자본에 의해 고용된 노동이 그 자연적 과정을 따르도록 방임했다라면 국내에서 생산했을 상품들의 오직 일부,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 상품의 가격의 일부로서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한 나라의 노동은 더욱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곳으로부터 덜 유리한 곳으로 전환되고, 그것의 연간생산물의 교환가치는 입법자들의 의도대로 증가하지 않고 규제에 의해 필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WN 上, pp. 435~436).

輸出獎勵金도 마찬가지이다. 이것도 특정산업의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높임으로써 資本을 비효율적인 부분으로 억지로 이동시킴으로써 자연적인 分業構造를 왜곡시킨다.

중상주의의 다른 정책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장려금(수출 장려금: 필자주)의 효과도 한 나라의 무역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로보다 훨씬 덜 유리한 수로로 그것(資本: 필자주)을 강제적으로 인도할 뿐이다(WN 上, p. 6).

그러나 합리적 현실주의자였던 스미스는 貿易制限 중에서 「航海條例」(the Navigation Act), 捕鯨船에 대한 장려금 및 報復關稅를 인정하였다. 스미스는 國防이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航海條例와 捕鯨船에 대한 장려금은 國防力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으며, 報復關稅는 外國에게 關稅撤廢를 요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植民地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였다. 즉 植民地는 市場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分業과 交換의 利益을 증대시키며 이 덕분에 國富가 증대된다. 그러나 이는 自由貿易이 이루어질 때에 한하며 植民地와의 交易를 獨占貿易으로 제한하면 投資의 歪曲이 발생하여 國富가 감소한다. 植民地와의 獨占貿易의 수익률이 인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효율성이 높은 인근무역에서 이보다 비효율적인 원격지무역으로 자본의 부자연스러운 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⁷⁷⁾.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投資는 각 개인에게 맡길 때(즉 시장가격 기구에 맡길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부는 이에 개입하

77) 스미스는 농업, 제조업, 국내상업 외국무역업의 순서로 투자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유리하다고 보았다. 무역업 중에서는 자본의 순환이 빠른 인근무역이 자본의 회수가 늦은 원격지무역보다 더 유리하며 이는 사물의 자연적인 진행순서라고 보았다. 그는 후자가 한번 이루어지면 빠져나가기 힘들수록 국민경제적으로 유리한 투자라고 보았다(WN 上, p. 367; WN 上, p. 432; WN F, pp. 99~101).

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스미스의 기본입장이다.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면 스미스는 어떤 형태의 産業政策도 反對하였다.

〈貿易制限의 受惠者〉

스미스에 의하면 貿易制限政策의 주요 폐단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投資配分을 왜곡시킴으로써 그 사회의 연간생산물을 감축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처럼 국민경제 입장에서, 즉 국민대다수 입장에서 볼 때에 해악인 貿易制限을 왜 실시하는가? 그것은 이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商工人들이 정책결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임을 스미스는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중상주의 전체를⁷⁸⁾ 고안해 낸 것이 과연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고안해 낸 사람이 소비자들이 아니라 생산자들이었다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이익은 전적으로 무시되어 왔음에 반해, 생산자의 이익에는 매우 신중한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생산자 중 우리나라의 상인과 제조업자야말로 중상주의의 중요한 설계자이다. 이章에서 주의깊게 살펴본 중상주의의 여러 규제들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자들의 이익이 특별히 우대되었고, 이리하여 소비자의 이익이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타의 생산자들, 예컨대 원료생산자의 이익도 크게 희생되었다(WN 下, p. 158).

78) 스미스는 重商主義의 주 내용이 保護貿易主義的인 貿易規制로 보았기 때문에 이 구절의 重商主義 전체란 保護貿易主義的인 貿易規制 전체를 가리킨다.

重商主義는 모든 輸入을 규제하고 모든 輸出을 장려한 것은 아니었다. 원료나 半製品에 대해서는 거꾸로 자유로운 輸入을 장려하고 輸出을 억제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스미스는 반제품인 亞麻絲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면서 完製品인 亞麻布에 대해서는 高率關稅를 부과하고, 아마포의 輸出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함을 들었다. 이러한 정책은 亞麻絲 생산에 종사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이들은 아마포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4배에 해당하였다)를 저임금에 묶어 놓고 아마布 공장을 경영하는 大製造業者들의 이익만을 보호하였다. 이를 지적한 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상주의에 의해 주로 진흥되는 것은 부자와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산업뿐이다.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의 이익을 위한 산업은 너무나 자주 무시되거나 억압받고 있다(WN 下, p. 158).

이처럼 당시 영국의 중상주의가 大商工業者의 이익을 주로 옹호하였다는 것은 당시 영국의 重商主義가 앞의 제1장 제1절의 3에서 본 바와 같이 大商工業者의 이익을 대변하는 議會重商主義였음을 보여준다.

다. 기타 規制에 대한 비판

스미스에 의하면, 重商主義는 본질적으로 규제와 제한의 학설이므로 근면한 관료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중상주의자는 정부관청을 통제하듯이 일국의 상공업도 통제해야 한다는 편견을 갖는다고 지적하였다⁷⁹⁾. 貿易制限 이외에 여러 가지 規制에 대한 비판이 WN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그는 價格規制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需給不均衡이라는 폐해를 초래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비단 중상주

의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賃金引上은 法律로 막을 수 없다⁸⁰⁾. 상공업의 발달로 생활필수품의 실질 가격이 싸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金利禁止도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 효과도 없이 高利貸의 惡을 감소시키기보다 오히려 증가시켰다⁸¹⁾.

유럽에서는 중세시대를 포함하여 곡물의 수출과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매매하는 것을 금하였다. 이것의 취지는 곡물의 공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다. 스미스는 곡물에 대한 이러한 규제(특히 흉년에는 가격통제가 강화되었다)가 饑饉(famine)의 원인이라고 비판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흉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곡물의 수출입과 가격변동을 허용한다면 지역간 곡물무역과 가격변동에 따른 소비조절이 발생하여 흉작이 발생한 지역에서도 곡물식량 부족이 상당히 완화되어 기근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발생하는 것은 곡물무역에 대한 통제와 가격규제가 이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79)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프랑스의 대표적 重商主義者였던 J.B.Colbert를 가르킴; 필자주)는 重商主義의 모든 편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重商主義란 그 본질에 있어 제한과 통제의 학설이며, 따라서 관청의 각 부서를 총괄하고 그들로 하여금 본연의 임무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점검과 통제에 익숙한 끈기있고 근면한 행정가(Colbert를 가리킴; 필자주)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학설이다. 따라서 그는 大國의 商工業을 관청의 각 부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통제하려 했으며, 또한 自由·平等 및 正義의 원칙에 따라 각 개인이 자기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어떤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특권을 부여하는 반면, 다른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가하였다”(WN 下, pp. 159~160).

80) ‘경험에 의하면 법률이 가끔 임금을 규제하려고 했지만 법률은 결코 임금을 철저히 규제할 수 없다’(WN 上, p. 84).

81) ‘에드워드 6세 시대(1547 ~ 1553)에는 종교적인 열광이 모든 이자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 금지는 같은 종류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과도 없었으며 高利貸의 악을 감소시키기보다 오히려 증가시켰다고 말해지고 있다’(WN 上, p. 95).

기근은 부적절한 수단으로 부족의 불편을 치유하고자 시도한 정부의 강압에 의해 일어났다는 점을 발견할 것이다(WN 下, p. 24).

따라서 곡물거래가 완전히 自由化되면 흉작이 든 지방에서도 기근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스미스는 지극히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는 시장가격기구에 대한 스미스의 신뢰가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곡물거래의 제한없는 자유는 기근의 불행을 막는 데 유일하게 효과적인 예방책이기 때문에 부족의 폐해에 가장 좋은 완화제이다(WN 下, p. 25).

스미스가 비판한 것은 국가에 의한 규제만이 아니었다. 당시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정부규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중세시대의 유물인 同業組合(guilds)에 의한 규제였다. 이들의 徒弟制度(apprenticeship)는 手工業에서의 職業選擇의 自由를 규제하고 있었다. 스미스는 이의 철폐를 주장하였다⁸²⁾.

스미스는 또한 가난한 勞動者들의 居住移轉의 자유를 박탈한 救

82) '대기업의 배타적 특권을 철폐하고, 도제제도의 규약을 폐지해야 한다. 이 둘은 모두 자연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居住法」(the law of settlement)도 폐지해야 한다'(WN, p. 470).

'모든 직업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비록 그 자유가 남용될 수 있고 특히 몇몇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대부분에게 유리한 것이다'(WN 上, p. 468).

'행정부가 지켜야 할 영구적인 규칙은, 어떤 기술을 처음 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을 자유롭게 방임하고, 그것에서 수익을 올리는 개인에게 그것의 진흥을 맡겨 두는 것이다'(WN 下, p. 281).

貧法⁸³⁾(the Poor Law)을 잉글랜드에서 가장 잘못된 行政이며(WN 上, p. 141) 自然的 自由와 正義에 대한 명백한 침해자라고(WN 上, p. 146) 비판하였다. 그는 또한 이로 인하여 지역간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고 임금격차가 발생함을 지적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스미스가 주장한 貿易規制의 철폐와 무역자유화의 주 내용이 資本家の 投資選擇(事業選擇)의 자유였다면 이에 상응하여 스미스는 근로자들의 職業選擇의 自由도 주장한 것이다.

第 4 節 政府의 役割

스미스는 경제학에서 自由主義의 原形인 古典的 自由主義를 완성하였다. 이는 민간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장하였으나 무제한의 자유를 주장한 것도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한 것도 아니었다. 그의 자유주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완전한 자유의 허용을 주장하는 自由放任主義(laissez-faire)⁸⁴⁾의 原形이기도 하다.

스미스는 政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을 충분히 강조하

83) 修道院이 파괴되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종교기관의 자선이 어렵게 되자 1601년에 엘리자베스 1세는 각 敎區에 貧民을 구제할 의무를 부여하는 「救貧法」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각 교구는 다른 교구로부터 貧民(대부분의 노동자)이 자기 교구로 들어 오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다.

84) 자유방임주의가 개인의 무제한의 자유를 주장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이는 잘못이다. 자유방임주의는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장한다.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면 타인에 대한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도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개인은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며 이 규칙을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은 자유방임주의에서도 인정된다. 케인즈(J.M.

였다. 스미스는 우선 國防, 司法(의미로 보아 요즈음의 治安도 포함된다) 및 公共事業의 셋을 王의 3大義務라고 보았다.

自然的 自由의 制度下에서는 王은 오직 세 가지 의무에 유의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의무는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다. 세 가지 의무란 첫째, 사회를 다른 독립사회의 폭력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 둘째, 사회의 각 구성원을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보호하는 의무 또는 엄정한 사법을 확립하는 의무 셋째, 일정한 公共事業과 公共施設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의무이다(WN 下, p. 184).

이 중에서 國防과 司法은 모두 個人的 生命과 財産을 보호한다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능은 公正한 競爭秩序의 확립의 한 구성요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의 3대의무는 公正한 경쟁질서의 확립과 公共事業 운영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스미스는 이외에 예외적으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가 여럿 있다. 따라서 스미스가 생각한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공기업의 운영 및 예외적인 정부개입의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Keynes)는 자유방임주의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Whately 대주교의 말을 인용하였다. “진정한 자유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산, 시간, 힘, 그리고 기술을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Keynes, 1926, p. 280. Eucken도 자유방임주의하에서 국가는 재산법, 회사법, 계약법 등을 제정하여 법질서를 확립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Eucken, 1952, p. 39. 자유방임주의자들은 시장경제의 완전성을 신봉하므로 獨佔이나 불황과 失業, 빈부격차 확대와 같은 시장의 실패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스미스도 이에 속한다.

이 중에서 첫째와 둘째는 매우 중요한 정부역할이다. 이처럼 정부의 중요하고도 적극적인 기능을 인정한 점에서 스미스는 결코 自由放任論者는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 公正한 競爭秩序의 確立

가. 公正한 競爭秩序의 필요성

스미스는 公正한 競爭秩序가 확립된 여건하에서의 自由主義를 주장하였다. 이 점은 스미스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는 제한없는 자유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神의 섭리에 의한 自然調和說을 신봉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規制의 철폐와 自由化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自由主義는 결코 無秩序한 自由가 아니라 正義의 原則에 입각한 自由를 주장하였다. 단순한 自然的 體系에서 모든 사람을 '正義의 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을 그가 강조한 데서 이 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WN 下, p. 184). 그는 또한 '自由, 平等 및 正義의 原則에 따라 각 개인이 각자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WN 下, p. 160)고 말하였다.

自由主義의 최대 문제는 自由가 허용된 다음 발생할 수 있는 弱肉強食의 無秩序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他人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倫理學에서 이미 지적하였던 것과 같이 사람의 본성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自愛心(self-love)이다. 이것은 스미스가 인정하였듯이 개체보존과 종족보존의 본능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사회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절제되지 않은 自愛心은 추악한 利己心인 탐욕으로 나타나서 사회전체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⁸⁵⁾. 『道德感情論』(TMS)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으나 WN에는 이에 대한

85) 自愛心에 관한 스미스의 논의에 대해서는 제1장 제2절의 2를 참조하라.

언급이 여러번 나온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앞의 節에서 본 大商工業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전체적으로는 해가 되는 重商主義적인 여러 규제들을 만들어 낸 것이다⁸⁶⁾.

분명하고 단순한 自然的 自由의 體系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市場價格機構이고 이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理性이나 자비심이 아니라 自愛心(self-love)이다⁸⁷⁾. 그러나 이 自愛心은 무절제한 利己心이 아니다. 무절제한 利己心은 추악한 탐욕이며 이는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 따라서 추악한 탐욕이 발로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사회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經濟的 自由主義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自由로운 市場價格機構이며 둘은 개인이나 집단의 무분별한 탐욕의 횡포를 견제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86) WN에서 언급한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부당한 탐욕에 관한 예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지배계급의 비열한 좌우명이며(WN 上, p. 396), 중국에서 官僚들은 法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며(WN 上, p. 101), 기득권층은 유익한 제도개선에 반발하며(WN 上, p. 448), 관리들은 필연적으로 부패하여(WN 下, p. 135), 徵稅 請負人들은 백성들의 과산에 상관하지 않고 가혹하게 세금을 걷으며(WN 下, p. 397), 고용주들은 임금인상을 저지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담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WN 上, p. 73), 동업자들은 만나기만 하면 대증을 기만하여 가격을 인상시킬 음모를 꾸미며(WN 上, p. 134), 고용주들은 사회의 이익보다 자기계급의 이익을 더욱 고려하며(WN 上, p. 253), 독점이익을 위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만든다(WN 上, p. 254). 自治市의 상공업자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비싸게 팔기 위하여 공급을 제한하며(WN 上, p. 130), 상인들과 제조업자들의 당치도 않은 질투심은 국왕과 대신들의 변덕스러운 야심보다도 더 유럽평화에 치명적이었다(WN 上, p. 470).

87) '모든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 하는 자연스러운 노력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실토록 허용하면 너무나 강력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다른 아무런 도움없이 그것만으로서도 사회에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이 만든 法(human laws)의 어리석음에 의해 그것의 작동을 방해하는 수많은 부적합한 방해물들을 극복할 수 있다(WN 下, pp. 39~40).

自由放任主義는 前者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스미스의 自由主義는 前者와 함께 後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後者가 마련되어야만 前者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스미스의 생각이었다.

스미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市場價格機構는 각 개인의 私益追求를 사회전체의 이익증대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가격기구하에서 개인간의 경쟁이 활발할수록 시장가격기구의 생산성은 더욱 높아진다. 결국 스미스가 보여준 自發的인 自由의 體系는 市場價格機構이며 이 체계의 성과는 경쟁의 정도에 비례한다. 이 경쟁은 私益追求의 경쟁이다.

그러나 이러한 私益追求의 競爭은 公正한 규칙을 지키는 한에서만 시장가격기구를 통하여 사회의 이익증진으로 전환된다. 만일 그렇지 않고 市場參與者가 규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의 정당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면, 私益은 公益을 훼손시킬 것이다. 市場價格機構下에서 私益追求가 公益增進으로 연결되느냐의 여부는 경쟁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경쟁주체들이 경쟁의 규칙을 준수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쟁의 공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自愛心은 추악한 貪慾으로 타락하며 사회의 해악이 된다. 따라서 市場經濟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自由主義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公正한 경쟁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회적 장치를 '公正한 競爭秩序'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분별한 탐욕의 횡포를 견제하는 사회적 장치'란 바로 이 公正한 競爭秩序라고 볼 수 있다. 이 公正한 競爭秩序가 전제되어야만 市場價格機構를 통하여 私益과 公益이 일치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제시하여야만 自由主義가 완결될 수 있다.

스미스는 公正한 경쟁질서의 내용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獨占의 철폐와 확립이요, 두번째는 公正한 法秩序의 확립이다⁸⁸⁾.

나. 獨寡占의 철폐와 競爭體制의 확립

개인의 탐욕을 징계하고 예방하는 社會的 裝置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競爭 그 자체이다. 競爭이란 선택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요,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면 부당하게 이익을 채우려는 개인이나 집단은 선택에서 도태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競爭이 존재하지 않아서 피해를 받는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탐욕이 발휘될 수 있다. 競爭은 부당한 탐욕의 발로를 막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競爭의 효과는 비단 경제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발휘된다. 스미스도 이 점을 누누히 강조하였다.

<獨占의 폐해>

스미스가 공격한 重商主義政策의 주요한 특징은 獨占이었다. 스미스가 비판한 獨占은 생산자(내지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獨占만이 아니라 여러 생산자들간의 談合에 의한 獨占도 포함한다. 스미스가 비난한 重商主義的인 규제와 특혜는 대부분 獨占의 商工人들과 결부되어 있었다. 重商主義政策은 정부와 결탁한 일부 상공인들에게만 對外貿易과 도시에서의 商工業에 대하여 배타적인 영업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重商主義時代에 주요한 商工業은 모두 정부로부터 배타적인 영업권을 획득한 소수의 商工人들이나 집단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스미스의 중상주의적 규제에 대한 대부분의 공격은, 貿易規制에 있어서도 植民地 경영

88) TMS에서 스미스가 분석한 倫理도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을 제어하는 중요한 장치일 것이다. 그러나 WN에서 스미스가 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는 경쟁과 公正한 法秩序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에 있어서도, 獨占에 대한 비판과 결부되어 나타났다.

스미스가 비판한 獨占은 모두 정부의 규제에 의하여 형성된 人爲的인 獨占이다. 이 점이 주로 規模의 經濟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대의 獨占과 다른 차이점이다. 따라서 스미스는 獨占,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에 의하여 부여되는 獨占權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스미스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현대 경제학에서 지적하는 獨占의 폐해를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첫째, 獨占은 供給을 제한하여 價格을 과다하게 높임을 지적하였다. 스미스에 의하면 독점이 없는 경쟁시장에서는 상품가격이 장기적으로는 '自然價格'⁸⁹⁾(natural price)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이윤을 높이기 위하여 獨占은 商品供給을 제한하여 價格을 自然價格 이상으로 높인다⁹⁰⁾.

둘째로 獨占은 國民所得과 貯蓄을 감소시키며 이 결과로 경제성장이 감퇴됨을 지적하였다. 스미스는 국민소득을 賃金과 利潤(및 利子)과 地代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이 각 구성요소가 獨占에 의하여 모두 축소된다고 보았다. 우선 임금을 보면, 獨占은 貿易規制와 동일하게 특정한 부문의 利潤率을 인위적으로 높임으로써 資本이 비

89) 이는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競爭市場에서의 長期均衡價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正常利潤을 포함한 要素費用과 일치한다.

'상품가격이 토지에 대한 지대, 노동에 대한 임금 및 그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가져가는 데 투하된 자본에 대한 이윤을, 각각의 자연적 수준에 따라 지불하는 데 과부족이 없다면, 그 상품은 이른바 自然價格으로 판매되는 것이다.'(WN 上, p. 61 ; 김수행의 번역을 조금 고침)

90) '個人이나 商社에 허가한 독점은, 상업이나 제조업에서 비법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 독점자는 시장을 끊임없이 供給不況의 상태를 유지하고, 有效需要(effectual demand)를 결코 충족시키지 않음으로써, 그들 상품을 자연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그들의 수익을, 그것이 임금이든 이윤이든, 자연적인 수익률보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올린다'(WN 上, pp. 67~68 ; 김수행 譯을 부분적으로 고침).

효율적인 이러한 부분으로 투자되게 하여 사회의 총생산을 감소시킨다. 이 결과로 국민들의 소득과 저축이 감소되고 사회의 총자본이 감소됨에 따라 고용이 축소되어 임금은 감소한다(노동을 고용하는 것이 資本이라는 스미스의 관점을 상기하라). 다음 獨占은 地代도 축소시킨다. 자본이 농업에서, 獨占權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일부의 상공업으로 유출되고 이 결과 土地改良에 대한 投資가 축소하므로 농업에서의 地代가 감소한다. 끝으로 利潤에 대한 효과를 보면, 獨占으로 利潤率은 높아질지 모르나 위의 임금에서 고찰한 이유로 인하여 자본축적이 감소하므로 자본전체의 이윤총액은 감소한다. 이상과 같이 賃金, 地代, 및 利潤의 크기가 모두 감소하므로 국민소득(스미스는 국민소득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이 감소하고 저축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축소된다(WN 下, pp. 109~110).

세번째 獨占의 폐해는 '節約의 美風'(parsimony)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이것이 독점의 다른 모든 피해를 합친 것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이라고 보았다⁹¹⁾. 獨占은 돈을 쉽게 벌게 하고, 쉽게 번 돈은 쉽게 낭비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구절은 1990년을 전후하여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분분하였던 소위 過消費의 문제를 상기시켜주어 무척 흥미롭다.

쉽게 들어 온 것은 쉽게 나간다는(light come light go) 속담처럼 통상 어디서나 씹씹이는 소비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즉 재산의 정도; 필자주)이 아니라 소비할 돈을 얼마나 쉽게 벌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 같다(WN, p. 613).

91) '..... 이 모든 나쁜 영향을 합한 것보다 더 치명적인, 그러나 경험으로 판단한다면 고이윤율에 기인하는 나쁜 영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독점으로 인한; 필자 첨부) 高利潤率은, 상인의 속성상 매우 자연스러운 절약의 미풍을 파괴한다'(WN 下, p. 110).

고용주인 상공인들이 절약하지 않고 호화사치에 낭비하면 '그 나라의 자본은 증가하기는커녕 감소하며 그리하여 그 나라에 고용된 생산적 노동량은 점점 작아져 가기'(WN 下, p. 111) 때문이다.

끝으로 독점은 기업가들의 불성실한 경영을 초래한다. '독점은 훌륭한 經營의 敵이다'(WN 下, p. 153). 왜냐하면 기업가들은 경쟁의 상태에서만 자기방어를 위하여 열심히 경영에 노력하기 때문이다(WN 上, p. 153).

<競爭의 利益>

개인이나 집단의 부당한 탐욕의 발로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 스미스가 WN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競爭의 確立이라고 생각된다.

스미스는 우선 경쟁의 증대는 상품가격을 하락시키므로, 종전에 독점의 혜택을 누리던 공급자들은 손해를 보지만 사회일반은 이익을 보게 됨을 지적하였다.

경쟁의 증대는 職人の 資金뿐만 아니라 匠人の 이윤도 저하시킬 것이다. 따라서 사업과 기술과 비법(여기서는 실제로 장인과 직인과 도제를 가리킨다) 모두가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모든 수공업제품들이 싸게 시장에 공급될 것이므로 사회일반은 이익을 볼 것이다(WN 上, p. 129).

또한 경쟁은 기업주의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촉진시켜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왜냐하면 훌륭한 경영은 자유롭고 보편적인 경쟁(이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방어를 위해 훌륭한 경영을 채택하도록 강요한다)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보편적으로

확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WN 上, p. 153).

경쟁은 기업주의 경영만이 아니라 피고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게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자신이 정한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직장 내에서의 동료간의 경쟁이 가장 효과적인 자극제이기 때문이다(WN 下, p. 225).

競爭의 이익은 비단 경제만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나타난다. 경쟁이 영국 司法制度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그는 지적하였다(WN 下, p. 219). 교육에서도 경쟁이 발전의 중요한 촉진제이다. 대학간에 경쟁이 존재하여야 각 학교가 발전하고 교수들간에도 경쟁이 존재하여야 교수들이 강의에 열성을 보이게 된다(WN 下, p. 257). 경쟁은 宗教에도 필요하다. 각 교파가 소규모이고 교파수가 충분히 많다면 공공안녕을 해치는 종파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WN 下, p. 285).

이상에서 살펴본 경쟁의 긍정적 효과는 사회적으로 보아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부당한 탐욕을 징계함으로써 경쟁 참여자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 질서를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효과이다. 부당한 이윤을 얻기 위해서 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품질을 불량하게 만드는 생산자는 수요자들의 선택에서 제외된다는 징계를 받고 도태된다.

둘째는 動機賦與效果(自發性 誘發效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경쟁이 존재하면 경쟁에 낙오되지 않기 위하여 경쟁 참여자들은 누가 감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각자의 일에 열성을 다하게 된다. 경영자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경영을 합리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고용인들이 동료와의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 교수가 강의와 연구에 열성을 다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경제의 성과는 각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충실히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경쟁은 自發性을 유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自發性은 경제의 성과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발성이 없이 他意에 의하여 감시와 감독으로 강요하여 각자의 일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는 자발성이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성실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감시와 감독에 따른 費用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발성이 있을 경우에 비한 誠實度의 부족으로 인한 生産性의 감소에 감시와 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것을 '強制費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社會主義에 대한 資本主義의 우월성의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強制費用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⁹²⁾.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경제가 와해된 주요 원인의 하나는 '強制費用'이 사회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여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 公正한 法秩序의 확립

스미스는 WN에서 公正한 法制度의 확립을 강조하였다.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私有財產權의 확보이다.

스미스는 각자 열심히 하면 일한 만큼 자기 몫을 갖는 것이 正義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였다. 均等分配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의 성과

92) 슐레히트도 사회주의 경제붕괴의 원인에 관하여 이와 비슷한 점을 지적하였다. '경제적 영역에서 경쟁의 통제기능 또는 경쟁의 기능이 없고, 또한 정치적 영역에서 법치국가적 질서가 없으면 권력자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권력자들도 역시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이 아니다. 관직의 남용, 신뢰의 남용, 거창한 감시제도 및 비밀경찰제도, 간단히 말해서 개인에 대한 국가관료들의 지배는 경제의 추진력을 마비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소멸시키는 등 온갖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비현실적인 인간관의 필연적인 귀결이다.'(Otto Schlecht, 안두순 외 역, 1990, pp. 84~85)

를 향유하는 것이 分配正義⁹³⁾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分配正義가 보장될 때에만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게 되어 경제가 발전하고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는 쇠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分配正義를 보장하는 것이 私有財産權의 보장이다. 이러한 스미스의 입장은 영국 경제발전의 원인을 설명하는 다음의 구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영국의 법률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성과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온갖 불합리한 상업 규제들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번영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WN 下, p. 39).

반면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제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司法制度가 없었기 때문에 쇠퇴하였다.

그러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제적 쇠퇴에 대하여: 필자주)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부정부패하고 편파적인 司法이었다. 이러한 사법은 손해를 입은 채권자의 고발로부터 부유하고 세력있는 채무자들을 종종 보호하였으며, 국민

93) 분배에 관한 스미스의 견해는 보수적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각자가 노력한 결과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분배정의라고 보았으며, 사후적인 所得再分配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사치품에 대한 高率의 課稅를 지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초등교육을 국가의 임무라고 보았을 뿐이다. 이 밖에는 어떠한 재분배정책도 그가 주장한 것을 찾을 수 없다. 그는 상공업이 발달하여 각자 독립적인 생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 빈곤을 타파하는 길이라고 보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그의 보수적인 견해는, 앞의 제2절의 1에서 본바와 같이, 비참함까지도 포함하여 사회는 선을 이룬다고 보는 스토티아 학파의 자연조화설을 그가 신봉한 것과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중 열심히 일하는 자로 하여금 이들 거만하고 권력있는 사람들의 소비를 위해 상품을 만들기를 두려워하게 하였다. 이 사람들에게는 감히 외상판매를 저절할 수가 없고 또 이들이 나중에 값을지 안 값을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WN 下, p. 108).

私有財産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公正한 法秩序이다. 公正한 法을 제정하고 집행하여 私有財産權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미스가 생각한 政府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올바른 재판이 없고, 사람들이 재산에 대하여 안전을 느끼지 못하며, 계약의 준수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국가의 권위가 지불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데 규칙적으로 사용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어떤 나라에서도 상업과 공업이 오랜 기간 번성할 수 없다. 요컨대 商工業은 政府의 公正性에 대한 신뢰가 없는 나라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WN 下, p. 405).

『道德感情論』에서 스미스는 모든 사람에게 준수가 강요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正義가 法이라고 하였다. 경제에서 이 正義는, 각자 자신의 노력의 성과를 향유하는 分配正義이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로 政府이며(이때의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모두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公正한 政府란 바로 分配正義를 실현하며 法秩序를 확립하는 政府이다.

私有財産의 보호와 관련하여 스미스가 지적한 것 중에서 우리에게 의미있는 것 중의 하나는 王 내지 정부권력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스미스에 의하면 영국은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하는 데에 편리한 섬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常備軍의 규모가 적었으며 이 때문에 王權이 유럽대륙의 나라들보다 약하여 의회와 사법부가 일찍부터 王權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영국에서는 王과 정부의 착취(주로 가혹한 세금을 통한)가 억제되고 私有財産權이 확보된 것이,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 전제군주제의 국가와는 달리, 영국의 상공업이 발전한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LJ, pp. 265~269, 420~422).

이와 연관해서 스미스가 司法府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법권이 행정권과 통합되어 있을 때에는, 재판이 정치라고 속되게 불리우는 것에 자주 희생되는 일은 거의 피할 수 없다. 국가의 큰 이익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비록 불순한 의도 때문은 아니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때때로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개인의 자유와 개인들이 그의 '安全'에 관하여 느끼는 생각은, 공평무사한 재판에 달려 있다. 모든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권리를 완벽하게 확실히 보유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사법부는 행정부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엄격히 독립해야 한다(김수행 譯을 다소 고침; WN 下, pp. 220~221).

라. 國防

司法(治安 포함)이 對內 구성원들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財産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개인을 보

호하는 國防은 司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스미스는 重商主義의 貿易規制를 모두 비판하였으나 예외적으로 「航海條例」는 찬성하였다⁹⁴⁾ (또 하나 스미스가 인정한 예외는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였다). 스미스는 國防이 풍요보다(즉 경제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해운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 「航海條例」는 현명한 조치라고 인정하였다(WN 上, pp. 440~442). 국방이 경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私有財産에 대한 安全의 보장이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생명과 재산의 安全의 보장이 경제발전의 전제라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타당한 명제일 것이다.

2. 公共事業

스미스가 지적한 그 다음의 정부역할은 公共事業이며 이는 社會間接資本과 教育으로 구성된다.

가. 社會間接資本

스미스에 의하면 商業의 발달에 필요한 도로, 교량, 운하, 항구, 우체국의 교통·통신시설, 즉 社會間接資本의 건설과 운영을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⁹⁵⁾. 이러한 社會間接資本의 건설과 유지를 정부가 담당해야 되는 것은, 이들의 건설과 유지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비용보다 크지만 민간에게 맡기면 비용이 보상되지 않기 때문임을 스미스는 지적하였다. 外部經濟나 外部效果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社會間接資本에는 外部效果가 존재함을 그는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94) 앞의 제3절의 3을 참조하라.

95) 公共施設과 公共事業에 스미스는 이 밖에 貨幣鑄造를 포함시킨 것이 특이하다(WN 下, p. 222).

이러한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은 결코 어느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들의 이익에 적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의 이익이 사회전체에게는 그것의 비용을 보상하고도 남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어느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에게는 결코 비용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WN 下, pp. 184~185 ; 김수행의 譯을 부분적으로 고침)

스미스는 公共事業의 운영경비를 受益者負擔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즉 도로와 운하에는 通行料를, 항만에는 항만세를, 화폐주조에는 造幣手數料를, 우체국에는 우체국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이러한 방법의 비용조달은 두 가지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나는 이득을 본 것에 대한 대가로 비용을 징수하므로 公平한 租稅라는 점이다⁹⁶⁾. 둘은 불필요한 공공시설의 건설을 방지하여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곳은 사용자가 적은 곳이고 이런 곳은 시설의 건설이 불필요한 곳이다. 따라서 이용료로 비용을 조달하게 하면, 권력자의 별장을 위한 도로건설이나 궁전창문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한 장엄한 교량의 건설과 같은 불필요한 건설을 막을 수 있다.(WN 下, p. 223)

스미스는 또한 이용료를 차등부과함으로써 所得再分配效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사치스러운 마차에 대하여서는 필수적인 마차보다 훨씬 더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貧者들의 구제에 필

96) '그러므로 이 세금(통행료, 항만세 등 수익자부담에 따라 징수되는 요금 ; 필자 주)을 궁극적으로 지불하는 사람은 이 세금을 지불함으로써 얻는 손해보다 더 큰 이득을 본다. 그가 지불하는 것은 그가 얻는 것에 정확히 비례한다. 사실상 그는 이득의 일부를 지불하는 셈이다. 이것보다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WN 下, p. 223)

요한 財源을 마련하는 데에 좋은 방법임을 지적하였다(WN 下, p. 223).

스미스에 의하면 商業一般을 위한 경우이든 특정한 商業分野를 위한 것이든, 어느 경우에서나 受益者負擔이 公共事業의 경비조달을 위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受益者負擔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無賃乘車者가 없어야 하며, 社會間接資本의 많은 부분에는 이 문제가 발생함은 스미스가 지적하지는 않았다.

나. 貧民의 子弟를 위한 初等教育

교육 특히 庶民層의 자제들을 위한 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파악한 점이 스미스의 업적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스미스는 교육을 靑少年을 위한 교육과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그러나 後者에 관한 논의는 주로 敎會를 통한 교육을 논의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내용이 거의 宗教論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勞働에서의 人間疎外>

스미스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分業으로 인한 人間疎外에서 찾고 있다. 아직 資本主義가 성숙하기 전에 이 점을 일찍 지적한 것에서 스미스의 뛰어난 통찰력을 또한번 엿볼 수 있다⁹⁷⁾.

商工業이 발달하지 않았던 수렵, 목축 및 농업사회에서는 (수렵,

97) 이 점에서도 스미스는 마르크스의 이론적 선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미스는 勞働에서의 人間疎外의 원인을 分業에서만 찾았고 마르크스가 강조 하였던 資本主義 社會에서의 계급구조와는 연결시키지 않았다. 이는 아직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계급분화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던 시대에 스미스가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목축, 농업 및 상업사회의 순으로 사회가 발전한다는 스미스의 사회 발전단계설을 상기하라) 分業과 이에 따른 職業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야만사회에서는 한 개인이 다양한 직업을 갖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능력을 발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발명하게 된다. 창조력은 생생하게 유지되며, 그의 정신은, 문명사회(즉 상업사회 ; 필자 주)에서 거의 모든 下層民들의 이해력을 마비시키는, 줄리는 듯 한 마비상태에 빠지지 않는다.'(WN 下, p. 273 ; 김수행 譯을 조금 수정함)

그러나 상업사회(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분업이 발전하게 되어 하층노동자들은 일생동안 주어진 단순한 작업에만 종사하게 되며, 따라서 思考力은 退化하고 人間性은 고갈된다. 노동자의 기술은 이러한 희생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으면 勞動貧民인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필연적으로 빠지게 된다. 다음의 문장에서 스미스의 관찰이 얼마나 예리한가를 실감할 수 있다.

分業의 발전에 따라, 노동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즉 대부분의 국민들의 직업은 몇 가지의 단순한 직업, 종종 하나 또는 두 가지 직업에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해력은 그들의 일상적인 업무에 의해 필연적으로 형성된다. 그것의 영향(effects)도 항상 같거나 거의 같은 몇 가지의 단순한 작업에 일생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데에 그의 이해력을 발휘하거나 그의 창조력을 행사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그는 자연히 그러한 노력을 하는 습관을 잃게 되고,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 가장 둔해지고 무지해진다. 정신이 마비상태에 빠져 그는 어떠한 이성적인

대화를 즐기거나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그럽고 부드럽고 고상한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사적인 생활에서의 일상적 의무의 대다수에 관하여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그는 자기 나라의 중대하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에 관해 전혀 판단할 수 없으며, 그것을 그렇지 않게 만들려는 특별한 노력이 없다면, 그는 전쟁시에 자기 나라를 방어할 수도 없다. 그의 생활이 단조로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는 자연히 용기도 잃게 되며,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하고 모험적인 군인생활을 꺼리게 된다. 또한 육체의 활발한 활동이 불가능하며, 그때까지 그가 배워온 직업 이외의 어떤 직업에서도 활기있고 참을성 있게 그의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의 특수한 직무상의 솜씨(dexterity)는 지적, 사회적 및 군사적 덕목을 희생해서 획득되는 것 같다. 발달한 모든 문명사회에서는, 정부의 방지노력이 없는 한, 勞動貧民 즉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필연적으로 빠지게 된다.(WN 下, pp. 272~273)

이러한 人間性의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靑少年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勞動貧民層의 靑少年들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왜냐하면 上流層은 그들의 부모에 의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庶民들의 부모는 자식들을 교육시킬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庶民들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그들은 교육을 받을 여가가 거의 없다'.(WN 下, p. 275)

스미스는 국가가 각 교구나 지역에 작은 학교를 설립하여 노동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적은 수업료를 받고 읽기, 쓰기 및 셈하기 등의 기초교육을 가르칠 것, 그리고 이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義務教育으로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다⁹⁸⁾.

스미스에 의하면, 이러한 교육이 서민들의 정신과 정서를 고양시

켜서 인간성의 불구를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국가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무식한 국민들 사이에 광신과 미신 때문에 발생하는 무서운 無秩序를 예방하며, 국민들에게 예의와 질서를 지키고 자존심을 가지게 하며, 상관에게 순종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정부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반항을 보다 적게 만든다.(WN 下, pp. 278~279)

그러나 스미스는 서민들 자제를 위한 국가의 의무교육에 있어서도 다른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無常敎育과 교사들의 봉급의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

無常敎育과 교사봉급의 全額支援은 교사들을 나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WN 下, pp. 275~276)

3. 金融規制

지금까지 보아온 公正한 競爭秩序의 확립과 公共事業은 정부가 民間經濟部門에 介入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은 담당하지 않고 정부만 담당하는, 경제에서의 政府의 고유한 역할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정부의 두 기능을 인정한다고 政府가 民間經濟 내지 市場經濟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民間經濟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스미스의 기본입장이다. 民間經濟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스미스의 自由主義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外部效果가 존재하는 金融에 대해서는 개입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다. 스미스는 사회의 信用制度의 安定을 위해서는 민간이 운용하는 金融部門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外部效果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산업이 金融業이다. 금융기관의 도산은 수많은 예금자들

98) '국가는 사람들에게 동업조합의 입회자격을 얻기 전에, 또는 마을이나 自治都市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허가받기 전에 읽기, 쓰기, 셈하기에 관한 시험이나 검사를 받게함으로써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런 필수적인 교육을 습득하는 것을 義務敎育으로 부과할 수 있다.'(WN 下, p. 276)

의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스미스는 銀行의 과도한 대출을 금하는 規制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아래 문장에서 防火壁은 분명히 外部效果를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몇몇 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행사는, 가장 자유로운 정부이든 가장 전체적인 정부이든, 모든 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또 제한되어야만 한다. 불길의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벽을 쌓게 하는 법률은 자연적 자유의 침해지만, 여기에서 제안하는 은행업의 규제와 정확히 동일한 종류의 침해이다.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銀行이 일정한 支給準備金을 보유해야 하는 것도 그는 인정하였다(WN 上, p. 503). 그는 또한 과도하게 높은 金利는 사치적 낭비와 위험한 投機에만 주로 쓰이므로 法定金利가 最低市場利子率보다 너무 높으면 안된다고 金利規制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였다(WN 上, p. 343).

外部經濟가 있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로 스미스가 지적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영국이 아메리카 식민지로부터의 造船用 原材料의 輸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이 조치로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영국으로 木材와 철강제품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이 결과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삼림벌채가 촉진되었으며 이는 農耕地 開墾이라는 중요한 外部經濟를 창출하였다. 목재와 철강제품의 수출이 삼림벌채를 촉진시킨 것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였다. 하나는 수출용 목재를 얻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 하나는 철강산업에서 연료로 쓰이는 나무를 채취하기 위해서였다(WN 下, pp. 79~80). 그러나 이 경우는 수입규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外部經濟를 낳았음을 지적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輸入規制 자체를 찬성한 것은 아니다. 식민

지와의 무역을 포함하여 모든 貿易에 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貿易을 自由化하여야 한다는 것이 스미스의 입장이었다.

결국 信用制度의 安全을 위하여 金融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만을 예외로 하고, 民間經濟는 일체 規制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스미스의 입장이었다고 생각된다.

第 5 節 評 價

근대 경제학의 始祖인 아담 스미스는, 비단 經濟學뿐만 아니라 神學, 倫理學, 歷史學 및 法學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거대한 학문 체계를 이룩하였다. 이처럼 그의 학문체계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의 경제학만 보아서 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 章에서도 우리는 그의 神學, 倫理學 및 法學을 개관한 연후에 그의 경제학을 自由主義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이제 그의 학문체계를 基本思想과 方法論을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그의 학문체계는 실로 방대하지만 전체가 서로 상호 首尾一貫되게 잘 정돈되어 있다. 스미스가 보여주고자 하였던 基本的인 思想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自然에서와 마찬가지로 人間社會에도 神의 섭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自然的 질서가 존재하며 이 질서는 인류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 이 자연적 질서는 正義에 입각한 自然的 自由의 질서이다. 이 자연적 자유의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重商主義의 인 모든 규제들을 철폐하여 市場經濟를 확립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公正한 競爭秩序를 확립하여 개인의 不當한 貪慾의 발로를 방지하는 것이다.

公正한 競爭秩序는 다시 두 가지의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政府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든 獨寡占을 철폐하여 競爭體制를 확립하

는 것이요, 둘은 公正한 法秩序(法治主義)를 확립하는 것이다. 公正한 法秩序란, 개인의 재산이 執權者나 他人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私有財産制度를 확립하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면 私益이 公益과 일치하게 되며 이에 따라서 가장 강력한 人間本性인 自愛心이 原動力이 되어 市場機構를 작동시킴으로써 경제가 순조롭게 자연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이 경제발전의 가장 빠른 길이다.

스미스가 주장한 구체적인 주장은 규제철폐, 경쟁촉진 및 公正한 法秩序의 확립 세 가지이다. 이것들은 오늘날까지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현시점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制度改革의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라고 생각된다.

우선 가능한 한 정부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共感을 얻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경제는 스미스가 비판한 重商主義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가 각종의 수많은 규제를 만들어 민간부문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스미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규제들을 철폐하면 自愛心이라는 가장 강력한 人間本性이 경제발전의 原動力으로 작동할 것이다.

다음 競爭促進도 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개혁의 하나이다. 스미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정부가 조성한 獨寡占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만든 수많은 인위적인 進入障壁들을 철폐하여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은 현 우리 경제에 가장 절실한 제도개혁의 하나이다.

公正한 法秩序의 확립(法治主義의 확립)도 현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제도개혁의 하나이다. 스미스가 말한 公正한 法秩序의 핵심은 私有財産權을 확립하여 모든 국민이 각자 자신의 노력에 따르는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즉 각자 일한 만큼 몫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分配主義의 확립을 의미한다. 스미스가 이를 주장한 것은 이것 없이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도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 의한 개인재산의 침해가 많았으므로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된다.

스미스의 公正한 自由主義는 무분별한 방종을 의미하지 않았다. 스미스는 경쟁질서와 공정한 法秩序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公正한 경쟁질서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스미스의 自由主義는 독과점이 없으며 모두가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들간의 자유경쟁을 주장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政府 역할에 대한 그의 분석도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경쟁 촉진과 法秩序의 확립이라는 公正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며, 公共事業과 庶民教育을 담당하며, 信用秩序의 확립을 위하여 金融機關에 적절한 규제를 부과한다는, 그가 생각한 정부역할은 오늘날에도 모두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方法論에서도 스미스는 탁월하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하나는 그의 경제학이 人間에 대한 깊고도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와 사회에 대한 그의 수많은 예리한 통찰은 인간본성에 대한 그의 정확하고 깊은 理解에서 나온다고 생각된다. 重商主義의 비판과 資本主義의 분석은 모두 이를 기초로 하고 있다. 一例로 그가 무제한의 자유를 주장하지 않고 公正한 規則下의 자유를 주장한 것도 이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人間은 없고 模形만 존재하는 機械的인 思考方式에 현대의 經濟學이 빠져 있는 것은 人間에 대한 통찰을 경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항상 구체적인 인간을 염두에 두고 경제를 분석한 스미스의 方法論을 현대 경제학은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스미스의 경제분석이 항상 공허하지 않고 생생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항상 歷史的 高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

문이다. 그의 모든 저술과 강의, 특히 『法學講義錄』과 『國富論』의 내용의 대부분은 歷史的事實의 분석으로 채워져있다. 그는 歷史的事實의 고찰에서 자신의 이론을 추출하고, 歷史的事實을 관찰함으로써 이를 다시 검증하였다. 그의 저술이 강한 설득력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역사적 분석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는 모든 시대에 타당한 普遍的인 命題(예컨대 交換의 利益과 競爭의 效果)와 각 구체적인 사회나 시대에만 유효한 特殊한 命題(예컨대 分業으로 인한 人間性的의 喪失과 庶民教育의 必要性)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성숙한 資本主義를 보지 못하였던 스미스의 自由主義는 資本主義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理神論의 自然調和說에 입각한 그의 경제학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하여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이다. 그는 흔히 市場의 失敗라고 불리는 자본주의의 중요한 구조적 문제 세 가지를 보지 못하였다. 이 세 가지를 들면, 첫째 資本의 集中과 集積에 의한 獨寡占化의 문제, 둘째 所得分配의 문제 즉 貧富兩極化의 문제, 셋째 不況과 그에 따른 大量失業의 문제이다.

그가 비판하였던 獨占은 오늘날에 볼 수 있는 資本의 집중과 집적으로 인한 기업의 대규모화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獨占權 부여 때문에 발생한 制度的 내지 人爲的 독점이었다. 그는 기업의 대규모화에 따른 독과점화는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석하지 않았다. 다음 그는 가난한 노동자들은 동정하였으며 累進稅를 찬성하였으나⁹⁹⁾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대하여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所得再分配政策 내지 福祉政策의 필요성에 대해

99) '부자들이, 그들의 수입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공공지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크게 불합리한 일이 아닐 것이다'(WN, p. 842).

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不況에 관하여서도 그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市場經濟秩序에 대한 肯定的인 평가는 消極的인 것과 적극적인 것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消極的인 肯定的 評價란, 市場經濟를 긍정하긴 하지만 理想的인 것으로 보지는 않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不完全한 제도임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다른 경제질서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나은 경제질서라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대부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市場經濟에 積極的인 肯定的 評價란 市場經濟가 제대로만 실현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理想的 經濟질서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스미스는 後者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스미스는 시장경제질서란 神이 만든 질서로서 사회의 조화로운 운행을 보장하며 인간의 물질적 풍요를 극대로 만드는, 完全한 제도라고 보았다. 이처럼 지극히 낙관적인 생각은 그가 이러한 문제들을 생전에 목격하지 못하였던 데에도 기인하지만은(貧富隔差는 그도 보았다) 또한 그의 哲學(神學)인 自然調和說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리고 이는 다시 당시 새로운 지백계층으로 부상하던 영국의 상공인들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평생 경제적으로 유복하였던 그의 순탄한 생애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현실의 資本主義의 발전을 보면 資本主義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는 타당하지 못하며 소극적인 평가가 옳바르다고 생각된다.

第 2 章 오이켄의 秩序自由主義

2차대전 이후 서독경제의 놀라운 발전을 뒷받침한 정책이념이 秩序自由主義(Ordo Livialismus, order livalism)였고 이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오이켄¹⁾(Walter Eucken : 1891~1950)이었다. 秩序自由主義는 스미스의 古典的 自由主義와 달리 市場經濟가 效率的으로 작동하고 경제와 사회의 自由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人爲的인 秩序가 필요하고 이 秩序는 國家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아담 스미스의 古典的 自由主義는, 公正한 法秩序의 確立(司法, 治安, 國防)과 社會間接資本(交通網과 초등교육)은 정부가 담당하여야 하지만 市場經濟는 자유롭게 방치하면 순조롭게 운행될 것이라

1) 오이켄의 생애는 다음과 같다.

- 노벨償 수상자(1908)였던 저명한 哲學者 Ludolf Eucken(1846~1926)의 아들로 태어남(1891).
- Kiel대학에서 수학.
- Bohn대학에서 학위 받음.
- Tübingen대학 교수(1925~27)
- Freiburg대학 교수(1927~50)
- 法學者 Hans Grossmann Dört와 Franz Böhm과 더불어 Freiburg學派를 설립하고 『經濟의 秩序』라는 총서(4冊)를 발행(1936~1937).
- 主著의 하나인 『國民經濟의 基礎』(Die Grundlagen der National konomie) 출판(1940).
- 2次大戰後 Erhart의 經濟諮問委員會 委員.
- Freiburg學派年報 *Ordo* 창간(1948).
- London大에 특별강의차 영국에 방문하였다가 병을 얻어 급서(1950년 3월 20일).

고 보았다. 이는 市場價格機構의 完全性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었다. 스미스의 古典的 自由主義는, 市場經濟에는 價格機構라는 神이 만든 自然的인 秩序가 존재하므로 市場經濟에 따로 인위적인 秩序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는 그가 자본주의 경제가 성숙되기 이전의 시대에 살았었기 때문에 不況과 失業, 供給갈등, 資本의 集中, 인플레이션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미스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 오이켄(Walter Eucken; 1891~1950)이다. 오이켄 역시 自由市場 經濟의 우월성을 믿은 自由主義者였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자본주의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인식할 수 있었던 시대에 살았던 오이켄은 스미스와는 달리 市場經濟를 방치하면 저절로 바람직한 성과가 나타날 수 없고 인위적으로 조성된 일정한 社會·經濟的인 秩序下에서만 市場經濟는 自由와 풍요를 실현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秩序를 만드는 것이 국가 정책의 목표라고 보고, 이러한 秩序의 건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오이켄은 아담 스미스와는 달리, 시장경제에는 資本의 集中으로 인하여 獨占化의 경향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²⁾. 즉 아담 스미스는 公權力(國家權力)에 의한 자유의 침해만을 문제삼은 데에 반하여 오이켄은 이에 덧붙여 私權力(獨占資本)에 의한 자유의 침해를 동시에 문제삼았다.

英美의 경제학에서 制度는 주어진 것으로 보고, 주어진 제도하에서의 경제주체들의 행위와 그로 인한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여 왔다. 따라서 制度 자체는 英美 經濟學에서 분석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이

2) 스미스도 독점을 비판하였으나 그가 비판한 독점은 重商主義 시대에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정부의 규제에 의한 독점이지 시장경제에서 자본의 집중으로 인한 독점은 아니었다.

켄을 중심으로 하여 1940년대에 독일에서 발생한 秩序自由主義者들은, 이에 반하여 인간의 경제활동을 규정하는 사회적 여건인 制度 그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自由와 풍요를 낳을 수 있는 바람직한 社會·經濟的 秩序가 무엇인가를 모색하였다.

오이켄은 經濟에서의 政府의 역할은 公正한 競爭秩序를 확립하는 것에 한정시키고 민간의 經濟活動 그 자체에는 介入하지 말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自由主義 經濟政策에서의 政府의 역할에 대한 原理로서 오늘날 우리 경제에도 타당한 보편적인 명제라고 생각된다.

第 1 節 歷史的 背景

20세기 중반까지 살았기 때문에 오이켄은 스미스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市場經濟의 不完全성이요, 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던 여러 가지의 政策代案들이며 셋은 경제이론의 발달이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産業革命은 그 후 유럽과 미국으로 전파되어 19세기 歐美에서는 資本主義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資本主義의 발달로 이들 국가에서 商工業이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나 동시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주기적인 不況³⁾과 失業,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계급갈등⁴⁾, 資本의 集中과 이에 따른

3) 1825년에 최초로 공황이 발생한 이래 약 10년을 주기로 歐美에 공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1873년부터 1896년까지 불황이 오래 지속되어 이 기간을 '大恐慌期'(The Age of Great Depression)라고 부른다. 그 후 1929년에 발생하여 30년대 전기간에 걸쳐 '大恐慌(The Great Depression)'이 진행되었다.

獨占化⁵⁾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운용으로 인한 문제(예컨대 인플레이)도 발생하였다. 현실경제에서 발생한 이러한 여러 문제들은 오이켄으로 하여금 일정한 經濟秩序⁶⁾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였다.

오이켄의 조국 독일은 이 중에서도 獨寡占化와 인플레이를 매우 혹독하게 경험하였다. 1870년 이후 독일에서 金融資本의 주도하에 거의 대부분의 重化學工業에서 독점이 형성되었다. 또한 일차대전 이후의 독일의 바이마르 共和國의 인플레이는 歷史上 가장 심한 超인플레이의 전형이었다. 이 때문에 오이켄은 독점금지과 물가안정을 강조하게 되었다.

현실의 자본주의 경제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古典的 自由主義 政策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이론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채택되어 나타났다. 이 대안들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資本主義 자체를 부정하는 社會主義 이론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가 1917년 10월 혁명으로 소련에 실제로 건설되었다. 소련에서는 生産手段(工場과 農場)이 모두 國有化되고 生産과 分配는 기본적으로 中央計劃當局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4) 19세기의 10년대와 20년대에 최고조에 달하였던 영국의 '러다이트 運動'(Luddites Movements)은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폭동과 태업운동이었다.

5) 資本의 集中과 이에 따른 獨占化는 1873년에서 1896년 사이의 大恐慌期에 급속하게 이루어졌었고 독일과 미국에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하면서 가장 심하게 진행되었다. 이들 獨占化는 주로 重化學工業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6) 經濟秩序(economic order, Wirtschaftsordnung)란 쉽게 말하면 경제법률, 경제기구, 경제관행 등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사회적 규범을 말한다. 경제를 운동경기에 비유하면 경제질서란 경기규칙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된다.

資本主義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古典的 自由主義를 비판하고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정책은 1870년대에 대공황이 발생하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870년대부터 保護貿易主義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29년부터 시작된 大恐慌 이후 국가에 의한 경제에의 개입은 일반화되었다. 경제에의 정부개입은 국가마다 형태와 정도가 달랐다. 가장 극단적인 개입은 나치즘하에서의 독일이었다. 나치정부는 노동운동을 압살하고 임금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고 철강과 석탄 등 주요한 공업원료를 정부가 할당함으로써 경제 전체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였다. 나치독일은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말살하는 全體主義的 경제관리의 전형이었다.

나치와 대조적인 것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The New-Deal)정책이었다. 노동 3권에 대한 최초의 국가승인, 통화증대와 공공사업의 확대를 통한 총수요창출로 대표되는 뉴딜정책은 民主主義型 경제개입의 전형을 이루었다.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그 밖의 유럽국가들도 나름대로 독일과 미국의 사이의 중도적인 정책으로 공황을 탈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⁷⁾.

이상과 같이 19세기 이래로 구미 자본주의 경제에는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들이 나타났고 이의 해결을 위해 여러 사상들에 입각한 정책들이 실제로 채택되었었다. 이러한 풍부한 역사적 경험이 오이켄의 사상과 이론에 반영되었다⁸⁾. 특히 1935년 이후 10년간의 나치즘

7) 1936년 프랑스에서 집권한 사회당은 失業 해소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노동자와 농민의 구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임금인상과 농산물시장의 조직화를 실시하고 금융시장의 과점체제를 해체시키는 정책들을 실시하였으나 결과는 실패였다. 영국은 직접적인 개입을 않고 低金利 政策과 失業扶助와 같은 福祉制度의 확충을 통하여 공황에 대처하였다.

을 실제 겪었던 오이켄은 自由를 말살하는 國家統制에 대하여 격렬한 비판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는 그로 하여금 열렬한 自由主義者가 되도록 하였다.

끝으로 近代 經濟學의 발전이 오이켄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스미스 이후 經濟學이 社會科學의 한 분야로 독립되어 근대 경제학의 이론이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市場價格機構를 분석하는 新古典學派의 微視理論이 19세기 후반부터 크게 발전하였으며, 왈라스(L. Walras)의 一般均衡理論으로 고전적인 價格理論이 일단 완성되었다. 이 이론은 完全競爭市場의 效率性과 不完全競爭市場에 非效率性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근대가격이론의 발전은 오이켄으로 하여금 完全競爭市場, 나아가 自由市場經濟를 신봉하게 하였다.

第 2 節 經濟秩序와 經濟過程

英美的 현대 경제학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오이켄의 이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經濟秩序와 經濟過程이다. 정부는 경제 과정에는 직접 개입하지 말고 올바른 경제질서의 형성에만 전념하라는 말로 오이켄의 주장을 요약할 수 있으므로, 이 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구분하는 것이 오이켄의 이론을 바르게 파악하는 첫 걸음이다.

8) 여러 제도와 경험들의 실제 결과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19세기의 사상가들과 달리 思辯의 단계를 벗어나서 경험적 기초위에서 경제정책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음을 오이켄은 말하고 있다(W. Eucken, *Grundsätze der Wirtschaftspolitik*, 1952; 大野忠男 (譯), 『經濟政策原理』, 勁草書房, 1967, p. 21, 이하 『原理』).

오이켄은 資本主義나 社會主義와 같은 개념은 경제와 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방해한다고 보고 經濟秩序라는 개념을 자신의 분석틀로 제시하였다.

1. 經濟過程과 經濟秩序

經濟秩序는 오이켄의 분석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경제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經濟過程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오이켄은 經濟過程(Wirtschaftsprozesse, economic process)이란 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경제과정은 다음의 다섯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⁹⁾. 하나는 노동·토지·原材料와 같은 생산요소들을 각 생산물의 생산에 배분하는 것, 즉 資源配分, 둘은 所得配分, 셋은 現在와 未來間의 資源配分, 즉 저축과 투자의 결정, 넷은 생산기술의 선택, 다섯은 生産地域의 선택이다.

이상의 다섯 국면은 현대 경제학에서 國民所得의 循環過程에 해당하므로 오이켄의 경제과정은 국민소득의 순환과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무방이란 말을 쓴 것은 오이켄의 경제과정은 국민소득 순환과정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경제과정의 예로 인간의 온갖 경제활동을 든 데서 알 수 있다¹⁰⁾. 즉 경제과정이란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경

9) "전체 경제과정은 하나의 통합된 과정이며 모든 기업과 가계는 단지 이의 한 부분을 이룬다. 상이한 종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의 방향, 생산의 시간적 구조, 분배의 본성, 특정한 기술방법의 사용, 그리고 특정한 위치는 모두 함께 결정된다. 이들은 모두 현존하는 재화의 희소성의 충족과 연관되어 있다."

W.Eucken, *Die Grundlagen der Nationalökonomie*, 1940; T.W.Hutchison (trans.), *The Foundations of Economics*, 1950(이하 *Foundations*), P. 22.

10) 예를 들어서 오이켄은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고, 畜舍를 만들고, 나무를 베고 하는 등의 모든 활동을 경제과정이라고 표현하였다(『原理』, PP. 4~5).

제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이켄이 경제활동이라고 하지 않고 經濟過程이라고 한 것은 여건(이 중에서 오이켄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다음에서 설명할 經濟秩序이다)의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경제의 動態的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人間的 慾望, 賦存資源, 勞動力, 과거에 생산한 財貨의 貯量, 技術, 그리고 끝으로 경제주체의 행동에 방향을 주며 그 한계를 결정하는 法律的 내지 社會的 秩序'라는 여섯개의 요소가 경제활동의 여건으로 작용한다.

마지막 항목인 法律的 내지 社會的 秩序에는 法律과 道德, 慣習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간이 생활하며 또한 경기의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精神도 포함한다(『原理』, pp. 511~512). 즉 經濟秩序(Wirtschaftsordnung, economic order)란 인간의 경제활동, 나아가서 경제과정을 규정하는 모든 法, 慣習, 道德, 國民의 의식수준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¹¹⁾. 이와 같이 오이켄의 경제질서는 法이나 契約으로 형성되는 명시적인 制度만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관습이나 도덕과 의식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經濟制度란 말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이켄이 올바른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천적 의미에서 오이켄이 강조하는 經濟秩序는 法으로 규정되는 制度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이켄의 經濟秩序를 협의로 해석하면 인간의 경제활동을 규정하는 明示的인 社會的 制度 전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11) '경제질서는 현재와 과거의 어느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서 발생하는 日常의 경제과정을 실제로 제어하는 形態들의 전체(the totality of forms)로 구성된다'(Foundations, p. 227). 여기서 形態라는 말은 形態學(morphology)의 용어인데 여기서는 사회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오이켄은 形態學을 연구하여 이를 경제학에서의 분류에 많이 이용하였다.

通貨秩序, 土地秩序, 租稅秩序 등 경제의 한 부분의 질서를 오이켄은 部分秩序라고 부르고 이 部分秩序들이 모여서 經濟秩序를 구성한다.

2. 中央管理經濟와 交換經濟

어떤 사회의 經濟秩序는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 그리고 어느 한 경제에는 여러 개의 經濟秩序가 동시에 공존한다. 예를 들어서 현대사회에는 市場經濟秩序가 기본적인지만 동시에, 자기가 경작하는 텃밭과 같이 自給自足的인 경제질서도 존재한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經濟秩序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오이켄에 의하면 가장 순수한 형태의 경제질서는 두 가지의 유형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계획의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고대 로마제국에서 노예가 씨를 뿌리는 것도, 현대사회에서 공장을 짓는 것도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은 반드시 計劃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人間的 경제활동 중 計劃에 의하지 않는 것이 없다'(Foundations, p. 118).

이 점에 착안하여 오이켄은 경제계획의 주체의 수를 기준으로 순수한 형태의 경제질서를 中央管理經濟(Zentralverwaltungswirtschaft, centrally directed economy)와 交換經濟(Verkehrswirtschaft, exchange economy)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中央管理經濟란 경제 내에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경제주체가 하나밖에 없고 이 중앙계획당국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서 경제 내의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를 말한다¹²⁾. 部族長에 의하여 관

12) '중앙관리경제의 특징은 공동체의 모든 일상경제생활이 중앙당국의 계획에 따라서 제어된다는 것이다. 만일 독자적으로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경제주체가 사회에 둘 이상 존재하면 그 사회는 교환경제이다'(Foundations, p. 118).

리되는 村落經濟, 1917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의 소련경제, 나치하의 독일경제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반면에 경제활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둘 이상 있는 경제가 交換經濟이다. 기업과 가계라는 독자적인 계획주체가 수없이 존재하는 현대의 市場經濟는 交換經濟의 전형이다.

交換經濟에는 交換이 이루어지는 市場이 존재하므로 市場經濟라고도 한다. 物物交換經濟와 貨幣經濟가 모두 이에 속한다. 市場經濟는 다시 需要者와 供給者의 數에 따라서 完全競爭市場, 獨占市場, 寡占市場, 寡占下의 需要部分獨占市場 등 모두 25가지의 시장형태가 존재한다¹³⁾.

경제과정을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經濟秩序이다. 과거와 현재에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경제의 질서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것은 위와 같은 순수한 형태의 經濟秩序가 혼합되어 나타날 뿐이다. 현실의 경제과정을 규정하는 것은 경제질서이다. 흔히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로 경제체제를 분류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經濟秩序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비과학적인 분류이다. 그는 資本主義나 社會主義란 분류를 이 때문에 배척하고¹⁴⁾ 經濟秩序를 기준으로 경제를 분류하여 이론을 전개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資本主義經濟로 분류되는 나치下의 독일경제와 社會主義經濟로 분류되는

13)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두 경쟁, 부분과점, 과점, 부분독점 및 독점이 다섯 경우로 나누기 때문에 시장형태에는 모두 25(=5×5)가지의 형태가 있다. 수요자의 한 경우에 모두 다섯 경우의 공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4) 「資本主義」, 「帝國主義」, 「마르크스主義」 등은 일체의 사회생활을 제어하고 모든 개인을 좌우하는 巨人 혹은 精靈과 비슷하다. 神話가 理性을 내몰았다. 세속화된 여러 구원론이 서로 충돌한다. 「資本主義」에 대한 「社會主義」의 투쟁은 宗教戰爭으로 변하였다(『原理』, p. 25). 이 밖에도 오이켄은 현대사회를 資本主義라는 개념으로 분석함을 자주 비판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Foundation*의 pp. 93~98이다.

혁명 이후의 소련경제를 모두 동일한 中央管理經濟로 분류하여 기본적으로 동일한 經濟로 보고 비판하였다.

3. 經濟過程의 制御

어느 경제나 人間의 욕망에 비하여 욕망의 충족에 필요한 財貨를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資源은 限定되어 있다. 이러한 資源의 稀少性 때문에 경제문제들이 발생함을 오이켄은 지적하였다¹⁵⁾. 오이켄은 이 희소성의 문제 때문에 經濟過程의 制御(Lenkung, control)가 어느 경제에서든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예컨대 한정된 노동력을 어떤 식으로든 여러 경제활동에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經濟過程을 제어하는 방법에는 우선 價格機構에 의한 것과 中央管理에 의한 것의 두 가지가 있다. 前者는 交換經濟에서의 방법이고, 後者는 中央管理經濟에서의 방법이다. 價格機構에 의한 경제과정의 제어방법은 다시 自由放任主義 政策에 의한 것과 秩序政策에 의한 것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中央管理政策은 완전히 실시하는 방법과 부분적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나뉜다. 부분적으로 중앙관리 경제를 채택하는 방법을 오이켄은 中道の 中央管理政策이라고 불렀다. 混合經濟의 경제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제과정을 제어하는 정책에는 自由放任主義 政策, 秩序政策, 中道の 中央管理政策 및 中央管理政策의 넷으로 분류된다 (『原理』, p. 209).

이 네 가지 중에서 秩序政策이 유일하게 올바른 정책이라는 것이 오이켄의 핵심적 주장이다. 나머지 세 가지 정책이 모두 잘못된 이유에 대한 오이켄의 설명을 다음의 세 節에서 차례로 보기로 한다.

15) '경제의 중심현상은 稀少性이다'(『原理』, p. 12).

第 3 節 自由放任主義의 批判

1. 自由放任主義

오이켄이 말하는 自由放任主義는 스미스가 창시한 古典的 自由主義이다¹⁶⁾. 스미스의 古典的 自由主義는 公正한 法秩序下에서의 경제활동의 自由를 주장하며, 자유가 주어지면 市場經濟에는 자연적인 질서가 저절로 형성될 것으로 믿었다. 오이켄이 파악한 自由放任主義는 기본적으로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다.

오이켄에 의하면 自由放任(leis-sez-faire)의 경제정책의 본질은 '國家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경제'이다(『原理』, p. 39). 그러나 自由放任主義가 國家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自由放任主義下에서 國家는 個人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하여 憲法, 財産法, 契約法, 會社法, 特許法 등을 제정하여 法律秩序를 만든다(『原理』, pp. 39~40). 그리하여 自由放任主義와 法治國家는 동시에 존재한다(『原理』, p. 68). 이처럼 오이켄은 自由放任主義를 스미스의 古典的 自由主義와 동일하게 「法 안에서 自由」(liberty under law)로 파악하였다.

오이켄은 또한 自由放任主義는 法秩序下에서 自由가 주어지면 경제내에 '유용한 형태, 즉 일반적으로 善目的인 經濟질서가 밑으로부터 자발적인 힘에 의하여 저절로 발전한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있다'고 보았다(『原理』, p. 40). 自由放任主義下에서 '國家는 일반적으로 그 안에서 經濟가 운영되는 질서를 私人的 손에 위탁한다'(『原理』, p. 40). 이처럼 오이켄이 파악한 自由放任主義는, 市場經濟는 스스로의 질서에 의하여 순조롭게 운행되므로 政府가 市場經濟에 개

16) 이것은 다음의 구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經濟정책 체계(자유방임주의 經濟정책 체계: 필자 삽입)의 사상적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는 …'(『原理』, p. 42)

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 스미스의 古典的 自由主義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2. 自由放任主義의 문제

歐美에서 1次 大戰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약 한 세기는 自由放任 政策의 시대였다.

1870년 이후 保護貿易主義 政策이 취해지긴 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수정이었을 뿐 自由放任主義의 原理를 배척한 것은 아니었다(『原理』, p. 41). 이 시기에 구미 각국에서 近代工業은 自由放任政策 덕분에 크게 발전하였다. 工業化의 결과로 自由放任政策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自由放任政策의 결과로 근대공업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다¹⁷⁾.

自由放任主義 政策은 19세기 歐美의 工業化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공헌하였으나 이 정책하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등장하였음을 오이켄은 지적하였다. 그런데 오이켄은 失業, 不況, 資源浪費 등 자유방임주의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대부분 獨占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 점이 오이켄의 특징의 하나이다. 오이켄에 있어서 獨占은 市場經濟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가. 獨占化

自由主義는 競爭市場의 效率性에 대한 확신을 기초로 한다. 대표적 自由主義者였던 스미스는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 競爭市場이 모든 곳에 성립할 것으로 믿었다. 自由主義 政策이 실시되면 모든

17) '이 정책(자유방임정책: 필자 주)은 결코 工業化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工業化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 영업의 자유, 농민의 해방, 자유무역 및 거주 이전의 자유의 정책은 근대공업의 성립과 발전에 결정적인 전제를 만들었다'(『原理』, p. 42).

곳에서 경쟁이 성립하여 노동력과 재화의 흐름이 경쟁에 의하여 기업과 가계에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인간의 욕망은 최적으로 충족될 것이라는 믿음이 원래 自由主義經濟政策의 기초였다(『原理』, p. 45). 그러나 自由가 주어진 현실에서는 '競爭을 배제하는 自由도 주어졌다는 것이 명백하여졌다'(『原理』, p. 45). 需要獨占이든 供給獨占이든 獨占은 獨占利益을 창출한다. 따라서 경쟁을 회피하여 독점을 형성하려는 뿌리깊은 충동이 모든 기업에게 존재한다. 이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마찬가지이다(『原理』, p. 46). 따라서 自由放任主義 政策下에서 영업의 자유가 부여되자 獨占化 현상이 광범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현실에서는 '전반적으로 「獨占形成에의 傾向」이 존재하고 있다'(『原理』, p. 45). 현실에서는 점차 독점이 나타났다.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談合, 지방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需要獨占, 지방시장에서의 獨寡占, 전국 규모의 신디케이트와 카르텔 등이 등장하였다. 특히 1873년부터 20여년간에 걸친 大恐慌期¹⁸⁾에 獨寡占化의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나. 獨占의 폐해

오이켄은 寡占도 獨占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하에서 獨占은 獨占과 寡占을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한다. 이 독점은 개별 독점기업만이 아니라 독점적인 기업집단(신디케이트,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과 같은)도 포함한다. 不況, 失業, 그리고 분배문제 등 자본주의 경제의 모든 사회적 문제가 獨占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점에서 오이켄의 견해는 독특하다. 오이켄은 資本主義 經濟에서 나타난 모든 병폐의 근원이 獨占에 있다고 보았다.

18) 앞의 각주 3)을 참조하라.

1) 價格體系의 왜곡과 經濟過程의 制御의 卞탄

稀少性의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經濟過程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가격이 稀少性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獨占은 이러한 가격체계를 왜곡시키고 나아가서 一般均衡¹⁹⁾의 성립을 방해한다.

독점기업은 독점이윤을 얻기 위하여 공급을 감축하여 價格을 올리고 이로 인하여 기업의 限界收入은 限界費用보다 커져서 限界收入과 限界費用의 일치라는 一般均衡의 조건이 파괴된다. 또한 獨占利潤은 소비자의 몫의 일부를 빼앗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消費者主權이라는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주요목표의 하나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原理』, p. 57). 반대로 독점이 형성되면 價格引下 경쟁이 발생하여 가격이 한계비용 이하로 하락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과점기업간이나 신디케이트 참가기업과 비참가기업간에 발생한다. 이 경우에도 價格體系가 왜곡되어 일반균형의 성립이 방해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原理』, p. 59).

독점의 존재에 의하여 모든 기업과 가계들의 계획과 행동이 (가격기구에 의하여: 필자 삽입) 조정됨으로써 균형이 달성되는 사회적인 경제과정이 방해된다는 것, 일반균형에의 접근이 우연히 달성되는 데에 불과하게 되며 개별경제의 경제계산은 틀리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전체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그리하여 소비자가 그 왕좌로부터 물러나게 된다는 것 등이 명백하여졌다(『原理』, p. 57).

19) 오이켄은 效率的인 資源配分이나 資源分配의 效率性, 그리고 分配의 衡平性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經濟過程의 制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經濟過程의 제어가 바람직하게 이룩되면 一般均衡과 이에 따른 資源分配의 效率性이 실현된다.

獨占으로 인한 價格體系의 왜곡은 효율적인 投資도 방해한다. 시장경제에서 투자는 예상수익률이 이자율을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독점하에서는 價格體系가 왜곡되므로 이러한 효율적인 투자결정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없게 됨으로써 투자는 왜곡된다.

우선 많은 경우 獨占企業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투자를 행하지 않고 노후한 생산설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投資의 不足을 초래한다. '獨占은 부분적으로 投資不足을 초래한다'(『原理』, p. 53).

반대로 獨占企業은 경쟁기업(경쟁시장에서 생산하는 기업)보다 투자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과다한 投資를 행할 수도 있다. 오이켄은 그 예로 鐵道를 들었다(『原理』, p. 46). 이처럼 獨占企業은 투자를 過少하게 할 수도 있고 過多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獨占의 틀 안에서는 投資의 결정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연에 의하여 결정된다'(『原理』, p. 54). 그것은 '수뇌부의 人的인 태도에 의존한다'(『原理』, p. 55).

2) 分配의 歪曲

오이켄은 資本主義 社會에서의 分配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私 有財產制度에서 비롯되는 자본주의 경제의 고유한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獨占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보았다.

오이켄은 19세기 後半에서의 勞動者들의 생활이 악화된 진정한 이유는 勞動市場에 형성된 需要獨占 때문이라고 보았다(『原理』, p. 63). 19세기 전반에 많은 노동시장은 각 지방별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각 지방 노동시장은 그 지방의 소수의 기업에 의하여 需要獨占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기업가에 의한 독점적 내지 부분독점적인 수요상황 때문에 노동자는 그의 한계생산력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原理』, p. 64).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오이켄은 私有財産制度下에서,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본 마르크스(K. Marx)를 틀렸다고 비판하였다. '마르크스의 분석은 시장형태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결정적인 점에서 체계에 오류를 범하였다'(『原理』, p. 64). 私有財産制度가 惡이 아니라 獨占이 惡이라는 것은 오이켄의 일관된 주장이다. 뒤의 제6절에서 算術하는 바와 같이 오이켄은 私有財産은 惡이 아니라 善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소련과 같이 생산수단을 집단적 소유로 만든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을 해체하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19세기 후반부터 임금을 상승시키는 두 가지의 요인이 등장하였다. 하나는 交通과 通信의 발달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지방노동시장에 묶이지 않게 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또 하나는 勞組의 결성이다(『原理』, p. 65).

3) 貨幣體系の 착란과 失業

오이켄은 貨幣體系の 착란이 失業의 주원인이라고 보았다. 급격한 기술변화나 수요의 변화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어떤 산업, 예컨대 섬유산업에서 노동자들의 수요가 감소하여 失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失業은 價格體系가 작동하면 소멸할 수 있다. 따라서 價格體系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실업의 원인이다. 그런데 오이켄은 이 價格體系 착란의 원인이 獨占과 貨幣體系の 不安定이라고 보았다. '價格體系의 효율은 실현된 貨幣體系와 市場形態에 의존한다'. 이 중에서 오이켄은 貨幣의 누적적 수축과 확대과정이 景氣循環의 주원인이라고 보았다²⁰⁾(『原理』, p. 66).

20) 이는 오스트리아학파의 貨幣的 景氣理論이다.

이처럼 競爭促進과 함께 物價安定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오이켄의 일관된 특징이다.

4) 私的 權力的 濫用과 自由의 침해

스미스에 비하여 오이켄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은 獨占資本이라는 私的 權력에 대한 비판이다. 스미스는 국가의 公權力에 의한 濫用만을 염려하여 이를 막는 法治主義의 확립을 주장하였으나 大資本이라는 私的 權력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하지 못하였다. 오이켄은 獨占은 私的 權력을 낳고 이는 현대사회에서 公權力과 함께 개인의 自由를 침해하는 가장 중요한 두 요소 중의 하나로 지적하였다.

오이켄은 스미스와 동일하게 公益을 빙자한 국가의 부당한 침해와 시민상호간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法治國家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法治國家는 두 개의 측면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역사를 통하여 - 나라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 자칭 公益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을 가진 國家行政機構의 強制權力에 대한 것이 하나이며, 다음으로 동시에 市民 상호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原理』, p. 69).

法治國家의 형태는 변화하지만 근대에 들어와서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헌법에 의한 財產權을 포함한 基本權의 보장, 三權分立, 行政裁判을 들었다(『原理』, p. 69).

私有라는 法律的 制度는 市場形態에 따라서 달라진다. 경쟁시장에서는 私的 所有가 타인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를 관철시킬 수가 없다. 반면에 獨占市場에서는 私的 所有(즉 獨占資本)는 가격을 인상시킬 수도 있고 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으며 계약을 강제할 수도

있는 私的 權力이 된다(『原理』, p. 70).

이처럼 獨占이 존재하면 法治主義만으로는 個人的 基本權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는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勞動市場의 需要獨占으로 인한 노동자의 人格의 自由가 침해당하는 경우이다. 19세기 영국과 독일에서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것은 노동시장이 각 지방으로 분리되고 각 지방 노동시장에 수요독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기본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은 「資本主義」라는 神話가 아니라 특정한 市場形態(즉 需要獨占의 勞動市場: 필자 주)의 존재 이외의 것이 아니었다(『原理』, p. 70).

둘째는 私的인 經濟法規가 국가의 법률을 대체하는 경우이다. 기차탑승, 보험가입, 가스나 전력의 사용, 은행과의 거래 등에서 개인들은 이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에 따를 것을 강제당한다. 이들 약관은 대개 독점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들이다. 이들 약관은 '이들 약관을 만든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法(=正義: Recht)이 아니라 不當한 法(Unrecht)이 생겨난다(『原理』, p. 71).

따라서 타인의 恣意로부터의 個人的 보호는, 法治國家的인 立憲的 보장이 19세기에 완전히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과 부분독점의 형성으로 인하여 二重으로 협소해지고 배제되었다. 하나는 私的 權力的 保有者에 대한 개인의 經濟的 社會的 종속에 의한 것이며 또 하나는 私的 權力團體가 거래약관의 형태로 만든 法規의 制定에 의해서이다. ...
... 평화로운 共同生活, 즉 모든 개인의 능력이 발전할 수 있는 文明狀態를 가능하게 한다는 國家의 목표가 19세기와 20세기 초두에 法治國家를 지향한 여러 가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고 달성되지 못하였다. 私的인 經濟的 權力團體 때문에’
(『原理』, p. 72).

따라서 法律的 秩序(國家的 秩序)만이 아니라 私的 權力(즉 독점 자본)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經濟秩序도 확립되어야만 진정한 法治國家가 완성된다.

第 4 節 中央管理經濟의 批判

앞(제2절의 2)에서 본 바와 같이 中央管理經濟秩序란 中央 당국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사회의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經濟秩序를 말하며 이러한 經濟秩序에 의하여 운영되는 經濟가 中央管理經濟이다. 1928년 이후의 소련의 社會主義 經濟, 1936년 이후 나치하의 독일경제, 1500년경의 南美的 잉카경제, 古代 이집트경제가 이에 속한다²¹⁾ (『原理』, p. 87).

현대에 工業社會에서 恐慌과 社會的 긴장이라는, 工業化에 따른 社會的 문제가 발생하였다(『原理』, p. 41). 이를 해결하겠다고 등장한 것이 中央管理經濟이다. 그러나 中央管理經濟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생활수준을 하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自由도

21) 1928년에 스탈린은 소련의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1929년부터 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였다. 1933년에 나치가 독일에서 정권을 잡았으며 1934년에 1차 4개년 계획이, 1938년에 2차 4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다. 오이겐은 경제활동의 계획이 중앙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경제체제에 속하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경제를 中央管理經濟로 분류하였다. 특히 그는 생산수단의 私有化 여부는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中央管理經濟는 생산수단이 私有化된 경제에서도 共有化된 경제에서도 성립하며 私有化와 상관없이 모든 中央管理經濟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박탈해 버리는 총체적인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오이켄의 평가이다.

1. 資源의 非效率的 配分과 生産水準의 下落

中央管理經濟(이하 CDE)에서는 資源이 非效率的으로 배분됨으로써 生産과 消費水準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고 오이켄은 보았다. 그 이유로 오이켄은 價格機構의 不在, 過多한 投資, 自發性的의 不在(無責任과 無意慾)의 세 가지를 들었다²²⁾.

CDE에서는 價格機構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욕구는 무시되며(『原理』, p. 136), 수요는 과거의 통계치를 근거로 적당히 작성되며(『原理』, p. 89), 生産費用은 합리적으로 측정되지 못하며(『原理』, p. 96), 資源의 최소성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原理』, p. 154, p. 163). 이 때문에 계획수행의 네 단계인 ① 통계수집, ② 계획작성, ③ 개별기업에의 생산명령 지시, ④ 생산의 확인과 감독의 네 단계 중 ①과 ②의 단계가 합리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불가능하며(『原理』, pp. 88~91) 효율적인 생산요소의 결합이 불가능해지며(『原理』, p. 97) 모든 생산물의 수요와 공급간에 不均衡이 발생한다(『原理』, p. 111, p. 151). 이러한 非效率的인 資源配分으로 인하여 CDE에서는 만성적으로 재화의 供給不足이 발생하고(『原理』, p. 148)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하락이 초래된다.

CDE에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過剩投資의 경향이다. 오이켄은, CDE에서 '中央指導部는 「投資에 의한 權力의 極大化」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原理』, p. 86). '중앙관리경제의 제어방법이 지배하는 경제질서에

22) 오이켄은 CDE 체제의 결함으로서 ① 계획단계에서 소비재 생산을 억제하고 투자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향, ② 수립된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경제과정 제어의 失敗(이는 가격기구의 不在로 인한 不均衡을 의미한다: 필자 주), ③ 自發性的의 不足 세 가지를 들었다(『原理』, p. 160).

서는 비정상적으로 큰 投資가 행해진다'(『原理』, p. 87).

20세기의 CDE에서는 消費財 供給의 극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工業, 交通, 農業에 대한 投資의 증대를 경제계획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強制」貯蓄이 강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대부분 국가에서 노동자의 생활은 「生活의 最低限度」까지로 떨어졌다'(『原理』, p. 166). 나치하의 독일과 같이 20세기의 CDE에서 강행된 무리한 과잉투자는 생산력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실은 執權者들의 權力의 극대화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은 희생되었다는 것이 오이켄의 지적이다. 이 지적은 2차 대전 후의 대부분의 權威主義 國家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CDE에서의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번째 이유는 責任感과 意慾의 不足, 즉 自發性的의 不足이다. CDE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계약의 자유, 소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責任感도 의욕도 없다(『原理』, pp. 168~170). 오이켄은 이 自發性的의 不足이 CDE의 기본적인 결함이라고 보았다²³⁾. 責任感과 意慾이 없이는 어떤 경제활동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2. 權力의 集中과 自由의 剝奪

스미스나 마르크스가 모두 지적한 바와 같이 經濟體制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政治體制(국가질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오이켄도 이 점을 지적하였다. 오이켄은 CDE하에서는 필연적으로 專制國家가 형성되어 人間의 基本權利

23) '이상에서 본 여러 비판적인 결함과는 별도로 결국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CDE의 결함이 존재한다. 그것은 전체적인 이익에 필요한 것, 즉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생각이 배제된다는 것이다(『原理』, p. 491).

박탈됨을 지적하였다. 나치의 專制를 직접 체험한 오이켄은, 資源配分の 非效率性보다 오히려 이 점에서 CDE에 대하여 더욱 가슴에 와 닿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다음 문장은 이를 잘 요약하고 있다.

중앙집권에 의하여 지도되는 국가는 연방주의 국가보다 중앙계획으로 기우는 경향을 훨씬 강하게 갖는다는 것이 명백하여졌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1차 대전 후의 독일의 戰時經濟나 그 밖의 다수의 경우와 같이, 중앙계획의 도입에 의하여 聯邦主義의 구성이 동요된다. 특히 중앙계획은 行政의 優位와 더불어 立法府와 司法府의 권력의 억압을 초래한다. …… 개별기업이나 가계의 계획자유의 배제, 이와 더불어 중앙계획기관이나 그 명령에의 종속, 헌법이 정한 여러 종류의 자유권, 예를 들어 영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혹은 계약의 자유들의 폐기는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것에 의하여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왜곡되며 국민의 권리가 박탈되는 경향이 관철된다. 이러한 관계는 밀접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존재한다. 기본권의 사실상의 폐기에 의한 專制主義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직접적으로 中央管理經濟에의 경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專制主義가 私的인 가계나 기업에게 경제과정의 중요한 부분의 제어를 위임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사실도 있었다. 예컨대 NEP²⁴⁾시대의 러시아처럼. 그러나 결국 專制主

24) 혁명후 급격한 社會主義 經濟의 건설을 추진하였던 소련은 농업과 공업의 생산이 하락하자 1922년에 NEP(New Economic Policy)를 채택하여 농업과 소기업 부문에서 市場經濟를 도입하였다. 농민들에게 농산물판매를 허용하였고 소기업에게는 私有化와 商品生産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1929년에 1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 철폐되었다.

義는 계획작성의 자유를 배제하고 생산과정의 제어를 장악하는 경향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1928년 이래의 러시아에서 분명해졌다. 專制主義는 결국, 독립적인 자영농민이나 기업인의 계층의 존재에서 정치적 위협을 발견한다. 경제과정의 中央制御는 專制主義의 권력목표에 보다 잘 합치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專制主義는 경제적인 힘들을 매우 급속하게 產業的 잠재능력을 증대시키는 데에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原理』, pp. 451~452).

CDE의 문제점으로 오이켄이 지적한 것 중에서 주목할 것의 하나는 官僚層의 肥大化이다. 방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행정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肥大한 官僚組織이 따르게 된다. 그리하여 CDE에서는 거대한 官僚層이 형성된다(『原理』, p. 201). 이 관료들이 사람을 포함한 資源을 배분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므로 개인의 自由를 박탈하는 專制主義가 형성되고 立法府와 司法府는 위축되게 된다.

이처럼 행정조직과 관료조직이 肥大하게 되는 데에는 社會를 機械裝置로 잘못 파악한 근대 기술자들의 견해도 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오이켄은 지적하였다. 즉 1830년대에 프랑스의 高等理工科學校의 서클 회원이었던 상 시몽(Saint-Simon)과 콩트(Auguste Comte) 같은 시스몽디주의자들이 社會를 기계와 동일하게 보고, 하나의 거대한 配電盤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과 같이 一國의 경제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는 경제 기술자들이 CDE의 경제실험에 유력한 협력자였다고 오이켄은 지적하였다(『原理』, p. 205). 이러한 잘못은 오늘날에도 종종 경제학자들에게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행정부 내지 관료층의 횡포와 무능을 議會가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 오이켄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임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규모가 작아서 업무의 전모가 용이하게 파악되는 소규모의 기업에서조차 노동자 전원의 투표에 의하여 經濟計劃이 합목적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물며 한 나라의 經濟計劃을 의회에서 작성할 수는 없고 불가피하게 계획의 작성과 집행의 권한을 行政官廳으로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CDE에서 의회가 계획을 통제하여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原理』, p. 171). 더욱이 생산수단의 共有化가 이루어진 CDE에서는 관료층을 의회가 제어한다는 것이 전연 不可能하다는 것이 경험에 의하여 밝혀졌다(『原理』, p. 257). 재산의 처분권까지 관료들이 장악하기 때문이다.

CDE에서는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산요소가 배치되므로 CDE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도, 거주이전의 자유도, 영업의 자유도 없다. 不自由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CDE에서는 人格의 자유도 思考와 批判의 자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유가 인정되면 경제과정의 중앙지도가 곤란을 받기 때문이다(『原理』, pp. 17~19).

CDE에서는 왜 自由가 박탈당하는가? 그것은 사람이 目的이 아니라 手段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CDE에서는 개인은 국가가 정한 목표를 수행하는 手段에 불과하다.

중앙계획기관은 사람들의 일상 경제생활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중앙의 계획목표에 합치시키려고 한다. 사람은 目的을 위한 手段으로 된다(『原理』, pp. 170~171).

CDE에서는 인간은 目的이 아니라 手段이므로,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도 管理의 대상이다(『原理』, p. 176). 인간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수단이 教育이다. 교육은 CDE에서 '모든 의사표시를 하나의 의지로 결집시키고, 모든 노력을 하나의 목표 즉 사회의 목표로 결집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原理』, p. 176). 특히 道德教育이 이 기능을 담당한다. '각 사람에게, 사회의 지도자가 부여한 직무를 기쁘게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도덕교육의 역할이다'(『原理』, p. 176).

이처럼 CDE에서는 모든 개인의 자유는 소멸되고 각 개인과 기업은 정부가 부여한 책무만 수행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專制國家가 형성된다. CDE는 自由를 보장하는 國家秩序와 충돌하며 이 둘은 서로를 방해한다(『原理』, p. 178).

資本主義 社會의 무정부 상태를 시정하고 社會正義와 經濟安定을 달성하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CDE가 등장한 진정한 원인은 인간의 權力衝動이다. '中央指導政策으로의 動因은 항상 작동하는 權力衝動으로부터 발생한다'(『原理』, p. 200). 사회의 범위가 좁았고 분업이 단순하였던 과거의 農業社會와는 달리 현대의 工業社會에서는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分業關係로 얽힌 하나의 網에 묶여 있다. 이 때문에 경제과정의 제어를 지배함으로써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權力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한다(『原理』, p. 200). 이처럼 원래 정치적 목적 때문에 CDE가 도입되었다면 CDE에서 專制的인 國家秩序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3. 不公正한 分配

일반국민들 특히 서민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CDE는 公平한 分配를 목표로 내세웠었다. 현대의 CDE는 公正한 分配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自由를 억압하였다. 그러면 현대의 CDE에서 公正한 分配가 이루어지는가? 오이켄은 이 점에 있어서도 비판적이다.

交換經濟(市場經濟)에서 分配는 市場價格機構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를 盲目的이고 機械的이라고 비판하고 中央當局의 계획에 의하여 社會正義(오이켄에게 이는 分配正義와 같은 말이다)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CDE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CDE에서는 權力集中이 발생하여 分配는 오히려 악화된다.

그러나 분배는 경제적 권력의 집중이 행하여질 때에, 특히 경제적 권력이 公權力과 결합될 때에, 항상 각별하게 不平等하고 不公平하게 된다. 역사상 항상 그러하였다.

중앙계획기관이 보다 공정한 分配를 행한다는 확신은 역사적 경험을 명백하게 무시하는 것이다(『原理』, p. 168).

‘CDE에서 경제과정 제어의 정책목표는 投資의 極大化를 강행하는 것에 있다’(『原理』, p. 124). 이 때문에 생산요소는 가능한 한 生産財 部門에 투입되고 消費財의 생산은 가능한 한 억제되어 ‘노동자들은 음료, 의복, 주택 등에서 「最低限度의 供給」을 받는다’(『原理』, p. 122). 반면에 사회의 피라미드의 최상부에 있는 극소수 지배층에 대한 재화공급은 투자와 마찬가지로, 일반국민을 위한 공급을 희생시키면서 강행된다(『原理』, p. 123). CDE에서는 이처럼 일반국민은 최저한도의 생활을 강요받는 반면에 권력층은 일반국민의 희생 위에서 호화와 사치를 누린다. CDE에서의 分配가 交換經濟에서의 分配보다 더 不公正하다는 것이 오이켄의 평가이다. CDE에서의 분배에는 人間의 自意가 개입하지만 交換經濟에서의 분배에는 인간의 自意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第 5 節 中道の 經濟政策 批判

自由放任主義의 결함도 인식되고 中央管理의 폐단도 분명하여짐에 따라서, 市場經濟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政府가 경제운용에 부분적으로 개입하여 問題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등장하였다. 오

이켄은 이를 中道の 經濟政策(Wirtschaftspolitik der Mittelwege)이라고 불렀다. 오이켄은 이를 케인즈적인 完全雇傭政策, 경제과정의 部分的 中央指導의 정책 및 職分的 秩序의 셋으로 나누어 비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세 정책 모두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1. 完全雇傭政策의 批判

恐慌과 그에 따른 大量失業을 해결하기 위하여 大恐慌 이후 대부분의 歐美 나라들이 케인즈가 제시한 이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 정책은 恐慌의 원인을 投資의 不足에 있다고 보고 赤字財政, 低金利 및 信用擴大를 통하여 投資를 촉진시켜서 完全雇傭을 달성하고자 한다(『原理』, p. 187). 오이켄은 大量失業을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임을 인정하면서도 完全雇傭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완전고용이 달성되더라도 고용이 비효율적으로 되면 충분한 生活資料가 생산될 수 없기 때문이다. 1946년 패전 직후의 獨逸이 그러한 예이다. 이때 獨逸에서는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에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화폐경제가 기능을 정지하고 物物交換經濟가 등장하였다. 공장들의 가동률은 떨어졌고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날그날의 식량을 얻기 위하여 밭에 나가 일하거나 날품을 팔아서 생활하였다. 이 당시 完全雇傭은 달성되었으나 사람들의 생산성은 극도로 하락하여 생필품의 부족은 계속되었다. 完全雇傭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고용도 중요한 것이다. '完全雇傭은 결코 정책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다'(『原理』, p. 189).

雇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資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資源의 희소성을 측정하는 가격기구가 정확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完全雇傭政策은 이러한 희소성의 計器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다'(『原理』, p. 189).

完全雇傭政策은 두 가지 경로로 가격기구를 왜곡시킨다. 하나는

직접적인 가격규제정책이다. 完全雇用政策論者들은 巨視的²⁵⁾ 관점에서 集計値만 사용하고 微視的인 價格機構는 무시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價格凍結, 換率操作, 金利規制 등과 같이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정책들을 사용한다. 두번째로 完全雇用政策은 인플레이를 조장함으로써 가격기구를 왜곡시킨다. 完全雇用政策은 총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信用擴大政策을 계속 사용한다. 이 결과로 인플레이가 발생하여 가격기구가 파괴된다(『原理』, pp. 190~192). 이 두 가지 정책의 결과로 희소성을 측정하는 가격기구가 왜곡되어 완전고용의 목표는 달성되더라도 경제과정 전체의 제어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된다. 그 결과 생산부문에서의 隘路가 발생하고 외환시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시장에서 不均衡이 발생하며 생활수준의 低位가 초래된다. '失業의 폐해가 생활수준의 폐해로 대체되었다'(『原理』, p. 190).

오이켄에 의하면 현대 공업국가에서 投資가 감소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生産財産業의 獨占化와 勞組의 결성으로 인한 生産財 價格의 상승이요, 둘은 정부정책의 無一貫性으로 인한 投資危險의 증대이다(『原理』, pp. 386~391). 따라서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독점을 해소하고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民間投資를 증대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케인즈가 제시한 방법인 정부에 의한 投資增大는 민간부문의 저축과 투자를 감축시키고(『原理』, p. 191) 價格機構를 왜곡시킴으로써 資源配分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케인즈의 총수요확대 정책이 인플레이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것을 일찍이 1950년대 초에 지적한 것은 인상적이다.

2. 部分的 中央指導의 정책 비판

주요기간산업을 國有化하여 重要生産부문을 國營企業으로 국가

25) 오이켄은 巨視的(macro)이란 말 대신에 전체적(global 혹은 gesamt)이란 말을 썼다.

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市場經濟에 맡기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國營企業을 운영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이 國營企業들의 생산량과 생산물의 배분과 판매가격을 시장에서 수요의 변동에 맡기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政府가 國營企業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 또 하나는 국영기업들의 생산과 배급과 판매가격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주요 生産財의 공급을 장악한 정부가 경제과정의 제어에 우세를 갖게 되어 경제는 사실상 CDE에 가깝게 됨에 따라서 CDE의 결함이 나타나게 된다. '自由와 計劃과의 진정한 결합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은 중앙관리경제가 우세하게 된다'(『原理』, p. 193).

3. 職分的 秩序의 政策 批判

職分的 秩序(Ständischen Ordnung)란 기업간의 同業組合인 노동자들간의 職能組合과 같은 산업별이나 직업별로 조직된 민간단체들에게 經濟計劃의 작성과 시행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經濟秩序를 말한다. 이 질서는 중앙관리 경제질서의 결함을 회피하면서 自由放任主義의 經濟問題를 해결하고자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秩序는 중세의 浪漫主義에 빠져서 민간단체의 집단이기적인 행태를 간과한 것이다. '團體는 良心이 없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團體는 항상 良心의 呵責이 없다'(『原理』, p. 197)는 오이켄의 갈과는 실로 정확하다.

오이켄은 이 秩序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비판하였다. 이 질서의 첫번째 유형은 이 秩序 중 처음 나온 原形으로서 민간단체들에게 국가 대신에 각 분야별로 경제계획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CDE의 국가기능을 이들 단체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의 경험에서 이러한 방식은 獨占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냄을 보여 주었다. 이 방식하에서 단체들은 상호대립하여 集團無政府 상태가 초래되었다(『原理』, p. 194).

둘째는 職能團體에게 단지 情緒的 勢力²⁶⁾으로서의 역할만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職能團體들은 경쟁을 실현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경쟁을 배제하여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데에만 열심이어서 情緒的 勢力으로는 不適格함이 밝혀졌다(『原理』, p. 195).

세번째의 유형은 첫번째의 유형의 변형으로서 동업조합의 의사 결정에 勞動者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계급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조합간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다.

마지막 유형은 앞의 세 유형과는 달리 이들 단체를 '진정한 社會 組織, 즉 밑으로부터 위로 조직된 사회질서 속에서 인간의 지위를 지정하여, 유목민 같은 현재의 상태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구조'의 구성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다(『原理』, pp. 196~197). 그러나 이러한 직능조직은, 조직구성원 간에 원래 존재하던 경쟁을 배제시키고 집단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되므로 競爭秩序와 전연 조화되지 못한다.

국가와 개인 사이 중간의 위치에서 산업별로나 직업별로 만들어진 民間組織들은 어떤 형태든지 모두 組織의 집단적 이익추구에 빠지므로 조직들간에는 갈등이 발생하며 또한 이러한 組織化는 경쟁 질서를 배제하게 되므로 職能別 秩序는 올바른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오이켄의 평가는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職能的 秩序 혹은 協同組合的인 질서는 集團에 의하여 經濟過程을 제어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過渡期的 方法에 불과하다²⁷⁾.

26) 오이켄은 情緒的 勢力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경제의 질서를 바로잡는 勢力이라는 의미로 애매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27) '질서문제의 集團無政府的, 協同組合的 혹은 職分的 해결은 단지 과도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국 경제과정의 제어에는 中央管理的 制御와 競爭秩序間的 선택밖에 남지 않는다(『原理』, p. 332).

第 6 節 競爭秩序의 原則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自由放任의 古典的 自由主義의 경제 질서도, 中央管理의 경제질서도, 中道의 경제질서도 모두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과정 제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유일한 해결방안은 競爭秩序를 확립하는 것이다. 오이켄은 여러 가지 경제질서들을 실제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올바른 경쟁질서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²⁸⁾

1. 競爭秩序

人間社會의 목표는 正義와 安定과 自由의 실현이다.

世界史가 부과하는 문제는 누구의 눈에나 분명해지고 있다. 즉 가능한 한 착란이 없는 경제과정을 실현하는 것, 그것에 의하여 모두에게 모든 재화의 만족스러운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기초 위에서 이치에 맞는 分配를 가능하게 하는 것, 각 개인의 안에서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잠재적인 힘들을 발휘시키며, 이 힘들을 전체 과정의 안에서 합리적으로 통합하는 것, 이에 의하여 正義, 安定 및 自由를 인간의 공동생활 속에서 가능한 한 실현하는 것이다 (『原理』, p. 256).

28) 인간에게 바람직한 사회경제체계가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설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오이켄은 歷史發展의 必然性의 法則을 부정하였다. 歷史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정한 법칙에 의하여 일정한 단계를 따라서 발전한다는 歷史發展의 필연성의 법칙은 神話에 불과하다고 그는 비판하였다. 헤겔(G.W.F. Hegel), 마르크스(K.Marx) 및 상시몽(H.de Saint-Simon) 등이 이를 주장하였다.

오이켄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유일한 경제질서가 競爭秩序(Die Wettbewerbsordnung)라고 보고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였다. 競爭秩序는 독과점이 엄격히 규제되고 인플레이가 발생하지 않아서 價格機構가 정확하게 작동하여 資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分配問題가 적절히 해결되는 經濟秩序이다. 이는 물론 中央管理經濟秩序가 아니고 交換經濟秩序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일정한 經濟秩序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自由放任의 經濟秩序와도 다르며 中央當局이나 중간적인 集團에 의한 경제과정의 제어를 철저히 부정하기 때문에 中道の 經濟秩序와도 다르다. 競爭秩序는 철저한 交換經濟로서 中央管理經濟秩序의 對照物이다(『原理』, p. 348).

이러한 경쟁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이켄은 다음과 같이 構成的 原理와 規制的 原理라는 두 가지 종류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 構成的 原理

가. 基本的 原理 - 完全競爭의 機能的 物價體系의 확립

오이켄은 경제정책 전반의 相互聯關性을 매우 중시하였다. 경제현상 전체가 相互聯關되고 개별 경제정책은 경제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을 하나하나 떼어서 斷片的으로 파악해서는 안된다(『原理』, p. 345). 그리하여 오이켄은 경제 전체의 相互聯關을 고려하여 상호일관된 하나의 정체적인 틀로서의 秩序政策을 제시하였다.

각 부문이 相互 調合的인 정책의 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基本原理가 있어야 한다. 오이켄은 完全競爭의 機能的 價格體系의 확립을 경쟁질서정책의 基本原理로 제시하였다. 완전경쟁시장의 가격기구가 자원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원리를 「經濟憲法の 根本

原理』라고 불렀다(『原理』, p. 346). 오이켄은 經濟政策의 構成的 原理란 다름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근본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들을 의미한다. 즉 構成的 原理는 完全競爭市場 자격기구를 現實經濟에서 작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원칙들이다.

나. 構成的 原理의 내용

構成的 原理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주요내용으로 구성된다.

1) 物價安定을 위한 安定的 通貨政策

오이켄은 物價安定을 效率的인 市場價格機構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쟁질서를 실현하려는 모든 노력은, 화폐가치의 일정한 安定性이 보증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原理』, p. 348).

인플레 기간에도 디플레 기간에도 價格體系가 왜곡되므로 「經濟計劃의 統一性」이 손상된다(『原理』, pp. 348~9). 市場價格機構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해서 物價安定(貨幣價値의 安定)이 필수적임을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오이켄은 貨幣價値의 安定을 유지하는 通貨政策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이켄은 貨幣的 景氣理論에 입각하여 화폐가치가 안정되면 景氣의 변동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²⁹⁾.

오이켄은 通貨政策의 책임자들이 일반적으로 지식의 결함, 이해 집단이나 世論 및 틀린 이론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완전고용정책의 명분으로 인플레이적 景氣扶養策을 주장하

29) '通貨制度에 화폐가치를 안정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성공하면, 과거에 본 바와 같이, 通貨價値의 구조적 결함에 의한 끊임없는 景氣의 交代, 즉 인플레와 디플레가 발생하는 일 없이, 競爭秩序에 내재하는 균형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실현시키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原理』, pp. 349~350).

는 케인즈를 엄격하게 비판하였다³⁰⁾.

오이켄은 특이한 貨幣制度를 주장하였다. 즉, 그는 安定的인 貨幣制度로서 商品準備貨幣制度를 주장하였다³¹⁾. 이 제도는 일정액의 화폐의 가치를 상품의 종류와 각 상품의 수량이 정해진 일정한 상품꾸러미로 묶는 제도이다³²⁾. 중앙은행은 상품종류와 각 상품당 수량이 정해진 상품꾸러미를 청구할 수 있는 船荷證券을 일정한 금액으로 묶어 놓고, 이 船荷證券의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이 船荷證券을 사들이고 이 船荷證券의 가격이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船荷證券을 공개시장에 판다. 그리고 이 船荷證券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中央銀行에 船荷證券을 제시하고 정해진 종류와 수량의 상품

30) 앞의 제5절에서 본 바와 같이 오이켄은 총수요확대정책을 수단으로 하는 케인즈의 완전고용정책을 가격기구를 왜곡시킨다고 비판하였다. 인플레이에 대해서 오이켄을 비롯한 독일의 秩序自由主義者들은 케인지언들과 뚜렷하게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케인지언들은 고용증대를 위한 단기의 확대재정금융정책이 효과적이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 데에 비하여 오이켄은 이러한 정책은 인플레이만 조장할 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고정된 필립스 커브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케인지언들은 물가안정과 고용증대는 서로 교환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이에 반하여 오이켄은 물가안정은 성장을 포함한 資源配分の 效率性的의 전제조건으로 보았다. 2차대전후 物價安定에 가장 성공하였던 나라인 서독·일본 및 대만이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낸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 케인지언보다 오이켄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된다.

31) 오이켄은 L.Robins와 F.A.Hayek가 주장한 화폐제도인 소위 Chicago Plan을 비판하였다. 이 제도는 民間銀行을 둘로 나누어 貨幣供給을 담당하는 은행과 貸出機能을 담당하는 은행으로 나누는 제도이다.

32) 예를 들어 Benjamin Graham은 100달러에 대하여 다음의 상품들을 청구할 수 있는 船荷證券을 교부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原理』, p. 355).

12부셀의 밀	24파운드의 고무	16.3파운드의 연초
506파운드의 선철	12½부셀의 옥수수	34파운드의 커피
6.3배럴의 석유	35파운드의 구리	87파운드의 목면
9¼ 파운드의 홍차	7,480파운드의 석탄	4파운드의 주식
25파운드의 양모	300파운드의 사탕	204파운드의 섬유소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貨幣價値는 특정한 상품꾸러미와 묶여서 안정되게 된다.

金本位制度는 貨幣價値를 일정한 量의 金에 묶는 것에 비하여 이 제도는 貨幣價値를 일정한 상품꾸러미에 묶으므로 이 제도는 일종의 商品本位制度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하에서 中央銀行은 상품꾸러미에 포함되는 상품들을 정해진 비율로 支拂準備로 보관해야 된다. 오이켄은 이 제도가 貨幣價値를 安定시킨다는 金本位制度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貨幣價値를 생산량에 의해 가격이 등락하는 金이라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다수의 상품과 연계시키므로 貨幣價値가 더욱 安定될 수 있다고 보았다(『原理』, p. 356). 또한 이 제도는 金生産量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貨幣의 발행량을 묶어야 된다는 金本位制度의 약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세계 모든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管理貨幣制度보다 이 商品準備制度는 貨幣價値 안정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하나도 없는 것은 아마도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방대한 商品備蓄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2) 開放的 市場

이 원리는 供給과 需要에 있어서, 國家나 私의權力에 의한 모든 市場의 封鎖를 철폐함을 의미한다. 시장봉쇄란 輸入, 投資, 創業, 作付, 移住, 職業選擇 등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를 말한다. 오이켄은 어떠한 市場封鎖도 경쟁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原理』, pp. 360~361). 輸入規制와 같은 市場封鎖가 행해지더라도 경쟁기구가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오이켄은 두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였다(『原理』, pp. 361~362). 첫째는 市場封鎖下에서는 獨寡占의 형성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시장간 내지 생산부문간 상호조정이 완전히 달성되지 않아서 一般均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연관시켜서 오이켄은 市場封

鎖가 발생한 부문에서는 地代 성격의 소득이 발생함을 지적하였다(『原理』, p. 362).

오이켄은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私的權力(독과점 기업이나 기업 집단)에 의한 시장봉쇄 내지 경쟁방해행위도 禁止되어야 함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예컨대 독과점 기업들에 의한 거래거절, 리베이트, 배타적 계약, 아웃사이더를 축출하기 위한 덤핑경쟁 등은 禁止되어야 한다(『原理』, p. 362). 私的權力에 의한 경쟁방해 행위의 禁止를 강조한 점에서 오이켄은 스미스와 다르다. 스미스로 대표되는 古典的 自由主義(自由放任主義)는 이 점을 간과하였다.

市場의 開放은 經濟憲法上的의 의미를 갖고 있다. 때문에 私的權力에게 그것을 배제하는 권리가 주어져서는 안된다. 그것은 私인에게 위임되어서는 안되는 秩序政策의 一部分이다. 이 점에서 질서정책이 自由放任主義와 다른 점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自由放任主義政策에서는 私的 權力集團이 스스로 조직을 결성할 뿐만 아니라 투쟁수단을 이용하여 시장을 봉쇄하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原理』, p. 362).

오이켄은 開放的 市場의 원리에 입각하여, 中央銀行의 獨占的 貨幣發行權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모든 市場封鎖를 철폐하여야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리에서 그는 特許權의 문제에 대해서도, 특허기간을 단축하든지 아니면 적당한 사용료를 낸 진정한 이용자에게는 특허의 사용을 인정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좋다고 보았다(『原理』, p. 366).

3) 私有財産制度

오이켄은 '私有財産制度는 경쟁질서의 前題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보았다(『原理』, p. 368). 생산설비가 國有化되면 投資가 국가에 의

하여 中央管理 秩序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原理』, p. 368).

그러나 私有財産制度가 항상 경쟁질서를 보증하는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原理』, p. 369). 私有財産制度가 獨占的 市場形態와 결합하면 私有財産制度는 榨取라는 폐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私有財産은 市場形態에 따라서 전연 다른 성격을 갖는다. 각 경우에 따라서 所有權의 기능도 변한다. 獨占的 市場形態에서 사유재산은 극심한 폐해를 초래한다. 市場의 소유자, 혹은 사적인 콘체른, 신디케이트 및 사용자단체는 사유재산이 부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 구매자, 경쟁자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권력은 종종 너무나 강대해져서 法治國家도 이를 제한하기에 충분치 않다(『原理』, p. 370).

私有財産制度를 보증하는 法治國家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경쟁적 시장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경쟁질서의 틀에서만 사유재산은 단지 그 소유자에게만이 아니라 非所有者에게도 이익을 가져온다'(『原理』, p. 370).

4) 契約의 自由

契約의 自由가 없이는 경쟁이 성립할 수 없다. '契約의 自由는 분명히 경쟁 성립의 前題이다'(『原理』, p. 373). 그러나 契約의 自由는 경쟁을 배제하고 獨占的 地位를 형성하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다. 工業化의 초기에는 노동시장에 需要獨占이 형성되어 다수의 공장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契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私有財産制度和 같이 契約의 自由도 競爭秩序와 결합되어야만 競爭과 自由를 제한하는 데에 악용되지 않는다.

5) 責任

‘利益을 얻는 자는 손해도 부담해야 한다’(『原理』, p. 379). 더 정확히 말하면 의사결정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競爭秩序에서는 각 經濟主體가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므로 자신의 과오로 인한 손해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만 각 經濟主體는 신중히 의사를 결정하며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投資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원칙이 필요하다. 잘못된 投資에 대해서는 破産이란 징벌을 받도록 하여 投資가 신중히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中央管理經濟에서는 생산시설의 國有化에 상관없이 항상 의사결정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생산시설이 國有化된 경우에는, 기업이 누구의 재산도 아니므로, 투자와 생산의 결정에 대하여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私有財産制度가 인정되는 中央管理經濟에서는 의사의 결정자(계획작성자)와 책임을 지는 사람(기업소유자)이 다르므로 책임의 원칙이 작동할 수가 없다. 오이켄은 責任의 原則의 不在가 中央管理經濟의 실패의 주요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하였다(『原理』, p. 382).

또한 責任의 원칙은 獨占形成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새로 合併하는 企業에 대해 合併企業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企業의 合併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이켄은, 기업소유자의 책임이 제한되는 株式會社와 有限會社를 인정하는 현대의 會社法이 기업의 集中을 촉진시키고 가격체계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비판하였다(『原理』, p. 381). 그는 기업경영자의 책임을 제한하지 말것을 주장하였다(『原理』, p. 386).

6) 政策의 恒常性

오이켄은 投資減少나 企業合併(conzerm)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恒常性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오이켄은 먼저 投資와 연 관시켜서 정책의 恒常性을 주장하였다. 그는 不況과 그에 따른 대량 실업을 초래한 投資性向의 減少를 經濟發展에 따른 投資機會의 감 소로 설명하는 당시의 通論을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투 자기회가 감소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20세기 전반에 발생한 投資減少 경향의 原因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投資費用의 상 승이요, 둘은 政府政策의 無一貫性 때문이다. 生産財 부문에 카르텔 이 형성되어 生産財의 가격이 騰貴하였고 또한 정부의 간섭으로 賃 금이 상승하여 投資費用이 상승한 것이 投資減少의 첫번째 원인이다(『原理』, pp. 388~389).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이 政策의 不安定性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자주 변화였기 때문에 기업들은 단기에 자본을 회수할 수 있 는 투자만 시행하게 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투자는 회피하게 되었 다. 이것이 투자감소의 주원인의 하나이다(『原理』, pp. 388~390). '충분한 投資活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恒常性이 필요 하다. 이러한 恒常性이 없이는 경쟁질서도 기능할 수가 없다'(『原 理』, p. 390).

정부정책의 無一貫性 때문에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수단으 로 企業間의 콘체른(concern)의 形成이 촉진된다.

경제정책의 급격한 변경이 콘체른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것은 경험에 의하여 분명하여 졌다. 위험이 증가하면 할수 록 콘체른 형성의 경향은 강화된다. 상이한 부문이나 동일 한 부문의 여러 부분을 포괄하는 콘체른이 형성된다. 경제 정책의 급속한 변경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不確實性은 다른 생산부문의 기업에 자본참여하거나 그것을 매수하려고 하 는 誘因을 부여한다(『原理』, p. 391).

7) 構成的 原理의 相關性

위에서 든 여러 原理(혹은 原則)들은 서로가 보완적이므로 동시에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3. 規制的 原理

규제적 원리란, 구성적 원리를 방해하는 질서형태를 저지하거나 완전경쟁이 실현되더라도 발생하는 시장경제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 獨占의 規制가 前者에 해당하고 나머지 셋은 後者에 해당한다.

가. 獨占의 規制

구성적 원리 중 市場開放의 원칙에 의하여 독점을 조성하는 市場制限이 모두 철폐되어도 獨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規模의 經濟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이다³³⁾.

國有化나 勞組의 경영참여가 이 경우 문제의 해답이 안된다고 오이켄은 지적하였다. 國家的 獨占企業은 私企業보다 독점적 지위를 더욱 완전하게 이용하며 勞組도 높은 임금이라는 형태로 독점이윤을 배분받기 때문에 獨占到 우호적이기 때문이다(『原理』, pp. 396~397).

오이켄은 '獨占의 감독은 獨占監督官廳에 위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原理』, p. 398). 이때에 문제는 이 관청을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이 관청을 법률에 의하여 獨立的인 기관으로 만들 것을 주장하였다. 이 관청은 독점감독에 관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다.

33) 오이켄은 規模의 經濟란 말은 사용하지 않고, 企業의 最適規模가 커서 시장에 하나의 기업만 있으면 충분한 경우로 설명하였다(『原理』, p. 395).

이 獨占官廳은 獨占監督에 관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다.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中央官廳이 필요하며 이의 신설은 불가피하며 또한 실현가능하다. 근대공업국가에서는 이와 같이 강대한 獨立官廳이 나타나지 않아서는 안된다. 이것 없이는 경쟁적 질서가, 또한 이 질서와 함께 近代法治國家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이 독립관청은 大法院과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되는 기관이다(『原理』, p. 398).

이처럼 오이켄은 철저한 自由主義者로서 政府의 市場介入을 일반적으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獨占規制에 관해서는 政府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기관은 독점기업으로 하여금 完全競爭市場에서와 동일한 행동을 취하도록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즉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약의 제정, 거래거절, 리베이트, 덤핑 등 不公正한 거래행위, 限界費用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최적 규모의 생산설비를 유지하도록 감독한다.

나. 所得政策

인간의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에서의 分配가 공정하다는 것이 오이켄의 基本觀點이다. 따라서 오이켄은 所得再分配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累進稅에 대하여 간단하게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 이외에는 所得再分配政策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累進稅를 지나치게 높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소득정책의 면에서도 오이켄은 분명히 保守的이었다.³⁴⁾

다. 經濟計算

기업개인의 계산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충돌할 경우(즉 外部經濟가 존재할 경우)에는 기업의 計劃의 自由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原理』, pp. 408~409). 오이켄은 부인과 연소자 노동의 규제, 장시간 노동, 재해로부터의 보호 등 勞働者保護도 外部不經濟의 일종으로 보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原理』, p. 409).

라. 供給의 變則的 變動

- 34) 오이켄도 스미스와 동일하게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하여 保守的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모두 勞働의 生産性을 높여서 實質賃金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再分配政策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들은 또한 생활무능력자를 위한 公的扶助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오이켄은 또한 勞働市場에서 供給獨占을 형성한다는 이유로 勞働組合에 대하여서도 비판적이었다.³⁴⁾
-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정책과 노동조합을 지지하지 않는 점에서 오이켄은 제2차대전 후 西獨의 경제질서인 社會的 市場經濟와 부분적으로 다르다. 勞組를 긍정하고 勞組의 代表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잘 발달된 社會福祉制度를 갖춘 것이 社會的 市場經濟(Sozialen Marktwirtschaft, social market economy)의 주요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勞使共同經營과 福祉制度의 확충은 주로 뮐러-아르막(Müller-Armack)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그는 경쟁경제의 창출과 보장뿐만 아니라, '社會政策的 所得調整', '中小企業의 구조의 유지를 위한 市場의 기초', '共同決定에 입각한 人間的인 勞使關係'를 통한 '脫프로레타리아화', '市場經濟의 景氣安定'이 社會的 市場經濟에서 정부의 핵심적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이켄이 제시한 構成的 原則과 規制的 原則에 입각하여 競爭秩序를 확립하고 정부는 經濟過程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오이켄의 원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社會的 市場經濟는 기본적으로 오이켄의 秩序自由主義에 입각한 경제질서라고 볼 수 있다. 제2차대전 후 독일의 놀라운 경제부흥을 실현시킨 社會的 市場經濟는 오이켄의 秩序自由主義를, 勞使共同經營制度和 福祉制度를 가미하여 社會政策的 國家介入의 성격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황신준, 「社會的 市場經濟에 대한 小考: 西獨의 經濟發展 經驗을 중심으로」, 未發表 論文, 1993, p.12 참조).

이것은 賃金이 하락하면 勞動供給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부녀자나 아동의 노동을 이용하기 위하여 임금을 생계비 이하로 적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³⁵⁾. 오이켄은 이를 막기 위하여 最低賃金制가 필요하다고 보았다(『原理』, pp. 410~411).

第 7 節 評 價

효율적인 市場經濟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독점금지 내지 규제와 物價安定을 주내용으로 하는 일정한 經濟秩序를 市場經濟에 조성해야 함을 지적한 것이, 스미스의 古典的 自由主義에 비하여 오이켄의 秩序自由主義가 더 발전된 점이다.

스미스는 法治主義를 확립하여 私有財産制度를 확립하고, 경제 활동을 제한하던 重商主義의 규제들만 철폐하면 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비하여 오이켄은 이것만으로는 안되고 競爭的인 市場經濟秩序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構成的 原理와 規制的 原理를 내용으로 하는 競爭秩序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오이켄이 제시한 경쟁질서의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獨寡占의 금지 내지 규제와 物價安定이다. 스미스도 獨占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나 그가 비판한 독점은 重商主義 규제에 의한 獨占 즉 정부가 부여하는 독점적 영업권으로 인한 獨占이었고, 시장경제에서 資本의 集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獨占이 아니었다. 獨占企業(集團)의 私的 權力을 政府의 公權力과 함께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35) 임금이 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노동공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은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었다. 60년대와 70년대에 우리나라 공장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길었던 것은 그들의 임금이 최저생계비 이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오이켄의 주장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獨占을 금지시키거나 규제하기 위해서는 大法院과 같은 정도의 힘을 가진 獨立된 獨占監督官廳을 두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物價安定이 경쟁시장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前題條件이라고 보고 엄격한 通貨政策을 주장한 것도 오이켄의 특징이다. 현대의 주류 경제학인 케인즈 巨視經濟學은 物價安定을 고용증대와 선택적인 것으로 볼 뿐 최우선의 經濟目標로 보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오이켄은 物價安定이 이룩되어 경쟁질서가 실현되면 고용증대가 부수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物價安定을 위한 엄격한 通貨政策에 정책의 最優位를 두었다.

고용증대를 위해 다소의 인플레이를 희생시켜도 좋다는 케인지언들의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던 영국이나 미국보다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서독의 경제가 2차대전 이후 물가만이 아니라 성장과 고용의 면에서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여 온 것을 보면 오이켄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된다. 物價安定과 完全雇用은 서로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며 物價安定은 고용증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된다.

스미스는 競爭秩序도 정부규제만 철폐하면 저절로 형성될 것이므로 정부는 經濟秩序와 經濟課程 그 어느 것에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반하여 오이켄은 經濟秩序를 바르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야 하지만 經濟課程(즉 구체적인 민간의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資源配分과 分配問題)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資本의 집중으로 인한 獨寡占의 형성, 外部效果, 인플레이 등이 競爭秩序를 왜곡하는 현실경제를 볼 때에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오이켄이 스미스의 自由主義를 한층 더 발전시켰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經濟過程에는 정부가 介入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 점에서 두 사람은 차이가 없다.

이는 두 사람 모두 完全競爭市場에서의 價格機構에 의한 資源配

分の 效率性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는 비단 스미스와 오이겐의 自由主義만이 아니라 모든 自由主義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현실에서 市場價格機構에 의한 資源配分이 정부의 계획에 의한 배분보다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관료들의 부패가 심하고 관료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기구가 미비된 後進經濟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된다. 市場價格機構에 대한 資源配分이란 다름 아니라 각 個別經濟主體가 자기책임하에서 자기의 계획에 입각하여 經濟活動을 행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관료는 제3자이고 개별기업은 당사자이다. 당사자는 제3자보다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더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더 신중하게 결정하므로 정부계획보다는 市場價格機構에 자원배분을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자원배분을 市場價格機構에 맡겨야 한다는 自由主義의 주장이 타당하다. 정부는 경쟁질서의 확립만을 책임지고 경제과정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말로 오이겐은 이를 표현하였다. 단기적인 總需要管理政策이나 장기적인 産業政策이 모두 경제과정에 개입하는 정책들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을 모두 쓰고 있는 우리나라는 오이겐의 주장을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스미스의 공로는 自由主義 經濟政策의 原理를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이 원리란 市場價格機構의 效率性을 위하여 민간에게 經濟活動의 自由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自由主義 經濟에서 政府의 役割을 기본적으로 定立한 것은 오이겐의 공로이다. 그것은 政府는 公正한 競爭秩序의 확립만을 담당하고 구체적인 經濟過程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오이겐의 구분은 自由主義經濟에서 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현 韓國經濟에 참으로 유익한 길잡이를 제시하여 준다고 생각된다.

오이겐은 스미스와 같은 限界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市場價格機構에 대한 지나친 신뢰이다. 오이겐은 구성적 원리와 규제적 원리가 시행되어 競爭秩序만 실시되면 資源配分과 所得分配가

모두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즉 오이켄도 스미스와 같이 市場價格機構의 효율성과 衡平性을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 이는 지나친 평가라고 생각된다. 현실경제에서 競爭秩序가 확립된다고 하더라도 生産과 分配가 심각한 결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된다. 公害로 대표되는 外部不經濟, 市場經濟에서의 調整機構의 不在問題(coordination problem), 貧困問題 등에 대하여 그는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오이켄의 이론이 특히 유용한 것은 中央管理經濟라는 개념이다. 중앙정부의 계획과 지시에 의하여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中央管理經濟의 개념은 1960년대 우리 경제의 설명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中央管理經濟에서는 과다한 投資가 이루어지며, 관료층이 비대해지며, 비효율적인 資源配分이 불가피해지며 專制主義的인 정치체제가 형성되어 국민들의 자유가 축소된다는 오이켄의 분석은 우리 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된다. 自由와 中央管理經濟는 양립할 수 없으며 交換經濟에서만 自由가 확보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우리나라에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오이켄이 中央管理經濟만이 아니라 交換經濟와 中央管理經濟를 혼합한 中道の 經濟秩序도 비판한 것 역시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익집단에게 정부의 역할의 일부 혹은 전부 위임하는 것에 대한 그의 신랄한 비판은 매우 타당하다. 조합이나 협회 등 민간단체들은 모두 예외없이 자신들의 集團利益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오이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되 政策決定에는 이들을 참여시키면 안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政策決定마다 관련이익단체를 참여시키는 우리나라에게 이 점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第 3 章 하이에크의 進化論的 自由主義

第 1 節 時代背景

20세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1899년에 태어나서 20세기가 끝나가던 1992년에 서거한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의 긴 생애는 현대경제학의 산 역사였다고 할 만하다¹⁾. 60년이 넘는 긴 저술활동 기간 동안 그는 20세기의 그 어느 경제학자도 따라가지 못할 방대한 저술을 남겨 놓았다²⁾. 원래 경제학이 아니라 法學과 政治學에서 학위를 받았던 그는 비단 경제학뿐만 아니라 法學, 政治學, 哲學, 心理

1) 하이에크의 생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899: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Vienna)에서 저명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남. 그의 조부, 외조부, 부친, 두 동생이 모두 저명한 학자였음.
- 1917: 빈대학에 입학하여, 法學, 心理學, 哲學을 공부하고 비저(Friedrich von Wieser ; 경제학의 오스트리아 學派의 당시의 대표자)의 강의 수강.
- 1921: 法學 박사 학위 취득(Vienna대학)
- 1923: 政治學 박사 학위 취득(Vienna대학)
- 1923~1924: 미국 Columbia대학에서 Wesley Mitchell과 John B. Clark의 경제학 강의 수강.
- 1927~1931: 오스트리아 景氣變動研究所 소장.
- 1931~1948: London School of Economics 교수
- 1947: 세계적으로 저명한 自由主義者들의 모임인 The Mont Pelorin Society를 창설하고 60년까지 회장 역임.
- 1950~1962: 미국 Chicago대학교 사회 및 도덕과학 교수.
- 1962~1969: 독일 Freiburg대학 교수.
- 1969~1977: 오스트리아 Salzburg대학 초빙교수.
- 1977~1992: 독일 Freiburg대학 초빙교수.

學, 倫理學에 이르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학문체계의 방대함에 있어서 현대 경제학자 중에서 그와 비견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經濟學史 전체를 통틀어서도 그와 견줄만한 사람은 스미스나 마르크스 정도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는 여러 학문에 걸쳤던 자신의 연구를 '社會哲學'(social philosophy)이란 말로 표현하였다. 여기에는 그의 貨幣的 景氣理論³⁾을 제외한 그의 모든 이론들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그의 방대한 이론체계는 社會哲學의 체계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체계를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그가 주장하고자 하였던 것은 個人的自由, 市場經濟, 私有財產制度和 같은 自由主義의 古典的 價値들이었다. 이는 그가 밝혔듯이 흄(David Hume)과 스미스(Adam Smith)로 대표되는 18세기 영국 스코틀랜드의 古典的 自由主義들과 동일하다. 하이에크는 20세기의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古典的 價値가 크게 손상되고 있다고 보고 이의 부활을 주장하였다.

20세기 서양사회에는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 나타났다. 그것은 경제와 정치 등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영역이 축소되고, 국가로 대표되는 社會的 組織의 힘이 현저하게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개인적 자유 등의 古典的 價値를 중시하던 19세기 서양사회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 서양에서는

2) 그레이(John Gray)가 1984년에 정리한 바에 의하면 하이에크의 저술은 18권의 저서, 25개의 팜플렛, 16권의 편집 혹은 서문을 집필한 책, 235개의 논문에 달한다(Gray, 1984).

3) 이 이론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景氣理論이다. 이 이론의 골자는 은행이 과도하게 信用創造을 발행하여 市場利率이 심하게 하락하면 과도한 투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 결과로 資本不足이 발생하게 되어 恐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서 하이에크는 實物部門에서의 投資不足이 不況의 原因이라고 보았던 케인즈(J.M.Keynes)와 1930년대 초에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이 논쟁에서 케인즈의 이론이 승리하여 지배적인 것으로 되었다. 경기변동, 자본, 금융에 관한 그의 이론을 집대성한 것이 하이에크(1941)이다.

기본적으로 古典的 自由主義의 원칙들이 존중되었다. 私有財産制度에 기초한 市場經濟가 확립되고 個人的 自由는 신성불가침의 가치로 인정되었다. 그 결과 經濟가 발전하여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民主主義制度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반면에 階級葛藤과 貧富格差가 발생함에 따라서 지나친 개인주의적인 社會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대한 社會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서양에 등장하게 되었다.

소련 혁명 이후 등장한 社會主義 社會가 그 전형이지만 소위 自由主義 社會에서도 국민생활에 대한 社會의(현실적으로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널리 도입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제2차대전 이후에 급속히 진전되었다. 西歐에서는 이른바 福祉國家들이 등장하였고 美國에서도 分配와 不況問題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정책이 광범하게 도입되었다⁴⁾. 이 결과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自由主義 社會라는 歐美에서도 個人的 自由, 市場經濟 및 私有財産制度 등 自由主義의 기초를 이루는 가치들이 현실에서 크게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현상들을 비판하고 古典的인 自由主義의 基本價値들을 復活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방대한 체계는 모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第 2 節 知識의 不完全性

하이에크의 사상체계는 3권으로 구성된, 그의 노년의 大作인 「法,

4) 市場의 失敗에서 정부개입 근거를 찾는 公共經濟學과 有效需要 不足에서 정부개입의 근거를 찾는 케인지언 경제학이 제2차대전 후 美國經濟學의 주축을 이루었다.

立法 및 自由」⁵⁾에 집대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그의 自由主義의 체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하이에크의 모든 체계의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認識이 不完全하다는 自明한 사실이다. 인간 인식의 不完全性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의 認識能力 내지 思考能力의 不完全性이요, 둘은 필요한 정보들(사실들)을 완전히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이 두 가지 모두가 不完全하다고 본다. 이 중에서 앞의 문제는 인간이 事物의 實體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관한 것으로서 하이에크는 인간의 이러한 能力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칸트(Emmanuel Kant)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⁶⁾. 또한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비롯한 모든 社會的 現象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事實(facts)은 무수하나 이러한 사실들에 관한 정보들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러한 無知(ignorance)는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흔히 잊어버리고 있다.

이 책의 전체에 걸쳐서 독자들이 늘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특정한 사실들의 대부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無知는 필연적이고도 어쩔 수가 없다(LLL1, p. 12)

5) *Law, Legislation, and Liber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ol.1, Rule and Order, 1973(이하 LLL1)

vol.2,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1976(이하 LLL2)

vol.3, The Political Order of a Free People, 1979(이하 LLL3)

6) 하이에크(1952)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다. 認識論에서 인간이 이러한 能力을 갖고 있다고 보는 입장을 Aristotelianism이라고 하며 이와 반대의 입장을 Kantianism이라고 한다. 前者에 의하면 인간은 事物을 客觀的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後者の 입장에 따르면 인간의 인식을 인간의식의 主觀的인 產物일 뿐이므로 인간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하이에크는 知識(knowledge)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抽象的인 一般的인 事實들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具體的인 特定한 事實들(concrete particular facts)에 관한 것이다.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필요한 것은 前者(예컨대 이론과 같은)만이 아니라 後者 역시 필요하다. 예컨대 기업에게 필요한 사실들은 需要와 供給에 관한 이론만이 아니라 市場의 상황에 관한 具體的인 情報들이다. 그러나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아는 기업들은 하나도 없다. 물론 사람들은 情報를 전연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갖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情報를 어떤 한 개인이나 집단이 모두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이에크는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한 無知를 制度的 無知(institutional ignorance)라고 부르고 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LLL1, p. 13).

소규모의 集團社會에서는 필요한 情報의 양도 많지 않고 이 情報들을 모두 입수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이 수없이 많은 현대의 '크고 열린 사회'(the Great Open Society)에서는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수많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흩어져 있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⁷⁾. 이를 그는 '知識의 分散'(the fragmentation of knowledge ; LLL1, p. 14)이라고 불렀다.

'分業'(division of labor)보다도 이 '知識의 分散'이 현대사회의 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이에크는 강조하였다(LLL1, p. 14). 바로 이 요인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의 단순한 사회에서보다 制度的 無

7) 필요한 모든 정보를 경제주체들이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하이에크는 完全한 情報를 가정하는 현대 경제학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이 점은 그가 市場秩序의 效率性을 논할 때에도 중시하는 점이다. 그는 完全한 情報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情報傳達網이라는 市場秩序의 效率的인 기능이 발휘된다고 본다(뒤의 제8절 참조).

知的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

第 3 節 設計主義的 合理主義의 誤謬

國家의 역할이 크게 증대하였다는 것이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특정한 목표를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국가에 의하여 많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社會主義 社會나 福祉國家가 모두 이의 소산이다. 20세기는 특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인간이 인간사회를 設計에 의하여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충만한 시대이다. 이러한 믿음을 하이에크는 '設計主義的 合理主義'(constructivist rationalism)라고 부르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생각이 성공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필요한 設計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간의 知的 能力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하여 목표와 수단간, 각 부문간이 相互 整合하도록 합리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인간의 知的 能力 즉 理性을 사람이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설계하여 새로 만든 제도가 작동할 때에 당면하게 되는 구체적인 특정한 사실들을 설계자들이 모두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지적이다. 두번째 문제 즉 필요한 具體的인 事實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없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 본 人間知識의 不完全性에 의하여 그대로 설명된다.

다음 첫번째의 문제, 즉 人間理性에 관한 논의를 살펴 보자. 이 문제와 관련하여 設計的 合理主義를 뒷받침하는 것이 데카르트적인 合理主義(Cartesian rationalism)이다. 이 사상을 확립한 사람이 프랑스 合理主義의 始祖인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이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理性은 확증된 前提들로부터의 논리적인 연역이며, 合理的 행동은, 알려져 있고 제시될 수 있는 진리에 의하여 전적으로 결정된 행동들을 의미한다'(LLL1, p. 10).

데카르트가 이처럼 인간의 理性의 힘을 확신하였던 것은, 自然과 社會 등 주위 환경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實體로서의 人間精神(mind)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다(LLL1, p. 17). '데카르트적 二元論(Cartesian dualism)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생각을 하이에크는 오류라고 비판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정신은 주위환경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과의 접촉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적응하여 가기 때문이다. '人間精神은 社會 環境의 산물이다'(LLL1, p. 17)⁸⁾.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設計主義的 合理主義는 理性에 대한 過信과 完전한 정보라는 모두 틀린 가정에 입각하여 있는 잘못된 생각이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社會主義 社會를 비롯하여, 20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많은 제도들이 이러한 잘못된 設計主義的 合理主義의 산물이며 이 제도들은 人間社會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國家權力의 남용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自由를 축소하고 市場經濟의 효율을 하락시키는 등 사회를 퇴보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8) 하이에크가 理性의 힘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단지 그는 理性의 힘의 無限性을 부정하고, 인간의 정신도 경험(주위환경과의 접촉)을 통하여 끊임없이 進化한다고 보았다. 그는 設計主義的 合理主義(데카르트적 合理主義)에 대비하여 자신의 합리주의를 進化的 合理主義(evolutionary rationalism)라고 불렀으며 이들은 각각 포퍼(Karl Popper)의 naive rationalism과 critical nationalism에 대응시켰다(LLL1, p. 29).

第 4 節 進化와 準則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人間의 理性과 知識은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은 이것에 의존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이에크에 의하면 그것은 準則(rules)이다⁹⁾. '사람은 目的을 추구하는 동물이 아니라 準則을 따르는 동물이다'(LLL1, p. 11).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사람은 準則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準則은 일정한 상황변화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에 반응하도록 하는 일정한 行動樣式(a pattern of action)이다. 文化를 통하여 準則이 세대간에 이전되므로 準則은 文化에 따라 다르다. 사람들은 이성과 지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상황변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準則의 作用 메커니즘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이에크는 사람들이 準則에 따라 행동할 때에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것도 알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사람들이 準則을 따르는 것은 그것에 따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 아니고 단지 文化를 통하여 세습된 습관에 따라 행동한다. 결과는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즉 사람들은 어떤 상황변화가 발생하면 일단 文化를 통하여 선조로부터 물려 받은 準則에 따라서 행동하고 이 중에서 사후적으로 성공이 입증된 준칙이 다시 文化를 통하여 조금씩 고쳐지면서 다음 세대로 물려진다는 것이다. 즉 準則은 進化한다.

사람이 그속에 태어나는 文化的 遺産은 그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채택된 것이 아니

9) 明示的인 것만이 아니라 默示的인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規則보다 準則이라고 번역하였다. 이를 規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사람들의 한 집단을 성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널리 보급된 행동의 습관이나 준칙의 複合體(a complex)로 구성된다. 사람들은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고 행동하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한다. …….

經驗을 통한 學習(learning from experience)은, 동물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세계에서도, 思考(reasoning)의 과정이 아니고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널리 보급된 습관의 관찰, 보급, 전달 및 발전의 과정이다. 종종 실행자 개인이 알았기 때문에 이 습관이 채택된 것이 아니라 이 습관이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生存의 기회를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LLL1, pp. 17~18).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면서 여러 세대를 거쳐서 집단의 생존 기회를 늘림이 입증된 행동양식이 결국 準則이다. 즉 適者生存을 통한 進化(evolution)가 準則이 발전하는 방법이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進化는 인간의 의도적인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適者生存의 검증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가는 과정이다.

비단 準則만이 아니라, 社會制度나 인간의 理性과 理論 그리고 生物 등 모든 것이 進化를 통하여 발전한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핵심적 주장의 하나이다¹⁰⁾. 自然의 산물은 물론이고 인간의 의하여 만들어지는 모든 社會의 산물들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도적인 設

10) 進化論은 19세기 영국의 생물학자였던 Charles Darwin(1809~1892)에 의하여 창시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進化論은 이보다 1세기 앞선 흄과 맨더빌 같은 18세기 스코틀랜드의 道德哲學者들이 言語나 貨幣, 法 등의 사회적 산물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고 다윈은 이들로부터 이 개념을 배웠다(LLL1, p. 23).

計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進化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 이는 完전한 理性과 知識 그리고 이에 입각한 設計主義的 合理主義를 부정하는 하이에크의 입장에서서는 당연한 귀결이다.

第 5 節 自生的 秩序와 人造된 秩序

하이에크는 자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體制(system)를 自生的 秩序(spontaneous order)라고 불렀다. 市場이나 自生的인 法(예: 영국의 common law), 言語, 生命體의 有機體(organism)¹¹⁾가 모두 이에 속한다. 흔히 사용하는 體制(system)란 말 대신에 그는 秩序(order)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는 秩序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 책의 전체에 걸쳐서 우리들은, 전체에 대한 어떤 空間的이거나 時間的인 일부분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나머지에 대한 정확한 豫測 혹은 정확함을 증명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다수의 요소들이 상호연관된 사물들의 상태(a state of affairs)를 서술하기 위하여 秩序라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LLL1, p. 36).

여러 가지 다양하고 많은 요소들을 상호 연관시키며 이를 이용하면 부분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나머지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예측

11) 有機體(organism)은 自生的 秩序이고 組織(organization)은 人造된 秩序이다.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간의 상관관계들의 組合(set)을 秩序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다양한 개별요소(elements)들간에 존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상관관계들의 體系가 秩序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특히 부분적인 정보로부터 상당히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秩序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言語, 法, 有機體, 銀河系 등 자연과 사회를 막론하고, 여러 要素로 구성된 모든 조직체에는 이러한 秩序가 존재할 것이다. 秩序가 존재하지 않으면 조직체가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이에크는 社會도 하나의 秩序라고 보았다.

하이에크는 秩序를 人造된 질서(made order)와 自生的 秩序(spontaneous order 혹은 grown order)로 나누었다. 人造된 秩序란 특정한 인간 혹은 집단이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서 의도적으로 設計하여 만든 秩序이고, 自生的 秩序란 進化를 통하여 저절로 形成된 秩序이다. 그리스 말로 前者를 taxis라고 하고 後者를 kosmos라고 한다. 市場經濟와 倫理, 言語 등이 自生的 秩序이고 社會主義 經濟와 政府組織法 등이 人造된 秩序이다¹²⁾. 自生的 秩序는 進化의 결과로 저절로 형성된 것이므로 만든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 작동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自生的 秩序가 옳고 人造된 秩序가 틀렸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입장이다. 人造된 秩序는 잘못된 設計主義的 合理主義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理性과 知識은 불완전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만든 人造된 秩序는 원래의 의도했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생각이다.

12) 自然의 秩序는 인간이 설계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自生的 秩序이다. 社會的 秩序는 人間이 설계한 人造된 秩序와 進化의 결과로 형성된 自生的 秩序로 나누어진다.

第 6 節 自由의 法과 政府의 法

法은 秩序의 하나이다. 秩序를 自生的 秩序와 人造된 秩序로 나눌 수 있으므로 法도 이 두 가지에 속하는 것이므로 나눌 수 있다. 하이에크는 自生的 秩序에 속하는 법을 自由의 法(laws of liberty)이라고 부르고 人造된 秩序에 속하는 法을 制定된 法(laws of legislation) 혹은 政府의 法(laws of government)이라고 불렀다. 영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으나 그리스어로 前者가 nomos이고 後者가 thesis이며 독일어로는 前者가 Recht, 後者가 Gesetz이다.

대부분의 法이 국회의 立法過程을 거쳐서 制定되는 현대에서는 국회에서 제정과정은 거쳤느냐를 기준으로 nomos와 thesis를 나눌 수는 없고(만일 이 기준에 따른다면 현대의 法은 거의 모두 政府의 法에 속할 것이다) 그 내용을 보아서 구분하여야 한다. 법 중에서 이미 진화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통용되던 準則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 自由의 法이며 제정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국가가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등장한 法(예컨대 節次法이나 政府組織法)은 政府의 法에 해당한다.

自由의 法은 일반적으로 올바른 행동의 準則(rules of just conducts)을 밝히는 법이며 개인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적용되는 법이다. 반면에 政府의 法은 주로 국가와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크게 보아 前者는 私法(private laws)에 後者는 公法(public laws)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LLL1, pp. 131~132).

國家가 法을 제정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사는 사회에는 사회 내의 平和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행동의 準則이 進化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존재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自由의 法이다. 自由의 法은 주로 사회의 裁判官(judge)들에 의하여 만들어져 왔다. 개인들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裁判官들의 판결이 누적되어 오면서 自由의 法이 형성되어 온 것이다. 즉 裁判官들이 만든 법(judge-made law)이 自由의 法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裁判官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裁判官들이 발견한 法이다¹³⁾(LLL1, p. 83). 개인들간에 발생한 분쟁을 판결할 때에 그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올바른 행동의 準則을 기준으로 삼아 판결하게 된다. 이 기준은 裁判官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이미 存在하고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즉 自由의 法은 오랜 세월 동안 進化를 통하여 형성되었고 재판의 판결에 의하여 정착된 올바른 행동에 관한 準則(rules of just conducts)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전통적 民法인 '普通法'(common laws)은 自由의 法의 전형이다(LLL1, pp. 84~85).

반면에 政府의 法은 정부라는 조직의 운영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당국이 의도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稅金을 걷기 위한 租稅法이 그 예이다. 이 때문에 하이에크는 이를 政府組織法(law of organization of government)이라고도 불렀다. 이 법은 무엇이 옳은냐가 아니라 정부의 조직과 예산과 기능에 관한 규정들로 이루어진다. 다음의 글은 두 가지의 法에 관한 하이에크의 생각을 잘 요약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재판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올바른 행동에 관한 준칙, 즉 nomos 혹은 自由의 法과 당국에 의하여 제정된

13) 하이에크의 自由의 法을 自然法(natural law)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自然法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원래의 自然法은 하이에크의 自由의 法과 마찬가지로 進化의 결과로 형성된 법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와서 自然法은 '自然의 理性'(natural reason)의 설계에 의하여 즉 하느님의 섭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法이라고 해석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이에크의 自由의 法은 後者와는 다르며 前者와는 동일하다고 생각된다(LLL1, p. 84).

組織의 準則들(즉 政府의 法 : 필자 주)간의 차이는, 前者는 사람이 만들지 않은 自生的 秩序의 조건들로부터 등장한 반면에, 後者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조직체를 의도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미 관찰된 관습들을 단지 조문화한다는 의미, 혹은 그것에 근거하고 있는 질서가 순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준칙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의미에서, 전자는 발견된다.

… 그들(自由의 法 : 역자 주)은 특정한 인간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으나 특정한 결과를 목표로 하는 조직의 규칙들(政府의 法 : 역자 주)은 조직자의 마음이 자의적으로 설계한 발명품이다(LLL1, p. 123).

自由의 法은 원래 개인을 自由롭게 한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여 사회에 평화와 正義가 실현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라고 부르는 질서있는 관계 속에서 사람의 집단이 살 수 있는 것은, 개인들이 어떤 共通의 準則(즉 自由의 法 : 필자 주)을 준수하는 결과일 뿐이다'(LLL1, p. 95). 그리하여 自由의 法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개인의 自由라는 理想이 활짝 필 수 있었다(LLL1, p. 94).

그 예로 하이에크는 18세기 영국을 들었다. 당시 전 유럽이 부러워하던 영국의 자유가 行政府와 立法府의 독립 덕분이었다고 설명한 몽테스키외를 비판하고 하이에크는 영국에서는 독립적인 司法府가 존재하였으며 이 사법부가 普通法을 철저히 수호한 덕분이라고 지적하였다(LLL1, p. 85). 하이에크에 의하면 自由와 正義의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自由의 法을 수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하이에크는 국가권력의 강화와 함께 등장한 法實證主義(legal positivism)를 맹렬히 비판하였다. 法實證主義는 앞의

제3절에서 비판한 設計主義的 合理主義를 法學에 적용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法은 進化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立法者의 意圖인 設計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國家이다.

모든 法은 立法者의 의지로부터 나온다는 法實證主義의 전체 개념은 設計主義의 특징인 意圖主義者들(intentionalists)의 誤謬의 산물이며, 法을 비롯하여 인간의 다른 대부분의 제도들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모순되는 이론인, 인간제도에 관한 設計理論(design theories of human institution)으로의 퇴보이다(LLL1, p. 73).

국가에 의하여 제정되는 政府의 法은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法인 自由의 法은 국가와 상관없이 進化를 통하여 형성된다는 사실을 무시하므로 이 이론은 오류이다. 이 이론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할 수 있는 명제를 전체에 적용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第 7 節 社會正義와 社會立法의 誤謬

法實證主義는 두 가지의 오류를 초래하였다. 하나는 立法機關은 어떤 法이라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은 立法機關이 제정한 모든 法은 法이라는 생각이다(이 둘을 합하여 法萬能主義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立法(legislation)이 法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개념으로부터, 현대사회에서 대부분 자명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政治發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가지의 생각이 도출되었다. 이 두 생각은 神人同形同性論(anthropomorphism)이라는 과거의 오류의 잔재인 잘못된 設計主義로부터 비롯된 것들이다. 첫번째 잘못된 생각은, 만일 권한을 제약한다면 그보다 上位의 입법기관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위에 또 더 높은 기관이 존재하여야 하는 끝없는 반복이 계속되므로 무한한 권한을 가진 최고의 立法者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의 잘못된 생각은 최고의 立法機關이 제정한 것은 모두가 법이며 이 기관의 의지를 표현한 것만이 法이라는 생각이다(LLL1, p. 91).

결국 法實證主義는 이와 같이 法萬能主義 내지 國家萬能主義라는 잘못된 생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현대 民主主義 국가에서 自由를 침해하고 있는 현상의 하나는 社會正義 실현을 목적으로 한 社會立法(social legislation)이라는 명분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행동이라는 보편적인 준칙의 준수를 확보한다는 목적만을 위하여 강제가 가능하다는 원칙이 자유세계에서 지난 백년 동안의 역사에서 포기되었다면, 이는 주로 소위 社會的 目的에 봉사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졌다(LLL1, p. 141).

하이에크는 社會的 目的을 위한 社會立法은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하나는 과거의 封建的인 身分差別을 철폐하기 위한 立法이며, 둘은 生活無能力者들에 대한 政府支援을 위한 것이며, 셋은 社會正義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LLL1, pp. 141~142). 하이에크는 이 중 처음 둘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세번째의 것, 즉 社會正義의

實現을 위한 社會立法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하이에크는 社會正義(social justice)를 分配正義(distributive justice)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¹⁴⁾. 市場經濟에서 分配正義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위해서 정부는 市民과 그의 재산을 行政(administration)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국가의 법들은 올바른 행동의 準則이라는 自由의 法의 원리로부터 이탈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국가기능을 조직하는 政府의 法으로 변형되게 되었다.

세번째의 社會的 立法의 종류가 있다. 개인의 행동을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의 목표이다. 올바른 행동의 준칙들(혹은 私法의 준칙들)이라는, 목적과 독립된 준칙들이 목적에 의존하는 組織의 준칙들(혹은 公法의 준칙들)로 점차로 이행한 것은 '社會正義'라는 도깨비불(will-o-the-wisp)에 현혹된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이다. '社會正義'의 추구는 정부로 하여금 市民과 그 재산을, 특정한 집단들을 위한 특정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였다. 근로자들의 특정한 집단의 임금이나 小農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나, 도시빈민의 住居를 개선하는 것과 같은 社會立法의 목적은 행동에 관한 일반적인 준칙을 개선하는 것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LLL1, p. 142).

하이에크는 社會正義(分配正義)에 관한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

14) '현재 公的인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사용될 때에나 그리고 이章에서 검토될 때에, 그것(社會正義를 말함: 필자 주)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分配正義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와 같다'(LLL 1, p. 63).

분석하였다. '첫째 문제는 市場에 기초한 경제질서 내에서 '社會正義'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나 내용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 문제는 ('社會正義'나 혹은 다른 명분으로) 상이한 개인이나 집단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분배양식을 당국이 시장경제에 부과하면서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이다'(LLL2, p. 68).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하이에크는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한다. 첫번째 문제를 먼저 보자. 하이에크에 의하면 우선 正義나 不義란 개념은 의지가 작용하는 인간(개인이나 개인들의 집단)의 행동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 개념이다. 의지가 작용한 행동이면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正義나 不義란 말을 사용할 수 있다. 政府의 행동이 그러한 경우이다. 의지가 결합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의 준칙에 따랐느냐가 正義의 판단기준이 된다.

다음 正義의 판단 대상은 結果가 아니라 過程이다. 결과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市場이라는 自生的 秩序에서 나타나는 分配는 正義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意志가 개입된 인간의 행동도 아니요 과정도 아니며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市場經濟에는 社會正義(分配正義)란 말을 적용할 수가 없다.

분명히 개인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의 상호협의를 행한 행동들, 그리고 組織體의 행동들은 의롭거나 不義일 수가 있다. 政府는 그러한 조직체이지만 社會는 아니다. 그리고 사회의 질서가 정부의 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自生的 秩序로 유지되는 한, 사회적 과정의 특정한 결과들은 正義에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정부가 개인에게 부과한 요구가 正義에 합당한 것인가의 여부는, 올바른 행동의 준칙을 개별적인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초래된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행동의

준칙에 부합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LLL2, pp. 32~33).

自生的 秩序인 市場秩序에서 富나 地位는 不平等하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設計에 의한 것이 아니요(LLL2, p. 70), 개인의 技術이나 運의 결과이다(LLL2, p. 70). 市場秩序에서는 善意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많은 몫을 받는 것도 아니고 必要에 의해 分配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시장질서에서 분배는 動機나 必要와는 상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利益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LLL2, p. 72).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롭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개입되었다면 이는 正義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LLL2, p. 64). 그러나 시장경제에서의 분배과정에는 어느 누구의 의도도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不均等함에도 불구하고 不義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¹⁵⁾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초래된 상황만이 의롭다 혹은 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自生的 秩序에서 특수한 상황들은 의롭다거나 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만일 A가 많이 가지고 B가 적게 가지게 된' 것이 의도된 것이거나 예측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의롭다거나 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사회적' 혹은 '분배적' 정의는 自生的 秩序의 테두리 내에서는 실로 아무 의미가 없으며 組織體 내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것이다(LLL2, pp.32~33).

15) 사람의 意圖가 개입되지 않은 것에서 시장경제에서의 分配의 正常性을 찾는 점에서 하이에크는 오이켄과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다.

이제 두번째 문제, 즉 自生的 秩序(市場秩序에 기초한 自由世界)에서 自由를 침해하지 않고 정부가 社會正義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살펴보자.

社會正義를 실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사회에 대하여 그들이 끼친 공헌이나 자격에 비례하여 보상받도록 함을 의미한다(LLL2, p. 85). 이처럼 이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국이 '시간과 장소의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개인들의 모든 상이한 행위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에 맞추어 상호연관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LLL2, p. 86). 따라서 개인들은 올바른 행동준칙만이 아니라 당국이 요구하는 지시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된다(LLL2, p. 87). 이리하여 개인과 집단의 임무는 中央計劃當局이 결정하게 된다(LLL2, p. 82). 때문에 社會正義는 오직 專制主義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LLL2, p. 83) '어떠한 모습의 社會正義'를 강제로 실현시키려는 시도도 필연적으로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되는 개인적 결정의 自由를 파괴한다'(LLL2, p. 99).

高率의 相續稅와 教育에 대한 政府支援과 같은, 分配에서의 機會均等を 위한 政策에 대해서도 하이에크는 비판적이다. 機會均等を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모든 사람들의 물질적인 환경과 인간적인 환경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불가피한 기회의 不均等を 시정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은 惡夢(nightmare)만 초래한다(LLL2, p. 85).

하이에크에 의하면 社會正義란 결국 현대사회를 현혹하는 유령(mirage)에 불과하며, 개인의 自由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진정한 法의 개념을 파괴하는 언어의 모독(abuse of word)이다. 社會正義는 특정한 계층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그릇된 정책을 옹호하는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LLL2, p. 96).

하이에크는 분배문제에 있어서 매우 保守的이다. 그는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分配正義를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不幸한 集團이 받

생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불가피하며(LLL2, p. 94)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不勞所得을 소멸시키려는 것은 文明의 대부분의 이익을 소멸시키려는 것과 같으며(LLL2, p. 94) 기업으로 큰 富를 축적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보다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더 큰 이익을 제공한다고 보았다(LLL 2, p. 98). 지난 200년간 絶對的 貧困만이 아니라 相對的 貧困을 축소시켜 온 것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간의 社會立法 덕분에 아니라 富의 일반적인 축적 덕분이었다(LLL2, p. 131).

하이에크가 반대한 것은 市場秩序를 훼손하는 分配政策이다. 따라서 그는 市場秩序를 훼손하지 않는 分配政策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市場秩序에서 낙오한 사람들에게 最低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은 그도 지지하였다. 이것은 市場秩序를 왜곡시키지도 않고 自由를 침해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잘못된 것은 자생적인 질서인 市場秩序를 훼손하는 分配政策이다.

어떤 이유로든 시장에서 적절한 수입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시장의 밖에서 일정한 最低所得을 제공하여 주는 것은 自由의 제한을 초래할 필요도 없고 法의 準則(the Rule of Law; 法은 개인의 自由를 수호해야 함을 의미함; 필자 주) 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은,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당국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리하여 개인들의 노력의 방향을 인도하는, 非人格的인 市場機構의 작동이 중지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LLL2, p. 87).

第 8 節 市場秩序의 機能

하이에크에 의하면, 대표적인 自生的 秩序인 市場秩序(market

order 혹은 catallaxy)¹⁶⁾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상이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평화롭게 함께 살게 하며, 또한 모든 목표의 실현에 필요한 수단인 物質的 財貨들이 다른 어떤 經濟秩序에서보다도 더 풍족하게 生産되도록 한다는 두 가지의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다.

다양한 개인들로 구성되는 사회에 秩序와 平和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目標가 동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目標를 강요해서는 오히려 사회의 平和를 달성할 수가 없다. 개인들마다 생의 目標가 상이한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社會(a Great Society)는 특정한 共同의 目標의 추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필요하다면 특정한 價値라는 공동의 척도를 강요해야 한다는 생각은 인류의 역사에서 옛날부터 발견된다. 오늘날 개별행동을 질서로 통합시키고 平和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의 목표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믿음이 이러한 생각을 知的으로 옹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야말로 질서와 平和의 달성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이다. 위대한 사회는 알려진 공동의 목표의 추구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또한 團結의 진정한 의미로서의 連帶와 화합될 수 없다(LLL2, p. 111).

다양한 目標야말로 文明의 기초이며 社會에 공동의 目標를 강요하는 社會主義와 民族主義는 自由文明의 최대의 敵이다(LLL2, p.

16) katallattein(혹은 katallassein)은 交換하다 혹은 共同體에 받아들인다는, 그리고 敵을 바꾸어 친구로 만든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였다. 이 말에서 市場秩序를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키는 말로 오래전에 사용되다가 근래에 부활된 catallactics란 말이 나왔다. catallaxy는 이로부터 하이에크가 새로 만든 말로서 市場秩序를 의미한다.

111). 市場秩序에서 개인들이 각자 상이한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평화롭게 共生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交換(barter 혹은 exchange)의 원리덕분이다. '交換을 통하여 비로소 상이한 개인들이 서로 궁극의 목표를 일치시키지 않고도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한다'(LLL2, p. 110).

하이에크에 의하면, 分業을 통하여 利己의인 행동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좁은 안목이다. 어떤 하나의 조직내에서도 分業은 존재하며, 自生的 秩序가 利己心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市場秩序에서는 交換을 통하여 각자의 상이한 知識과 목표가 서로 화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때 각 개인은 利己의일 수도 있고 利他的일 수도 있다. 이때 각자의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自發的 選擇에 따른 分業과 交換이 발생함으로써, 각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市場秩序에 관하여 중요한 점은, 개인들이 利己的이든 아닌 상관없이 개인간에 서로 다른 상이한 지식과 목적을 화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장질서가 전반적으로 다른 어떤 정교한 조직보다도 더 우월한 것은, 시장질서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이 전적으로 利己的이든 아니면 매우 利他的이든, 그들이 대부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목표들이 더욱 진전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대한 社會에서는 개인들의 목표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바로 상이하다는 이유 때문에 상이한 구성원들은 서로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LLL2, p. 110).

그리하여 市場秩序는 다양한 목표들이 서로 평화롭게 화합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어 낸다(LLL2, p. 112).

각자가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며 평화스럽게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市場秩序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장점은, 대부분의 목표에 필요불가결한 수단인 財貨가 풍부하게 산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經濟 그 자체는 결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LLL2, p. 113). 市場秩序에서는 어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費用을 지불하지 않도록 한다(LLL2, p. 113). 시장경제의 이러한 效率性을 설명함에 있어서 하이에크는 情報傳達網(information network)으로서의 市場이라는 개념과 發見過程으로서의 競爭(competition as a discovery procedure)이라는 상호연관되는 개념을 사용한다.

完全情報는 현대 경제학이 競爭市場의 效率性을 설명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중요한 假定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앞의 제2절 不完全한 知識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이에크는 이 점에서 현대 경제학에 나오는 完全情報의 가정은 잘못되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LLL3, pp. 67~68). 만일 모든 정보를 안다면 오히려 中央의 計劃을 통해 생산하는 計劃經濟가 더 좋다. 나아가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의 결과는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그 결과는 기대와 어긋나게 된다(Hayek, 1968, p. 255).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事後的으로만 구체적인 사실들과 결과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일종의 進化의 과정이다.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경제주체도 어떤 經濟的 行爲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한다. 단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事後的으로만 알 뿐이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와는 달리 市場秩序에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집약적으로 알려주는 情報傳達網이 있다. 價格機構가 바로 그것이다. 價格에는 市場狀況의

모든 정보가 종합적으로 집약되어 나타나며 이 정보를 보고 경제주체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다¹⁷⁾.

필요한 財貨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들은 生産要素들의 價格을 보고 가장 경제적인 생산방법을 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市場秩序는, 수많은 관련 정보들을 가격으로 집약하여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情報傳達網의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하여 필요한 재화들이 낮은 費用으로 공급되게 한다.

이러한 市場秩序의 기능과 포리를 이루는 것이 競爭을 통한 發見過程이다. 試驗이나 實驗 혹은 競技(game)와 마찬가지로 市場秩序에서의 경제활동은 일종의 競爭이다. 競爭을 시행하는 것은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결과를 안다면 競爭을 할 필요가 없다. 분산하여 존재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지식들이 競爭을 통하여 알려지고 활용되게 된다.

가격에 반영되거나 응결된 정보들의 합계는, 전적으로 경쟁의 산물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화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市場을 개방한다. 이익을 얻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특별한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활용할 기회를 줌으로써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경쟁은 發見의 過程의 기능을 수행한다. 市場競技(market game)에서의 경쟁적인 노력이 널리 분산된 지식의 활용을 실현시키는 것은 이와 같이 정보가 기호화되어 (가격으로 나타남을 말함: 필자 주) 전달되기 때

17) 價格機構의 信號燈 機能(market as a signaling system)이라고도 불리우는, 교과서마다 실리는 이 기능은 하이에크가 처음 지적한 것이다.

문이다(LLL2, p. 117).

경쟁은 결국 생산자들에게 合理性을 강요하는 과정이다. 經濟學에서는 合理的 行動을 가정하고 분석을 시작하지만 하이에크는 이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경쟁이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한다.

중증 합리적 행동이 경제이론에서 前提로 가정되지만, 합리적 행동은 경제행동의 전제가 아니다.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기초적인 이론이다(LLL3, p. 75).

경쟁은 경제생활에서 사람들을 合理的으로 행동하게 한다. 그 결과로 경쟁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들을 가장 싼 가격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에 의하여 생산되어 현실적으로 가장 싼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한다(LLL3, p. 74).

끝으로 하나 더 지적할 것이 있다. 그것은 市場에서의 企業의 수와 상관없이 경쟁의 효율이 존재한다고 하이에크는 생각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完全競爭市場에서만 資源配分の 效率性이 달성되며 完全情報와 아울러 生産企業의 無數한 존재는 完全競爭市場을 위하여 필수적인 假定이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이러한 假定들은 현실에서 전연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명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러한 假定들이 존재하지 않아도 市場秩序에서는 競爭 덕분에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된다고 보았다.

하이에크가 完全情報의 假定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앞의 제2절에서 언급하였다. 企業의 수가 無限하지 않아도 경쟁의 효율(市場秩序의 효율)이 달성되는 것을 보자. 우선 둘 이상의 기업이 존재하면 경쟁이 발생한다. 하이에크는 나아가서 獨占市場에서도

경쟁의 효율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른 기업의 進入이 두렵기 때문에 獨占企業은 판매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해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업의 행동은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새로운 생산자의 進入을 유발하는 수준 이하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범위 내에서, 다른 기업들을 못들어 오게 막는 데에 충분할 만큼 가격이 낮아야 한다는 고려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으면서, 이러한 기업들(혹은 기업)은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는(혹은 생산량을 결정하는), 獨占企業 혹은 寡占企業으로 정말 자유롭게 행동할 것이다(LLL3, p 67).

이 문제만이 아니라 하이에크는 독점에 대해서 다분히 긍정적이다. 이러한 점이 하이에크가 스미스나 오이켄과 다른 중요한 점이다. 이 때문에 다음 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점정책에 있어서 하이에크는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하이에크는 종래의 경제학과는 달리, 完全한 情報나 無數한 企業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完全競爭市場이라는 非現實的인 가정을 전제하지 않으면서도 情報傳達網으로서의 市場과 發見過程으로서의 競爭이라는 독창적인 개념을 이용하여 市場價格機構의 效率性을 설명하였다.

第 9 節 政府의 役割

治安과 國防을 담당하여 法秩序를 확립하는 것에 정부의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는 '작은 政府'(minimal state)의 주장은 현대 사회에

타당하지 않으며 크게 보아 秩序의 확립과 公共財의 供給이라는 두 가지가 정부의 임무임을 하이에크도 인정하였다(LLL3, p. 41). 그러나 政府, 특히 中央政府가 公共財의 생산을 獨占하는 것은 非效率的이므로 가능한 한 政府의 支出을 줄이고 公共財의 생산에 民間部門의 참여와 지방정부로의 분산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1. 量入制出을 통한 財政膨脹의 抑制

公共財의 供給이 정부의 역할임을 인정하면서도 하이에크는 현대 국가의 재정이 불필요하게 비대하였음을 비판하였다. 그는 그 이유를 量出制入이라는 국가재정의 원칙에서 찾았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財政의 原則으로 인정되는 量出制入이 현대 사회에서 財政이 지나치게 팽창한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신하여 그는 量入制出의 원칙을 재정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부가 제공하는 수많은 다양한 公共財로부터 각 개인이 얻는 이익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 가능한 최선의 방법은, 각 개인이 정부의 서비스로부터 이득의 총합계와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각 개인으로 하여금 각자 자신이 국가의 서비스에서 얻는 이득의 크기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共同基金制로 公共財를 생산하는 것이며 일종의 相互利益의 交換이다(LLL3, p. 45).

물론 현실적으로 각 개인이 자신이 국가의 각종 서비스로부터 얻은 총이득을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원리는 국가의 재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대표인 議會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세금을 낼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여기에 정부의 支出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지난 100년 동안 財政의 팽창이 계속되어 온 것은, 정부의 예산을 책정할 때에 쓸 데를 먼저 정한 다음에 재원조달을 정하는 量出制入

의 관행이 계속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부담을 대신 짊어질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이를 용인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추세를 고치기 위해서는 총지출의 규모를 먼저 정하는 量入制出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그러므로 租稅水準에 대한 결정이 公共部門의 총규모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財政은, 納稅者들을 기만하여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지불하도록 만들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정부지출에 동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만 발전하여 왔다. 財政理論에서조차도 의사결정과정에서 公共支出의 크기에 합리적인 제한을 두도록 한다는, 民主主義에서 가장 중요한 租稅의 원칙에 대한 고려가 주어지지 않았었다(LLL3, p. 53).

必要가 먼저 결정된 다음 手段이 결정되며, 그들이 이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제도하에서는 우리는 이것(재정팽창을 말함: 필자 주) 이외의 다른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LLL3, p. 53).

2. 公共部門의 非效率性的의 회피

公共財를 생산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하이에크는 公共部門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非效率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民間의 參與를 확대함으로써 公共部門에 의한 생산을 가능한 한 줄이고, 公共部門의 생산 중에서도 地方政府에 의한 生産을 늘림으로써 中央政府에 의한 獨占의 生産을 가능한 한 줄일 것을 주장하였다.

가. 民間部門

하이에크는 公共部門에 관한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하나는 강제적인 방법(즉 세금)으로 財源이 조달되는 서비스라고 해서 반드시 정부가 생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둘은 公共部門에 의한 생산은 市場에 의한 생산보다도 劣等하다는 것이다(LLL3, p. 46). 이러한 입장에서 하이에크는 우선 政府에 의한 生産을 가능한 한 줄일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첫째, 民間部門의 생산을 증대하는 방법과 둘째, 생산은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는 資金만 지원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이에크는 가능한 한 民間部門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民間企業의 참여를 허용하여 政府에 의한 독점적 생산을 피할 것을 주장한다. 수송, 우편과 통신, 에너지 등의 생산이 이에 해당한다. 이 부문의 생산을 정부가 독점하면 경쟁이 상실되어 서비스의 品質 低下와 資源의 非經濟的 이용이 발생하며 또한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資源의 낭비가 발생하는 폐단이 발생할 수도 있다(LLL3, p. 59).

뿐만 아니라 이윤이 낮지 않기 때문에 흔히 政府만이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서비스 분야에도 하이에크는 民間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圖書館, 公共病院, 博物館, 公園, 公共教育, 劇場 등도 정부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과거에는 教會가 그리고 근래에는 특히 英語使用圈에서, 私立財團이나 基金이나 慈善團體들이 이러한 기관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하이에크는 이러한 민간의 自發的인 노력이 새로운 사회적 필요의 발견과 발전에 크게 기여함을 지적하였다(LLL3, pp. 49~50). 公共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러한 自發的인 民間機構들을 콘누엘(R.C.Cornuelle)¹⁸⁾을 따라서 하이에크는 獨立部門(independent sector)이라고 부르고 이 부문은 政府의 獨占에 따르

는 非效率을 完化시킬 것이라고 보았다(LLL3, p. 50).

다음 하이에크는 公共財에 관해서 가능하면 정부가 직접 생산을 담당하지 말고 단지 資金만 지원하고 생산은 민간기업간의 경쟁에 맡길 것을 주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이에크는 프리드만(M. Friedman)이 제안한 '教育證書制度'(education voucher scheme)¹⁸⁾를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이처럼 公共財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政府에 의하여 생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이에크는 公共部門이란 政府가 생산을 담당하는 부문이 아니라 정부가 資金 마련을 담당하는 부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LL3, p. 47).

3. 貨幣의 獨占發行權의 철폐

하이에크의 自由主義思想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貨幣發行의 國家獨占權을 철폐하고 민간은행들의 貨幣發行을 허용하는 貨幣發行의 脫國營化(denationalization of money)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의 貨幣發行獨占權이 경제를 손상시키며 개인의 自由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財政膨脹을 초래한 주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았다(LLL3, pp. 57~8). 은행이 화폐발행을 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넌센스이며, 貨幣를 기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政府뿐이므로 오히려 政府로부터 貨幣를 보호해야 한다. 政府가 貨幣의 발행을 독점한 이후 君主들은 화폐에 자신의 모습을 새겨 넣어 국민들에게 그들이 누구의 臣民인지를 알게

18) Richard C. Cornuelle, *Reclaiming the American Dream*, New York, 1965.

19) 이 제도는, 정부가 學校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부모들에게 證書(voucher)를 나누어주고 학생 부모들은 여러 民間學校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학교를 선택하여 자녀를 입학시키고 등록금을 이 證書로 지불하면 학교가 이 증서를 정부에 제시하고 등록금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Milton.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ch.6.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貨幣發行에 따른 利益(seigniorage)을 획득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들(君主들)과 그의 계승자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이 특권을 權力과 기만의 수단으로서만 사용하였다'(LLL3, p. 58).

정부의 貨幣發行이 일정한 限界 이내로 자동적으로 규제되는 金本位制度下에서는 피해가 덜했으나 이러한 자동적 규제가 없는 현대의 管理通貨制度下에서 이 제도는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民間銀行들에게 貨幣發行을 허용하여 이들간에 경쟁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렇게하면 남발되어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는 통용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화폐만 통용될 것이다(LLL3, p. 57).

市場보다 政府獨占이 경제에 더 좋은 貨幣가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는 환상이 지금까지 貨幣制度의 발전을 지배하여 왔으나 진실은 물론 이와 반대로, 金本位制度和 같은 자동적 기구에 의하여 견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이 권한(정부의 독점적 화폐발행권: 필자주)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데에 악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통화량을 직접 관리하는 정부로서 얼마 동안이라도 그것을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화폐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정부 이외에 다른 기관이 우리에게 더 나은 화폐를 공급할 자유를 부여받을 때까지는 우리는 믿을 만한 화폐를 가질 수 없다(LLL3, p. 58).

4. 景氣安定政策의 批判

不況과 그에 따른 失業擴大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財政政策과 通貨政策을 사용하는 케인지언들의 政策에 대해서도 하이에크는

반대한다. 정부가 貨幣發行權을 獨占하여 통화량을 임의로 발행할 수 있는 현대의 管理通貨制度를 옹호하는 주요한 근거는 通貨量 調節을 통해서 完全雇傭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통화증발은 인플레이를 야기시키므로, 이 정책은 미래의 보다 더 큰 失業을 대가로 현재의 失業을 축소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LLL3, p. 59). 이 점은 프리드만이 대표하는 시카고學派와 동일하며 앞의 章에서 본 오이켄하고도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이다.

하이에크는 또한 民間投資가 부족할 때에는 利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정부가 投資를 확대하여 景氣를 安定시켜야 된다는 통념도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景氣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때를 놓치지 말고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LLL3, pp. 59~60).

5. 最低生活의 保障

앞의 제7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이에크는, 分配正義(社會正義)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市場秩序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현상(오이켄식으로 표현하면 經濟過程)을 간섭하는 것에는 반대하였으나 市場秩序의 밖에서 정부가 시장질서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 일정한 最低의 生活水準을 보장하는 것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는, 治安이나 國防과 같이 安全保障(security)의 하나이며 安全保障의 제공은 국가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장이 없으면 불만과 폭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最低所得을 보장하는 것, 혹은 그 자신이 스스로 生計를 얻지 못할지라도 아무도 일정한 수준 이하로 생활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할(legitimate) 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가 태어난 특정한

작은 집단의 일원임을 주장하지 않는 위대한 社會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작은 집단이 부여하는 상대적인 안전보장을 대부분이 잃어버린 체제에서는, 그들 자신의 잘못에 기인하지 않은 이유로 生計를 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아마도 커다란 불만과 폭력적인 반응이 발생할 것이다 (LLL3, p. 55).

6. 獨占對策

스미스나 오이켄과 비교할 때에 하이에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獨占을 상당한 범위 내에서 肯定한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의 제8절에서 그는, 獨占企業이라도 잠재적인 경쟁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기 때문에 獨占市場에서도 競爭의 效率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음을 이미 지적하였다. 이 밖에도 그는 여러 가지 점에서, 獨占에 대해서 적대적인 일반적인 경제학자들과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獨占에 관한 논의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의 특징은 假想的인 完全한 경쟁상태와 비교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다른 상태와 비교하여 獨占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즉 假想的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獨占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상태를 가상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이러한 그의 태도는, 비단 獨占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不完全情報을 인정하고 市場秩序의 효율성을 논의한 데서도 알 수 있었던듯이, 그의 일관된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그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獨占企業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싼 가격에 공급한다면 이는 우리가 원하는 최상의 상태이므로 獨占企業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獨占企業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LL3, p. 73).

많은 사람들이 獨占을 반대하는 것은 獨占은 特權을 부여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기업들이 방

해받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격으로 생산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느 기업보다도 싼 가격으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사실이 특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LLL3, p. 73). 獨占이 특정한 기술 등 특정한 生産要素의 독점적 所有로부터 발생하는 한, 價格이 限界費用과 일치할 때까지 生産을 증대시켜서 獨占利潤을 얻지 않을 것을 獨占企業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자기만 갖고 있는 독특한 기술이나 물건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私有財産權의 당연한 행사이기 때문이다.

희귀한 生産要素의 소유자가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價格과 生産량을 결정하는 것은 私有財産權의 인정으로부터 초래되는 당연한 결과이며, 私有財産權을 철폐하지 않고는 이를 없앨 수 없다(LLL3, p. 72).

生産技術의 경쟁적인 개발은 또한 대부분 개발 직후 일정기간 동안 갖게 되는 獨占的 利潤을 얻기 위해서이며, 이러한 독점이윤으로부터 그 다음의 기술개발을 위한 資本의 거의 대부분이 조달된다(LLL3, p. 71). 다음의 글은 獨占到 관한 하이에크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명심해야 할 주핵심은, 이 점이 獨占到 관한 근래의 논의에서 종종 불분명히 되고 있는데, 해로운 것은 獨占이 아니라 競爭의 방해라는 것이다. 탁월한 성과 때문에 발생한 獨占은 전적으로 찬양받을 만하다는 것은 거듭해서 강조할 만하다. 비록 독점기업이, 다른 기업이 불가능하게 만들기엔 충분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커다란 이윤을 주는 가격을 유지할 때에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독점기업은, 동일량의 生産물을 만듦에 있어서 다른 기업보다 더 적은 資源

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독점기업이 '正常利潤'(normal profit)만을 얻는 저렴한 가격으로 그의 생산물을 팔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점은 우리가 가능한 한 열심히 일해야 하고 희귀한 물건을 팔 때에 적절한 이익만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어떤 예술가나 외과의사가 그만이 갖고 있는 기술에 독점가격을 책정하는 데 아무도 공격할 꿈을 꾸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누구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獨占利潤을 얻는 것에 아무 잘못이 없다(LLL3, p. 83).

하이에크는 大企業은 나쁘고 中小企業은 좋다는 통념도 잘못된 편견이라고 비판한다. 여러 가지의 社會的인 고려 때문에 독립적인 小企業者, 小手工業者, 小商人과 같은 中産層을 육성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은 편견이며, 이는 대기업의 가격조작의 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비판과 함께,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어떤 기업이 너무 크다고 판단할 기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LLL3, p. 77). 따라서 大企業이라고 해서 差別的으로 혜택을 줄 필요도 없고 不利益을 줄 필요도 없다(LLL3, p. 78).

앞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이에크는 나쁜 것은 獨占 그 자체가 아니라 競爭의 妨害라고 보았다. 하이에크는 여기에 주로 해당하는 것이 價格差別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獨占企業이 주로 價格差別을 이용하여 다른 잠재적 경쟁기업의 市場進入을 방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해로운 것은, 더 나은 效率이나 한정된 특정한 資源의 보유 때문에 발생하는 獨占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가졌던 優越性의 근거가

사라진 다음에도 그들의 獨占的 지위를 보호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獨占企業들의 능력이다. 이는 독점기업이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가격에 대해 발휘하는 힘이 아니라 특정한 고객들에게 적용하는 가격들(즉 差別價格: 필자 주)에 대하여 그들이 발휘하는 힘이다. 특정고객들에게 청구하는 가격들에 대한 힘, 즉 差別할 수 있는 이 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잠재적 경쟁기업들을 단념시키거나 이들에게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다(LLL, p. 8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하이에크는 個別獨占企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獨占企業들의 集團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비단 독점기업들의 집단만이 아니라 모든 利益集團이 현대사회를 부패시키는 주요요인이라고 보았다.

현대사회의 敵은 個人이나 개별기업의 利己心이 아니라 組織化된 集團의 利己心이다. 사람들은 어떤 공통의 목적으로 조직화된 집단의 일원이 될 때에 마음의 평안(즉 道德的 合理化(moral support))을 얻는다. 그리고 集團化된 힘은 '개인의 경우보다 더욱 포악하게 (oppressive) 된다. 특정한 集團의 이익은 社會 전체의 이익과 상반되게 마련이다. 개인은 대체로 사회의 규범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데에 반해서 폐쇄적인 집단의 利己心은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진정한 공통의 이익과는 항상 상반된다²⁰⁾(LLL3, p. 90). 이익집단들은 흔히 정부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市場을 규제하도록 압력을 넣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킨다(LLL3, p. 89). 따라서 '현대사회

20) 集團은 良心의 가책이 없다고 한 오이켄(W.Eucken)의 말을 연상시킨다.

에서 진정한 착취는, 이기적인 자본가나 기업가와 같은 개인이 아니라 集團行動에 대한 道德的 合理化(moral support)와 集團에 대한 忠誠心(group loyalty)으로부터 힘을 끌어내는 조직체들에 의해서 행해진다'(LLL3, p. 96).

지금까지 보아 온 바와 같이 獨占企業이 경쟁을 방해할 때와 集團化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이에크는 보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對策으로 그는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잠재적인 경쟁기업을 監視者(watchdogs)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는 특히 독점기업이 진입을 방해함으로써 잠재적 경쟁기업이 입은 손실을 벌금이나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辯護上制度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이러한 방법이 강제행정권을 가진 정부당국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보았다(LLL3, p. 85).

둘째로 獨占企業들의 集團化를 저지하기 위해서, 去來를 제한하기 위하여 기업간에 이루어진 合意는 예외없이 모두 無效가 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기업간의 단합이나 합병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19세기 말 이후의 미국이나 제2차 대전 이후의 西獨과 같이 獨占企業間 談合이나 合併을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反獨占政策이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이 정책은 모두 실패하였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禁止와 處罰政策은 현실적으로 예외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예외가 인정되면 어떤 사항이 이 예외에 적용되느냐 아니냐의 판단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는 제도 자체가 無力化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禁止와 處罰이 아니라 無效가 되도록 하는 제도는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LLL3, pp. 86~7).

第 10 節 評價

하이에크의 進化論的 自由主義는 정부정책보다는 현대문명 전체를 비판한 하나의 독창적인 社會哲學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이에서 먼저 그의 체계 전체를 평가하여 본 다음에 그가 제안한 경제철학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하이에크가 비판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社會正義를 實現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立法을 통하여 갖가지 크고 작은 제도들을 만들어서 個人의 自由, 私有財產權, 市場秩序와 같은 自由主義의 기본가치들을 침해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社會主義社會에서만 아니라 自由民主主義를 내세우는 西方의 先進國家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진단이다. 이러한 하이에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주요명제들로 분해할 수 있다.

- ① 인간의 理性과 知識은 不完全하다(데카르트적인 合理主義를 비판하는 批判的 合理主義).
- ② 따라서 인간의 理性을 이용한 事前的인 設計를 통하여 社會를 改善시킬 수가 없고(設計主義的 實證主義의 비판)
- ③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自生的이며 점진적인 進化만이 社會, 知識, 生命體 등이 발전하는 방법이다(進化論的 發展論).
- ④ 社會의 秩序에는 進化를 통하여 이룩된 自生的 秩序와 인간의 設計에 의하여 만들어진 人造된 秩序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自生的 秩序만이 自由를 보장한다(自生的 秩序의 지지).
- ⑤ 法에도 進化의 결과로 형성된 올바른 行動의 準則을 나타내는 自由의 法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政府의 法이 있다. 이 중 自由의 法만이 自由를 보호한다(自由의 法 지지).
- ⑥ 현대에서는 政府의 法만이 法이며 국가는 어떠한 法도 만들 수

있다는, 잘못된 法實證主義(이는 設計主義的 實證主義의 하나이다)가 만연하고 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自由가 침해되고 있는 주이유 중의 하나이다(法實證主義에 대한 비판).

- ⑦ 현대국가에서 社會正義(分配正義)의 실현은 국가가 개인의 自由를 침해하는 주된 명분이었다. 그러나 社會正義(分配正義)란 市場秩序에서는 성립할 수도 없고, 자유로운 社會와 양립될 수도 없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正義란 人間의 意志가 개입된 절차에 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인데, 市場秩序에서 결정되는 分配에는, 人間의 의지도 개입되어 있지 않고 分配은 절차가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分配正義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특정한 分配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제행동을 국가가 일일이 지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社會正義라는 개념의 無用性).
- ⑧ 自生的 秩序의 하나인 市場秩序는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하나는 交換의 原理를 활용함으로써 개인들이 각자 상이한 목표들을 추구하면서도 개인들이 平和와 自由를 유지하면서 共生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요, 둘은 情報傳達網으로서의 市場價格機構와 發見過程으로서의 競爭이라는 상호 포리를 이루는 두 기능이 작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不完全한 知識이라는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모든 목표에 필수적인 수단인 財貨들이 가장 效率的으로 생산되도록 한다(市場秩序의 두 기능).

이상과 같은 하이에크의 지적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반면에 개인의 自由의 영역은 축소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社會正義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사회를 인간의 設計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設計主義的 實證主義가 존재하여 있고 이는 다시 인간의 知的能力에 대한 過信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 사회 전체를 인간의 의식적인 설계의 의하여

완전히 改造하려고 하는 社會主義가 이러한 생각의 대표이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社會의 의식적인 改良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歐美의 福祉國家의 思考도 이에 해당한다.

新古典學派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現代 主流 經濟學은 이러한 思考의 대표이다. 항상 完全情報를 가정하여(不確實性을 가정하는 경우에도 確率分布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현대의 경제학도 본질적으로 完全情報를 가정하는 것과 같다) 政府介入의 有效性을 지지하고 있다. 經濟學에 대한 過信과 이에 기초한 政府能力에 대한 過信이 현대 경제학의 특징이다. 分配問題, 獨寡占問題, 外部效果問題 등 微視經濟學的인 市場의 失敗와, 失業과 인플레이와 國際收支不均衡이라는 巨視經濟學的인 市場의 失敗를 비롯하여 產業發展, 勞動問題 등 거의 모든 경제문제를 政府의 介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던 것이 이를 나타낸다. 巨視經濟模型을 만들어서 經濟의 微調整(fine-tuning)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政府萬能主義는 경제학에서도 제2차대전 이후에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이에크의 비판은 이러한 현대 경제학의 過信에도 유익한 경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하이에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의 知識(추상적인 理論과 구체적인 事實들에 관한 情報)은 심히 不完全하므로, 인간의 事前的인 設計에 의한 改革이나 改良은 종종 예기하지 못하였던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 社會主義社會와 歐美의 修正資本主義社會 모두에서 개인의 自由와 經濟의 效率性이 실종되거나 축소된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認識能力의 不完全性에 대한 철저한 자각에 입각하여 의도적인 改造보다는 進化를, 人造된 秩序보다는 自生的 秩序를, 政府의 法보다는 自由의 法을, 社會正義보다는 個人의 自由를 그리고 政府介入보다는 市場을 주장한 하이에크의 주장은 실로 이 시대에 유익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政府의 능력을 과신해 온 현대인들에게 진지한 反省을 촉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주장은 너무 한쪽에 치우친 감이 있다. 하이에크의 지적과 같이 人間의 認識能力을 過信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理性에 기초한 人間の 意도적인 改善의 노력을 그는 너무 過小 評價하였다고 생각된다. 人間社會의 發展은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상 進化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에 의하면 進化란 환경에 의한 적응과정으로서, 人間の 意도적인 계획(이는 특정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특정한 효과를 기대하고 세워진다)에 의한 것이 아니며, 점진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變化이다. 그러나 人間社會의 발전은 모두 이러한 進化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理性을 이용한 人間の 意도적인 노력은 人間이 지닌 가장 큰 힘일 것이다. 특히 人文社會科學을 포함한 現代 科學의 發展은 人間으로 하여금 사물에 대한 人間の 精確한 認識의 영역을 급속하게 확대하여 왔다. 근대에 들어와서 科學과 人間社會가 발전의 속도를 같이하여 왔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人間이 理性을 이용하여, 문제점이 존재할 때에 이를 인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이에크가 주장한 人間の 知識이 不完全하다는 것과 동일하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人間社會의 발전과정에는 進化에 의한 것도 많으나 동시에 人間の 意도적인 노력에 의한 것도 무수히 많다. 크게는 프랑스 革命이 그러하며 작게는 1993년에 실시된 우리나라의 金融實名制가 그러하다. 人間이 社會를 이루어 살기 시작한 후에, 특히 近代와 現代에는 보다 나은 社會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류는 끊임없이 意圖적인 노력을 하여 왔다. 이 중에는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아서 실패한 것도 많지만 성공한 예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人間社會의 發展에서 進化의 기여를 부정할 수도 없지만 人間の 意도적인 노력이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도 없을 것이다. 人間の 意도적인 노력이 人間社會를 개선시킨 경우보다는 퇴보시킨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증명할 수 없는 주장

이다.

인간의 知識은 不完全하며 進化가 發展의 확실한 한 가지의 방법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필요하며 효과가 긍정적임이 확실한 制度의 개선이 필요함도 사실이며 이러한 개선이 때로는 급격하며 단속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다. 進化만이 발전의 유일한 길이라면 의도적인 制度改善도 不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하이에크 자신이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貨幣發行權의 獨占 철폐와 같이 그 자신도 여러 가지의 의도적인 제도개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하이에크 주장의 핵심은, 어떤 명분을 내걸더라도 自由, 私 有財產, 市場秩序와 같은 自由世界의 본질적인 價値를 국가가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原則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침범하지 않으려는 원칙은 사회의 秩序를 위하여 필요하다. 이 원칙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으나 이 원칙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음으로 政府의 役割 내지 經濟政策에 관한 하이에크의 주장을 간단히 평가하여 보자. 우선 財政의 팽창을 막기 위하여 政府도 民間과 같이 量出制入이 아니라 量入制出의 원칙을 채택하여 국민들을 대표하는 議會에서 먼저 총예산의 규모를 정한 다음 政府支出內容을 결정하자는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支出을 먼저 결정하고 이들을 합계하여 歲入을 나중에 결정하는 量出制入의 財政決定方式, 그리고 間接稅와 같이 국민들이 직접 느끼지 못하는 방법으로 재정수입을 증대시켜 온 것이 과도한 재정팽창의 주원인이라는 하이에크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가 제안한 量入制出의 방식은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는 데에 효과적인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가능한 한 정부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은 民間部門으로 넘기고 (즉 民營化를 확대시키고), 中央政府의 생산을 地方政府로 이관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民營化의 구체적인 방법은 그가 논의하지 않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여건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財閥로의 經濟力 集中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높으므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民營化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政府가 供給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는 公共財인 경우에도 生産과 供給을 분리하여, 정부는 費用만 부담하고 生産은 민간의 경쟁에 맡기라는 제안도 政府의 獨占的 生産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非效率性을 제거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이 제도는 비단 公敎育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이용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託兒, 勞働者再敎育, 公共病院 등에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많이 있을 것이다.

하이에크의 가장 극단적인 주장인 민간금융기관에 貨幣發行을 허용하는 貨幣發行의 脫國營化 주장은 아직 어느 나라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다. 국가에 의한 貨幣의 獨占的 發行이 하이에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데에 惡用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行政府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民主的 制度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後進國일수록 이러한 惡用의 정도는 심하다. 그러나 정부의 독점적 화폐발행권이 철폐되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貨幣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價値의 尺度機能이 어려워질 것이다. 화폐의 自由發行이 허용되어 여러 가지 貨幣가 동시에 통용되면 마치 여러 가지 度量衡이 동시에 사용되는 것과 똑같이 價値의 測定이 힘들어지고 따라서 交換時에 去來費用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말고 政府가 貨幣發行權을 포기하기 힘든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信用恐慌과 같은 급작스럽고 심각한 경제전체의 파탄이 발생하였을 때에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1929년에 발생하였던 세계적인 大恐慌은 株價暴落에서 시작되

었으나 주가폭락이 전산업의 대공황으로 연결되었던 것은 信用恐慌, 즉 銀行들의 전반적인 支給不能狀態 및 이에 따른 은행들의 전반적 도산으로 인하여 金融部門이 마비되었기 때문이었다. 株價暴落으로 인하여 銀行들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불안을 느낀 예금주들이 일거에 은행에 예금인출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 결과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支給不能狀態에 빠지고 금융은 마비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기업의 運營資金이 마비됨으로써 전산업에서 기업들의 대량도산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만일 株價만 폭락하고 은행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면, 주식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고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였겠지만 기업들이 그와 같이 대량으로 도산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不況은 발생하였겠지만 그토록 엄청난 大恐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信用恐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부가 貨幣發行權을 발휘하여 지불준비금 부족에 빠진 은행들에게 긴급융자를 해주는 것이다. 당시 金本位制度下에서는 이것이 不可能하여 信用恐慌의 발생을 방지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에 모든 나라에서 金本位制度를 포기하고 管理通貨制度를 채택한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절감한 때문이다.

그 이전에 심각한 大恐慌이 10년을 주기로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管理通貨制度가 도입된 이후에는 不況은 발생하였으나 1930년대와 같은 극심한 大恐慌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管理通貨制度 덕분에 信用恐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管理通貨制度下에서는 은행이 지급불능에 빠지면 정부가 긴급금융을 해줄 수 있으므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예금주들이 은행의 수지가 악화되더라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인출을 하려고 장사진을 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信用恐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²¹⁾. 은행들이 문을 닫지 않는 한 금융은 계속 이루어지므로 不況은 발생하더라도 大恐

慌은 발생하지 않는다.

비단 信用恐慌이 아니더라도 資本主義經濟에 심각한 파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파탄을 치유하는 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 貨幣發行이다. 하이에크가 政府의 이 권한을 철폐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資本主義經濟에 심각한 파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1929년에 발생한 大恐慌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몇번의 大恐慌이 발생한 사실을 생각하면, 하이에크의 믿음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생각된다. 정부가 화폐발행권이 없는 상태에서 信用恐慌과 같은 심각한 파탄이 발생하면 정부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단이 없을 것이다.

財政·金融政策을 이용한 總需要調節이라는 케인지언들의 景氣對策에 반대하는 것은 하이에크만이 아니라 모든 自由主義者들의 한결같은 입장이었다. 하이에크가 강조한 人間知識의 不完全성은 이러한 입장을 더욱 강화시켜 주고 있다. 人間知識이 不完全함은 사실이므로 정부의 短期的인 總需要調節政策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不況이 장기간 지속되어 정부에 의한 개입이 확실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 의한 總需要擴大政策이 필요함을 부인해서도 안 될 것이다.

市場秩序를 훼손하지 않는, 市場秩序 밖에서(오이겐의 표현을 빌

21) 물론 선진국의 경우 預金保險制度가 예금주들의 예금을 일차적으로 보호하여 주고 있으나 이 제도만으로는 극심한 信用恐慌을 막을 수 없다. 政府의 貨幣發行權만이 예금을 궁극적으로 보호하여 줄 수 있다. 1987년 10월 19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株價가 대폭락하였다. 이것은 1929년 大恐慌을 초래한 株價暴落때 보다도 더 큰 史上 가장 큰 폭락이었다. 이때 대공황의 악몽이 재현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예금주들이 모두들 관리통화제도 덕분에 은행이 지급불능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929년과 같은 예금인출소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덕분에 신용공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면 經濟過程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絶對貧困을 퇴치해야 된다는 하이에크의 주장은 타당한 原則이라고 생각된다. 시장경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市場秩序에 영향을 주는 분배정책은 副作用을 낳으며 또한 이러한 意圖的 介入은 公正한 原則보다는 각 利益集團間의 흥정과 타협의 결과로 발생하기 때문에 公正性을 상실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分配正義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하이에크의 주장은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다. 正義란 가치판단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時代와 社會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公正한 입장에서, 스미스의 표현을 빌리면 不偏不黨한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分配正義의 구체적 내용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하이에크가 생각하는 분배상태 즉 市場秩序에서 일차적으로 分配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事後的으로 모든 사람에게 公的扶助를 통하여 最低限의 일정한 生活水準이 보장되는 分配狀態도 일종의 分配正義의 구체적인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사회에서 추구하는 分配正義란 그 사회가 추구하는 기본가치와 양립할 수 있는 바람직한 분배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하이에크처럼 個人의 自由, 私有財產, 市場秩序를 사회의 기본가치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價値들과 조화를 이루는 分配正義를 찾으려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하이에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분배상태는 바로 이러한 分配正義에 해당된다.

하이에크는 正義를 人間의 意志가 작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였으나 倫理學에서 正義란 사람간에 발생한 분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석된다. 分配란 사람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分配의 판단기준으로서 分配正義라는 개념이 성립가능할 것이다²²⁾. 이러한 의미에서 하이에크가 지지한 분배상태 즉 公的扶助를 통해서 絶對貧困을 퇴치한 分配狀態는 하이에크가 생각하는 分配正義에 다름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다.

獨占에 관하여 하이에크는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면에서, 完全競爭市場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과 비교하여 獨占을 비난하는 통상의 경제이론보다 훨씬 현실적인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할 것은 하이에크에게서 親資本的인 성향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政府의 獨占到 대해서는 시종일관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반면에 獨占企業에 대해서는 현실적 접근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전반적으로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옹호와 찬양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난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獨占企業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언급이 있을 뿐 매서운 비판이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政府의 기만보다 獨占企業의 기만이 심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다. 政府나 獨占企業이나 똑같이 구체적으로는 권력자(및 관료)나 독점기업의 소유주나 모두 똑같이 견제하는 힘이 없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힘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에크는 전반적으로 보아, 企業의 獨占到 대해서는 이해심을, 政府의 獨占到 대해서는 분노를 보이고 있는 것은 公正함을 잃은 태도라고 생각된다. 부당한 權力의 행사란 점에서 두 獨占의 힘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集團化될 때에 獨占企業의 해악이 증폭된다는 지적은 적절하다. 그리고 독점대책으로서 정부의 감독과 처벌보다는 경쟁기업의 감시자로서의 활용, 이러한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전문변호사 제도의 도입, 去來制限 계약의 無效化 등 그가 제시한 獨占對策은

22) 이러한 입장에서 分配正義를 논한 대표적인 문헌이 J.Rawls(1971)이다. 分配正義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李根植(1990)을 참조하라.

확실히 정부기관에 의한 감독과 처벌의 수단보다는 더 참신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第 4 章 뷰캐년의 立憲的 自由主義

第 1 節 時代背景

20세기의 후반부에 활동한 뷰캐년(James M. Buchanan)은 앞의 하이에크와 시대배경이 같다¹⁾. 제2차대전 이후 西方의 先進國에서 政府의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개인의 自由와 市場經濟가 훼손되는 것을 自由主義의 입장에서 비판한다는 점에서 뷰캐년은 하이에크와 기본입장이 동일하다. 제2차대전 이후 현대 경제학이 理論을 위한 理論으로 발전하여 현실적 의미를 상실하여 가는 경향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라는 점에서도 두 사람은 공통적이다. 다음의 글에서 뷰캐년은 이 점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1980년대에서 행해지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학은 궁극적

1) 뷰캐년의 경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19년: 미국 남부 테네시(Tennessee)주 머프리스보로(Murfreesboro)시 부근의 농촌에서 출생하여 성장.

1940년: Middle Tennessee State Teachers College에서 理學士(BS)學位 취득.

1941년: University of Tennessee에서 碩士學位 취득.

2차대전중: 미해군 장교로 태평양전에 참가.

1948년: University of Chicago에서 경제학박사, Frank H. Knight에게 사사.

1956~68년: University of Virginia 교수

1968~69년: UCLA 교수

1969~83년: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교수

1983년~: George Mason University 교수

198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인 목적이나 의미가 없는 科學이다. 경제학은 자신이 사용하는 기술적인 도구(technical tools)의 포로가 되어 왔는데, 이 도구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가조차도 따지지 않고서 이 도구들을 사용하여 왔다.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1980년대의 경제학자들은 그들 자신의 규율의 기초원칙에 대하여 文盲이다(LMS²⁾, pp. 14~15).

그러나 의도적인 制度改革을 반대하는 하이에크와 달리, 뷰캐넌은 社會契約論의 입장에서 의도적인 개혁을 주장한다. 그리고 뒷장의 프리드만이 케인지언들의 巨視政策的인 정부개입(주로 總需要調節政策)을 비판한 것에 비하여 뷰캐넌은 케인지언들의 微視政策的인 정부개입(주로 公共經濟政策)을 비판하였다. 立憲的 自由主義(constitutional liberalism)라고 부르는 그의 주장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이 글에서 약자들은 뷰캐넌의 다음의 문헌들을 나타낸다.

LMS; *Liberty, Market and State* (Wheatsheaf, 1986).

LL; *The Limits of Liberty* (U. of Chicago Press, 1975)

RR; *The Reason of Rules* (H.G.Brennan과 공저; Cambridge U. Press, 1985)

CC; *The Calculus of Consent* (G.Tullock과 공저; U. of Michigan Press, 1962)

FCC; *Freedom in Constitutional Contract* (Texas A & M Press, 1977)

PT; *Power to Tax*(H.G.Brennan과 공저;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DD; *Democracy in Deficit* (R.E.Wagner와 공저; Academic Press, 1977).

第 2 節 憲法

1. 憲法の 내용

뷰캐넌의 이론체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憲法(constitution)이다³⁾. 뷰캐넌은 자신의 입장을 立憲的 契約論(constitutional contractarianism)이라고 불렀다. 즉 그는 社會契約論者(contractarian)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社會를 만들기 전에 사람들은 自然狀態에서 살다가 社會를 만들기로서 서로 모여 계약을 함으로써 社會가 탄생하였다⁴⁾.

社會契約論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떠한 社會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은 社會的 意思決定過程에 해당한다. 뷰캐넌은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었다. 첫째 단계는 社會의 기초적인 질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요, 둘째는 첫째 단계에서 합의된 기본질서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이다. 憲法이란 바로 첫번째 단계의 社會的 意思決定

3) 뷰캐넌과 같이 올바른 憲法の 제정을 통해서 社會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주장을 立憲主義(constitutionalism)라고 하며, 이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을 憲法經濟學(constitutional economics) 혹은 憲法政治經濟學(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이라고 부른다.

4) 이러한 입장은, 社會를 進化를 통하여 형성된 自生的 秩序로 보는 하이에크의 입장과 명백하게 다르다. 社會契約論者들에 의한 社會는, 하이에크식의 표현을 빌리면 人造된 秩序이다. 계약에 의하여 社會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社會契約論의 뿌리는 古代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近代 이후의 대표적인 사회계약론자로는 홉스(Thomas Hobbes), 루소(J.J.Rousseau), 로크(John Locke), 칸트(Emmanuel Kant)를 들 수 있고 현대에서는 配分正義論으로 유명한 롤즈(John Rawls)가 이에 해당한다. 계약론자들은 社會契約이라는 節次에서 正當性의 근거를 찾는 특징을 갖고 있다. 주의할 것은 현대의 社會契約論은 社會契約를 실제현상이기보다는 하나의 方法論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의 대상이다. 즉 社會의 基本秩序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憲法이다⁵⁾.

그에 의하면 헌법은 다음 네 가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된다(LL, pp. 71~72).

첫째,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과 관련한 개인의 행위의 한계에 관한 규칙(rules),

둘째, 私有財產權에 관한 규칙,

셋째, 합의된 규칙들을 강제집행하는 데 관한 규칙,

넷째, 公共財의 제공과 이를 위한 財源調達에 관한 규칙.

第 3 節 基本立場(方法論)

위의 憲法의 구성내용은 社會 전체의 기본적 秩序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뷰캐넌의 憲法經濟學은 비단 經濟만이 아니라 法과 政治 등 비경제 분야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특히 현대 이론경제학에서는 주어진 여건으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시키는 政治的, 法的, 社會的 制度들이 憲法經濟學에서는 주요 연구대상이 된다. 이 점에서 憲法經濟學은 종래의 경제학과 우선 다르다.

그러나 뷰캐넌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新古典學派의 기본관점을 그대로 따른다. '經濟的 人間'(homo economicus)의 가정이 그것이다. 즉 모든 인간은 자신의 個人的 目的을 가장 合理的인 方法으로(즉 費用을 最少化하면서) 추구하는 利己的인 존재이다. '經濟的 人間'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함에

5) 오이켄(W.Eucken)으로 대표되는 2次 大戰 이후의 독일의 秩序自由主義者들도 經濟現象을 經濟秩序와 經濟過程으로 나누어 기본적인 經濟秩序를 憲法에서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점에서 뷰캐넌과 오이켄은 모두 立憲主義(constitutionalism)에 속한다.

있어서 다른 어떤 대안들보다도 더 훌륭한 기본모형을 제공한다'(RR, p. 50).

이러한 經濟的 人間의 自發的인 行動이 交換으로 이루어지는 社會秩序가 앞의 하이에크에서 본 catallaxy(市場秩序)이다. 뷰캐넌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市場의 내부가 아니라 市場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모든 合理的인 行動도 현대 경제학의 價格理論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시장 안이든 시장 밖이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인 經濟人의 合理的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결국 뷰캐넌은 경제학의 價格理論을 市場 '밖'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社會的 行動에 적용한 셈이다. 또한 經濟人을 상징한다는 것은 個人主義의 입장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經濟人은 기본적으로 個人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契約主義는 기본적으로 個人主義이다. 인간의 집단인 社會가 個人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個人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비로소 社會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계약주의적인 전체구성이 입각하고 있는 결정적이며 규범적(normative)인 前題는, 價値는 개인적인 인간존재에만 배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個人은 모든 평가가 시작되는 意識의 유일한 個體(unit)이다(RR, p. 21).

이상과 같은 個人主義는 主觀主義(subjectivism)를 내포한다. 객관적으로 모두에게 적용하는 가치기준을 인정하는 客觀主義(objectivism)를 부정하고, 가치판단을 각자 상이한 판단기준을 갖고 있는 개인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經濟學에서의 序數的 效用理論과 倫理學에서의 倫理的 相對主義(ethical relativism)가 이에 해당한다. '價値는 개인들로부터 도출된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絶對的인 것은 없다. 神은 백년전에 죽었으며 神을 되살리려는 것은 쓸데없는 수고이다'(LMS, p. 51).

뷰캐넌의 입장의 특징으로서 또한 民主主義를 들 수 있다. 서양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個人主義와 自由主義의 결합에서 民主主義가 발생하였다.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民主主義는 個人主義와 自由主義의 귀결이다. 民主主義는 個人的 自由를 옹호하기 위한 政治的 制度이기 때문이다. 특히 뷰캐넌은 民主主義를 個人主義의 일종의 변형(variant)으로 보고 있다(LL, p. 2).

第 4 節 意圖的 改革

뷰캐넌이 하이에크와 다른 중요한 점은, 인간의 意圖的인 改革의 有效性을 부정하고 인간의 意圖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進化만을 發展의 길로 인정한 하이에크와는 반대로, 뷰캐넌은 인간의 意識的인 改革(reform)의 必要性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현대 역사에 대한 하이에크의 심오한 해석과 改善에 관한 그의 진단에 대하여 내가 기본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사회의 進化가 사실상 효율적인 제도의 형태를 보장한다는 것에 대한 그의 명백한 믿음과 신념이다. 하이에크는 인간의 의도적인 進化라는 對案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사회와 제도의 개혁에 관한 하이에크의 悲觀論의 많은 부분에 우리는 동의한다. 그러나 進化만이 이상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改革은 분명히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이의 대안(進化를 말함: 필자 주)이 이상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LL, p. 194n).

社會는 靜態的이지 않고 動態的이다. 일단 이상적으로 체결된 사회계약들도 세월이 흐르면 많은 사람들의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과거에 체결된 동의(계약)의 강제집행이 사회구성원들에게 불만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기존의 계약내용의 체결에 동의한 적이 없는 현대의 사회구성원들에게 현행의 계약내용은 스스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LL, p. 96). 따라서 社會契約은 끊임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修正되어야 한다(CC, p. 260). 이러한 修正은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進化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적인 改革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뷰캐넌은 이리하여 改革이라는, 인간의 意圖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의도적 개혁에는 몇 가지의 중대한 문제가 따른다.

첫째는 無賃乘車者의 문제이다. 改革의 필요성이 구성원들에 의하여 인식된다는 것이 반드시 그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改革은 일종의 公共財이므로 無賃乘車者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제도를 개혁하면 그 덕을 보고자 하지만 자기가 나서서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현존의 제도의 병폐가 상당히 심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合理的(利己的)인 人間을 상정하는 뷰캐넌의 公共選擇理論에 따르면 無賃乘車者는 合理的인 인간의 당연한 행동이다. 따라서 그의 公共選擇理論만으로는 制度改革을 실현할 수 있는 方法을 제시하기 힘들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公益을 자신의 私益보다 앞세우는, 다소 예외적인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앞장을 섬으로써 改革이 이루어진다. '改革에 관한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自己利益의 공준과 위반되는 요소가 도입되어야 한다'(RR, p. 146). 改革이 이루어지려면 '전체 공동체를 위한 公共財에 대하여, 公共財로부터 그들 개인이 각자 개인적으로 얻는 몫에 대해서보다 더 큰 가치를 두도록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RR, p. 147).

改革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意見一致의 문제이다. 이상적인 경우는 全員一致의 경우이다. 뷰캐넌은 롤즈(John Rawls)의 '無知의 帳幕'(veil of ignorance)⁶⁾의 조건이 충족되면 전원일치에 의하여

公正한 合意가 달성된다고 보았다(FCC, pp. 131~132). 사람들이 자신의 利害關係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공정한 입장에 선다면 이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비현실적인 假定일 뿐만 아니라 經濟人이라는 뷰캐넌이 설정한 人間觀과도 맞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改革에 관하여 全員意見一致를 얻기란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다. 모두에게 利益이 되는 파레토 改善(Pareto improvement)의 경우만 이것이 가능하다. 모든 계급집단이 부담하는 社會的 費用을 減少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CC, p. 291).

그러한 현실에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 뷰캐넌은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次善으로서 3분의 2의 찬성기준을 인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第 5 節 國家의 役割

대부분의 自由主義者들이 생각하는 國家의 役割은 기본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생각을 넘지 않는다. 뷰캐넌도 예외가 아니다. 뷰캐넌은 國家를 保護國家(the protective state)와 生産國家(the productive state)로 분류하였다.

6) 無知의 帳幕이란, 社會契約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들의 대표가 모여 회의를 할 때에 公正한 合意를 도출하기 위한 조건인데, 모두가 자신의 조건(재산, 학력, 나이, 가족관계, 재능 등)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利害關係를 완전히 떠난 公正한 입장을 말한다. 이는 스미스의 公平無私한 觀客(impartial spectator)의 입장과 본질적으로 같다. 롤즈(1971), pp. 136~142.

1. 保護國家

다른 개인들로부터, 즉 無秩序(anarchy)로부터, 그리고 國家權力(leviathan)의 약탈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국가를 뷰캐넌은 保護國家⁷⁾ 라고 불렀다. 타인을 약탈하지 않는 것은 原則에 부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本性和 물자가 팽박한 현실의 세상에 비추어 보아 無政府主義는 선택될 수 없고 法の 강제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有意한 의미에서도 個人의 自由는 法の 아래에서만 가능하다'(FCC, p. 288). 사회는 法을 만들고 국가는 法을 시행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계약(즉 법)을 지킨다면 保護國家가 필요 없다. 그러나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규약을 지키지 않는 상태, 즉 道德的 混亂(moral anarchy)⁸⁾이 발생한다. 뷰캐넌은 이 때문에 社會의 安全을 위하여 法을 강제집행하는 保護國家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私有財產權의 확립을 위하여 이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작동하였으나 현재는 작동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자발적인 제한은 정부에 의한 제약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개인간의 관계가 道德的 混亂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에서는 정부가 필연적으로 강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7) 保護國家는 夜警國家(night-watchman state)나 노직(R. Nozick)의 最小國家(minimal state)와 같은 말이다(LMS, p. 111). 뷰캐넌은 合意된 契約을 강제로 이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로 保護國家를 정의하였다. 뷰캐넌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독립되어야만 이 기능을 이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LL, p. 95).

8) 道德的 混亂과 대칭되는 개념이 道德的 秩序(moral order)이다. 뷰캐넌은 道德的 秩序의 특징으로 첫째, 사람들 상호간에 관용과 존중이 존재하며 둘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들고 있다(LMS, p. 109).

(LMS, p. 117).

그러나 뷰캐넌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이 기능이 과대해져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그는 국가의 이 기능에 대해서도 헌법에 의한 명확한 制限이 가해져야 된다고 보았다.

2. 生産國家

公共財의 생산과 배분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를 生産國家라고 한다(LL, p. 95). 公共財는 소비에서의 非排除性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 생산되어 판매되기 힘들다. 無賃乘車가 이의 전형적인 문제이다. 公共財는 모두의 효용을 증대시키지만 시장에서 생산과 배분이 결정될 수 없다. 따라서 政治過程에 의해서 公共財의 生産과 配分이 결정되도록 한다는 것에 사회구성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하게 된다(LL, p. 39, 95). 이는 자발적인 교환에 근거하는 市場秩序와 대조적이다.

이 政治過程은 대개 間接民主主義인 代表制 議會制度를 통하여, 즉 국민들의 대표인 議會에서 결정된다. 뷰캐넌은 代表制 議會가 나타나는 이유를 外部費用(external cost)과 意思決定費用(decision-making cost)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外部費用이란 집단적인 의사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와 다른 결정이 채택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이며, 반면에 意思決定費用은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다(CC, p. 45). 간접민주주의를 택하면 직접민주주의보다 外部費用은 증대하나 意思決定費用은 적어진다. 그런데 집단의 규모가 크면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할 때에 발생하는 意思決定費用의 축소가 外部費用의 증가를 능가하기 때문에 간접민주주의(의회제도)가 채택되게 된다(CC, p. 213). 각 개인은 자신의 外部費用과 意思決定費用이 최소화되길

원한다. 그러나 각 개인의 外部費用과 意思決定費用은 각 사안에 따라서 개인간에 모두 다르다. 그러면 집단적 意思決定過程에서 어떻게 각 개인의 견해를 合理的으로 통합할 것인가? 뷰캐넌은 롤즈의 '無知의 帳幕'의 가정을 도입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FCC, p. 22).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第 6 節 評 價

케인지언들에 의하여 정부의 경제개입이 비대해진 20세기 후반 선진국 경제정책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뷰캐넌은 하이에크와 동일하다. 이들은 모두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정부의 과도한 경제개입으로 인한 資源配分의 비효율성과 분배의 不公平性, 그리고 개인자유 축소라는 폐단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경제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케인지언들의 경제학을 비판한다. 그러나 둘은 중요한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進化論에 찬성하는 하이에크는 의식적인 제도개혁을 반대하는 데에 반해서 社會契約論의 입장에 입각한 뷰캐넌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기초한 의도적인 改革을 적극 찬성한다는 것이다. 社會契約論은 원래 하이에크에 의하면 잘못된 設計主義的 實證主義에 속한다. 앞章의 하이에크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進化만이 사회발전의 유일한 길이라는 하이에크의 주장은 편견이라고 생각된다. 뷰캐넌이 이러한 관점에서 하이에크를 비판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뷰캐넌의 중요한 특징은 新古典學派의인 관점에서 현대 사회에서의 정치적인 과정인 집단적 의사결정을 분석하려고 한 것이다. 여기서 新古典學派의 관점이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經濟人을 가정한다는 것이요, 둘은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파레토 最適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첫번째의 관점, 즉 經濟人의 관점으로 정치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실로 탁월하면서도 적절한 관점이며, 우리에게 사회

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잘못된 政府를 마치 따로 스스로 존재하는 全知全能하며 公平無私한 人格體인 양 생각한다는 것이다. 케인지언들이 가정하는 政府가 대표적인 예이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으며 公平無私한 政府는 市場의 失敗를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다는 착각에 그들은 빠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政府의 일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개인으로서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이다. 이들도 역시 사람이다. 이들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不完全한 인간에 불과하다. 존재하는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抽象的인 政府가 아니라 具體的인 個人이며 보통 소비자나 기업인과 똑같이 利己的인 政治人과 官僚들이다. 비단 政府만이 아니다. 모든 조직이 그러하다. 존재하는 것은 항상 그 조직에서 일하는 利己的인 個人들일 뿐 그 자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일하는 抽象的인 組織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계급, 협회, 기업, 클럽 등 인간이 만든 모든 組織 내지 社會가 그러하다. 너무나 분명하면서도 그동안 經濟學者들에 의하여 망각되고 있던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뷰캐넌은 경제문제, 특히 政府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았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그의 공로는 크다.

이 점은 인간을 분석의 출발로 삼는 스미스의 기본관점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미스의 경제학은 그의 『道德感情論』에서 확립된 人間의 本性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입각하여 있다. 이 덕분에 스미스의 경제학은 공허하지 않고 생생할 수 있었다. 그 후 계층이나 사회 혹은 政府와 같은 인간의 조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이론들(마르크스와 케인즈가 그 대표적 예이다)은 인간에 대한 분석은 생략한 채 개인이 아니라 추상적인 집단을 窮極的인 經濟主體로 삼고 이들 집단의 행동원리에 관한 선형적인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근거로 하여 연역을 통하여 形式論理에만 맞는 결론을 도출하는 우를 범하였다고 생각된다. 뷰캐넌은 이러한 과도기에서 벗어날 수 있

는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방법론에 입각한 그의 분석, 특히 경제문제에 관한 정치과정에서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관한 분석은 경제학 내지 사회과학에서 새로운 地平을 개척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전학파로부터 계승한 그의 두번째 특징, 즉 가치판단 기준으로서의 파레토 最適의 적용은 성공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파레토 最適 내지 파레토 改善은, 변화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집단이나 개인이 존재할 때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그가 주장하는 긴축통화 정책이 적어도 단기에는 失業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파레토 改善과 위배된다. 가치판단의 기준으로는 파레토 最適보다는 롤즈의 無知의 帳幕의 가정이 더 보편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뷰캐넌 자신도 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 개념은 분명히 일정한 價値를 상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價値中立을 표방하는 新古典學派의 思考와는 모순된다. 이 점에 있어서 뷰캐넌은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는 뷰캐넌이 택하고 있는 社會契約論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중요문제마다 社會契約을 체결해야 하는데, 뷰캐넌이 가정하고 있듯이 개인이 각 事案에 대하여 서로 다른 選好體系를 갖고 있다면 契約을 체결하는 데에 필요한 同意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뷰캐넌만이 아니라 沒價値를 표방하는 新古典學派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뷰캐넌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여타의 自由主義者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租稅總額의 제한, 均衡財政의 原則, 엄격한 통화관리 등은 모두 재정팽창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하여 모든 自由主義者들이 주장하는 제안들로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通貨發行의 國家獨占權을 주장하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뷰캐넌은 하이에크처럼 극단적이지 않다.

第 7 節 財政金融政策

1. 財政政策

뷰캐넌은 租稅構造의 결정은 헌법에서 결정되어야 할 基本事項의 하나이지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것은 租稅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는 租稅의 총규모와 세율을 사전에 헌법차원에서 정하고 차별적 조항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租稅를 통한 再分配를 그가 반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를 포함한 租稅構造를 헌법수준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를 쉽게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개인들은 자신들의 일생에 걸친 經濟活動計劃을 자신의 성향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PT, p. 108).

그는 累進稅나 逆進稅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모든 개인을 동등하게 중요시하는 意思決定過程에 의해서 租稅構造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았다(FCC, p. 269).

뷰캐넌은 租稅와 財政支出의 원칙은 헌법사항이므로, 다른 헌법사항과 마찬가지로 두터운 無知의 帳幕의 조건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야만 어떤 특정집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정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뷰캐넌은 또한 租稅總額이 국민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헌법에 규정하여 조세의 과다한 팽창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租稅의 총규모에 대한 제한은 정부의 재정지출의 총규모도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는 財政支出의 적정수준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가 강조한 것은 적정한 헌법적 절차에 의하여 無知의 帳幕이라는 조건이 충족된 가운데에서 財政支出에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財政이

증가함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租稅에 대한 그의 주장과 표리를 이루고 있다.

헌법에 의하여 총액이 정해진 總財政 支出規模를 각 지출항목으로 배분함에 있어서 뷰캐넌은 全員一致와 파레토 最適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즉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지출만을 승인하도록 헌법에 의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LL, p. 155). 이것은 현행의 多數決에 의한 결정이 각 집단에게 상이한 결과를, 즉 어떤 집단에게는 이익을 주면서 다른 집단에게는 피해를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에크와 동일하게 뷰캐넌도 赤字財政을 비판하고 財政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하여 均衡財政의 原則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뷰캐넌은 固定學派의 不文律이었던 均衡財政의 原則을 귀중한 公共資産의 하나(a valuable portion of our public capital stock)이라고 평가하였다(LMS, p. 193). 그러나 赤字財政을 당연시하는 케인지언의 경제학은 이 귀중한 자산을 방기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政治人들도 환영하였다.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데에 필요한 公共支出을 수행하는 데에는 赤字財政이 손쉽기 때문이다.

赤字財政(debt financing)은 公共財의 價格이 실제보다 적게 느껴지도록 한다. 이 때문에 납세자들은 公共財에 대한 그들의 수요를 증대시킨다. 그리하여 예산의 확대가 選好되고 이러한 선호를 정치인들은 감지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실현시킨다(DD, p. 139).

이러한 잘못된 경향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뷰캐넌은 均衡財政의 原則을 헌법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 원칙이 실현되면 재정 지출의 증대는 납세의 증대로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납세자들은 財政錯覺에 빠지지 않고 비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납세자들도 赤字財政에 반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公債의 발행으로 赤字를 보전하는 赤字財政下에서는 財政錯覺(fiscal illusion)이 발생하여, 자신들이 부담하는 실제비용을 납세자들이 과소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2. 通貨政策

납세자들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租稅나 金利를 인상시키는 公債發行에 비하여 貨幣發行은 정치인들에게 더 선호되기 마련이다. 물론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의 화폐보유가 급속히 감소하여 경제 자체가 와해가 되는 超인플레이가 발생할 정도로까지 通貨量 팽창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 서독 등 선진국들은 명목상으로는 화폐발행을 담당하는 中央銀行이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그러나 통화당국자들은 선거인들을 의식해야 하는 政治人에 의하여 임명되기 때문에 통화당국자가 일반여론이나 언론들과 정면으로 대결하기란 쉽지 않다(DD, p. 117). 이들은 價格安定을 위한 긴축통화정책보다는 失業 해소를 위한 확대통화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통화당국자의 개인의 품성이 아니라 制度 때문에 발생한다. '훌륭한 선수들이 아니라 훌륭한 경기규칙이 훌륭한 경기를 만든다'(RR, p. 150). 따라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뷰캐년은 인플레이는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파악한다. 인플레이를 치유하기 위한 긴축통화정책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通貨量의 增加率을 實質國民所得의 증가율과 대략 일치시키는 규칙을 헌법에 수정조항으로 삽입할 것을 주장하였다(DD, p. 182). 이를 통하여 합리적인 국민들의 通貨와 物價에 대한 기대는 安定的으로 되는 반면에 통화팽창을 억제하는 이러한 헌법규정이 없는 한

通貨의 균형은 본래 항상 불안하다(PT, pp. 126~127). 예측하였던 인플레이는 사소한 착란만 발생시킬 뿐이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인플레이(unanticipated inflation)이다. 通貨膨脹은 예측하지 못한 인플레이를 발생시킴으로써 단기로는 고용증대에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를 시행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그러나 이 효과는 단기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와 가격기구의 왜곡을 가져올 뿐이라고 그는 보았다. 이러한 규칙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과도기에서의 경기침체를 야기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maladjusted) 경제를 치료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그는 보았다(DD, p. 170). 그러나 뷰캐넌은 하이에크와는 달리 貨幣發行에 대한 政府獨占權의 폐지는 주장하지 않았다.

第 5 章 프리드만의 通貨論的 自由主義

第 1 節 時代背景

제2차대전 이후 미국 경제학계의 主流는 新古典學派綜合(the Neoclassical Synthesis)이다. 사무엘슨(Paul A. Samuelson)과 토빈(James Tobin)이 대표하는 이 학파는 市場의 失敗를 교정하기 위하여 政府가 經濟에 적극적으로 介入할 것을 주장하였다. 市場의 失敗를 이론적으로 밝힌 公共經濟學과 케인즈의 巨視理論은 이들의 이러한 견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들은 政府의 經濟介入이 필요하며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政府의 經濟介入을 가능한 축소해야 한다는 自由主義 經濟學은 제2차대전 이후 미국 경제학에서 非主流 내지 小數였다. 하버드, MIT, 예일 등 동북부의 대학들이 介入主義者인 케인지언들의 중심지였고 이를 비판하는 自由主義 經濟學의 중심은 시카고 대학이었다. 프리드만(Milton Friedman)¹⁾

1) 프리드만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1912년: 뉴욕시에서 출생

1932년: Rutgers 대학 학사

1933년: Chicago 대학 석사

1935~37년: NBER 연구원

1940~41년: Wisconsin 대학 교수

1941~43년: 美 재무성 근무

1943~45년: Columbia 대학 통계연구소 차장

1945년: Columbia 대학 박사

1945~46년 : Minnesota 대학 교수

은 바로 이 시카고 학파의 대표로서 동북부의 新古典學派綜合을 비판하는 선봉이었다. 2차대전 이후 시카고 대학에는 프리드만 이외에도 저명한 자유주의 학자들이 많이 집결하여 있었다. 하이에크(F. A. Hayek), 나이트(Frank F. Knight), 사이몬(Henry C. Simons), 스티글러(George J. Stigler), 민츠(Lloyd W. Mints) 등이 그들이다. 이들과의 交流를 통하여 프리드만은 2차대전 이후 미국 경제학에서 自由主義 經濟學을 부활시키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하에서 그의 自由主義 사상을 고찰하기로 한다²⁾.

第 2 節 自由主義의 原理

1. 두 개의 自由主義

프리드만은 自由主義의 原理나 方法論에서 새로운 것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책(C & F)은 自由主義의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우선 그는 自由主義(liberalism)의 의미가 英美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自由主義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自由主義의 의미가 18세기 후반과 19세기의 전반에는 自由를 궁극적인 가치로, 個人을 궁극적인 실체로 인정하여 경제와 정치의 사회활동에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는 思考를 가르켰었다. 그

1946~82년: Chicago 대학 교수

1982년~: Stanford 대학 Hoover연구소 연구원

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2) 그의 자유주의 사상은 다음의 책에 요약되어 있다. Milton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이하 C & F).

러나 19세기 말 특히 193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自由主義를 厚生이나 平等을 自由보다 앞세우면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중앙집중적 정부의 역할의 확대를 지지하는 思考를 의미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시계바늘은 17세기의 重商主義로 되돌아 갔다. 이를 프리드만은 自由主義라는 용어의 腐敗(corruption)라고 표현하였다(C & F, p. 6). 그는 원래의 의미로 自由主義를 사용하고자 함을 밝혔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自由主義라는 이름하에서 진행되었던 知的인 운동은, 사회에서 自由를 궁극적 목적으로, 개인을 궁극적인 實體로 강조하였다. 그것은 국가(state)의 역할을 줄이고 개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自由放任(laissez-faire)을 지지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세계의 국가들이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自由貿易을 지지하였다. 정치적 문제에서는 代表政府와 議會機構, 국가의 자의적 권한의 축소, 그리고 개인의 市民的 自由의 보호를 지지하였다(C & F, p. 5).

2. 經濟的 自由의 必要性

經濟的 自由는 왜 필요한가? 우선, 自由는 그 자체가 自由主義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自由는 그 자체가 自由主義의 궁극의 목적이므로 自由主義는 개인의 自由를 보호함을 목표로 한다³⁾. 이러한 면에서 經濟的 自由(economic freedom)는 그 자체가 목적(end)이다(C & F, p. 8). 프리드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經濟的 自由는 政治的 自由를 위한 중요한 수단(means)임을 강조한다. 즉

3) '자유주의자로서 우리는 개인 혹은 아마도 가족의 자유를, 사회현상(social arrangements)을 판단함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C & F, p. 12).

經濟的 自由는 政治的 自由의 실현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經濟的 自由는 資本主義에서만 가능하고 政治的 自由는 資本主義下에서만 가능하였음을 그는 강조한다. 그는 특히 資本主義에서만 政治的 自由가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역설하였다⁴⁾. 政治的 自由가 존재하려면 기존의 체제를 바꾸자는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言論과 結社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資金이 있어야 하는데 社會主義같이 경제적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는 이 운동에 필요한 資金을 마련할 길이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資本主義 社會에서는 이에 동조하도록 富者를 몇 명 설득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經濟的 自由가 있는 資本主義 社會에서만 사회를 바꾸자는 정치적 운동이 가능하다. 이는 經濟的 自由가 있는 資本主義 社會에서만 진정한 의미에서 政治的 自由가 존재함을 의미한다(C & F, pp. 16~17).

經濟的 自由가 政治的 自由를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經濟的 權力과 政治的 權力을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政治的 自由란 개인이 그 동료들로부터 강요를 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C & F, p. 15). 따라서 自由에 대한 근본적 위협은 권력의 집중이다. 만일 經濟力이 政治權力과 결합되면 權力的 집중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C & F, p. 16). 市場經濟는 경제적인 힘을 수많은 경제주체들 사이에 분산시킨다. 여기에 비하여 정치권력은 기본적으로 분산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에서 지도력 있는 企業家는 수많이 존재할 수 있으나 유능한 政治指導者의 수는 몇 명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資本主義經濟에서 경제적 자유는 정치권력과 경제력이 결합

4) 나치하의 독일이나 파시즘하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2차대전중 軍國主義下의 일본과 같이, 資本主義下에서도 정치적 자유가 박탈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프리드만은 資本主義는 정치적 자유의 充分條件이 아니라 必要條件이라고 보았다(C & F, p. 10).

되는 것을 방지하여 결과적으로 政治的 自由를 보호한다. 프리드만은 또한 自由는 文明의 發展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함을 역설하였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다양한 試圖에서 유익한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고 이를 통하여 文明의 發展이 이루어 진다. 뉴턴, 아인슈타인, 셰익스피어, 에디슨, 슈바이처 등이 모두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개인의 창의에 의하여 인류문명에 공헌하여 왔다. '政府는 결코, 개인적 행동의 多樣함과 多岐함을 따라갈 수 없다'(C & F, p. 4).

3. 自由主義의 두 원칙

自由의 침해는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強要이다. 強要는 비대칭적인 힘의 분산에서 발생한다. 가장 흔한 힘의 비대칭적인 분산은 民間과 政府間이다. 정부는 대개 민간에 대하여 강요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自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우리의 마음이 말하여 주고 역사가 확인해 주는 바와 같이, 自由에 대한 커다란 위협은 권력의 집중이다. 우리의 자유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는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러나 정치권력(political hands)으로의 힘의 집중은 동시에 자유에의 위협이다. 처음에는 善意에서 이를 행사한 사람도, 그리고 그들이 행사하는 힘으로 인하여 부패하지 않더라도, 권력은 사람을 유혹하여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C & F, p. 29).

프리드만에 의하면 정부가 자유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에는 지금까지 크게 보아 두 가지의 원칙이 채택되어 왔다.

첫째는 정부기능의 범위(the scope of government)를 제한하는 것이다. 즉 司法, 治安, 國防, 계약이행의 강제 등 꼭 필요한 기능만

政府에 맡기고 가능한 한 나머지는 民間들의 자발적인 협조나 企業에 맡겨서 政府의 機能을 가능한 한 縮小하는 것이다. 이는 經濟만이 아니라 非經濟部門에서도 그러하다.

두번째 원칙은 권력의 三權分立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권력을 집중하지 말고 가능한 한 지방정부로, 지방정부 중에서도 보다 下位의 지방정부로 정부권력을 이양하는 것이다. 프리드만은 이러한 地方自治의 확대가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를 갖게 함으로써 지방정부간에 競爭이 가능케 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마음에 안들면 다른 지방으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地方政府間에는 경쟁이 발생하여 정부의 자유침해가 방지될 수 있다. 반면에 中央政府가 마음에 안들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만일 내가 나의 洲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들면 다른 洲로 이사갈 수가 있다. 그러나 만일 워싱턴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들면, 국가간에 상호 질시가 가득찬 이 세상에서 별로 다른 방법이 없다'(C & F, p. 3). 중앙정부로의 권력의 집중은 일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 동전(즉 중앙정부로의 권력의 집중; 필자 주)은 양면을 갖고 있다. 좋은 일을 하는 힘은 나쁜 일도 할 수 있다. 오늘의 집권자가 내일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것일 수 있다'(C & F, p. 3). 따라서 權力은 분산시킬수록 좋다.

4. 資本主義의 기능

프리드만에 의하면 '競爭的 資本主義(competitive capitalism)는 경제적 자유의 體制이며 정치적 자유를 위한 필요조건이다'(C & F, p. 4). 그는 경쟁적 자본주의를 '자유로운 市場에서 활동하는 민간기업을 통한 경제활동들의 조직'으로 보았다(C & F, p. 4). 즉 그것은 '자유로운 民間企業의 交換經濟'(a free private enterprise exchange economy)이다(C & F, p. 13).

자본주의 경제(市場經濟)⁵⁾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전제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調整(coordination)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社會組織의 근본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경제활동을 상호 정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조정이란 주로 노동의 分業과 專門化를 의미한다. 그는 이 조정의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보았다. 개인들에 의한 自發的인 협조와 中央에 의한 지시가 그것이다. 전자의 방법은 市場을 통한 것이다. 쌍방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自發的인 交換이라는 경제적 거래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강제 없는 自發性이 自由이다. 交換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交換이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C & F, p. 13). 프리드만은 資本主義經濟의 핵심을 둘로 보았다. 하나는 經濟主體가 정부가 아니라 民間이라는 것이고 둘은 去來가 自發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經濟主體가 민간이라 함은 契約當事者가 기본적으로 個人임을 의미하며 거래의 자발성은 強制가 없음을 의미한다(C & F, p. 13). 이 두 조건이 합쳐져서 個人的 自由를 경제에서 보장하게 된다.

第 3 節 政府의 役割

프리드만은 自由世界에서의 政府는 꼭 필요한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여 정부의 기능을 가능한 한 축소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그는 정부의 역할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규칙의 제정자와 심판으로서

5) 오이켄이나 하이에크와 달리 프리드만은 市場經濟와 資本主義經濟를 구분하지 않고 混用하였다.

의 역할, 독점과 외부효과의 해결을 위한 역할, 그리고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그것이다.

1. 規則의 제정자와 審判으로서의 역할

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에도 일정한 규칙과 이의 준수가 필요하다. 이를 담당하는 것이 정부의 첫번째 임무이다.

훌륭한 경기를 위해서는 경기자들이 규칙과 심판을 인정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사회를 위해서는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이들 조건들에 관한 상이한 해석들을 중재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규칙들을 강제로 시행하는 데에 관한 일반적인 조건들에 관하여 구성원들간에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C & F, p. 25).

프리드만은 이러한 일반적인 조건은 대부분 관습의 결과이며 의식하지 못한 채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았다⁶⁾.

사람들이 不完全하므로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자유란 불가능하며 無政府는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사람들간의 自由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自由를 보전하기 위하여 서로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 '주먹을 뺄 수 있는 나의 자유는 당신의 턱부근에서 제한되어야 한다'⁷⁾.

6) 이는 하이에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두 사람은 시카고대학에서 오랫동안 같이 교수로 일하였다.

7) 이는 한 미국의 대법원 판사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My freedom to move my fist must be limited by the proximity of your chin"(C & F, p. 26).

2. 技術的 獨占과 近隣效果와 정부의 역할

市場의 失敗는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대표적인 명분이다. 프리드만은 市場의 失敗 중에서 技術的 獨占과 近隣效果가 정부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두 경우가 존재하면 시장에서의 자발적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프리드만은 獨占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정부가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여 발생한 人爲的인 독점이다. 이 경우에는 해결책이 분명하다. 독점을 조성한 잘못된 정부규제를 폐지하면 된다. 두 번째의 독점은, 電話의 경우와 같이 시장에 하나의 생산자만 존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독점이다. 프리드만은 이를 技術的 獨占(technical monopoly)이라고 불렀다(C & F, p. 28). 프리드만은 현실에서 技術的 獨占이 존재하는 것은 생각처럼 많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技術的 獨占에 대한 해답이 쉽지 않다.

프리드만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民間獨占, 公共獨占 및 公共規制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 중에서 프리드만은 民間獨占이 가장 해가 적은 방법이라고 보았다. 나머지 두 방법은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실패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여건이 끊임없이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서는 技術的 獨占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도 끊임없이 변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公的 獨占이나 公的 規制에 의존하기보다 私的 獨占을 인정하는 것이 기술독점의 여건이 소멸할 때에 독점이 더 신속하게 소멸토록 하기 때문이다. 公的인 규제나 독점은 이에 비하여 技術的 獨占의 여건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하여 독점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기 쉬우므로 私的 獨占보다도 더 열등하다(C & F, p. 28). 그 예로 그는 郵便業務를 들었다. 우편업무는 技術的 獨占이 존재한다고 생각되어 公的 獨占을 인정하였던 분야이다. 그러나 만일 진정 기술적 독점이 존재한다면 민간기업이 진입

하더라도 公共郵便制度和 경쟁이 안되므로 진입을 금지하지 않아도, 민간기업이 스스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技術的 獨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公的 獨占을 우편에 인정할 이유가 없다. 技術的 獨占이 있는 경우든 없는 경우든 어떤 경우에도 민간기업의 진입을 금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해답을 찾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진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C & F, p. 29). 이와 같이 프리드만은 技術的 獨占이 존재하는지 안하는지 선형적으로 알 수 없으니 어느 경우에도 進入의 자유를 금하는 公的 獨占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近隣效果⁸⁾ (neighborhood effect)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면 민간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는 高速公路와 國立公園을 들었다. 이 경우에는 모두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民間企業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C & F, pp. 30~31).

그는 정부개입 그 자체가 민간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적인 近隣效果를 발생시킴을 강조하고 이를 반드시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3. 溫情主義的 國家機能

'自由란 책임을 질 줄 아는 개인들에게만 가능한 목표이다'(C & F, p. 33). 자기책임을 모르는 개인들에 대한 溫情的 保護(paternalism)는 국가가 회피할 수 없는 임무임을 프리드만은 인정하였다. 그는 정신이상자와 아동들을 이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프리드만은 이 기능을 정부가 직접 전담하지 말고 個人的 自發적인 봉사를 가능한 한 활용하고 政府는 이를 주선하는 일에 그치는

8) 프리드만은 外部效果(external effect)를 이렇게 불렀다.

것이 좋다고 보았다. 그러나 政府의 이 기능은 자기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自由主義의 原則과 상충되므로 政府의 이 기능을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선은 없다고 보았다. '다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국가의 온정적 보호의 기능; 필자 주), 우리는 불완전하고 편견을 벗어나지 못한 존재이지만 자유로운 토론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리의 신념에 의존하여야 한다'(C & F, p. 34).

第 4 節 通貨政策

원래 貨幣經濟學이 전공인 프리드만은 新貨幣數量說(the New Quantity Theory of Money)을 제시하여 貨幣理論을 발전시켰으며 政策의 분야에 있어서도 通貨政策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는 기존의 미국 통화정책과 제도를 改革해야 된다고 보고 이를 위한 자신의 견해를 「통화안정의 방안」(A Program for Monetary Stability, Fordham University Press, 1960, 정도성 譯, 계축문화사, 1993, 이하 PMS)에서 자세히 밝혔다. 이하에서 이 책을 중심으로 그의 通貨政策의 주요내용을 고찰하기로 한다.

1. 通貨量의 중요성

프리드만은 그의 전 학문적 생애에 걸쳐서 케인지언들⁹⁾의 거시이론과 그 정책을 비판하였다. 그의 비판은 우선 貨幣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케인지언들은 貨幣가 중요하지 않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

9) 정확하게 말하면 케인즈와 케인지언이지만, 프리드만은 케인즈와 케인지언의 견해가 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케인지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다는 것이다. 이는 1929년 이후 30년대 후반까지 계속된 大恐慌(이하 大恐慌¹⁰⁾)을 당시의 통화당국이 막지 못한 것을, 통화당국이 무력하다는 증거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 시작함으로써 비롯되었다(PMS, p. 1).

그래서 '貨幣는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광범하게 받아들여지고, 通貨量은 순전히 경제가 변화함에 따라서 피동적으로 변할 뿐이며, 독립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PMS, p. 2).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다. '貨幣는 중요하다'(Money is important). 이 말의 의미는 격심한 인플레이나 大恐慌과 같은 심각한 경제교란이 대부분 통화교란(즉 급격한 通貨量의 팽창이나 수축)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프리드만은 미국의 景氣變動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히 그는 1929년 이후의 대공황이 미국의 통화당국인 聯邦支拂準備制度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하여 1929년 7월부터 1933년 3월 사이에 通貨量이 3분의 1 이상 크게 감소한 것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즉 프리드만의 '화폐는 중요하다'는 주장은 總需要調節政策의 수단으로서 財政政策보다 通貨政策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교란의 주원인이 통화교란이므로 통화교란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기변동들은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극심한

10) 역사적으로 大恐慌은 이 이전에도 몇 번 있었으나 이 글에서 大恐慌은 1929년부터 시작하여 30년대에 지속된 大恐慌을 가르킨다.

경기침체를 가져와서, 사회에 고통을 주고, 또한 사회의 결속을 약화시켰다. 이들에 관한 사실은 명백하다. 이 모든 사태들은 상당한 통화적인 교란을 수반하였다. 또 주요한 통화적인 교란은 항상 극심한 경기변동을 동반하였다. 통화적 교란들은 많은 경우에 거의 독자적인 이유에서 생겼으며, 이를 볼 때 통화적 교란이 경기변동을 유발하며, 단순히 통화적 교란이 경기변동의 부차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PMS, p. 41).

2. 값싼 通貨政策의 비판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의 대교란을 가져온 통화교란의 거의 대부분은 잘못된 通貨政策으로부터 기인하였다는 점이다. 즉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政府의 通貨政策이 통화교란을 낳고 이는 다시 경제의 교란을 낳은 것이다.

…… 1830년대의 은행전쟁, 1870년대의 본위제도 복귀압력, 1890년의 銀 소요, 1차대전 후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경기수축, 1931년부터 1933년까지의 은행붕괴 사태, 2차대전 후 國債價格의 유지정책 등의 사례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통화적 교란은 정부의 通貨政策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정책에 대한 논란의 결과로 발생하였다. 이 사례들은 통화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유시장을 위한 안정적인 통화제도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불안정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PMS, p. 41).

프리드만은 또한 케인지언들의 통화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입각한 '값싼 通貨政策'¹¹⁾ (cheap money policy)이 전후 구미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프리드만에 의하면 케인지언들

은 '通貨政策의 역할은 단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이자율들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投資를 저해하지 않고 이로써 향후 주요한 문제로 예견되었던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완화시키는 정도로만 기대되었다'(PMS, p. 2). 그리하여 '2차대전 후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값싼 화폐'정책을 추구하였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값싼 화폐 정책의 결과로 통화량이 증가하였고 물가도 상승하였다'(PMS, p. 2).

케인지언들의 대표적인 모형인 IS-LM 모형에 物價가 등장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케인즈의 이론은 인플레이의 분석에 무력하다. 이는 케인즈의 이론이 인플레이가 문제가 아니라 失業이 문제인 大恐慌을 배경으로 失業과 不況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케인즈의 이론을 근거로 한 케인지언들의 총수요확대정책은 大恐慌을 해소하고 2차대전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총수요확대 정책, 특히 확대통화정책(값싼 통화정책)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의 만연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는 失業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나 케인지언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리드만이 古典學派의 貨幣數量說에 케인즈의 流動性選好說을 가미하여 新貨幣數量說로 부활시켰다¹²⁾. 프리드만의 말대로

-
- 11) 金利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량을 계속 증가시키는 정책을 프리드만은 cheap money policy라고 불렀다. 金利는 화폐의 가격이므로 이렇게 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低金利政策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金利의 직접규제를 통한 低金利政策과는 달리 위의 低金利政策은 통화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한 간접적 방식의 低金利政策이다.
- 12) 古典學派인 마샬(A. Marshall)의 現金殘高說에 케인즈의 流動性選好說을 합한 것이 프리드만의 新貨幣數量說이라고 볼 수 있다. 프리드만의 新貨幣數量說은 물가는 통화량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화폐수량설에, 화폐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소이며 국민소득은 可變的인 변수로서 총수요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케인즈의 견해를 합한 것이다.

통화 증가의 억제 없이는 인플레이를 억제할 수 없다(PMS, p. 3). 이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 古典學派의 貨幣數量說이다.

프리드만이 新貨幣數量說을 제시한 1950년대를 지금과 비교하여 보면 인플레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지언들의 총수요확대 정책은 인플레이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며 이로 인하여 인플레이가 경제의 최대문제의 하나로 부상함을 일찍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화폐수량설을 부활시킨 것은 프리드만의 先見之明이라고 하겠다. 케인지언들이 애용하는 IS-LM 모형에 의하면 통화량 증가는 利率을 하락시키며 이는 투자를 촉진시켜서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이는 인플레이가 없고(물가가 不變이고), 供給에 애로가 없을 때에만 성립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제가 오늘날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供給에 애로가 존재하면 통화량 증가에 따른 총수요의 증가는 생산과 고용을 증가 시킴이 없이 物價만 인상시킨다. 대부분의 제3세계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만성적인 인플레이가 계속되어 인플레이 기대심리가 고착된 경제(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경제가 이에 속한다)에서는 통화증가는 인플레이율을 증가시키고 이 때문에 市場利率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 시장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 예상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리드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계속 증가시켜야 하고 이는 다시 시장이자율의 상승을 낳기 때문에 통화증가율의 상승과 물가상승률의 상승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즉 통화팽창으로는 시장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없으며 단지 물가상승률만 높일 뿐이다.

3. 通貨量增加率 固定의 準則

이상과 같이 프리드만은 케이지언들의 통화정책을 비판한 다음 경제의 교란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통화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

았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통화주의자인 프리드만이 주장하는 적절한 통화제도란, 화폐는 중요하므로 통화정책을 경제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프리드만의 비판이 나오기 전에는 財政政策을 중시하던 케인즈 언들도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자들의 비판을 자기들 나름대로 받아들였다. 즉 화폐가 중요함을 인정하여 通貨政策의 유효성을 시인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통화량의 조절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는 政策配合(policy-mix)을 이용하여 總需要를 조절하고자 하였다. 프리드만에 의하면 경기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총수요조절정책(경제안정정책)은 잘못이다. 그 중요한 이유는 정책이 필요함을 인식할 때까지 그리고 정책이 실시된 다음부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時差가 길 뿐만 아니라 이 시차가 일정하지 않아서 시의적절하게 정책을 실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¹³⁾.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는 너무 세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그리고는 통화량 증가가 곧 멈추지 않으면 또 다시 브레이크를 밟는 유감스러운 경향이 자연적으로 일어났던 것이다'(PMS, p. 29).

따라서 프리드만은 경기안정을 위한 총수요조절정책을 반대하고 단지 통화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준칙을 정하여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매우 민감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경제적 교란에 의해서 생기는 불안정을(이 제도를 이용하여; 필자 삽입) 지속적으로 상쇄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화제도

13) 프리드만의 검증에 의하면 미국경제에서 발생한 18개의 경기순환을 평균해서 보면 통화량의 최고점에서 경기의 최고점까지의 시차는 6개월에서 29개월까지로 나타났으며, 두 최저점간의 시차는 4개월에서 22개월까지로 나타났다(PMS, p. 166).

자체가 불안정의 주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라는 자동차에 화폐라는 능숙한 운전자가 앉아서 도로상에 예기치 못하게 패인 곳들을 능숙하게 운전대를 돌려서 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뒷자석에 앉아서 자동차의 중심을 잡고 있는 화폐라는 탑승자가 때때로 앞으로 쏠림으로써 운전대가 이 사람의 몸에 닿아 돌아가서, 자동차가 길 밖으로 벗어나는 사태를 방지하는 일이다(PMS, p. 42).

프리드만은 通貨增加率을 일정하게 정한 다음 公示하고 이를 장기에 걸쳐 매년 철저히 지키는 準則을 제안하였다. 소위 X% 準則(X% rule)이다. 정부는 이 준칙만 지키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맡김으로써 통화량의 급격한 변동(통화교란)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의 혼란(심한 인플레이션 대불황)을 막을 수 있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축소하여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계획에 입각한 합리적 경제활동을 기능하게 하며,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거나 개인간의 자발적인 협조를 정부의 강제력으로 대체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프리드만은 이 준칙을 지키면 경제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았다. 다만 통화교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요인 때문에 경제교란이 발생하더라도 여기에 통화교란이 겹쳐짐으로써 원래의 교란이 극심한 대공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프리드만은 평균적인 실질경제성장률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는 화폐의 유통속도의 감소를 감안한 것이다)를 적정 통화증가율로 고시할 것을 권고하였다(미국의 경우, 그는 4%의 증가율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프리드만은 이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미리 고시한 일정한 증가율을 엄격하게 계속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불안정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약간의 일정한 물가변동률은 미리 예측가능하므로 큰 폐해를 낳지 않기 때

문이다(PMS, p. 173).

4. 通貨 金融制度的 改革

通貨增加率을 일정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통화당국(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프리드만은 미국의 경우 기존의 통화 금융제도하에서도 年目標 통화증가율을 2분의 1 내지 1% 포인트의 오차범위에서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PMS, p. 170), 통화량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그는, 중앙은행의 再割引制度를 없애고 재무부의 國債管理를 폐지하고 이를 중앙은행관리로 일원화하며, 예금통화에 대한 은행의 지불준비율을 100%로 정하며, 은행의 지불준비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시장금리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통화량 조절을 전적으로 公開市場 조작을 통해서만 시행한다는 것이다.

通貨量은 本源通貨에 通貨乘數를 곱한 것이므로 통화량을 정확하게 관리하려면 본원통화와 통화승수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 이외의 경제주체인 재무부나 민간이나 은행의 행동에 의하여 本源通貨나 通貨乘數가 변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 위의 제도개혁들은 모두 이를 위한 것이다.

은행의 중앙으로부터의 차입은 本源通貨의 주요 구성요소이고 이는 주로 再割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는 은행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이 제도를 없애으로써 本源通貨가 중앙은행의 의사와 상관없이 변하는 중요한 출구를 봉쇄할 수 있다. 재무부의 國債管理를 폐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이다. 재무부의 國債 賣買로 인하여 本源通貨가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프리드만은 재무부가 직접 國債를 매매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금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리고 남는 자금은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하여 國債管理를 위한 공개시장조작을 중앙은행으로 일원화시킬 것을 주장하였

다. 아울러 프리드만은 중앙은행이 通貨管理를 위해 國債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은행으로 하여금 예금잔고에 대하여 100%의 지불준비금을 보유토록 하는 것은 은행과 민간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은행의 信用創造의 크기가 변하여 通貨乘數가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信用創造가 불가능하게 되어 通貨乘數는 항상 1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프리드만은 은행의 지불준비금에 대하여 중앙은행이 공채금리로 이자를 지불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이 없으면 이 제도가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本源源通貨도 국가의 부채이므로 公債와 같이 지불준비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¹⁴⁾. 은행이 들어 온 예금의 전액을 지불준비금으로 보유하게 될 경우에 은행은 대출이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債券發行이나 信託으로 마련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財務部나 銀行 혹은 民間의 의사결정이 통화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 상태에서 公開市場操作만으로 中央銀行이 통화량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目標通貨增加率을 정확하게 달성하자는 것이 프리드만의 주장이다¹⁵⁾.

第 5 節 評 價

원래 通貨經濟學者인 프리드만은, 앞에서 고찰한 自由主義者들

14) 중앙은행이 은행에게 지불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면 이를 재원으로 하여 은행이 예금주들에게 예금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므로 국민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셈이 된다.

15) 이 밖에 프리드만은 예금금리의 자유화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미국에서 이미 1980년대부터 실행되었다.

과는 달리 독자적인 自由主義 經濟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2차대전 후 케인지언들의 개입주의를 비판하여 自由主義 經濟學과 經濟政策을 부활시키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의 주된 공헌은 역시 그의 전공분야인 巨視經濟學, 특히 通貨 經濟學에서 발휘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케인지언들의 巨視經濟學에 대항하여 自由主義에 입각한 通貨主義(monetarism)를 제시하여 전후 미국에서 케인지언 巨視經濟學에 대항하는 유력한 경제학파를 만들었다.

그는 우선 인플레이가 失業 못지않게 중요한 현대 경제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인플레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케인지언의 값싼 통화정책을 버리고 엄격한 통화량 관리를 실시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통화량 팽창의 억제만으로 인플레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통화량과 물가간에 不變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통화량과 물가 사이에는 장기에서는 평균적으로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하므로 通貨膨脹의 억제 없이는 물가 안정이 불가능하므로 엄격한 通貨管理가 물가안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거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인플레이가 심각한 경제문제로 대두하기 훨씬 전인 1950년대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처방까지 내린 그의 해안은 인정할 만하다.

다음으로 케인지언들의 단기적인 총수요조절정책을 비판하고 이의 폐지를 주장한 프리드만의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정부가 충분한 정보와 이론도,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며 더욱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히 불안정한 時差가 존재한다는 그의 주장은 타당하다. 정부가 이러한 힘을 갖고있다는 케인지언의 주장은 지나친 자만이였다고 볼 수 있다. 60년대 말에 등장한 自然失業率假說과 70년대 초에 등장한 合理的 期待假說은 모두 이러한 프리드만의 입장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實質經濟成長率에 화폐유통속도의 감소를 감안한 일정한 비율에

通貨增加率을 맞추고 이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엄격하게 실시하자는 프리드만의 주장은 모든 경제에 타당한 통화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된다.

그가 권고한 통화금융제도 개혁은 쉽게 찬성하기 힘들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公債를 발행하지 말고 中央銀行으로부터 차입하자는 제안은 악용되어 통화남발을 오히려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中央銀行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른 주장들, 中央銀行의 재할인제도는 없애고 은행은 예금에 대해 100%의 지불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프리드만은 PMS의 1992년판의 서문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여전히 옳다고 말하고 있으나 아직 이 제안들은 널리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중대한 制度改革에 필요한, 성공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아직 없다. 그리고 이러한 制度改革은 銀行과 民間의 자유와 편의의 폭을 확실히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再割引制度가 없어지면 은행은 필요한 자금조달에 있어서의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지며, 프리드만 말대로 예금에 대해서는 100% 준비금을 은행이 보유하도록 하고 신탁과 채권발행으로 은행의 與信資金을 마련토록 한다면 이들 자금에 대해서는 만기이전의 인출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은행이나 비은행을 막론하고 수익성과 유동성이 모두 높은 새로운 金融商品들을 개발하여 내놓고 있는 근래의 세계적인 현상인 金融革新과도 상반되는 주장이다. 그가 주장한 金融制度改革이 실시되면 中央銀行이 通貨量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겠지만, 은행과 재무부와 민간은 금융활동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이 불편은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經濟活動의 축소라는 비용을 치르게 한다. 프리드만의 제도개혁을 실시하려면 이에 따른 사회적 이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계산이 아직은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끝으로 프리드만의 通貨主義 내지 시카고 學派의 한계를 생각하

여 보자. 프리드만의 通貨主義는 분명히 거시이론에서 케인즈 이후 케인즈체계에 대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대안이다. 通貨主義는 인플레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케인지언들의 개입주의의 폐해와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프리드만 및 시카고學派(자연실업률가설과 合理的 期待假說로 이어지는)가 케인즈 체계를 완전히 대체하였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들이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2차대전 이후의 美國經濟(넓게 보면 선진국 경제)인데 이들도 현대 경제문제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고 있지 못하다. 현대 선진국 경제의 문제는 실업과 인플레이가 병존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화주의 내지 시카고 학파가 제시한 해결방안은 인플레이에 대한 것일 뿐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들 학파의 가장 발달한 이론인 合理的 期待假說(혹은 新古典學派)은 古典學派와 같이 自由放任을 주장하고 자유방임하에서는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대 선진국 경제에 존재하는 높은 失業率을 보면 자유방임하에서 완전고용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학파는 케인지언들의 介入主義에 대한 비판으로는 유효하지만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진 현대 선진국 경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무력하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프리드만은 그가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극복하려고 하였던 케인즈의 벽을 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케인즈는 그가 해결하고자 하였던 문제(대공황과 실업)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였으나 프리드만은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현대 선진국 경제 내지 세계경제는 시카고 학파가 중시하는 통화량이나 인플레이 기대심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보다 크고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앓고 있는 것 같다.

第Ⅱ部

韓國經濟의 先進化와 民主化를
위한 財政·金融政策

第 6 章 韓國經濟의 發展段階와 問題點

스미스, 오이켄, 하이에크, 뷰캐넌, 프리드만 등 앞의 第 1 部에서 고찰한 自由主義者들은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政府主導의 경제를 비판하였다는 것이다. 정부에 의한 경제주도를 반대하는 것이 自由主義의 핵심내용이므로, 정부주도의 경제운영이 지배적이었던 경제에서 이를 비판하는 自由主義가 등장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제2차대전 후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도, 重商主義經濟나 社會主義經濟 혹은 나치하의 독일경제와 같이 전형적인 政府主導의 경제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제2차대전 후, 經濟開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가 經濟開發計劃을 세워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이들 나라에서는 政府主導의 경제가 형성되었다. 1961년 5·16 이래의 우리나라 경제도 政府主導의 경제였다.

第 1 節 韓國 經濟開發의 特徵

그간의 한국 經濟開發模型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成長至上主義, 정부주도경제, 그리고 不均衡的이며 對外指向的인 工業化戰略이라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비단 한국 經濟開發模型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차대전 이후 美國의 영향력하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아 들어서 美國의 傳統的 發展經濟學에 따라서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던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개발들은 대부분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傳統的 發

展經濟學이란 제2차대전 이후 60년대까지 주로 美國의 經濟學者들에 의하여 발전되고 美國政府에 의하여, 美國의 影響力下에 있던 低開發國들에게 권장되었던 發展經濟學이다¹⁾. 미국 내지 선진국의 이익과 견해를 대변하는 傳統的 發展經濟學의 주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²⁾.

첫째로 저발전국의 경제발전의 길은 資本主義 경제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둘째로 成長至上主義이다. 經濟成長이 곧 경제개발의 목표이며, 經濟成長만 이루어지면 경제발전이나 사회발전은 저절로 달성된다. 따라서 經濟成長만이 강조되고 分配나 産業構造와 같은 경제의 질적 구조가 경시된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民主制度의 발전이나 사회제도의 개혁들이 종종 희생되었으며 많은 경우에 經濟成長은 집권층의 이익을 合理化하는 명분으로 사용되었다.

셋째로 調和論의³⁾ 입장을 취한다. 즉 經濟發展은 국내적으로 보면 모든 계층에게 유익하며 국제적으로 보아도 저발전국과 선진국간의 교역은 쌍방 모두에게 유익하다.

1) 傳統的 發展經濟學(traditional development economics)이란 센(A.K. Sen)이 붙인 이름으로서 2차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의 주류경제학에서 분가하여 60년대까지 다양하게 발전한 발전경제학을 가리킨다. 여기서 '傳統的'이란 말은 70년대 이후 새롭게 변모한 발전 경제학과 구별하기 위하여 붙인 것이다. A. K. Sen(1983).

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李根植(1987)을 참조하라.

3) 흔히 아담 스미드(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을 생각하여 신고전학과 이전의 고전학과도 자연조화설을 신봉하였던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아담 스미드를 비롯하여, 리카도(D. Ricardo), 밀(J.S.Mill) 및 맬서스(U.Malthus) 등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자본가, 노동자 및 지주라는 세 계급간에 소득분배를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계급간의 소득분배와 경제발전간의 관계는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이 가장 중요시한 문제였다.

셋째로 政府主導의 經濟開發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저발전국서는 민간부문이 취약하므로 정부가 앞장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근대적인 경영능력을 보유한 人的 資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정부만이 갖고 있으므로 정부가 經濟開發을 주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5·16 이후의 韓國 政府도 이상의 내용을 특징으로 하는 傳統的 發展經濟學에 입각한 經濟開發計劃을 강력히 추진하여 그 전형이 되었다.

한국의 經濟開發模形의 특징은, 그 이념과 실행메커니즘 그리고 개발전략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고찰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특징들은 비단 韓國만이 아니라 美國의 영향력하에서 經濟開發을 추진한 대부분의 LDC의 경제개발모형의 특징이다.

1. 成長至上主義

韓國 經濟開發模形의 이념상에서의 특징은 成長至上主義이다. 成長至上主義란 先成長 後分配란 구호에서 나타나듯이 성장을 위해서는 일단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일단 成長이 달성된 다음에는 다른 목표들이 손쉽게 달성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 5·16 이후 군사정권이 내세웠던 祖國 近代化의 口號도 오직 經濟成長만을 의미하였다. 이 이념은 물론 傳統的 發展經濟學에서 온 것이다. 傳統的 發展經濟學의 네 가지 내용 중 두번째의 것이 바로 成長至上主義였고, 세번째의 내용인 조화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조화론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결국 모든 국민들을 잘살게 하므로 국민들 모두를 위하는 것이다.

조국 근대화란 말로 표현되었던 成長至上主義는, 한국의 經濟開發過程에서 집권자와 국민들 모두를 지배한 이데올로기였다. 집권층은 이것으로 자신들의 집권을 자신과 국민들에게 합리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것으로 국민들의 성장의욕을 고취시켜 대

다수 국민들을 經濟成長에 동원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60년대와 70년대에 공무원, 기업인, 근로자 등 각 계층의 대다수 국민들은 각자 祖國 近代化의 역군이라는 자부심을 갖고서 자신의 일에 보람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일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이 이데올로기는 강력하고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된다.

2. 政府主導經濟

한국의 經濟開發模型의 두번째 특징은 政府主導經濟이다. 政府主導經濟란 개발계획을 실시하는 메커니즘이다.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들이 세운 개발계획을 강력하게 실시할 수 있었다.

그간의 우리 經濟를 스미스식의 重商主義經濟, 오이켄의 中央管理經濟, 아니면 혹자에 따라서 官治經濟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명칭은 각자 長點과 短點을 갖고 있다. 스미스의 重商主義經濟란 용어는 歷史的 현상으로서의 개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힘의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商業을 중시한다는 오해를 낳는 단점이 있다. 오이켄의 中央管理經濟는 中央政府에 의한 경제의 장악이라는 힘의 구조가 선명히 나타난다. 오이켄의 中央管理經濟는 計劃經濟의 한 형태이다. 오이켄에 의하면 計劃經濟나 이와 대칭되는 交換經濟는 어느 특정한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超歷史的인 개념이다. 따라서 中央管理經濟란 歷史的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흔히 쓰는 官治金融을 확대하여 사용한 官治經濟란 말은 생생한 어감과 선명한 연상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학술적으로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60년대 이후 그간의 우리 경제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는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논쟁의 대상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논쟁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냥 평범하게 그간의

경제구조상의 우리 경제의 특징을 政府主導의 經濟라고 부르기로 한다. 엄격히 말하면 中央政府主導의 경제라고 해야겠지만 편의상 政府主導經濟라고 부르기로 한다.

政府主導經濟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傳統的 發展經濟學을 받아들여 경제개발을 추진한 대부분의 LDC에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傳統的 發展經濟學은 政府主導의 경제개발계획을 권장하였고, 政府主導의 경제개발은 政府主導의 경제구조를 초래하였다. 政府主導經濟에서 정부가 정상적인 자본주의 경제에서보다 경제를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저발전국의 政府主導經濟에서는 정부가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비중이 높다. 정부주도경제에서는 전력, 운수, 통신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이나 중화학공업과 같이 원래는 민간자본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할 산업에까지 정부가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이것은 저발전국에서는 민간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經濟的 論理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를 통하여 정부는 國民經濟에의 통제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政府主導經濟에서 정부가 경제를 장악하는 두번째의 방법은, 금융, 조세, 인허가, 官給契約 및 각종의 감독권을 이용하여 민간기업을 통제하는 것이다. 政府主導經濟下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수단을 통하여 민간기업을 정부가 완전히 장악한다. 선진국에서도 政府가 기업에 세금을 걷고 각종 규제를 행하지만, 政府主導經濟下에서는 政府가 민간기업에 대하여 生死與奪의 권한을 가질 정도로 정부의 民間經濟에 대한 규제수단이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마련되어 있다.

政府主導經濟의 특성은, 바로 이와 같이 정부가 여러 규제수단을 통하여 민간기업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政府主導經濟下에서는 민간기업의 소유주는 민간이지만 그 生死與奪權은 정부가 쥐고 있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특정기업을 단시일내에 키

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하루 아침에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때문에 民間企業들이 政府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韓國經濟는 政府主導經濟의 전형이다. 韓國에서는 정부가 민간 기업을 장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官治金融이다. 官治金融이란 금리·대출·인사 등 금융기관들의 중요 경영사항이 정부에 의하여 장악된 금융을 말한다.

5·16 이후 군사정권이 취한 가장 기민한 조치 중의 하나가 5·16 한 달 후인 6월에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것이다⁴⁾. 이 법은 금융기관 임원들의 임명승인권을 은행감독원장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그 1년 후인 1962년 5월에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韓國銀行을 財務部에 예속시켰다⁵⁾.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돈부터 장악한 당시의 군사정권의 판단과 행동은 실로 정확하고 민첩한 것이었다. 그 이후 수차에 걸쳐서 金融機關에 관한 법령들을 개정하여 정부는 金融機關을 완전히 장악하고 官治金融을 확립하였다. 官治金融은 한국의 경제에서 정부가 민간부문을 장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다. 기업이 대출규제를 받으면 자금운용이 불가능해져서 도산하게 되고, 반대로 정부의 신임을 얻어서 시중은행이나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가 싼 자금을 대출받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주도경제의 강력한 수단 중 두번째는 租稅이

4) 이 법은 1982년까지 존속되었다.

5) 당시 한국은행법의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ㄱ. 한국은행 총재의 임명재청권이 국무총리에서 재무부 장관으로 넘어갔으며
- ㄴ. 금융통화정책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이 한은 총재에서 재무부 장관으로 바뀌었으며
- ㄷ. 한국은행이 재무부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었으며
- ㄹ. 한국은행의 예산과 결산이 각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었다.

다. 5·16 후 정부는 거의 매년 稅法을 개정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稅法은 정부가 민간기업을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수단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 稅制의 특징의 하나는 名目稅率이 높으며, 예외조항들이 수없이 많아서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세금은 세무당국의 재량권이 매우 커서 정부가 세금을 이용하여 기업들을 장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특정기업을 응징하고 싶을 때에 가장 애용하는 방법이 稅務查察이고, 稅務查察을 우리나라 기업들은 금융중단 다음으로 두려워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稅制가 우리나라 政府主導經濟의 중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官治金融과 稅制 말고도 각종의 인허가 감독권 등 우리나라 정부는 민간기업을 장악하기에 편리한 수많은 수단들을 많이 갖고 있고, 이를 통하여 民間經濟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3. 不均衡의이며 對外指向的인 工業化戰略

한국의 經濟開發模型의 특징을 개발전략의 측면에서 파악하면, 不均衡成長戰略과 對外指向的인 工業化戰略의 두가지이다.

不均衡戰略이나 均衡戰略이나 하는 문제와 外向的인 戰略이나 內向的인 戰略이나 하는 문제는 분명히 구분기준이 서로 다른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에서 均衡成長戰略은 內向的인 工業化와 결합되고, 不均衡戰略은 外向的인 工業化와 결합되어 나타났다. 왜냐하면 모든 산업을 골고루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均衡成長戰略은 현실적으로는 자연히 輸入對替產業들의 육성을 통하여 자립경제를 목표로 하게 되는 반면에, 不均衡成長戰略은 수출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향적 공업화전략을 채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2차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정치적 독립을 획득한 대부분의 저발전국들은, 경제의 면에서도 독립을 위하여 輸入代替產業들의 육성을 통한 내향적인 均衡成長戰略을 50년대까지 추구하였

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였고, 60년대부터는 대부분 外向的 不均衡成長戰略을 채택하게 되었다⁶⁾.

韓國의 경제개발도 예외는 아니었다. 韓國 경제개발모형은 외향적인 불균형전략으로 공업화에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韓國의 경제개발전략은, 항상 輸出産業을 先導部門(leading sector)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工業化를 이루어왔다는 점에서 불균형 성장전략이었으며,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시장을 해외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外向的 工業化戰略이었다.

不均衡 成長戰略이란 정부가 어느 특정산업만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不均衡戰略은 원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만 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그러나 韓國의 경제개발전략의 특징을 불균형전략이라고 할 때에는 그 의미를 더 넓혀야 한다. 왜냐하면 산업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측면에서도 韓國 政府는 불균형 전략을 채택하여 왔기 때문이다.

우선 재벌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韓國政府는 中小企業보다는 재벌들의 大企業을 편중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中小企業 육성정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전반적으로 보아서 정부소유의 재산의 拂下나 금융대출, 借款과 外換의 배정, 稅制上的 혜택 등 정부주도 경제하에서의 각종 특혜는 주로 재벌들에게 주어졌고, 이러한 정부의 특혜 덕분에 여러 재벌들이 짧은 기간 동안 급성장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재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는 것은 한국 경제개발의 불균형전략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한국 경제개발의 불균형전략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장에

6) 저발전국들의 내향적 균형성장전략이 실패한 이유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資本과 外換의 부족 때문이지만 미국의 영향력도 저발전국들이 내향적 전략에서 외향적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에 큰 작용을 하였다.

필요한 저축과 투자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所得과 富가 소수에게 편중되는 정책을 일관되게 실시하여 온 것이다. 저축과 투자는 주로 부자들이 하는 것이므로 이 정책은 貧富格差의 확대를 조장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 경제에는 불공정한 貧富格差를 확대시키는 구조가 고착되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金融制度和 租稅制度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거나 주식과 채권을 매매할 때에 가명을 씌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숨길 수 있는 金融假名制이다. 이 제도는 5·16 이후 1961년에 제정된 '預·積金の 秘密保障에 관한 법률'로 군사정부에 의하여 도입된 후 1993년에 폐지되었다⁷⁾. 金融假名制 덕분에 뇌물수수, 부동산투기와 탈세가 용이하게 되었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의 무기명 양도가 합법화됨으로써 이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왔다.

租稅制度 또한 불공평하게 되어 있다. 5·16 이후 군사정권은 매년 租稅制度를 개정하여 왔는데, 그 일관된 방향은 부유층의 자산이득을 경감하여 주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토지관련 세금들이다. 우선, 토지의 과표가 시가의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세율을 세법이 정한 세율의 5분의 1로 줄여준다. 뿐만 아니라 각종의 감면조항들을 마련하여 주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투기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규모의 부당이득이 상당부분 세금으로 견히지 않아 왔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토지에 대하여 매우 관대하다는 것은, 토지보유세(우리나라의 경우 종합토지세)의 實效稅率이 歐美先進國들이 1~2%, 토지세가 가볍기로 정평있는 日本이 0.2%

7) 1993년 8월의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金融假名制가 금지되고 金融實名制가 실시되었으나 당사자간의 승인에 의한 借名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金融實名制가 半만 실시되고 있다.

인 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겨우 0.027%⁸⁾에 불과하다는 데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資産所得을 우대하는 대신 정부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금액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간접세를 높여 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租稅收入 중 間接稅의 비중이 절반에 달한다. 間接稅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물건을 살 때마다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것이므로 부자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불공정한 역진세이다.

이 밖에 노동운동의 탄압과 저임금정책도 근로자들의 몫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불공정한 분배를 확대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경제개발모형은, 이념에서는 成長至上主義, 실천메커니즘으로는 政府主導經濟, 개발전략으로는 對外指向인 不均衡 成長戰略으로 특징지어진다고 볼 수 있다.

第 2 節 韓國 經濟開發模型의 評價

지난 30년간 실시되어 온 韓國 經濟開發模型의 功過를 평가하여 보면, 고도성장의 실현이 功이며, 反生産的인 경제구조의 정착, 불공정한 분배, 재벌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해외의존도의 심화가 過라고 볼 수 있다.

1. 中進工業國으로의 발전

그간의 경제발전으로 韓國經濟는 후진농업국에서 중진공업국⁹⁾

8) 1990년의 우리나라의 전국 땅값은 1,562조원이며 종합토지세 부과액은 3,999 억원이다.

으로 발전하였다. 韓國의 經濟는 지난 30년간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모두 달성하였다. 1962년에서 93년 사이에 199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국민총생산(GNP)은 16.4배로 증가하였고, 1인당 GNP는 57만 4천원에서 489만 5천원으로 8.5배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에 수출은 5,500만달러에서 810억 2,400만달러로 무려 1,473배로, 수입은 4억 2,200만달러에서 789억 4,600만달러로 187배가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경상가격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실제의 증가보다는 과장된 것이지만, 30년 동안 1차상품만 조금 수출하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輸出國이 된 것은 틀림이 없다. 이러한 수출의 급증은 한국이 輸出主導型의 外向的 工業化를 추진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표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經濟的 生活水準이 지난 30년 동안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40세 이상의 국민들은 모두가 잘 느끼고 있다.

이 期間 동안에 韓國經濟는 量的인 成長만이 아니라 質的인 發展도 이룩하여 전통적인 농업경제에서 資本主義的인 中進工業國으로 전환되었다. 1962년과 1993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10.0%에서 29.0%로 증가하였으며, 수출에서의 공산품의 비중은 27.0%에서 92.9%로 증가하였다. 1962년과 92년 사이에 전체 취업자 중에서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은 8.0%에서 25.2%로 크게 증가한 반면에, 농림어업종사자의 비중은 63.1%에서 16.0%로 감소하였다. 이는 우리 경제가 農業國에서 工業國으로 質的 發展을 이룩하

9) 이 글에서 中進工業國이란 용어를 엄격히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工業化가 상당히 진전되어서 후진경제는 탈피하여 자본주의 경제로 발전하였으나 아직 선진경제로는 진입하지 못한 나라라는 소박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中進資本主義國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中村哲(1991)을 참조하라.

였음을 뜻한다. 또한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노동자인 피고용자의 비중은 위 기간에 29.6%에서 60.8%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資本主義經濟로 質的인 轉換을 달성하였음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한국 경제의 발전은 物價와 國際收支에서도 나타난다. 아직 物價安定이 정착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도 1981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쉽게 연 20%를 넘던 것에 비하면 물가도 60, 70년대에 비하여 8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개선되었으며 經常收支도 1986년에서 1989년까지 4년 연속 黑字를 나타낸 후 1993년에 다시 흑자를 나타내었다. 적어도 이제 우리 경제가 外債의 질곡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는 상당히 사라졌다고 보여진다.

2. 反生産的이며 不公正한 經濟構造의 定着

그간의 경제개발이 韓國社會를 후진적인 農業經濟에서 中進工業經濟로 발전시켰지만 동시에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 경제에 심어 놓았고 이로 인하여 현재 한국경제는 여러 가지 심각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간의 개발정책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후진적인 제도들 때문에, 생산은 억압하면서 투기와 부정부패와 같은 反生産的이며 反社會的인 경제 활동을 조장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이 잠식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분배가 심하게 不公正하게 되고 있다.

생산을 방해하고 분배를 불공정하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유물은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조세제도 그리고 비능률적이며 부패한 經濟構造이다. 이미 앞서 韓國經濟의 특징인 政府主導經濟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金融構造와 租稅制度가 왜곡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즉 官治金融下에서의 低金利政策과 金融假名制度,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租稅制度 그리고 불합리한 정부규제가 政府主導經濟下

에서 형성되어 고착되어 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경제구조 전반이 현재 韓國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성장기반의 약화, 불공정한 분배 및 인플레이션을 낳고 있는 근본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들 구시대의 유물들이 사람과 돈을 생산에서 떠나 투기와 낭비로 흐르게 하며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貿易收支 黒字가 계속되어서 換率이 切上되고 임금이 오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日本은 196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30년간, 대만은 197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20년간 계속하여 대량의 貿易收支 黒字가 발생하여 換率이 切上되고 임금이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대외경쟁력이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강화되어 무역수지의 흑자폭은 더욱 커져 왔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기업들이 수출로 번 돈을 생산에 재투자하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더욱 높아져서 換率切上和 賃金引上을 상쇄하였기 때문이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기업의 재투자자와 근로자들의 근면과 창의력이 증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1986년 이후 수출로 번돈이 생산에 투자되기보다는 땅투기로 흘러들어갔고 근로자들의 마음도 생산에서 떠나서 소비적인 서비스업으로 빠져 나갔거나 제조업에 남았더라도 근면과 창의력이 과거보다 하락하였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對外競爭力 弱化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돈과 사람이 생산에서 떠나서 비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된 것은 이유없이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니다. 앞서 지적한 과거 정부주도경제하에서 형성되어 아직까지 남아있는 잘못된 제도들이 돈과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을 떠나 투기와 소비로 흐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經濟成長의 원동력은 동일하다.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저축하여 기술을 발전시키고 계속 투자하면 발전하고 그렇지 못하면 퇴보하기 마련이다. 60년대 이후 최

근까지 우리 경제가 세계의 그 어느 경제보다도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근로자, 기업가, 공무원 모두가 세계 그 어느 국민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저축하였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급속하게 사라져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강력한 관료기구는 金融制度나 租稅制度和 같이 잘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기반을 잠식하며 분배를 불공정하게 하는 매우 심각한 요인이다.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資本主義 經濟의 성장의 주역인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의 규제, 구체적으로는 관리들의 지나친 간섭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企業活動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임은 부인하기 힘들다. 더욱이 아직도 민주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국민들이 관리들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우리 경제에서는 관리들의 무능과 사리사욕으로 인한 '政府의 失敗'는 실증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3. 不公正한 分配

우리 사회의 不公正한 분배는 앞서 본 반생산적인 경제구조가 초래하고 있는 결과의 하나이긴 하지만 이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현재 한국사회에서 불공정한 분배라 함은 불균등한 분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동산 투기, 부정부패와 같은 反生産的이며 反社會的인 이득이 엄청나게 발생하여 이를 業으로 하는 寄生的階層들은 잘 살고, 근면과 창의력으로 생산에 기여한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짐을 말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분배에서의 갈등은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간이 아니라, 寄生的인 不勞所得階層과 이들에게 소득을 강제로 이전당하는 生産的階層間에서 벌어지

고 있다.

정부는 국민소득 계정으로 계산되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점점 더 작아짐을 근거로 하여¹⁰⁾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점점 더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서는 지니계수가 분배의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에서는 GNP에는 포함되지 않는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투기와 부정부패로부터의 이득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지니계수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땅값이 상승하여 지주들이 가만히 앉아서 번 투기이익(=資本利得)이 1988년에 212조원(GNP의 1.7배), 1989년에 314조(GNP의 2.2배), 1990년에 267조(GNP의 1.6배)에 달하였다¹¹⁾.

여기에 주택이나 건물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투기이익과 부정부패로부터 발생한 수입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 이런 경제에서 GNP만 가지고 계산하는 지니계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不動産價格 上昇은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로 인하여 집없는 세입자들의 생활수준은 상대적인 수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6대 도시의 1,822명의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¹²⁾에 의하면, 이들의 67.5%가 남의 집에 세

10) 朱鶴中과 경제기획원의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1966년의 0.265에서 1980년에는 0.389로 악화되었다가 1985년에는 0.345로 1988년에는 0.336으로 개선되어서 8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 한국토지개발공사에는 1988년 9월에 전국 1만 4,038개의 표준지의 땅값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거래 가능한 토지의 전체 값은 937조원이다. 여기서 토지개발공사가 발표하는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을 곱하여 얻은 것이 이 금액들이다.

12) 曹尤鉉과 李延雨(1991).

들어 살고 있으며, 이 중의 66.0%가 전세로 살고 있다. 전세로 살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88년 말에서 90년 말까지 2년 동안 인상된 임금 중 하나도 안쓰고 모두 저축하면 216만원이 된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같은 기간에 786만원에서 1,226만원으로 440만원 증가하였으며, 전세보증금 1,226만원 중 차입금은 254만원이다. 이 금액은 전세보증금 증가액 440만원에서 인상된 임금을 모두 저축하였을 때의 금액 216만원을 빼 준 224만원과 거의 일치한다. 즉 남의 집에 전세로 사는 근로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임금이 상당히 상승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인상액이 이의 두 배에 달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부채가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말미암아 집 없는 서민들의 생활은 명목상의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수준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집 없는 세입자의 비율은 전국적으로는 45%, 대도시에서는 60%에 달하고 있다¹³⁾. 비단 집 없는 세입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 영세기업들의 대부분이 공장이나 사무실, 가게에 세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폭등하는 바람에 이들도 열심히 기업을 경영하여 번 돈이 집주인에게 이전되고 있다.

구체적인 통계는 없으나,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역시 극심하다. 관공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민간기업, 언론기관 심지어 학교와 종교기관까지 이권과 권세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부패가 만연하여 있다. 국민들 각자가 자신의 직업과 능력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수입을 올리기에 더 열심히 인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세태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근로자이든 기업인이든 장사하는 사람이

13) 기획원 통계청, 「1990년 人口, 住宅 센서스」

든 모두가 땀 흘려서 번 소득들이, 올라간 전세보증금으로 임대료로 땅값으로 집 값으로 그리고 뇌물의 형태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전되고 있다. 생산적 계층이 수고하여 창출한 부가가치가 비생산적 계층에게 사후적으로 이전됨으로써 이 두 계층간의 빈부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분배란 바로 이것을 말한다.

4. 財閥들의 비대화

그간의 한국 경제개발에서 政府主導經濟가 재벌들에게 정부의 지원과 특혜를 집중해 온 결과 현재 우리 경제는 재벌들에 의하여 지배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도 재벌들이 있지 않느냐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벌은 세 가지 점에서 독특하다. 문어발식 경영, 개인이나 그 가족에 의한 소유, 그리고 소유주의 직접 경영이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전문업종이 없고 여러 가지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부동산업, 숙박업, 언론산업 등 전연 관계가 없는 온갖 업종들에서 장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처럼 심하게 문어발식으로 경영하는 財閥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그러나 특정 개인이 아닌 그 가족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되어서 소유주가 직접 경영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財閥은 日本의 財閥과도 판이하다. 일본의 財閥企業들의 주식은 수많은 소액 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어서 재벌이 어느 개인이나 가족의 소유가 아니며, 경영도 專門經營人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財閥은 대기업들의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가족에 의하여 소유 통제되고 있으며, 아무 관련없는 다수의 업종에 진출하고 있는 大企業들의 집단'¹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등 모든 중요한 산

업들이 財閥들 산하의 獨寡占의 大企業들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5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업종 가운데 상위 3社가 시장 판매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213개로 전체 업종 428개의 50%에 달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이 비중이 2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獨寡占化가 얼마나 심한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獨寡占化의 정도가 극심할 뿐 아니라 독과점 업체의 대부분이 재벌들의 소유이다. 국가가 공인하는 獨寡占企業이 '시장지배적 사업자'¹⁵⁾ 인데 89년에 293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중에서 197개(67.2%)가 53대¹⁶⁾ 재벌의 계열기업이다.

87년에 30대 재벌이 우리나라 鑛工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에서는 36.8%에 달하며 고용에서는 17.6%에 달한다. 그리고 주요 6개 대학의 1989년 졸업생의 순수취업자 11만 160명 중 83.4%에 달하는 9,308명이 50대 재벌의 계열기업에 취직하였다. 商品市場도 人才도 財閥企業들이 모두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의 폐해는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하나는, 독과점의 폐해이다. 財閥企業들은 모두 獨寡占企業이므로 재벌의 폐해는 우선 독과점의 폐해로 나타난다. 독과점의 대표적 폐해는 생

14) 강철규·최정표·장지상(1991), p. 16.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국내 총공급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1社 50% 이상 또는 3社 이하의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인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그리고 이 중에서 자산 총액이 4천억원 이상의 것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대규모 기업집단이 정부가 규정한 재벌이라고 볼 수 있다. 1989년에 정부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은 모두 53개였다.

産의 非效率性이다. 이는 경쟁시장에서 보다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재벌의 폐해는 독과점에 따른 이러한 일반적인 폐해와는 차원이 다른 또 하나의 훨씬 더 중요한 폐해를 갖고 있다. 그것은 국민경제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소수의 재벌총수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재벌들에게 경제력 집중이 커짐에 따라서 재벌총수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더욱이 재벌총수는 몇명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공동이익을 위해 쉽게 담합하여 행동할 수 있다.

이들의 힘이 관철되는 것이 바로 金權政治이다. 金權政治란, 돈 많은 계층(우리나라에서는 재벌)들이 자신들의 돈을 이용한 영향력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金權政治란, 힘의 균형이 재벌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政經癒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만 있으면 거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資本主義 社會에서 經濟政策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국회나 행정부의 인사들도 돈의 유혹에 매우 약하다. 뿐만 아니라 언론계나 학계, 법조계의 인사들 처럼, 정책결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돈의 위력 앞에서 公正性을 잃기 쉽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경제의 민주화에 가장 큰 장애물은 재벌들에 의한 金權政治이고 이것의 물질적 기반은 그간의 경제개발에 의하여 형성된 재벌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라고 생각된다.

5. 對外從屬

1970년대에 傳統的 發展經濟學을 비판하고 등장한 從屬理論에 따르면, 저발전국들은 선진국들과의 경제거래를 지속하는 한, 자본·기술 및 시장에서 선진국의 從屬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기 때문에 經濟發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從屬理論에 의하면 外向的

工業化 전략에 의한 경제발전이란 불가능하다. 제2차대전 후 수많은 저발전국들 중에서 工業化에 성공한 나라가 아시아의 몇 나라 정도임을 생각하면 이 주장은 경험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까지만 하여도 날로 증가하는 외채의 원리금상환 부담 때문에 우리 경제가 주저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였었다. 그러나 1986년 이후 4년간의 경상수지 흑자는 우리 경제가 외채의 질곡을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적어도 자본의 면에서는 대외자립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경제의 생산력이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술과 시장의 면에서의 對外依存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서 우리가 과연 경제주권이 있는가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는 현재 技術에서는 日本에게, 市場에서는 美國에게 결정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이나 機械産業의 경우 핵심부품과 기술을 거의 전부 日本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의 3분의 1을 美國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예속성 때문에 우리의 經濟主權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 특히 美國은 그들의 수입규제를 무기로 삼아 우리 經濟政策에 깊숙히 간섭하고 있다. 美國의 요구에 의하여 공산물시장은 이미 다 개방되었다. 농산물시장도 대부분 개방되었으며, 쌀시장마저 심한 개방압력을 받고 있다. 金融市場은 開放이 확정되어 있고 정보통신시장과 유통시장도 開放이 확정적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對美協商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왔다. 이것은 經濟主權을 지키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經濟主權을 지킨다는 것은 외국과의 경제문제에 관한 교섭에 있어서 상대국과 대등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상대방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함을 말한다.

근래에 美國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는 부당한 요구를

여러 차례 강요하였다. 1990년 11월 초에 우리나라가 인도적인 견지에서 10만톤의 쌀을 필리핀에 원조하려던 것을 가로막은 것, 자기들과 입장이 다른 우리에게 UR협상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지지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 자신들의 제품의 광고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낮에도 TV 방송을 요구한 것,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 경품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담배의 경품판매를 규제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 쌀시장을 개방하라는 것 그리고 남북간 쌀의 직교역을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 것 등이다. 이러한 요구가 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요구를 美國에 할 수 있을 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經濟主權을 침해받을 정도로 日本과 美國에 종속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간의 外向的 工業化戰略 때문이었다.

第 7 章 經濟民主化와 先進化를 위한 財政·金融政策

지금까지 제1부에서 대표적인 自由主義者들의 사상을 고찰하였고 제6장에서는 그간의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평가하였다. 제6장의 고찰을 통하여 그간 우리나라 경제는 政府가 經濟를 적극적으로 主導하는 경제였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經濟가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分配가 불공정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90년대 이래 우리나라 경제에서 自由化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음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진전이라고 생각된다. 金泳三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경제개혁의 기본방향도 自由主義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정부주도의 경제가 한계에 부딪치면서 自由主義 경제정책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도 현재 이러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章에서 이러한 自由主義의 입장에서 우리 經濟의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制度改革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 1 節 經濟의 核心으로서의 사람

1993년 말 이래 정부는 對外競爭力 強化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외경쟁력 강화와 自由主義로의 경제개혁은 그 내용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경제의 핵심인 사람의 生産性을 높이는 점에서 둘이 같기 때문이다.

對外競爭力의 強化가 정부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등장하기 시작

한 것은 1993년 말에 UR협상이 타결되고 나서부터이다. 그러나 비단 UR 타결이 아니더라도, 대외적으로 개방된 우리 경제로서는 對外競爭力 強化가 항상 중요한 과제였다. 안으로는 低賃金이라는 利點이 사라지고, 밖으로는 후진국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싼 임금을 발판으로 삼고 우리를 맹렬하게 추격하여 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새삼 강조할 뿐이다.

對外競爭力 強化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거론되는 것은 費用節減에 관한 것들이다. 賃金を 억제하고, 利率을 낮추고 工場用地를 싸게 공급하고, 수송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도로와 항만 등 社會間接資本投資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타당하다. 그러나 정치나 문화 등 인간의 모든 사회적 활동이 그러하듯이 경제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모든 사회문제의 핵심이다. 우리보다 임금과 땅값이 훨씬 비싼 日本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 對外競爭力을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사람이다. 여기서 사람이라 함은 비단 노동자만이 아니라 기업가, 상인, 공무원 등 국민 모두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對外競爭力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國民 모두의 生産性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生産性을 높이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 즉 職業倫理와 自發性과 創意力이 얼마나 발휘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기업인, 상인 및 공무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각자 맡은 바 일에 충실하고 創意力을 발휘한다면 우리나라의 對外競爭力을 높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신의 업무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陰性收入을 올리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일은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만 방해한다. 이런 사람들의 生産性은 영이 아니라 마이

너스다. 이런 사람들만 없어져도 우리나라의 成長率과 對外競爭力은 크게 올라갈 것이다.

특히 自發性이 문제의 관건이다. 自發性이 없으면 強制가 불가피한데 強制에는 強制費用이 따르기 때문이다. 強制費用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포함된다. 하나는 生産性의 下落이다. 자발적으로 일할 때에 비하여 강제에 의하여 마지 못하여 일할 때에는 그 성과가 크게 떨어진다. 둘은 監視와 監督을 위한 기구의 운영비용이다. 역지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감시나 감독을 위한 기구를 겹겹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따른다. 이것이 強制費用의 두번째 요소이다. 東歐 社會主義經濟들이 붕괴된 것도, 非民主的인 後進國家의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이 強制費用의 과다에 주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對外競爭力의 強化가 현재 우리 경제의 중요한 當面 課題의 하나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對外競爭力의 強化 그 자체가 지상의 목표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의 희생의 감수도 불가피한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은 經濟成長을 명분으로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켰던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모든 國家의 目標이고 이를 위한 經濟的인 토대를 발전시키는 것이 모든 국가의 경제정책의 목표이다. 對外競爭力의 強化는 이러한 目標을 추구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실현되는 부수적인 결과의 하나이지 이를 絶對的인 目標로 추구하면, 잘못된 정책수단을 택하게 되어 효과도 없으면서 환경보호나 인권보호와 같이 對外競爭力 못지않게 귀중한 目標을 희생하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게 된다.

第 2 節 公正하고 自由로운 市場經濟秩序의 確立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自發性과 창의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公正하고 自由로운 市場經濟秩序를 확립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나라의 과제이며 改革의 기본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市場經濟의 活性化, 公正한 競爭秩序의 확립 및 分配正義의 실현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

자유로운 市場經濟는 정부가 통제하는 경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라 함은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필요한 물건을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생산되게 한다는 의미이다. 市場經濟가 효율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의 강점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本能인 私益追求의 본능을 原動力으로 삼기 때문에 自發性이 저절로 유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효율성을 위해서는 자발성이 긴요함은 앞서 지적하였다.

두번째의 강점은 市場經濟가 각 경제주체에게, 創意力 발휘의 전제조건인 自由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創意力은 인간 사회의 모든 면에서 발전을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創意力이 발휘되기가 힘들다. 자유는 또한 자발성을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기도 하다. 강제로 부과된 일에 자발성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自由는 그 자체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소의 하나라는 것이다.

세번째의 강점은 가격변동이라는 시장가격기구의 信號燈 기능을 통하여 市場經濟가 다른 어느 경제보다도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불황과 실업의 발생이 증명하듯이 市場經濟에서 가격기구의 이 기능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이 기능의 완전성을 위해 필수적인 完全情報라는 조건은 市場經濟에서도 현실적으로 충족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조건이 다른 경제보다도 市場經濟에서 비교적 더 잘 충족되는 것이 사실이다. 市場經濟에서는 각 經濟主體

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열심히 수집하기 때문이다.

公正하고 효율적인 경제질서의 두번째 요건은 公正한 競爭秩序를 확립하는 것이다. 공정하다는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競爭은 효율의 원천이다. 競爭下에서는 누구나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競爭은 公正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不公正한 競爭에서는 각자가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편법으로 경쟁에 이기려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실현되지 못한다. 競爭過程에서 각 참여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가 부여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부당한 횡포이다. 인간사회에서 부당한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은 公權力을 쥐고 있는 정부와 큰 경제력, 즉 私權力을 갖고 있는 財閥이다. 따라서 公權力과 私權力의 횡포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공정한 競爭秩序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으며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經濟秩序의 마지막 요소는 分配正義의 실현이다. 국민들의 自發性을 유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公正性の 확보이다. 사람들은 不公正하다고 느낄 때에 자기가 속한 사회나 조직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된다. 자신이 不當하게 취급을 받는다고 느낄 때에는 아무도 자신의 조직과 일에 애정을 갖지 못한다. 반대로 公正하다고 느끼는 조직이나 사회에 대해서는 애정과 열성을 갖게 된다. 經濟的으로 보면 이는 分配正義가 실현됨을 의미한다. 분배와 성장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다음의 항에서 보다 상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第 3 節 分配正義와 成長

하이에크는 分配正義 혹은 社會正義란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現代人을 현혹하여 결과적으로는 自由를 억압하는 명분으로 악용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分配正義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된다.

스미스의 '公平無私한 觀客'(impartial spectator)이나 뷰캐넌이 애용한 롤즈의 '無知의 帳幕'(veil of ignorance)의 가정과 같이 사회문제를 생각할 때의 기본적인 입장은 公正한 立場이어야 한다. 公正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사회든 나름대로의 公正分配의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다. 이것은 어떤 정부든 나름대로 分配政策을 실시하지 않는 정부가 현실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分配政策을 실시하려면 현실의 分配를 비판하는 기준으로서의 바람직한 분배상태, 즉 分配正義를 나름대로 상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이에크조차도 市場 밖에서의 再分配를 이용하여 생활무능력자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을 찬성하였다. 즉 하이에크는 일단 시장기구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분배가 결정되도록 한 다음, 事後的으로 정부가 재분배정책을 통하여 빈곤을 퇴치한 상태가 바람직한 分配狀態라고 본 셈이다. 이는 하이에크조차 나름대로 바람직한 分配狀態를 상정하였다는 얘기이다. 分配正義를 바람직한 分配狀態라고 이해한다면 어느 사회 어느 시대든 分配正義가 필요함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分配正義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더욱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 우리나라의 분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이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비롯한 社會倫理를 크게 동요시키고 있고 이것이 현재 우리 經濟의 成長潛在力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현 우리 사회에 필요한 分配正義의 구체적인 내용을 經濟成長과 연관시켜서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1. 分配正義의 세 원칙

分配의 衡平性(equity)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표현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經濟學에서는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구체적인 개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그 중요한 이유는 分配의 公正性이란 가치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價値判斷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나 타당한 分配의 公正性의 개념을 정의하기란 힘들다.

이와 같이 價値判斷을 개입시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힘든 분배의 공정성을 해결하는 하나의 유력한 방법은 롤즈(J. Rawls)의 分配正義論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다. 正義란 사람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사람들간의 분쟁은 각자의 利害關係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사람들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무엇이 옳은지를 판별하려면 우선 불편부당한 公正한 입장에 서야 한다. 公正한 입장이란 紛爭當事者들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개별적인 차이점들을 모두 제거하여 버리고 모두에게 공통되는 입장에서만 판단함을 의미한다. 無知의 帳幕으로 특징되는 롤즈의 原初的 立場(original position)이 바로 이러한 입장이며 이 때문에 롤즈는 자기의 정의의 개념을 '公正性으로서의 正義'(justice as fairness)라고 이름 붙였다¹⁾. 즉 正義란 분쟁 당사자들간의 차이점은 모두 무시하고 서로 공통된 公正한 입장에 서서 판단할 때에 옳은 것이다.

이러한 公正性으로서의 正義의 개념은 分配의 문제에도 그대로

1) J.Rawls(1971)의 3장을 보라.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經濟的 分配란 사회구성원간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이기 때문이다. 公正性으로서의 正義의 입장에 서면 正義로운 分配가 올바른 分配이다. 바꾸어 말하면 分配正義가 바로 分配의 衡平性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 현 韓國 社會에서 어떠한 分配가 바람직한 分配인지를 도출하여 낼 수 있다. 우선 공정한 입장에 서서 생각하여 보자. 즉 현재 분배에 영향을 주는 우리 국민들간의 차이점은 모두 제거하여 버리고 이 시대의 우리 사회를 살아간다는 공통된 입장에서 어떤 分配가 바람직한 分配인지를 생각하여 보자. 여기서 分配에 영향을 주는 차이점이란 학력, 재산, 가족관계, 재능 등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모두 제거하면 현재 우리 국민들의 공통점은 市場經濟와 私有財產制度에 입각한 資本主義를 기본적인 經濟體制로 인정하면서 民主主義의 구현과 經濟成長의 계속이 필요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資本主義體制를 인정하며 民主主義의 발전과 經濟成長의 지속을 바라면서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해 보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여도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및 기본 재충족의 원칙이라는 세 가지의 원칙이 옳다는 데에 모두가 찬성할 것이다²⁾.

2) 이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公正性에서 정의의 근거를 찾고 바람직한 분배를 분배정의로 파악한다는 방법론상에서는 롤즈와 동일하지만 여기서 제안하는 세 가지의 분배정의의 원칙은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과는 다르다. 롤즈의 정의의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고 제2원칙은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이익이 최대로 되며 직업과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도록 불평등이 조정된다는 것이다. Rawls(1971), pp. 302~303.

가. 生産에의 寄與度에 따른 差等分配(寄與度の 原則)

生産에 寄與한 것에 비례하여 각자의 분배 몫이 결정되어야 한다. 즉 勤勉과 創意力으로 사회의 생산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그만큼 많이 받고 기여가 적은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正義에 합당하다. 만일 生産에의 寄與度에 상관없이 똑같이 분배받는 것이 옳다고 하면 無爲徒食도 정당하다는 잘못된 결론이 도출된다. 이 원칙은 資本主義 經濟에서만 아니라 모든 經濟體制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적용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 조건은 經濟體制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資本主義 經濟에서 이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要素所得만 인정하고 資本利得(capital gain)이나 부정부패로부터의 음성수입과 같은 비생산적인 수입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資本主義 經濟에서는 私有財産制度를 인정하므로 임금만이 아니라 이자, 임대료, 이윤 및 지대의 財産所得까지 포함한 모든 요소소득을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줄 수 있다. 그러나 資本主義經濟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주택, 증권과 같은 자산들의 價格上昇으로 인한 자본이득은 생산에 기여한 바 없이 단지 소유만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 특히 공급이 증대하지 않는 토지의 價格上昇은 공장, 건물, 도로 등 생산에 필요한 여러 시설들의 공급을 어렵게 함으로써 오히려 생산을 방해한다. 이 원칙은 또한 부정부패에 의한 陰性收入도 부정한다. 이러한 陰性收入들도 모두 생산에 전연 기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생산을 오히려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둘째로 生産物市場과 要素市場 및 金融市場이 모두 完全競爭市場에 가까워야 할 것이다. 資本主義 經濟에서는 市場價格機構만이 각자가 사회와 경제에 기여한 바를 객관적으로 측정한다고 볼 수 있

는 유일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나. 機會均等の 提供(機會均等の 原則)

民主社會의 平等은 기회균등이다. 앞의 寄與度原則에 의한 差等分配가 公平한 分配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모든 구성원들에게 생산에 기여하여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등한 機會가 주어져야 한다. 차별적인 결과가 공정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參與의 機會가 均等하게 주어져야 한다. 均等한 參與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차별적인 결과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 원칙은 모든 경제체제에 적용 가능하다.

이 원칙을 資本主義 經濟體制에 적용하여 보자. 資本主義 經濟에서 정당한 소득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에 생산요소를 빌려주고 얻는 요소소득이다. 요소소득에는 임금이라는 勞動所得과 이윤, 이자, 지대 및 임대료의 財產所得이 있다. 선천적인 재능을 제외하면 노동소득은 기본적으로 教育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資本主義 社會에서의 소득획득에서의 기회균등이란 결국 교육과 상속에서의 기회균등을 의미한다.

다. 絶對貧困의 退治(基本財 充足의 原則)

모든 사람에게 人間으로서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인 基本財(basic needs)는 최소한 공급되어야 한다. 基本財는 人間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 의료, 교육 및 교통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經濟的인 면에서의 최소한의 基本的人權을 충족시킴을 의미한다. 앞의 두 원칙에만 따르면 基本財의 획득에 필요한 만큼 생산에 기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본재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어 人間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중에는 능력은 있으나 의사가 없어서 生産에의 寄與가 부족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약자, 연소자, 장애인 및 실업자와 같이 능력이나 기회가 없어서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기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 人間으로서의 生活을 보장하는 것은 共同體의 당연한 義務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共同體를 형성하여 함께 살아가는 최소한의 동기는 人間으로서의 生活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사회의 생산물의 분배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基本財를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정부가 절대빈곤을 퇴치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基本財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는 그 사회의 生産力에 주로 좌우될 것이다. 이 원칙에서 基本財의 수준은 生産力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生存에 필요한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고 둘은 人間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다. 前者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와 의료를 말하며 後者로 해석한 基本財는 人間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의식주와 의료, 교육 및 교통을 포함할 것이다. 生産력이 낮은 사회에서는 前者로, 生産력이 높은 사회에서는 後者로 基本財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간의 효율을 비교할 수 없다는 현대 경제학의 주류인 파레토(V.Pareto)의 序數的 效用理論에 의하면 基本財 충족의 원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근거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基本財 충족으로 증가되는 사람들의 후생과 이로 인하여 奢侈財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사람들의 감소된 효용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序數的 效用理論은 사실상 不平等한 人間觀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富者도 우선 基本財부터 충족시킨 다음에 남는 돈으로 奢侈財를 소비할 것이다. 즉 基本財는 富者에게도 奢侈財보다 더 큰 효용을 주는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 基本財의 충족에서 느끼는 효용이 富者가 奢侈財의 소비에서 느끼는 효용보다 작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富者가 基本財의 충족에서 느끼는 효용이 가난한 사람이 基本財의 消費에서 느끼는 효용보다도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富者가 효용을 느끼는 능력이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해는 분명히 만인이 평등하다는 民主主義의 理念과 배치된다. 물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똑같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그러나 효용의 상이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基本財의 충족을 위한 再分配政策의 당위성까지도 부인하는 것은 작위적인 억지라고 생각된다. 基本財가 충족되어 생활이 가능한 다음에야 個人的인 선호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分配的 公平性이란 결국 위의 세 원칙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를 의미한다. 즉, 교육과 상속에서의 機會均等이 提共된 상태에서 각자 生産에 자유롭게 寄與하도록 하고 그 결과로 산출된 生産物로 우선 그 사회에서 합의된 수준의 基本財를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配分한 다음 그 나머지를 생산에 寄與한 정도에 비례하여 각자에게 나누어주는 상태를 正義로운 分配라고 말할 수 있다.

분배정의의 세 원칙 중에서 첫번째의 寄與度の 原則이 가장 重要하며 基本的이다. 왜냐하면 이 원칙이 바로 서야 生産力이 발전하여 나머지 두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社會正義와 직결되는 것도 바로 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이 원칙이 깨어져서 생산에 기여하지 않거나 생산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돈을 벌 때에 사회구성원들의 正義感이 가장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서 분배가 不公正하다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寄與度の 原則이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윤리의 와해의 가장 중

요한 근거는 分配가 生産에의 寄與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고 社會倫理를 冷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여도의 원칙만 충족되어도 가장 기본적인 經濟正義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寄與度の 원칙이 충족된 분배상태를 基本的인 分配正義라고 부르고 分配의 세 원칙이 모두 충족된 상태를 엄격한 의미에서의 分配正義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 分配正義와 成長의 相互 補完性

成長과 公正分配는 상충관계에 있다는 것이 고전학과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대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명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0년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이 주장은 公正分配를 均等分配로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분명히 단순한 均等分配는 성장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分配正義의 세 원칙은 전반적으로 볼 때에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시킬 것이라고 생각된다. 세 원칙의 성장에 대한 영향을 하나씩 고찰하여 보자.

生産에의 寄與度에 따른 差等分配의 原則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성장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 명백하다. 우선 이 원칙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생산에 기여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흔히 이상적인 분배방식이라고 일컬어지는 能力에 따른 生産과 必要에 따른 分配란 인간 세상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均等分配도 역시 그러하다. 일한 것에 상관없이 분배받는다면 대부분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 자기가 일한 대가를 물질적으로 보상받도록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경제체제보다도 경제성장을 빠르게 하는 것이 資本主義 經濟의 최대의 장점이다. 우리의 차등분배의 원칙이 바로 이러한 資本主

義의 장점과 일치한다.

寄與度の 原則이 성장을 촉진시키는 두번째 이유는 資金이 非生産的인 투기로 흐르는 것을 막고 生産的인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점이다. 이 원칙이 실행되면 아무도 非生産的인 投機로는 돈을 벌 수가 없게 되므로 資金은 投機로 가지 않고 生産的인 投資로만 흐르게 된다.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비생산적인 투기이득을 방지하는 것이 성장에 얼마나 큰 장애요인이 되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分配正義의 두번째 원칙인 機會均等의 원칙도 크게 보아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교육에서의 機會均等은 국민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미 저임금을 기반으로 수출하던 시대가 지났고 높은 勞動生産性을 對外競爭力의 바탕으로 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든 우리 경제에는 교육이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완벽한 상속에서의 기회균등은 근로와 저축의욕을 떨어뜨림으로써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50% 정도의 세율로 상속세를 부과하면 근로와 저축의욕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分配正義의 세번째 원칙인 基本財 充足의 原則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基本財는 모두 生産財가 아니라 消費財이므로 基本財의 충족은 분명히 투자를 감소시키는 면이 있다. 그러나 基本財의 충족은 동시에 노동력을 건강하게 하고 교육수준을 높임으로써 勞動生産性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197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基本財에 관한 여러 경험적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에 基本財 充足은 勞動生産性을 증대시킴으로써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³⁾.

3) 대표적인 연구결과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ILLD(1976), A.K.Sen(198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分配正義의 세 원칙 중 첫 번째의 寄與度の 原則은 명백하게 성장에 기여하며 두 번째의 基本財 充足의 原則도 경험적으로 보아서 성장에 긍정적이며 세 번째의 機會均等の 原則도 성장과 배치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分配正義의 세 원칙은 종합적으로 보아서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生産에의 기여도에 따른 差等分配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分配正義는 經濟成長을 촉진시킨다고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단계로 보아서 공정분배의 세 원칙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면 가장 중요한 寄與度の 원칙만이라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성장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다. 더욱이 機會均等の 原則을 위한 무상교육 실시에는 큰 비용이 들고 基本財 充足의 원칙 역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데에 반하여 기여도의 원칙은 제도의 개선만으로 가능하고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정책만 결정되면 쉽게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점에서는 세 원칙이 모두 실현되는 엄격한 의미의 分配正義가 아니라 기여도의 원칙만 충족된 기본적인 分配正義를 먼저 실현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킨 연후에 나머지 두 번째 원칙과 세 번째 원칙을 차례대로,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접근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 같다.

第 4 節 政府統制와 財閥支配의 撤廢

自由는 平等한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힘이 비대칭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면 강자가 약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政府와 財閥에 힘이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힘의 편중을 시정하여 公正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自由가 보장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公正하고 自由로운 市場經濟秩序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政府와 財閥의 힘이 과대한 현재의 경제구조를 고쳐야 한다. 지난 30년간의 경제개발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는 정부통제와 재벌지배의 경제구조가 고착되어 왔다. 가혹하고 차별적인 租稅制度,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官治金融, 그리고 설립에서 소멸까지 企業의 중요 경영활동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行政規制를 이용하여 政府는 企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조세, 금융, 인허가 등 각종의 정부특혜가 財閥企業들에게 집중되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심화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經濟는 구조적으로 公正성과 效率성을 상당히 상실하게 되었다. 그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그간의 개선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우리 經濟構造는 아직도 과거와 거의 동일하다. 우리 경제의 對外競爭力이 크게 약화된 원인도 주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통제하에서 민간기업이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독과점과 재벌지배체제 때문에 競爭의 효율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權力과 獨寡占을 이용한 부당한 富의 축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그결과로 分配正義가 훼손됨으로써 사회윤리가 와해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발성이 상실된 것이 오늘날 우리의 對外競爭力 약화의 주원인이라고 생각된다.

公正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政府와 국민, 그리고 企業間에 대등한 힘의 균형이 성립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강자의 횡포가 발생하여 公正한 질서가 형성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에 대하여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재벌이 일방적으로 힘이 강한 구조를 갖고 있다. 비대해진 관료조직과 재벌의 힘을 어떻게 축소시키느냐가 우리 사회 발전의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다.

第 5 節 必要한 制度改革들

政府統制와 財閥支配를 종식시키고, 우리 사회에 公正하고 自由로운 市場經濟秩序를 확립하고 分配主義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 중 중요한 것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1. 效率的인 市場經濟의 확립

가. 通貨量 팽창의 억제와 物價安定

물가안정은 市場經濟에서 생산의 효율성과 분배의 公평성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본 前提條件이다. 이 때문에 모든 自由主義者들은 物價安定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는다. 인플레이는 시장경제에서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기초인 價格機構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물가의 안정 없이는 임금, 금리, 임대료 그 어느 것도 안정될 수 없을 것이다.

프리드만의 말대로 인플레이의 基本原因은 역시 통화량의 팽창이다.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通貨增加率은 거의 매년 15% 이상 20%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높은 通貨增加率을 가지고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나라가 없다.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나라들의 通貨增加率은 예외없이 10%를 넘지 않는다. 대부분의 自由主義者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경기부양을 위한 총수요 확대정책은 생산과 고용에는 효과가 없고 물가만 상승시킨다.

通貨膨脹을 막기 위해서는 통화를 발행하는 中央銀行을 行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선진국에서는 中央銀行을 行政府로부터 독립시키고 있다. 선진국 중에는 형식적으로 中央銀行이 行政府에 소속된 나라도 있지만 이런 나라에서도 行政府는 中央銀行의 通貨政策에 간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中央銀行이 行政府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제도는 그냥 두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주장은 非現實的이라고 생각된다.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안된다는 주장도, 운영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모두 옳지만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한다. 만일 제도의 개선이 필요없다면 專制君主制度를 굳이 民主主義制度로 고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명하고 자애로운 君主가 다스리는 君主國이 우매한 대통령이 다스리는 형식상의 民主共和國보다 더 나올 수가 있지만 民主共和國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지배자의 횡포를 예방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通貨膨脹을 막기 위해 또 하나 필요한 것은 韓國銀行이 자동대출해 주는 政策金融制度를 없애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주 이유는 韓國銀行이 직접 발행하는 本源通貨의 증가인데 이는 주로 韓國銀行에서 자동대출되는 정책금융 때문이다. 1992년의 경우 韓國銀行에서 자동대출된 정책금융자금은 16조 412억원이었다. 이는 韓國銀行의 본원통화공급액 18조 1,073억원의 88.6%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큰 규모의 자금이 韓國銀行에서 자동대출되는 제도를 그냥 두고서는 통화량의 팽창을 막기 힘들 것이다. 政策金融은 정부의 정책을 위한 것이므로 財政資金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韓國銀行의 발권력을 이용한 현행의 政策金融은 폐지함을 좋을 것이다.

나. 價格規制의 철폐

市場經濟에서 모든 생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價格이므로 독과점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價格規制는 철폐하여야 한다. 상품의 價格만이 아니라 임금, 금리, 임대료 등 모든 價格을 자유화하여야 한다. 價格規制는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켜서 經濟에 문제점을 반드시 발생시킨다.

이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인플레이이다. 그러나 통화량 긴축과 경쟁 촉진, 수입자유화의 조치가 함께 실시되면 價格規制를 해제하더라도 인플레이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價格規制가 오히려 필요한 경우가 있다. 독과점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독점이윤을 낳는 독과점품목의 가격은 最高價格制를 실시하여 적정수준으로 묶는 것이 오히려 생산을 증대시킨다.

다. 經濟活動 規制의 撤廢

공정한 競爭秩序에 위배되지 않고 공해와 같이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經濟活動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의 설립에서부터 공장건설, 증권발행 등 모든 주요 단계를 규제하는 수많은 行政規制를 철폐하여야 한다.

상품과 자본의 對外去來도 기본적으로 自由化하는 것이 옳다. 개인이나 집단은 타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발전한다. 인류역사를 보면 중국의 唐나라나, 명치시대의 日本, 14~5세기의 이탈리아, 17~8세기의 영국과 같이 각 시대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던 사회는 모두 開放된 사회였고, 백인들이 침입하기 이전의 중남미나 아프리카 사회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발전을 모르던 사회는 閉鎖된 사회였다. 對外開放은 발전을 위한 必須條件의 하나이다. 對外交流는 발전에 대한 자각을 불러 일으키며 對外交流로부터 앞선 과학과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부족한 자본과 시장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自主性を 잃지 않고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開放의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2. 財閥의 經濟力 集中 解消

市場經濟에서는 개인들의 私益追求가 價格機構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公益으로 환원된다. 그러나 모든 市場經濟에서 이 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獨寡占과 財閥이 없는 競爭市場에서만 이 말이 성립된다. 競爭市場에서 私益이 公益과 일치하는 것은 競爭市場에서는 부당한 사익추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競爭市場에서는 수요자가 다른 기업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가격

을 높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면 消費者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독과점시장에서는 이러한 消費者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적기 때문에 독과점기업의 부당한 횡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십년 동안 정부가 재벌 위주의 개발전략을 실시하여 왔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독과점화와 소수 財閥의 經濟力 集中의 정도가 강하다. 따라서 大資本의 횡포를 통제해야 할 제도 개선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위한 制度 改善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全經聯은 자유화의 흐름과 對外競爭力 強化라는 시류에 편승하여 大企業이나 財閥에 대한 규제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고, 기준이 모호한 公企業 民營化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책당국자도 이에 대한 확고한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大企業과 財閥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長期的 發展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이다.

가. 財閥의 言論과 金融으로의 진출 금지

財閥이 언론과 금융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금지가 필요하다. 財閥이 言論을 장악하면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자신들의 과오나 비행을 은폐한다는 것이다. 言論의 중요한 기능은 감시자의 기능이다. 言論에 보도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치명적 징계이다. 言論의 비판은 財閥의 횡포를 견제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言論이 이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言論이 財閥의 소유가 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財閥의 言論所有에 따르는 두번째의 문제는 政府政策에 대한 영향력 행사이다. 政府政策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言論을 소유하여 이용함으로써 財閥은 政府政策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입안되고 실시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거의 모든 財閥마다 言論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의 문제점들이 모두 심각하게 발생

하고 있다. 財閥들이 소유한 言論들은 財閥들의 과오나 비행을 은폐 혹은 비호하며, 政府政策이 財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輿論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을 서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財閥이 언론기관을 소유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여 財閥이 소유하고 있는 言論들의 주인을 바꾸고 財閥이 言論을 새로 소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음 財閥의 金融機關 所有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생각하여 보자. 市場經濟의 효율성의 핵심은 公正한 競爭에 있다. 公正한 競爭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좋은 제품을 보다 싸게 생산하도록 기업들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公正한 競爭이 이루어지려면 機會의 均等이 보장되어야 한다. 資本主義 社會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균등의 하나가 자금조달에서의 機會均等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에 비해서 財閥企業들이 유리한 중요한 이점이 바로 이것이다. 보험회사, 증권회사, 단자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의 많은 金融機關들을 財閥들이 소유하여 자금마련에 이용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資本主義 社會에서 자금조달에서의 우위는 결정적인 이점이다. 자금조달면에서 均等한 機會가 주어져야 기술과 착상이 뛰어난 기업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래야만 市場經濟의 효율성이 발휘될 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財閥企業이 金融機關을 소유하는 것을 금해야 할 것이다.

財閥이 金融에 진출함을 금해야 할 또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財閥에 의한 企業合併을 막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既存 企業의 합병 내지 인수가 財閥의 비대화의 주된 수단이며 이는 자기자금이 아니라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財閥이 金融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獨占의 금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에 대기업이 형성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寡占은 인정하더라도 독점은 금지해야 한다. 경쟁이 전연 없는 獨占市場과 소수의 기업간이나 경쟁이 있는 寡占市場間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점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진입에 관한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거대한 獨占企業은 분할하거나 다른 기업의 진입을 정책적으로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不公正 行爲의 금지

기업간의 담합, 수량조절과 가격조절,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의 강요, 경쟁기업을 도태시키기 위한 덤핑판매 등 不公正 行爲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엄격하게 징계해야 한다. 특히 독점과 동일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기업간 담합은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한다.

라. 獨寡占品目の 輸入自由化

輸入自由化는 獨寡占의 횡포를 막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다. 獨寡占品目は 모두 수입을 자유화하고 관세도 면제하는 것이 좋다.

마. 獨占監督廳의 설립

獨寡占과 財閥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경제기획원의 한 부서인 현재의 公正去來委員會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독일과 같이 獨占監督廳(가칭)과 같은 독립된 기관을 헌법기관으로 신설하여 시정명령권, 수사권과 고발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바. 相互支給保證의 금지

현재 우리나라 財閥들은 相互支給保證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대

출을 용이하게 받고 있다. 이 때문에 財閥企業들의 부채비율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빌린 돈으로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 相互支給保證의 금지는 財閥의 비대화를 막는 유효한 방법이다.

3. 政府介入의 縮小

國民들이 납득할 수 있는 制度만 실제로 실행될 수 있다. 납득할 수 없는 制度는 國民들이 지키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국민들이 납득하려면 무엇보다도 制度가 公正하고 常識에 맞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중요한 制度들이 國民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관료들만 납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國民들의 입장이 아니라 관료들이 자신들에게만 일반적으로 유리하고 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고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制度의 한 특징은 가혹하고(이의 한 예는 화환을 열 개 이상 진열한 喪家에게 벌금만이 아니라 2년 이하의 懲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가정의례법일 것이다. 이 세상 어디에 화환을 많이 진열하였다고 감옥에 보내는 나라가 있을까?) 制度를 가혹하고 불공평하게 만드는 것은 專制國家의 일반적인 전통이다. 國民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므로 國民을 恐怖로 다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文民政府는 과거의 유물인 이런 법들을 고쳐야 할 것이다.

가. 稅制改革

1993년 하반기에 稅制改編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일부만 고친 데 불과하므로 전반적이며 대대적인 稅制改革이 필요하다. 원래 稅金은 국민과 정부간의 경제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근대 유럽에서 議會가 등장한 가장 큰 이유가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는 것을 막기 위함에 있었다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 稅金은 國會에서 法으로 정한다는 '租稅法律主義'가 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우

리나라에서는 경제관계 法律의 95%가 行政府立法으로 정부에 의하여 立案되며 국민들에게 실제로 직접 다가오는, 法律의 施行속은 전적으로 行政府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따라서 경제관계 법과 시행령들은 실제로 行政府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稅金도 마찬가지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租稅法律主義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로 현재 우리나라의 租稅는 상당한 정도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租稅制度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우선 稅制改革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첫째, 생산활동을 장려하고 토지투기와 같이 非生産的 活動은 抑制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가능한 한 단순하고 명료하게 만들어서 差別을 縮小하고 정부의 재량권을 줄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세율을 낮추어서 脫稅를 막고 自發的인 納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세무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와 납세자간에 상호대등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所得稅, 法人稅, 相續稅, 附加價値稅의 세율을 크게 낮추고 비과세감면을 대부분 폐지한다. 이는 탈세를 막고 자진납세를 유도하며 생산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金融實名制가 실시되어 과거보다 세원포착률이 높아진 만큼 이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가능하다. 특히 最高限界稅率을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율을 낮추는 것에 대한 최대의 반론은 稅收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稅率引下 덕분에 脫稅가 감소하고, 非課稅減免條項이 대폭 축소되어 稅源이 확대되면 세수감소 효과가 상쇄될 것이고 오히려 세수가 늘 수 있다. 또한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綜合土地

稅의 실질세율 인상은 세수축소를 보상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土地投機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不動產稅制를 고쳐야 한다. 그 방향은 분명하다. 綜合土地稅의 실질세율을 높이고, 讓渡所得稅의 非課稅減免條項들을 대부분 철폐한다. 반면에 建物分財產稅와 取得稅와 登錄稅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다. 현재 讓渡所得稅에 수많은 非課稅減免條項이 인정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효력이 약하며, 토지보유세인 綜合土地稅의 실질세율이 낮아서(이는 주로 課標現實化率이 낮기 때문이다) 綜合土地稅의 실효세율이 낮다. 토지시가에 대한 이 비율이 선진국에서는 1~2%인 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0.03%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이 토지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이다. 만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조항이 대부분 없어지고 종합토지세가 외국수준과 같이 무겁다면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는 대부분 소멸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建物稅와 取得稅, 登錄稅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무겁다. 특히 3,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건물분재산세는 명목세율이 7%에 달하는 반면에 이 수준에서의 종합토지세의 명목세율은 0.5%에 불과하다. 建物稅가 土地稅의 14배에 달하는 것이다. 생활과 생산의 터전인 建物은 싸게, 土地는 비싸게 하는 것이 不動產課稅의 원칙이다. 그래야만 건축은 촉진되고 토지투기는 억제된다. 또한 어느 나라나 부동산의 취득시의 세금(취득세와 등록세)은 싸게 하고 보유시의 세금은 무겁게 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해야 등기는 촉진되고 투기는 억제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정반대이다. 建物稅와 取得稅와 登錄稅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무거우면서 보유세는 과다하게 가벼운 우리나라의 세제가 바로 우리나라 土地投機의 주된 원인이다. 建物稅와 取得稅와 登記稅를 낮추면서, 종합토지세의 실질세율을 높이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조항을 철폐하면 토지투기는 저절로 소멸될 것이다.

투기란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고자 하는 합리적인 경제활동이

므로 이를 규제로는 억제할 수 없다. 토지보유에 따른 보유세를 높여서 토지의 수익률을 인하시키면 토지투기는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土地去來許可制, 土地去來申告制, 土地公概念制度(宅地所有上限制, 開發負擔金制, 土地超過利得稅)는 모두 課稅對象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도 없고 不公正하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하며 소수에게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잘못된 제도들이다. 이런 제도들은 모두 폐지하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종합토지세의 실질세율을 시가의 0.5% 정도로 높이고 양도소득세의 非課稅減免條項들을 폐지하면 토지관련 규제와 토지공개념제도들은 모두 없애도 될 것이다.

綜合土地稅의 실질세율을 높이는 간단한 방법은, 公示地價를 종토세의 과표로 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종토세가 상승하는데 따른 租稅抵抗이다. 종토세과표만 현실화시키면 당연히 조세저항이 발생할 것이고 정부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세제개혁은 동시에 전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즉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건물분재산세, 등록세와 취득세들을 인하시키면서 종토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의 非課稅減免條項을 폐지한다면 조세저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國稅와 地方稅를 모두 합하여 조세제도 전체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國稅는 財務部가, 地方稅는 內務部가 각각 나누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994년에 재무부가 세율인하 등 상당 부문 國稅를 개편할 예정으로 있으나 내무부는 지방세를 개정할 계획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재산관련 세금인 종합토지세, 건물분재산세, 취득세, 등기세 등이 가장 不合理한데 이들은 모두 地方稅로 內務部의 관할이다. 이들까지 합쳐서

고쳐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세금은 財務部와 內務部의 어느 한 부에만 맡길 수 없는 문제이므로 大統領의 지시에 의해서 國稅와 地方稅를 통합하여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 金融改革

둘째로 금융을 自由化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예금금리를 포함하여 모든 금리를 自由化하여야 한다. 이는 저축을 증대시키고 低金利의 특혜대출을 폐지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土地投機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1993년 말에 2단계금리자유화가 실시되어 金利自由化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아직 단기의 預金金利는 아직 규제받고 있다. 단기 預金金利도 조속히 자유화하여야 할 것이다.

財務部는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산업의 구조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발전심의위원회가 財務部 의뢰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금융산업구조 개편도 財務部가 사전에 정하지 말고 금리와 금융업무를 먼저 자유화하여 金融市場이 자연스럽게 개편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金融改革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韓國銀行의 자동대출로 자금이 조달되는 정책금융을 철폐하는 것이다. 앞의 韓國銀行 독립과 연관시켜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막대한 정책금융자금이 韓國銀行의 자동대출을 통하여 발행되고 있다. 韓國銀行은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막대한 본원통화를 방출하면서 한편으로는 팽창된 통화를 환수하기 위하여 通貨安定證券을 발행하여 金融機關에게 강제로 인수시키고 있다. 한쪽으로는 통화를 남발하면서 이를 다시 환수하기 위하여 통안증권을 강매하는 것은 희극이다. 韓國銀行은 이 때문에 통화량조절 능력을 크게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 10%가 넘는 통안증권의 이자지불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며 金融

機關들도 통안증권의 강제인수 때문에 자금운용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政策金融은 우편저금이나 공채발행과 같은 통화증발 효과가 없는 재원으로 조달하고 한은의 발권력으로 조달하는 정책금융은 철폐하여야 우리나라의 通貨金融政策이 정상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과 같은 후진국도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후진적 행태를 이미 탈피하였다.

1993년 8월 大統領의 긴급명령으로 실시된 金融實名制의 도입은 현정부가 단행한 가장 중요한 經濟改革이다. 그러나 이 개혁은 借名을 허용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金融實名制를 절반만 도입한 것이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借名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긴급명령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 行政規制 철폐와 政府機構 縮小

현행의 行政規制들을 대부분 철폐해야 한다. 특히 獨寡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認許可의 규제는 모두 철폐해야 한다. 다만 독과점이나 公害防止와 같이 社會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행정규제완화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全經濟人聯合이 재벌규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같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방법이다. 실효있는 규제철폐를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규제 철폐를 위해서는 政府機構를 축소해야 한다. 현재의 비대한 行政機構를 그대로 두고서는 政府規制를 축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政府는 애초의 政府機構의 축소방침에서 극히 일부의 축소로 방침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현재의 수많은 불합리한 政府規制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직장에 나가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공무

원수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서를 통폐합하여 政府組織을 축소하여야 한다. 신규 공무원의 채용을 중단하는 것이 공무원수를 줄이는 유효한 방법일 것이다.

라. 情報公開

정부가, 구체적으로는 관료가, 민간에 대하여 갖고 있는 중요한 강점은 情報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經濟統計는 모두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經濟統計가 허다하다. 情報公開法(가칭)을 제정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극소수의 情報를 제외하고는 모든 情報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면 정부의 비능률과 불공정의 상당 부분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다행히 정부가 1995년에 정보공개법을 제정할 계획이므로 이를 기대한다.

마. 地方分權化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실패는 주로 中央政府의 실패이다. 정부의 권한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축소된 권한도 가능한 한 地方政府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中央政府는 국방과 외교와 같이 對外業務만 맡고 교육, 치안, 복지, 경제 등에 관한 업무는 대부분 地方政府가 담당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것은 地域均衡開發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의 60%가 5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이 결과로 대도시는 교통혼잡, 주택부족, 도로부족, 공해발생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大都市에 주택,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계속 건설하면 大都市에 일자리가 증가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됨으로써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가중되고, 이는 다시 都市問題를 발생시켜서 대도시로의 투자를 유발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에 中小都市와 농촌지역은 인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발

전이 정지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이 고쳐지지 않는 한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토지의 부족, 도시문제, 농촌의 침체, 공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지역간 균형개발은 이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이다.

지역간 불균형을 유발시킨 근본원인이 권력의 中央集中이라고 볼 수 있다. 中央政府가 모든 중요한 권한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力이 中央에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다는 것에서 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을 줄일 뿐만 아니라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中央政府의 권한 대부분을 地方政府로 이관하고 中央政府는 조정만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또한 정부의 비능률과 불공정성을 시정하는 유효한 방법이기도 하다. 정부가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독점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국민들에게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政府權限의 상당 부분이 地方政府로 이관된다면 地方政府들간에 경쟁이 벌어져서 정부의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이다. 주민에게 군림하는 地方政府로부터는 주민들이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바. 國會 機能의 강화

1993년에 金融實名制가 전격적으로 실시된 이후에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전반적이며 대폭적인 稅率의 인하를 주장하였다. 이는 實名制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므로 학계를 비롯하여 기업인과 노동자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이 이를 적극 지지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세금을 걷는 재무부의 주장대로 극히 부분적인 인하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우리나라에 아직 租稅法律主義가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실질적인 立法機能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지만 이는 이 글의 범위를 넘는 문제이다. 그러나 하나의 제도개선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국회의 조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모두 18개의 정책연구소를 갖고 있는데 비하여 국회는 정책연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연구소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議會發展研究所라는 것이 있으나 이 연구소는 상임연구원은 없고 외부 연구자들에게 연구자금만 배분하여 주는 기구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이 경제관련 법률을 제안하고 심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와 연구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정부관료들에게 국회의원들이 밀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관료들보다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의회는 모두 대규모의 연구소를 산하에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부는 연구소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므로 이 중 반 정도는 국회로 이양하여 주는 것이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4. 分配正義의 實現

가. 資本利得의 還收

寄與度の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기여함이 없거나 생산을 저해하는 投機利得(=資本利得)과 不正한 所得을 없애야 한다. 不正한 所得을 근절시키는 것은 경제적 문제라기보다는 倫理의 문제이므로 여기서 제외한다. 투기이득을 없애기 위해서는 투기이득을 稅金으로 환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는 實現利得인 賣買差益을 과세하는 방법과 保有稅를 이용하여 실현되지 않은 資本利得도 환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경제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資本利得을 과세하는 데 대한 유력한 反論은 자본이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반대로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補償金을 정부가 지급하여야 공정한 것이므로 정부가 자본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한 資本利得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관념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현재의 우리나라 土地와 같이 가격상승이 공급을 전연 증가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만 하여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資本利得을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正義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자산 중에서 건축물과 같은 자산은 인간의 생산활동에 의하여 공급이 증가할 수 있고 따라서 가격상승이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의 資本利得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供給不足을 야기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만 세금을 부과하여 資本利得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다. 證券도 마찬가지다. 증권의 가격상승은 企業의 資本調達을 용이하게 하여 實物投資를 촉진시키므로 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資本利得은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보다 일부만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나. 市場의 不完全性의 是正

生産物市場과 生産要素市場이 完全競爭市場에 가까울수록 要素價格은 각 생산요소의 생산에의 기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과 수요에서의 獨寡占, 不完全情報, 價格의 非伸縮性, 外部性, 公共財 등 시장의 실패를 야기하는 요인들을 가능한 한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능한 한 시장의 不完全性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物價安定

인플레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再分配는 생산에의 기여와 전혀 상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플레이는 현실 경제에서 불공정한 분배를 야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물가안정은 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前提條件의 하나이다.

라. 公正한 相續稅의 실시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면 100%의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100%의 상속세는 人間의 本性을 무시함으로써 생산을 감축시킬 위험이 높다. 따라서 세상을 떠날 때에 재산의 반은 사회에 환원하고 반은 자식에게 상속하는 50%의 상속세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어떤 개인이 평생 축적한 재산은 자신의 노력과 재능의 덕분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존재함으로써 蓄財가 가능하였으므로 사회에 반을 반납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생각된다.

마. 福祉政策의 擴充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基本財를 제공하는 福祉政策은 貧困退治의 原則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복지정책에는 無償敎育도 포함되므로 이는 동시에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복지정책의 실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財源調達이다. 이는 앞의 資本利得에 대한 과세와 50%의 相續稅로 대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분배정의를 위한 세 개의 정책수단들은 서로 상반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므로 모두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第 6 節 政策과 制度의 相互 補完性

經濟政策은 단편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아야 한다. 經濟政策들은 직접 간접으로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재화시장, 금융시장, 조세제도, 토지시장, 노동시장 등 모든 경제 내의 모든 부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경제, 정치, 사회, 윤리, 법률 등 사회의 각 부문도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움직인다. 따라서 經濟政策은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綜合的으로 수립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부분적인 효과만을 고려한 단편적인 정책은 다른 부문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문으로부터 필요한 연관효과를 얻지 못하여 政策目標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政府의 많은 政策은 전체적인 관점을 결여한 단편적인 대응요법이어서 상호 효과가 상충되거나 심한 부작용만 낳고 실패한 예가 많았다. 인플레이를 잡기 위한 價格規制政策은 공급축소라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토지투기를 막기 위한 土地去來許可制는 부패를 초래하고 土地開發을 방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토지가격을 오히려 부추기는 逆作用을 하였다.

대부분의 정책은 상이한 여러 가지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따라서 상호 보완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동시에 실시하면 나쁜 부작용은 방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소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여러 制度改革들이 그러하다. 이들 개혁들 중 어느 하나만 채택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들을 동시에 실시하면 상호 보완하여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通貨量의 膨脹의 중단은 投資資金의 공급부족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지만, 金利를 자유화하여 예금의 實質金利(名目金利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의 상승을 허용하면 자발적인 저축이 증대되어 투자자금의 감소를 막을 수 있다. 반대로 통화팽창의 중단은 물가상승률을 낮춤으로써 名目金利가 기업과 정부가 부

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는 것을 예방한다. 이러한 物價安定은 또한 價格規制를 자유화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토지거래의 자유화로 인한 토지투기의 재연은 綜合土地稅의 강화로 막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각 제도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제시한 여러 제도개혁들은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第 7 節 政府의 役割

政府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올바른 自由主義가 아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市場經濟下에서도 政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公正한 市場經濟秩序의 확립

公正한 市場經濟秩序下에서 국민들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政府의 책임이다. 정부는 앞의 節에서 설명한 여러 제도개혁을 실시하여 公正한 市場經濟秩序를 확립하여야 한다. 특히 公正한 法秩序(法治主義)를 확립하여 私有財産을 보호하고 去來秩序를 확립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임무이다.

市場經濟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市場의 失敗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책임져야 한다.

2. 公的 扶助

市場經濟에서의 대표적인 시장의 실패인 不公正한 分配는 정부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不公正한 分配의 내용과 해결방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생활능력이 없는 빈민들에게 대한 公的 扶助는 최소한의 정부책임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경제도 이제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였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GNP에 대한 정부의 公的扶助의 지출비율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人間生活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公的扶助를 확대시켜야 한다.

3. 社會資本의 확충

物的 資本인 사회간접자본만이 아니라 人的 資本도 社會資本에 포함된다. 人的 資本이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의미한다. 人的 資本은 주로 교육을 통하여 축적된다. 교육도 국가가 상당 부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4. 環境保護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수도물 오염, 산성비, 오물오염, 핵폐기물 등과 같은 環境問題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환경파괴는 무분별한 성장 때문에 치르는 代價이다. 환경보호는 市場經濟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政府規制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第 8 章 結 論

實證經濟學(positive economics)이라고 지칭되는 현대 경제학은, 현대 사회과학의 특징인 實證主義(positivism)를 좇아 價値判斷을 배제하고 事實的 因果關係만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학을 포함하여 社會科學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가치판단의 배제가 실은 현실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를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社會科學은 인간에 관계된 사회적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경제학을 포함하여 社會科學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社會科學의 분석대상은 모두 인간의 社會的 活動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社會科學은 人間을 분석의 중심에 놓지 않을 수 없다. 人間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인간을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요, 둘은 인간 자체를 분석의 중심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人間을 가치판단의 궁극적인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모든 것의 목표이므로 구체적인 人間을 그 어떤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거부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 어떤 다른 것이란, 理念(社會主義, 自由主義, 無政府主義 등)이나 政策目標(經濟成長, 對外競爭力 強化, 國家安保 등)나 組職(國家, 階級, 階層, 企業 등)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人間이란 구체적인 생명체인 個人(들)을 의미한다. 個人 한 명이 중요하므로 다수의 個人들도 물론 중요하다.

구체적인 人間을 궁극적인 價値基準 내지 目標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組職(國家, 社會, 階級, 企業 등)도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사람

들과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그 자체의 目標를 가지고 존재하며 조직은 個人들을 우선하므로 이를 위해 個人을 희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부정한다. 어떤 집단이나 사회도 그것은 단지 사람들의 집합체이므로 그 자체로서 궁극적인 目標를 갖고 활동하거나 존재할 수가 없다. 어떤 社會나 組織도, 또는 政策目標도 결국은 구체적인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낮게 개선하기 위하여 존재할 뿐이다.

구체적인 人間의 생활을 보다 낮게 하느냐의 여부가 모든 社會現象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기준이다. 人間生活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을 인간의 基本權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 基本權의 확대 여부가 사회현상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 基本權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自由와 生存權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나 강요를 받지 않으며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自由,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단을 보장하는 生存權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基本前提이다. 이 두 가지의 基本權을 보호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사회의 基本目標일 것이며 모든 사회적 현상은 이 目標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을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인간(들)의 自由와 生存權을 침해하느냐' 아니면 확대하느냐를 기준으로 사회현상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自由主義는 이 원칙과 부합한다. 自由主義는 自由의 확대를 무엇보다도 중요시여긴다. 自由主義는 또한 자유로운 經濟活動이 사회의 物質的 富를 증진시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自由主義의 체계에서는 自由와 生存權의 확대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이냐의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自由主義 체계내에서는 적어도 인간의 가장 중요한 基本權인 自由와 生存權을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다음, 人間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말의 두번째 의미인 人間 자체를 분석의 중심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모든 社會的現象은 예외없이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국가, 민족, 계급, 기업, 가계 등을 행동의 주체로 서술하기도 하나 이들의 모든 행위가 실은 구체적인 人間의 行爲에 불과하다.

經濟學을 포함한 社會科學에서 구체적인 인간과 독립하여 독자적인 논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주체를 상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인간을 분석에서 제외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2차대전 후의 新古典學派綜合에서는 政府가 市場의 失敗를 교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때의 정부는 도대체 무엇인가? 家計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가정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좇아 행동하는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합리적인 가정이다. 그러나 현대 經濟學에서 政府는 全知全能하고 公平無私한 가상의 주체로 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인식능력과 능력은 불완전하며 자신의 이해관계에 초연하지도 않다. 정책을 실제로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全知全能하고 公平無私한 정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정보와 능력도 부족하며, 자신의 이해관계를 좇아 행동하는 政治人과 官僚들이다. 全知全能하고 公平無私한 정부란 역사상 存在한 적이 없다. 현실에서 존재한 정부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권자와 관료들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이 때문에 人類歷史上 많은 政府는 國民들의 기본권을 확대하기보다는 침해하는 역할을 주로 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서 政府의 囂포를 강조하며 政府의 견제와 個人의 자유의 보호를 강조하는 自由主義의 주장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행위에 대한 분석에서는 탁월한 힘을 발휘하는 新古典學派綜合의 經濟學이 공공부문에 관한 분석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성과를 나타낸 이유는, 이 부문에서는 具體的 人間을 분석하지 않고, 政府라는 架空의 實體를 가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마르크스의 經濟學도 이와 동일한 과오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다. 資本의 論理나 歷史의 필연적인 法則이란 말에서 나타나듯이 마르크스는 독자적인 행동논리를 가진 資本이나 歷史라는 가상적인 실체를 인정하였다. 행동하는 것은 資本도 歷史도 아니다. 資本이나 歷史란 개념은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虛像에 불과하다. 存在하고 行動하는 것은 具體的인 人間일 뿐이다.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具體的인 人間の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그리고 個人的이거나 集團的인 행동일 뿐이다. 具體的인 人間을 배제하고 假想敵인 主體(섭리, 법칙, 민족, 국가, 계급, 자본, 역사 등)를 상정하고 전개하는 논의는 공허하지 않을 수 없다. 具體的인 人間이 假想的인 存在(예컨대, 민족이나 계급 혹은 조직)를 위하여 행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판단과 행동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具體的인 人間(들)임은 동일하다. 따라서 다른 모든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경제현상에 대한 분석도 行動의 實際 主體인 人間을 分析의 中心으로 삼아야 공허한 논리의 유희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회현상의 분석에 있어서 人間の 本性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人間の 本性을 고려하지 않은 이론은 오류에 빠지게 되고 人間の 本性和 배치되는 정책은 성공하기가 힘들 것이다.

自由主義는 대체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파악을 논의의 출발로 삼고 있다. 古典的 自由主義를 확립한 스미스는 人間の 本性에 대한 탐구로부터 분석을 시작하였다. 그에 의하면 人間은 기본적으로 自己中心的이면서 自尊心이 강하며(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며 경멸받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한다) 동시에 公正한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갖고 있다(公平한 觀察者를 가슴 속에 갖고 있다). 또한 현대의 대표적인 自由主義者인 하이에크는 인간의 인식능력의 不完全性을 자신의 논리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公共 經濟學의 새로운 지평을 연 뷰캐넌은 정치인과 관료들도 自己中心

的인 개인임을 基本前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을 중시한다는 점이 自由主義의 중요한 강점이라고 생각된다.

인간을 분석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또한 경제분석에서 人的要素의 1차적인 중요성을 인정한다. 勞動力, 資本財¹⁾ 및 土地를 생산의 3대 요소라고 하지만 이 중에서 資本財나 土地보다 勞動力이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생산요소이다. 資本財(生産財)는 인간의 生産活動으로 生産된 生産物이며, 土地의 生産性도 인간의 기술에 의하여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勞動力이란 노동자의 생산력만이 아니라 기업가, 공무원, 농부 등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력을 가리키는 말로 써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勞動力이란 말보다 人力이란 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人力은 經濟만이 아니라 모든 社會的 活動에 있어서 人間活動의 成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人間の 모든 社會的 活動은 分業과 協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分業과 協業의 성취도는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하나는 각 부문이 얼마나 서로 적절히 연관되어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느냐이며 둘은 각 구성원이 자신의 일을 얼마나 잘 완수하느냐이다. 前者는 체계(system)의 相互整合(coordination)의 문제이며 後者는 個別 人力의 生産性的의 문제이다. 前者는 體系의 效率性을 결정하며 後者는 주로 個別 人力의 自發性에 좌우된다. 이 두 가지 모두 私有財産에 기초한 市場經濟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잘 달성된다는 自由主義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러

1)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에 투입된 資金을 의미하는 資本은 생산요소로 보기 힘들다. 생산요소는 어떤 경제체제에서도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의미하는데, 資本은 資本主義에서만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生産財(생산된 생산요소)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의미가 분명한 資本財는 어떤 경제체제에서도 필요한 생산요소이다.

하다.

市場經濟의 體系의 相互整合性의 문제는 스미스와 하이에크, 특히 하이에크가 잘 설명하였다. 수없이 많은 생산물을 생산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分業과 協業이 하나의 중앙계획당국에 의하여 실시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情報가 수많은 社會構成員들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계획당국이 계획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市場機構는 情報의 傳達網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경제는 현실적으로 資源配分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市場經濟에서는 정보를 활용하면 이득이 되기 때문에 각 經濟主體들은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수집하여 이용함으로써 불완전하나마 다른 經濟體制보다도 정보부족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잘 해결한다.

個別 人力의 生産性이 自發性에 비례함은 強制費用의 절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강제비용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自發性이 부족할수록 성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에 생산성이 낮은 것은 자명하다. 강요비용의 두번째 요소는 監視와 監督에 필요한 비용이다. 그가 원하지 않은 일을 강요하거나 그가 원하는 것 이상의 노력을 개인에게 강요하려면 이를 監督하고 監視하는 기구를 여러겹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이 강요비용의 두번째 요소이다. 강제비용의 이 두 요소는 自發性이 증가할수록 감소할 것이다.

私有財産下의 市場經濟에서는 自發性이 자동적으로 확보된다. 市場經濟는 交換의 이익과 競爭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은 自己中心的이며 利己心과 自肯心(自尊心)이 충족될 때에 스스로 열심히 일한다. 市場經濟에서는 利己心과 自肯心이 다른 체제보다도 더 잘 충족된다. 市場經濟에서는 자발적인 交換經濟이며 交換은 去來當事者인 쌍방 모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市場經濟가 私益을 公益으

로 전환시키는 것은 市場經濟가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이 풍기는 것과 같은 무슨 신비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自發的인 交換의 덕분이다. 自發的인 交換은 쌍방 모두에게 유리할 때에만 발생한다. 市場經濟란 바로 이러한 自發的인 交換에 기초한 經濟에 다름 아니다. 각자 모두 자신을 위하여 생산하고 그 결과로 얻은 생산물을 쌍방 모두에게 유리한 교환을 통하여 교환하기 때문에 市場經濟에서는 개인들의 私益 추구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될 뿐이다.

交換의 이익은 지역과 대상이 넓어질수록 증대하기 마련이다. 선택의 대상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交換의 지역과 대상을 넓히는 對外開放은 交換의 이익을 증대시킨다. 이는 적어도 原理上으로 옳다. 문제는 對外開放이 不平等한 관계에 입각한 非自發的인 交換을 강요할 때이다. 이를 對外從屬이라고 부를 수 있다. 양국간에 힘이 不均等할 때에 이는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對外開放은 장기적으로 보아 낙후된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계기를 마련한다. 歷史的으로 보면 세계교역의 중심지는 經濟의 중심지만이 아니라 文化的 중심지였고(고대의 그리스와 로마,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신대륙 발견시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16~17세기의 네덜란드, 18세기에서 1차대전까지의 영국, 그 후의 미국, 당나라의 수도였던 長安 등), 폐쇄된 社會의 文明은 대부분 낙후되었었다(서양인들이 이주하기 이전의 남아메리카 등). 對外開放은 약소국의 경우 대외종속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對外開放 없이 문화와 경제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면에서 自由主義者들이 주장하는 自由貿易은 장기적으로 보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市場經濟에서는 自發性이 확보되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 그것은 競爭이다. 하이에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이 合理的이기 때문에 競爭하는 것이 아니라 競爭에서 生存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合理

의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競爭이 상존하는 市場經濟에서는 각 經濟主體가 생존하기 위하여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게 된다.

自由와 더불어 궁극적인 가치로 인정되는 것이 平等이다. 資本主義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된 社會主義는 平等에 自由보다 우선적인 가치를 둔다. 논리적으로는 平等이 自由를 우선한다. 모든 사람이 平等하므로 타인의 自由를 간섭할 권리를 아무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역사를 보면 일반적으로, 平等을 앞세운 나라에서보다 自由를 앞세운 사회에서 自由와 平等이 모두 더 많이 실현되었다. 현실에서 自由보다 앞세우는 평등은 거의가 經濟的 平等인데, 이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個人的 自由(특히 비판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면서 중앙정부의 권력이 과다하게 강화되었고 그 결과로 國家의 횡포가 견제되지 못하였다. 국가의 기본적인 특징은 暴力의 獨占이다. 가장 강한 힘인 暴力을 독점한 집권자(및 이와 이익을 같이 하는 관료계층)들은 經濟的 平等을 위하여 권력을 행사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기적인 인간인 집권자들은 종종 국민들을 위한다는 확신에 차서, 혹은 아예 국민들을 고려에 넣지 않고 私利私慾을 채우기 위하여 국민들의 基本權을 유린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貧者들로부터 富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國家와 法이 발생하였다고 스미스는 말하였다. 그러나 執權階層이 일반 國民들을 착취하기 위하여 國家라는 權力組織을 이용하여 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人間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므로 힘이 비대칭적으로 배분되어 强者의 힘이 견제받지 않으면 强者가 弱者의 權利를 유린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政府(정확하게 말하면 집권계층)와 一般 國民들의 관계가 이의 전형이었다. 현실에서는 國家(정확하게 말하면 집권계층)가 個人的 基本權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존재였다. 이 때문에 近代 自由主義의 핵심내용은 國家의 횡포로부터의 自由였고 自由를 위한 투쟁은, 법의 이름을 빌려서 권력을

휘두르는 國家의 暴力과의 투쟁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社會가 發展하였다. 즉 역사적으로 보면 執權層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歷史發展의 추진력이었고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현실에서 自由와 사실상 동의어였다.

批判의 自由는 自由의 핵심이었다. 이 때문에 自由를 앞세우는 社會에서는 국가권력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自由와 平等을 점차 확대하여 올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平等을 自由보다 앞세우는 사회에서는 모든 권력이 中央政府(실제로는 中央政府의 권력을 행사하는 집권계층)로 집중되고 批判의 自由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이 권력의 횡포를 견제하는 사회적 힘이 미약하여 결과적으로는 平等과 自由가 모두 극히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批判과 抵抗의 自由는 自由의 핵심이다. 批判과 抵抗의 自由가 없는 곳에서는 집권층의 힘의 횡포가 견제되지 않기 때문에 自由와 平等 그 어느 것도 실현되지 못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自由主義는 平等과 自由를 모두 실현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이념이라고 생각된다. 自由主義는 批判과 抵抗의 自由를 보장함으로써 비대칭적인 힘의 관계(국가와 국민, 재벌과 중소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횡포를 견제하며, 個人的 자유로운 社會的 活動을 보장함으로써, 國家나 財閥과 같은 强者의 횡포를 방지하여 人間의 基本權을 보장하고 확대한다. 自由主義는 또한 自發性을 유발하여 社會적으로 強制費用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성과를 극대화한다. 自由는 동시에 사회구성원의 創意力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가 끊임없이 변하는 대내외의 여건에 성공적으로 자신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우리나라도 이제 自由主義를 정책의 기본원리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資本主義의 초기단계(이를 스미스는 重商主義라고 불렀다)에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國家가 經濟에 적극 개입하여 투자를 주도하는 예가 많았다.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 경제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발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계에 이른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정부가 계획을 세워 끌고 가기에는 우리 經濟가 너무 커지고 복잡하여졌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經濟는 民間經濟 主體들의 自發性에 입각하지 않고는 生産性을 높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통부문의 인력을 근대부문에 투입하여 근대부문의 생산을 증대시켜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더 투입할 인력이 전통부문에 남아 있지 않다. 이제는 근대부문에 이미 투입된 人力의 生産性을 높이지 않고서는 生産을 증대시킬 수 없다. 人力(노동자만이 아니라 기업가, 중간관리층, 관료, 교육자, 언론인 등 모든 경제 활동 종사자)의 生産性을 높이려면 自發性을 증진시키지 않을 수 없고 自由 없이는 自發性을 유발할 수 없는 것이 人間의 本性이다. 그리고 市場價格機構가 정부계획보다 상대적으로 分業과 協業의 相互整合性(coordination)을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

현 시점의 우리나라에서 自由主義를 실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政府와 財閥의 힘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自由主義의 핵심은 强者의 횡포를 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 시점의 우리나라에서 强者는 政府(구체적으로는 집권층과 관료)와 財閥이다. 그간의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이 두 집단의 힘이 비대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들의 무분별한 힘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불합리한 힘들(관치금융, 차별적인 가혹한 조세제도, 각종의 불합리한 행정규제)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財閥들이 최소한 言論이나 金融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상호지급보증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自由主義가 無秩序를 의미하거나 政府의 역할을 否定하는 것은 아니다. 自由主義의 장점은 公正한 競爭秩序 안에서만 발휘됨을 명심해야 한다. 公正한 競爭秩序란, 獨寡占企業 및 그 집단인 財閥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방지하며, 公正한 法秩序를 확립하여

私有財産制度를 확립하고 계약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여기에는 국가권력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포함된다). 이러한 公正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또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단을 제공하며, 필요한 社會資本(사회간접자본과 교육)을 공급하며 공해를 규제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自由主義에 입각한 市場經濟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市場經濟가 경제 각 부문간의 相互整合(coordination)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市場經濟가 잘 발달한 모든 先進國 經濟들이 현재 장기간 높은 실업률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것에서 증명된다. 또한 市場經濟의 기초원리의 하나인 경쟁이 효율의 원천이긴 하지만 경쟁이 人間과 人間間的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고 인간의 생활을 피곤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기심을 조장하고 금전을 중요히 여기게 하는 資本主義의 속성이 人間の 心性을 피폐하게 하고 倫理를 약화시키는 측면을 갖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財貨가 한정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不完全하고 利己的인 人間들에게 自由主義는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 같다.

〈參考文獻〉

- 姜哲圭·崔廷標·張志祥, 『재벌-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비봉출판사, 1991.
- 金泰東·李根植, 『땅-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비봉출판사, 1989.
- 박순성, 「自由市場經濟와 制度, 國家: 아담 스미스 社會思想에서의 經濟, 政治, 道德」, 未發表 論文, 1994.
- 李根植, 「分配的 正義의 定義」, 『한국국제경제학회 제26차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990. 12, pp. 343~373.
- _____, 「土地稅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토지연구』, 1991년 1/2월호, pp. 4~17.
- _____, 「군부지배와 경제개발 모형의 특징」, 『광장』, 1991년 여름, pp. 63~95.
- _____, 「한국경제의 위기: 그 원인과 처방」, 『창작과 비평』, 1991년 여름, pp. 281~305.
- 李鎭淳, 『韓國의 租稅政策』, 한국경제신문사, 1990.
- 趙淳外, 『아담 스미스 研究』, 민음사, 1989.
- 曹尤紘·李廷雨, 『신모형에 의한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숭실대학교 한국노사관계연구소 보고서, 1991. 1. 15.
- 中村哲, 『世界資本主義와 履行의 理論』, 안병직(譯), 비봉출판사, 1991.
- 崔明根, 「제조업 소득과세우대와 토지과세부담의 적정화」, 『토지연구』, 1991년 1/2월호, pp. 35~54.
- 황신준, 「社會的 市場經濟에 대한 小考: 西獨의 經濟發展 經驗을 중

- 심으로」, 未發表 論文, 1993.
- 星野彰男 · 和田重司 · 山崎伶, 『國富論入門』, 1977 (오근업 (譯), 『國富論 입문』, 이삭, 1984).
- Arrow, K.J.,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Second Ed., Yale Univ. Press, 1963.
- _____, "Distributive Justice and Desirable Ends of Economic Activity," in G.R. Feiwel(ed.), *Issues in Contemporary Macroeconomics and Distribution*, Macmillan, 1985.
- Buchanan, James, *Liberty, Market and State*, Wheatsheet, 1986.
- _____, *The Limits of Liberty*, Univ. of Chicago Press, 1975.
- _____, *Freedom in Constitutional Contract*, Texas A&M Press, 1977.
- Buchanan, James and H.G. Brennan, *The Reason of Rules*, Cambridge Univ. Press, 1985.
- Buchanan, James and G. Tullock, *The Calculus of Consent*, Univ. of Michigan Press, 1962.
- Buchanan, James and R.E. Wagner, *Democracy in Deficit*, Academic Press, 1977.
- Cameron, Rondo, *A Concise Economic History of the World*, Oxford Univ. Press, 1989.
- Campbell, R. H. and A.S. Skinner, *Adam Smith*, Croom Helm, 1982.
- Eucken, Walter, *Grunds tze der Wirtschaftspolitik*, 1952 (大野忠男 (譯), 『經濟政策原理』, 勁草書房, 1967).
- _____, *Die Grundlagen der Natiolal konomie*, 1940 (T.W. Hutchison (譯), *The Foundations of Economics*, 1950, p. 22).
- Foley, Vernard, *The Social Physics of Adam Smith*, Purdue University Press, 1976.

- Friedman, Milton, "The Quantity Theory of Money - A Restatement," M. Friedman(ed.), *Studies in the Quantity Theory of Money*, 1956, pp. 3~21.
- _____, *A Program for Monetary Stability*, Fordham University Press, 1959.
- _____, *Capitalism and Freedo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 _____, "The Role of Monetary Polic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68, pp. 1~17.
- _____, "Government Revenue from Inf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71, pp. 846~856.
- _____, "Nobel Lecture: Inflation and Un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77, pp. 451~472.
- _____, "Lesson from the 1979~82 Monetary Policy Experi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984, pp. 397~400.
- Gray, John, *Hayek on Liberty*, Basill Blackwell, 1984.
- Gurley, J.G and E.S. Shaw, *Money in a Theory of Finance*, The Brookings Institution, 1960.
- Hayek, F.A., *The Pure Theory of Capita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1.
- _____,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 _____, *The Counter-Revolution of Science: Studies on the Abuse of Reason*, The Free Press, 1952 (New Edition, Liberty Press, 1979).
- _____, *The Sensory Order: An Inquiry into the Foundation of Theoretical Psychology*, New Edition, Chicago University Press, 1963(First Ed., 1952) (아끼야마 다카노리 (譯), 『感覺

秩序』, 春秋社, 1989).

_____, *The Constitution of Liber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_____,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_____, *Law, Legislation, and Liberty : A New Statement of the Liberal Principles of Justice and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ol. 1, Rules and Order, 1973.

Vol. 2,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1976.

Vol. 3, The Political Order of a Free People, 1979.

_____,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Heilbroner, R.L., *The Essential Adam Smith*, Oxford Univ. Press, 1986.

Hollander, Samuel, *The Economics of Adam Smith*, Univ. of Toronto Press, 1973.

Hume, David, *A Treatise of Human Nature*, L.A. Selly-Bigge (ed.), Second Ed., Oxford Univ. Press, 1976 (원래의 초판 1739/40).

Hunt, E.K., *Property and Prophets: The Evolution of Economic Institutes and Ideologies*, Fourth Ed., Harper Row, 1981(정연주(譯), 『資本主義의 展開와 이데올로기』, 비봉출판사, 1986).

Keynes, John M., "The End of Laissez-Faire," *Essays in Persuasion* 1931(*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IX, Macmillan, 1972).

- Lucas, Robert E.,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22, 1988, pp. 3~42.
- Mair, Douglas(ed.), *The Scottish Contribution to Modern Economic Thought*, Aberdeen University Press, 1990.
- Nishiyama, C. and K.R. Leube(ed.), *The Essence of Hayek*, Hoover Institution Press, 1984.
- Pack, Spencer J., *Capitalism as a Moral System*, Edward Elgar, 1991.
- Porter, Michael E., *The Comparative Economics of Nations*, The Free Press, 1990.
- Raphael, D.D., *Adam Smith*, Oxford Univ. Press, 1985.
-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Reisman, D., *The Political Economy of James Buchanan*, Texas A&M University Press, 1990.
- Schumpeter, Josep,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Georgy Allen & Unwin, First Published by Oxford University, 1954.
- Sen, A.K., "Development: Which Way Now," *The Economic Journal*, December 1983.
- Shaw, E.E., *Financial Deepening i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Smith, Adam,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R.H. Campbell, and A.S. Skinner(eds.), Cearendon Press, 1976.
- _____, *Lectures on Jurisprudence*, R.L. Meed, D.D. Raphael and P. G. Stein(eds.), Liberty Classics, 1982; *The Glasgow Edition of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Adam Smith*, Vol. V, Oxford University, 1978.

- _____, *Essays on Philosophical Subjects*, W.P.D. Whiteman(ed.), Liberty Classics, 1985; The Glasgow Edition of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Adam Smith, Vol. III,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_____,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D.D. Raphael and A.L. Macfie(eds.); The Glasgow Edition of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Adam Smith, Vol. I,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 _____,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R.H. Campbell and A.S. Skinner(eds.): The Glasgow Edition of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Adam Smith, Vol. II, Oxford University Press, 1976(아담 스미스. WN. 金秀行(譯), 『國富論』, 上·下, 동아출판사, 1992).
- _____, *Correspondence of Adam Smith*, E.C. Mossner and I.S. Ross(eds.), Liberty Classics, 1987; The Glasgow Edition of Works and Correspondence of Adam Smith, Vol. VI, 1977.
- _____, *Lectures on Rhetoric and Belles Letters*, J.C. Bryce(ed.), Liberty Classics, 1987; The Glasgow Edition of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Adam Smith, Vol. IV,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 Sraffa, Piero, *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Prelude to a Critique of Economic Theory*, Cambridge Univ. Press, 1975.
- Viner, Jacob, "Adam Smith and Laissez-Faire," JPE, Vol. 35, April 1927(Reprinted in Jacob Viner, *The Long View and the Short*, The Free Press, 1958, pp. 213~45).
- Wood, John Cunningham(ed.), *Adam Smith: Critical Assesments*,

Vol. 4, Croom Helm, 1984.

Wood, J.C. and R.N. Woods (eds.), *Friedrich A. Hayek: Critical Assessments*, Routledge, 1991.